第6代 高敞郡議會

議 政 白 書

(2010.7.1 ~ 2014.6.30)



高 敞 郡 議 會

高敞郡議會 議員 倫理綱領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의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 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발간사

지방자치사의 소중한 지침서로 기억 되기를



고창군의회 의장 이 상 호

지난 2010년 7월 "함께하는 열린의정, 앞서가는 고창군의회" 라는 의정구호로 출범한 군의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활동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 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의회,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역동적인 의회, 협력과 견제의 참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비록 이 백서에 의원들이 현장을 누비며 흘렸던 수많은 땀방울을 모두 담지는 못했지만 기록된 성과만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온 6대 의원의 자화상이 우리 군민에게 굴절없이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한 권의 책으로 담아내기에는 부족할 만큼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은 군민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이 백서가 군민의 객관적인 평가 속에서 고창군 의회발전에 디딤돌로 오래토록 지방자치사의 소중한 지침서로 기억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축간사

군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고창군의회의 소중한 발자취



고창군수 박 우 정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과 공감하며, 고창군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제6대 고창군의회의 의정백서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6대 고창군의회는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으며, 고창군의 문화, 교육, 농업,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과 감시, 협력의 상생(相生)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모두가 헌신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며, 고창군의 비전을 창출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제6대 고창군의회의 의정백서는 살아있는 역사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이며, 향후 고창군의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 복지 증진과, 고창군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동반자적인 역할에 충분히 공감하여,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의정백서 발간을 축하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고창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축 간 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 춘 진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의원입니다.

제6대 고창군의회 의정백서의 발간을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무엇보다 4년 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고창군 발전에 대한 희망과 열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고창군의회의 모든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도 이제 20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립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지방의회입니다. 이제 성인의 나이에 들어선 만큼 그동안의 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더욱 그 범위와 역할을 확장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제6대 고창군의회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수많은 기초 의회 중에서도 남다른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의원님들의 노력과 군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속에서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창군의 발전을 선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의회활동을 통해 우리의 지방자치가 더욱 더 성숙해지는데 큰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년간 고창군의회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담아낸 이번 의정백서의 발간은 미래 고창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바이블이자 향후 의회활동의 지침서로서 군민 모두가 소중히 아끼고 사랑할 역사적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현안 해결을 통해 고창군 발전을 선도해 온 제6대 고창군의회는 역사적으로 고창의 밝은 미래의 초석으로서 높이 평가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고창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군민의 대변자로서 함께 해 오신 고창군의회 의원님과 사무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오롯이 담아낸 고창군의회 의정백서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6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원구성**

(2010. 7. 1. ~ 2012. 6. 30.)



의 장
이 만 우



부의장
박 래 환



운영위원장
오 덕 상



자치행정위원장
김 종 호

(기간:2010.7.1.~2011.3.12.)



자치행정위원장
윤 영 식

(기간:2011.3.28.~2012.7.7)



산업건설위원장
임 정 호

제6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2012. 7. 1. ~ 2014. 6. 30)



의 장
박 래 환



부의장
조 병 익



운영위원장
오 덕 상



자치행정위원장
이 상 호



산업건설위원장
조 금 자



제6대 고창군의회 의원 프/로/필



박 래 환
(朴來煥)
(1959.4.22)

선 거 구	가 선거구(고창 · 아산 · 신림)
주 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85나동 305호(삼영남흥맨션)
경 력	– 고창읍 체육회장 – 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 고창중학교 운영위원 – 고창중·고 총동창회 부회장 –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고창군 애향청년회 회장 – 고창군 배구협회 부회장 – 고창군 태권도협회장 – 고창오거리당산보존회 부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고창지구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회장 – 제5대 고창군의회 의원 (전반기 : 운영위원장 / 후반기 : 자치행정위원장) – 제6대 고창군의회 의원 (전반기 : 부의장) (후반기 : 의장)
재임기간	2010. 7. 1 ~ 2014. 6. 30



조 병 익
(曺秉益)
(1952.7.14)

선 거 구	가 선거구(고창 · 아산 · 신림)
주 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산길 5
경 력	– 평민당 대의원 – 새정치국민회의 대의원 – 열린우리당 대의원 – 민주당 고창읍 협의회장 – 고창군 형우회 회장 – 고창군 방장회 회장 – 민족통일 고창군협의회 부회장 – 고창자활후견기관 위원 – 모양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회장 – 고창종합병원 행정부원장 – 제6대 고창군의회 의원 (재보궐선거 2011.4.27.) (후반기 : 부의장)
재임기간	2011. 4. 27 ~ 2014. 6. 30



故 김 종 호
(金鍾浩)
(1955.5.5)

선 거 구	가 선거구(고창 · 아산 · 신림)
주 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1길51 104-1308(제일A)
경 력	– 고창읍, 아산면, 신림면 예비군 지휘관 – 모양성제전회 사무국장 – 제5대 고창군의회 의원 – 제6대 고창군의회 의원(2010. 7. 1 ~ 2011. 3. 12) – (자치행정위원장 2010. 7. 1 ~ 2011. 3. 12)
재임기간	2010. 7. 1 ~ 2011. 3. 12



조 규 철
(趙圭錣)
(1966.9.12)

선 거 구	가 선거구(고창 · 아산 · 신림)
주 소	전북 고창군 아산면 갑평1길 15
경 력	– 고창군 형우회 이사 – 고창행복원 후원회 총무 – 고창군 의용소방대원 – 아산 대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농업경영인연합회 아산면지회 부회장 – 아산면 농민회장 – 고창군 농업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선운산농협 이사 · 감사 – 아산면 체육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6대 고창군의회 의원
재임기간	2010. 7. 1 ~ 2014. 6. 30



제6대 고창군의회 의원 프/로/필



윤 영 식
(尹永植)
(1958.1.3)

선 거 구	나 선거구(심원 · 흥덕 · 성내 · 부안)
주 소	전북 고창군 심원면 심원로 270-12
경 력	– 심원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심원면 체육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심원농협조합장 – 고창로타리클럽 회원 – 심원면 의용소방대장 – 제6대 고창군의회 의원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2011. 3. 28 ~ 2012. 6. 30)
재임기간	2010. 7. 1 ~ 2014. 6. 30



오 덕 상
(吳德相)
(1955.10.25)

선 거 구	나 선거구(심원 · 흥덕 · 성내 · 부안)
주 소	전북 고창군 흥덕면 선운대로 3781
경 력	– 평민당 흥덕면 협의회장 – 민주당 흥덕면 협의회장 – 민주당 고창직능위원장 – 민주당 잘사는 농어촌 특별위원장 – 고창군 한우협회 회장 – 전북 한우조합이사 – 고창군 농어민단체 부회장 – 흥덕면 체육회장 – 흥덕중학교 운영위원장 – 흥덕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 – 흥우농장대표 – 제6대 고창군의회 의원 (전 · 후반기 운영위원장)
재임기간	2010. 7. 1 ~ 2014. 6. 30



이 상 호
(李相滈)
(1960.4.13)

선 거 구	다 선거구(고수 · 공음 · 성송 · 대산)
주 소	전북 고창군 고수면 대성길 21
경 력	– 고창농업협동조합 이사 – 고창군 해병 전우회 회장 – 고창군 애향운동본부 이사 – 고수면 이장단협의회 회장 – 고창군 재향 군인회 부회장 – 고창 농촌개발대학 총학생회장 – 고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고창군 학교운영위원연합회 부회장 – 고창 라이온스 이사 – 고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고창군 이장단연합회 회장 – 고창 성균관유도회 청장년 회장 – 고창경찰서 치안협의회 위원 – 전주지검 정읍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 – 고창중 · 고 총동창회 부회장 – 고창문화원 이사 – 민주당 주민생활복지 특별위원장 – 제6대 고창군의회 의원 (후반기 : 자치행정위원장)
재임기간	2010. 7. 1 ~ 2014. 6. 30



임 정 호
(林正鎬)
(1958.11.25)

선 거 구	다 선거구(고수 · 공음 · 성송 · 대산)
주 소	전북 고창군 공음면 수원길 59–6
경 력	– 고창군 4–H회장 – 농업경영인연합회 고창군 부회장 – (사)고창군 4–H연맹회장/전라북도 감사 – 공음면 농협이사 2대/감사 1대 – 공음면 청년회장 – 공음면 애향회 체육회 사무국장 – 공음면 농민회장 – 공음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제6대 고창군의회 의원 (전반기 : 산업건설위원장)
재임기간	2010. 7. 1 ~ 2014. 6. 30



제6대 고창군의회 의원 프/로/필



박 현 규
(朴炫圭)
(1958.8.13)

선 거 구	라 선거구(무장 · 상하 · 해리)
주 소	전북 고창군 해리면 구동호 2길 34
경 력	– 제8회~제12회 수산물 축제위원장 – 제1,2대 해리면체육회장 – 제2,3대 해리면청년회장 – 아모스요엘원(희망샘 학교) 이 · 감사 – 해리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민족통일고창군협의회 회장 – 고창군 체육회 수석부회장 – 고창군 새마을지회 회장 – ㈜황토배기유통회사 감사 – 제4대 고창군의회 의원 – 제5대 고창군의회 의원 (전반기 : 자치행정위원장 / 후반기 : 의장) – 제6대 고창군의회 의원
재임기간	2010. 7. 1 ~ 2014. 6. 26



이 만 우
(李晩雨)
(1958.8.13)

선 거 구	라 선거구(무장 · 상하 · 해리)
주 소	전북 고창군 해리면 안산길 38
경 력	– 고창JC회장 – 고창군어민보호대책 사무국장 – 고창수산물축제 초대 위원장 – 고창해풍고추축제 초대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고창문화원 감사 –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 제3대 고창군의회 의원 (전반기:자치행정위원장 / 후반기:부의장) – 제5대 고창군의회 의원 – 제6대 고창군의회 의원 (전반기 : 의장)
재임기간	2010. 7. 1 ~ 2014. 3. 31



조 금 자
(趙金子)
(1943.11.7)

선 거 구	비례대표(고창군)
주 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4길 40-8
경 력	- 원광대 학교 행정대 학원 최고여성지도자과정 수료 (1992~1993) - 제2대 ~ 제3대 전북 부녀 테니스연합회장 - 대한적십자사전북지사 청소년 분과위원장 - 대한적십자사 고창지구협의회장 -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 부회장 - 고창군 애향운동본부 부본부장 - 제6대 고창군의회 의원 (후반기 : 산업건설위원장)
재임기간	2010. 7. 1 ~ 2014. 6.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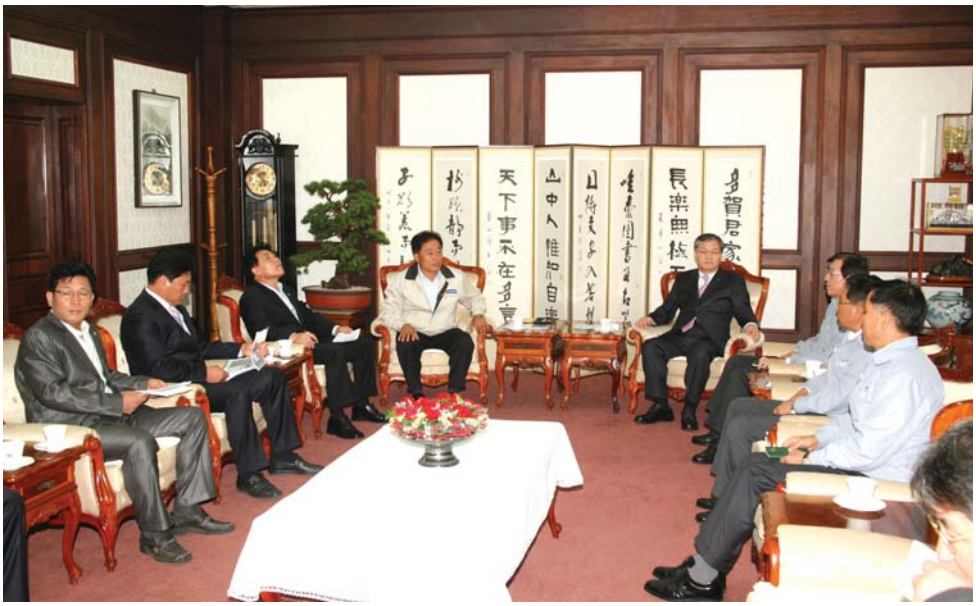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제6대 고창군의회 개원(2010. 7. 15.)



고창군 기업인들과의 간담회(2010. 9. 14.)



영광 한빛원전 방문(2010. 10. 14.)



구제역 방역초소 방문(2010. 12. 30.)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의원 간담회(2011. 3. 9)



제192회 임시회 현장방문(2011. 5. 24.)



고창군의회 의원 연수(2011. 6. 8. ~ 6. 10.)



제19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 12. 9.)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전라북도 시 · 군의회 의장단 협의회(2012. 3. 30.)



제11회 전북 시 · 군의원 친선체육대회(2012. 5. 17.)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2012. 9. 1.)



제2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2012. 11. 27.)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설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2013. 2. 6.)



제212회 임시회 현장방문(2013. 5. 22.)



영등포구의회 고창 방문(2013. 11. 14.)



제216회 정례회 군정질 문답변(2013. 12. 13.)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14 시무식 (2014. 1. 8.)



사회복지시설 방문(2014. 1. 29.)



의원 간담회(2014. 3. 12.)



제218회 임시회 현장방문(2014. 4. 4.)

목 차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고창군 일반현황

1. 고창군 연혁 ·····31
2. 지역여건 ·····33
3. 지역특성 ·····33
4. 고창군 위치 ·····34
5. 행정구역 ·····35
6. 읍·면별 세대 및 인구 ·····36
7. 재정규모 ·····36
8. 역대 고창군수 ·····39
9. 역대 의장 ·····41
10. 역대 부의장 ·····41
11. 역대 상임위원장 ·····42
12. 역대 의회사무과장 ·····43

제2절 고창군의회 기구 현황

1. 의회 기구 ·····44
2. 의회 현황 ·····45
3. 의회사무과 현황 ·····51

제3절 고창군 선거 현황

1. 전국 선거 ·····52
 가. 국회의원 선거 ·····52
 1) 제헌의원 선거 ·····52
 2) 제2대 국회의원 선거 ·····54

3) 제3대 국회의원 선거 ·····57
4) 제4대 국회의원 선거 ·····58
5) 제5대 국회의원 선거 ·····60
6) 제6대 국회의원 선거 ·····63
7) 제7대 국회의원 선거 ·····66
8) 제8대 국회의원 선거 ·····70
9) 제9대 국회의원 선거 ·····72
10)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75
11)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76
12)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80
13)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81
14)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84
15)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85
16)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86
17)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87
1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94
19)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95
나. 참의원 선거 ·····96
2. 지 방 선 거 ·····100
가. 도의원 선거 ·····100
1) 제1대 도의원 선거 ·····100
2) 제2대 도의원 선거 ·····102
3) 제3대 도의원 선거 ·····104
4) 제4대 도의원 선거 ·····105
5) 제5대 도의원 선거 ·····107
6) 제6대 도의원 선거 ·····108
7) 제7대 도의원 선거 ·····109
8) 제8대 도의원 선거 ·····110
9) 제9대 도의원 선거 ·····111
나. 군의원 선거 ·····112
1) 제1대 군의원 선거 ·····112

2) 제2대 군의원 선거 ·····116
3) 제3대 군의원 선거 ·····118
4) 제4대 군의원 선거 ·····120
5) 제5대 군의원 선거 ·····122
6) 제6대 군의원 선거 ·····124
다. 읍 · 면의원 선거 ·····126
1) 제1대 읍 · 면의원 선거 ·····126
2) 제2대 읍 · 면의원 선거 ·····134
3) 제3대 읍 · 면의원 선거 ·····141
3. 교육위원 선거 ·····143
4. 기타 선거 ·····145
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145
나. 통일주체 대의원과 선거인 ·····149
5. 고창군 정당활동 상황 ·····154
가. 지구당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및 소멸상황 ·····154
나. 지구당 등록상황 ·····156
다. 연락소 등록상황 ·····160

제2장 의원선거 및 개원준비

제1절 의원 선거

1. 의원 선거 현황 ·····163
2. 의원 당선자 현황 ·····165

제2절 개원 준비

1. 제1대 개원 ·····166
가. 의회 사무기구 신설 ·····166
나. 지방자치 관련 조례 · 규칙 정비 ·····166
2. 제2대 개원 ·····167
가. 집회 공고 ·····167

나. 의장단 선거 ·····167
3. 제3대 개원 ·····168
가. 집회 공고 ·····168
나. 의장단 선거 ·····168
4. 제4대 개원 ·····169
가. 집회 공고 ·····169
나. 의장단 선거 ·····169
5. 제5대 개원 ·····170
가. 집회 공고 ·····170
나. 의장단 선거 ·····170
6. 제6대 개원 ·····170
가. 집회 공고 ·····170
나. 의장단 선거 ·····171

제3장 제6대 고창군의회 운영

제1절 집회와 회기

1. 집회 일람 ·····175

제2절 본회의 주요의안 처리현황

1. 주요 의안 처리현황 ·····177

제3절 의안 제출 및 처리

1. 종류별 의안처리 현황 ·····194
2. 예산안 ·····195
3. 조례안 ·····198
4. 승인안 ·····209
5. 결의안 ·····211
6. 기타안 ·····214

제4절 군정질문과 답변

1. 제186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218
2. 제188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231
3. 제194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242
4. 제197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253
5. 제204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265
6. 제207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268
7. 제213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271
8. 제216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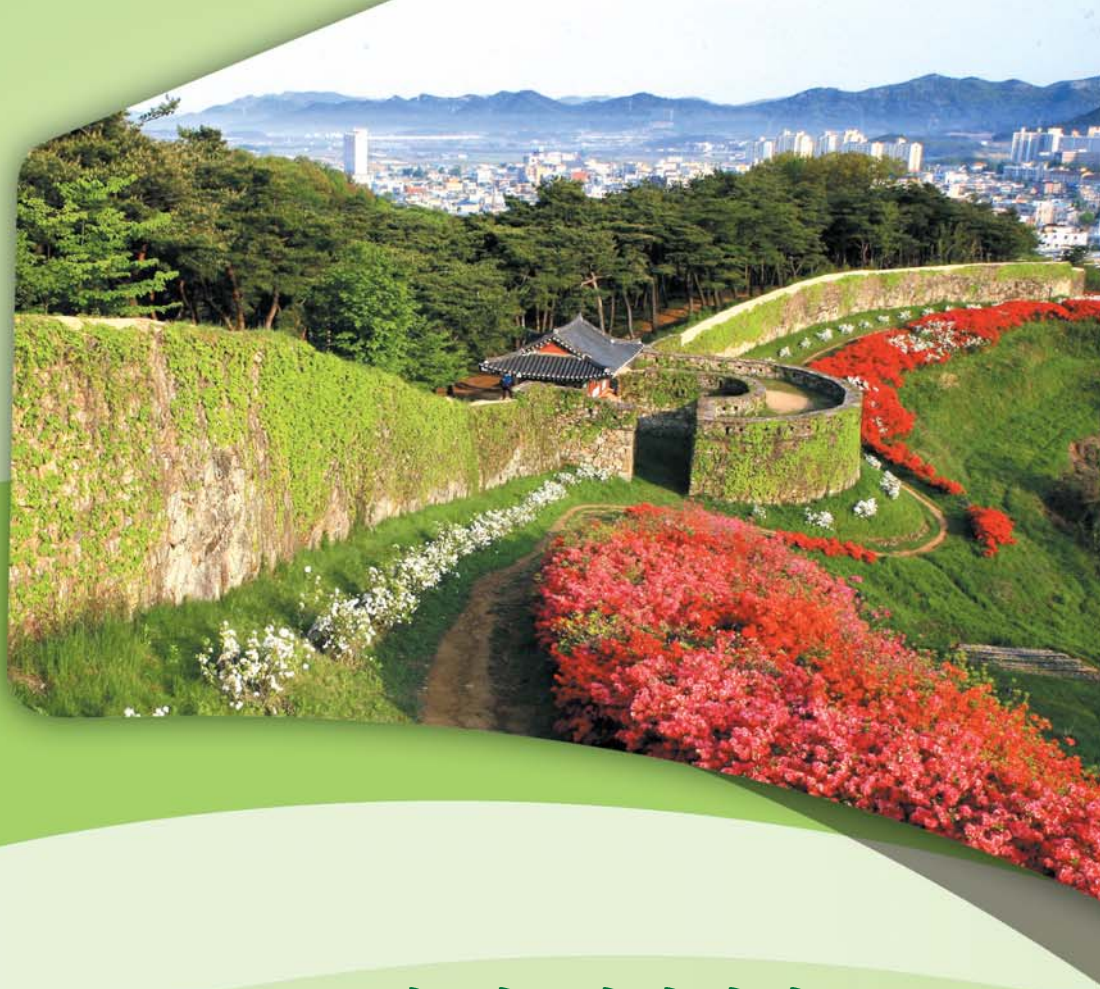
제5절 자유발언(5분 발언) ·····296

제6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1. 제183회 임시회 ·····301
2. 제189회 임시회 ·····308
3. 제192회 임시회 ·····310
4. 제195회 임시회 ·····317
5. 제201회 임시회 ·····322
6. 제205회 임시회 ·····327
7. 제212회 임시회 ·····337
8. 제214회 임시회 ·····345
9. 제218회 임시회 ·····350

제7절 민원 처리

1. 민원 처리 상황 ·····354



제1장 일반현황

제1절 고창군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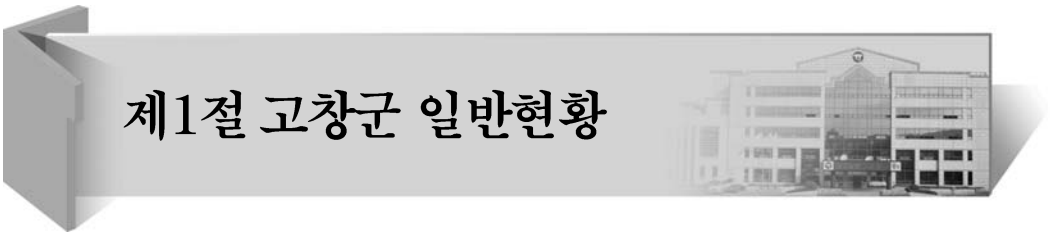
1. 고창군 연혁
2. 지역여건
3. 지역특성
4. 고창군 위치
5. 행정구역
6. 읍·면별 세대 및 인구
7. 재정규모
8. 역대 고창군수
9. 역대 의장
10. 역대 부의장
11. 역대 상임위원장
12. 역대 의회사무과장

제2절 고창군의회 기구현황

1. 의회 기구
2. 의회 현황
3. 사무과 현황

제3절 고창군 선거현황

1. 전국 선거
2. 지방 선거
3. 교육위원 선거
4. 기타 선거
5. 고창군 정당활동 상황



제1절 고창군 일반현황

1. 고창군 연혁

삼한(三韓)시대에는 마한(馬韓)땅으로 모로비리국(牟盧卑離國 : 1793에 간행된 高敞邑誌에는 牟伊部曲이라고 기록)에 속했으며 삼국(三國)시대에는 백제의 모량부리현(毛良夫里縣 : 지금의 고창 고수 아산), 송미지현(松彌知縣 : 지금의 성송 대산 무장 일부 공음 일부), 상로현(上老縣 : 상하 해리 심원 무장 일부 공음 일부), 상칠현(上漆縣 : 지금의 흥덕 신림 성내 부안 일부)의 4개현에 속하던 지역으로 757년(경덕왕 16년)에 모량부리현을 고창현(高敞縣), 송미지현을 무송현(茂松縣), 상노현을 장사현(長沙縣), 상칠현을 상질현(尙質縣)으로 개칭하였으며 보릿고을을 상징하는 모양부리의 속명(俗名) 모양(牟陽)이 고창과 함께 불리어 왔다.

행정의 체제는 고창 무송 장사의 3개현은 무령군(武靈郡 : 지금의 靈光郡)의 영현(嶺縣)이 되었고 상칠현은 고부군(古阜郡)의 속현으로 떨어져 있었다.

(註) : 백제와 고구려가 망한 후 唐에 의해 688년(新羅 文武王 8년)에 설치된 安東都護府 시절에 高敞縣은 無割縣, 上老縣은 佐魯縣으로 불렀었다.(참고문헌:三國史記)

고창현은 고려시대 초기에는 고부군에 속했다가 갈려서 상질현의 감무(監務)가 상칠과 겸하여 다스리게 되었고, 장사현은 영광군에 속하였고, 무송현도 초기에는 영광군에 속하였고, 후에 장사 감무가 무송을 겸해서 다스렸다.

상질현은 고부군에 속했다가 그 명칭을 장덕(章德) 또는 창덕(昌德)으로 고쳐 감무를 두었고 고창을 겸임하였다.

1308년 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하자 왕명(王名)을 피해 장덕을 다시 흥덕(興德)으로 고쳤다.

조선(朝鮮)시대에 들어서는 고창현은 1401년(太宗 1년)에 감무를 두게 되어 흥덕의 겸임에서 풀려났으며 1455년(世祖 1년) 지방 방위 조직의 개편에 따라 나주진관(羅州鎭管)의 속읍(屬邑)이 되어 감무를 현감으로 고쳤고 속오군(束伍軍)은 입암산성에 속하였으며 후기에는 방리(坊里)가 8個面(川北, 川南, 古沙, 水谷, 五東, 五西, 大雅, 山內)에 1982가구(1759년)가 되었다.

1895년(高宗 32년) 5월 26일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 勅令(98號)현(縣)에서 군(郡)으로 승격하였으며, 1906년 (光武 10년)에 전라북도에 편입되었다.

무송과 장사현은 1417년(太宗 17년)에 두 고을을 합병하여 무장현(茂長縣)으로 고치고 진(鎭)을 두어 병마사(兵馬使)가 고을 일을 겸임하게 하였는데 1423년(世宗 5년)에 병마사를 첨절제사(僉節制使)로 바꾸었다가 1482년(成宗 14년)에 현감으로 고쳤고 1455년에 나주진관의 속읍이 되었다.

후기에는 방리가 16면(面 : 一東, 二東, 白石, 托谷, 瓦孔, 冬音峠, 大梯, 大寺, 蔣子山, 星洞, 元松, 靑海, 心元, 上龍伏, 下龍伏), 6817가구(1759년도)가 되었다.

1836년(憲宗 2년)에 승격하여 군(郡)이 되었고 1895년에 지방제도의 개편에 의해 전주부(全州府)에 소속되었다가 1896년 다시 전라남도에 편입되어 2등군으로서 군세가 막강하였으며 1906년에 전라북도에 편입되었다.

흥덕현은 1392년(太祖 1년)에 겸임하던 고창과 갈라서게 되었고 1455년에 전주진관의 속읍이 되었으나 속오군은 입암산성에 속하였으며 감무를 현감으로 고쳤다.

후기에는 방리가 8면(縣內, 北, 一東, 二東, 一南, 二南, 一西, 二西), 2762호(戶 : 1759년도)가 되었다.

1895년에 군으로 승격하였고 1906년에 고부군(古阜郡)의 부외(富外) 부내(富內) 두면을 병합하여 부안면(富安面)으로 개칭하였다.

일제(日帝)시대에는 1914년 3월 1일 부군(府郡) 폐합령에 따라 무장군과 흥덕군을 병합하였고 비능률적인 행적단위를 통·폐합하여 천북·천남면과 오동·산내, 고사면의 일부를 합하여 고창면(高敞面)으로, 고사·수곡면을 합하여 고수면(古水面)으로, 오동·오서면을 합하여 오산면(五山面)으로, 대아·산내면을 합하여 아산면(雅山面)으로, 일동·이동면을 합하여 무장면(茂長面)으로, 와공·동음치를 합하여 공음면(孔音面)으로, 대사·장자산면과 대제면의 일부를 합하여 대산면(大山面), 성동·원송면과 대제면 일부를 합쳐 성송면(星松面)으로, 청해·오리동면을 합하여 해리면(海里面)으로, 심원은 심원면(心元面) 그대로, 상용복·하용복을 합하여 상하면(上下面)으로, 그리고 흥덕고을은 현내·북면을 합하여 흥덕면(興德面)으로, 일동·이동면을 합하여 성내면(星內面)으로, 일남·이남면을 합하여 신림면(新林面)으로, 일서·이서면을 합하여 벽사면(碧沙面)으로, 그리고 부안면을 합하여 17개면으로 줄었다.

건국후에는 1955년 7월 1일 고창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1읍 13개면이 되고 1968년 4월 23일 180개 리동(里洞)으로 개정되었다가 1971년에 다시 489개

분리동을 나뉘었으며 1973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림면 제하리(堤下里)가 흥덕면에 편입되었으며, 1987~1988 兩年에 성송면 상금리가 대산면으로, 신림면 송암리가 흥덕면으로, 성내면 일부가 정읍군 입암, 소성면으로 각각 편입되었고, 해리 · 상하 · 무장면 등 3개면의 분리가 조정되는 등 2013년말 현재 고창군의 행정조직은 1읍 13면 189개의 법정리, 566개의 행정리에 911개의 자연부락과 1,388개의 반조직을 이루고 있다.

지난 1961년 10월 1일 당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읍면의 지방자치는 폐지되었고 1991년 군이 지방자치단체로 발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지역여건

본 군 동남은 노령산맥이 중첩하여 관내 방등산(742.8m), 방장산(640m), 문수산(620.5m), 고산(526m) 등의 높은 산세를 보이며 해발 500m이상의 준봉이 연하였고, 고찰로 유명한 조계종 24교구의 본산인 선운사가 있으며, 그 외 고수면의 문수사, 부안면의 소요사, 선운산도립공원 내에 크고 작은 암자들이 산재해 있다.

선운사 옆을 흐르는 주진천의 본류는 모든 산맥에서 발원하여 본 군의 중앙을 관류하여 서해에 유입하는 관계로 지세는 자연히 동남부가 높고 서북부가 낮은 평야를 이루고 있다.

하천 유역은 토지가 비옥하여 농경지로서 천연부유의 양질의 땅이며 해안선은 전북 부안군계에서 본 군 5개면(흥덕, 부안, 심원, 해리, 상하)과 접하고 있으며, 그 연장이 73.7㎞로서 5개소의 포구(후포, 사포, 상포, 동호, 구시포) 마을이 있고 굴곡이 많으며 해상은 무진장한 해산물이 있어 수산 발전이 크게 기대되며 해안 일대는 남한 유일의 대규모로 뻗쳐있는 군소 염전들이 산재하고 있어 국내 천일염 생산의 주산지였으나 현재는 천일염이 사양길에 있어 폐염전을 농경지화하고 있음.

본 군 지형상의 표고는 40m이며 그 중 농경지가 전체면적의 38.7%인 235,203㎢이며, 임야가 43.6%인 265,184㎢이고, 기타가 17.7%인 107,352㎢로서 총 607,739㎢의 면적을 (2011년말 기준) 가지고 있는 군이다.

3. 지역특성

미곡위주의 전통적 농촌으로 미곡을 연간 52만여석 이상과 맥류 4만여석을 생산

하며 또한 전국 최대의 야산이 개발되어 과수원예와 특수작물(수박, 무, 땅콩 등) 재배지로 발전하고 있고 이후에도 UR 대체작물 개발 잠재력이 큰 고장임.

○ 관광자원으로는 2000. 11. 29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과 국민관광휴양지인 선운산 도립공원내의 선운사 사찰을 비롯한 풍부한 문화재의 보존군임. 여름 한철의 휴식처로서의 구시포 및 동호해수욕장이 서해의 휴양 명승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13. 5. 28 고창군 전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세계가 고창을 자연환경도시로 인정받게 되어 관광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 되었음.

○ 지역개발 면으로 서해연안의 간척, 양식어업의 적지이며, 대단위 야산개발로 당도 높은 수박, 양질의 땅콩, 무 등의 생산이 전국제일의 주산단지임을 자부하는 고장임.

○ 조선조 단종원년(1453년)에 축성된 고창읍성(사적 145호)은 원형이 보존된 전국유일의 자연석 성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관광객의 계속 증가는 물론 학생들의 역사탐방 교육장과 안보교육의 장이기도 함.

○ 한편, 인물의 고장으로 金性洙(전 부통령), 白寬洙(독립운동가), 申在孝(판소리 창시자), 陳懿鍾(전 국무총리), 金相浹(전 국무총리), 金素姬(국악인:인간문화재) 등의 인물을 배출한 고장이기도 함.

4. 고창의 위치

본 군은 전라북도의 서남단의 위치한 군으로서 위도상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극동(極東) : 신림면 가평리 동경 126°46′

○ 극서(極西) : 상하면 자룡리 동경 126°25′

○ 극남(極南) : 대산면 지석리 북위 35°18′

○ 극북(極北) : 부안면 봉암리 죽도 북위 35°34′에 달하며 그 연장이 동서 31.0㎞이고 남북이 31.5㎞인데다 군 전체면적은 606.873㎢(도 전체면적의 7.5%)이며, 동북은 본 군과 인접된 정읍시 소성면과 입암면, 부안군 줄포면이 위치하였고 동남은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삼계면과 영광군 영광읍, 홍농읍, 법성면, 대마면과 인접하고 있다.

서북부 일대는 73.7㎞에 달하는 서해안에 연장을 이루고 있다.

본 군에서는 주요지역간의 거리를 보면 전주가 고속도로편으로 69㎞인데 정읍시(28㎞)를 거쳐서 가야 되며, 장성 20km, 영광 19㎞이고 광주까지는 35㎞의 거리를 두고 있다.

본 군 관내 구시포해수욕장 28㎞와 동호해수욕장은 25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부안군이 40㎞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안군에 위치한 변산국립공원 및 정읍시의 내장산 국립공원과 본 군의 관광지인 선운산 도립공원, 고창읍성, 석정온천, 구시포해수욕장, 동호해수욕장 등과 연계를 이루고 있는 위치에 있다.

5. 행정구역

구분 / 연도및 읍·면별	면적 (km²)	구성비 (%)	읍	면	리 동		반	자연부락
					법정	행정		
2007	607.674	100	1	13	189	557	1,345	911
2008	607.687	100	1	13	189	557	1,345	911
2009	607,714	100	1	13	189	557	1,345	911
2010	607.736	100	1	13	189	563	1,380	911
2011	607,739	100	1	13	189	563	1,380	911
2012	607,746	100	1	13	189	563	1,380	911
2013	607,872	100	1	13	189	563	1,380	911
고창읍	42,499	7.0	1	-	18	90	257	81
고수면	45,578	7.5	-	1	14	36	79	59
아산면	74,793	12.3	-	1	16	33	85	67
무장면	43,786	7.2	-	1	16	39	95	79
공음면	50,060	8.2	-	1	12	45	88	82
상하면	32,982	5.4	-	1	9	36	90	58
해리면	39,527	6.5	-	1	12	46	102	76
성송면	36,257	6.0	-	1	11	34	66	56
대산면	43,839	7.2	-	1	15	44	115	69
심원면	40,109	6.6	-	1	10	26	71	43
흥덕면	33,383	5.5	-	1	16	41	95	72
성내면	30,838	5.1	-	1	13	30	81	64
신림면	40,912	6.7	-	1	13	26	70	50
부안면	53,307	8.8	-	1	14	37	86	55

6. 읍·면별 세대 및 인구

구분 / 연도및 읍·면별	세대수	인구수			
		계	남	여	세대당 인구
2008	26,621	60,328	29,832	30.496	2.3
2009	27,144	60,102	29,750	30,352	2.2
2010	27,814	60,861	30,030	30,831	2.2
2011	27,775	60,065	29,689	30,376	2.2
2012	28,166	60,440	29,951	30,489	2.1
2013	28,412	60,522	29,955	30,567	2.1
고창읍	8,697	22,164	10,919	11,245	
고수면	1,271	2,494	1,262	1,232	
아산면	1,601	3,054	1,573	1,481	
무장면	1,700	3,352	1,700	1,652	
공음면	1,474	2,922	1,444	1,478	
상하면	1,447	2,864	1,402	1,462	
해리면	1,650	3,171	1,531	1,640	
성송면	1,110	2,039	1,028	1,011	
대산면	2,052	4,003	1,958	2,045	
심원면	1,379	2,889	1,454	1,435	
흥덕면	1,849	3,625	1,775	1,850	
성내면	1,185	2,242	1,125	1,117	
신림면	1,274	2,450	1,197	1,253	
부안면	1,723	3,253	1,587	1,666	

7.재정규모

2014년도 고창군의 예산규모는 총 408,734,64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95,925,649천원으로 96.86%를 차지하며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9,058,074천원으로 2.22%, 기타특별회계는 3,750,926천원으로 0.92%로 편성되었었다.

세입에 있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총 399,676,575천원으로 지방세 13,823,632천원, 세외수입 19,322,035천원, 지방교부세 177,937,462천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000,000천원, 보조금 163,362,822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3,230,62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9,058,074천원으로 상수도사업수익 5,020,286천원, 자본적수입 3,607,200천원, 이월금 430,588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세출에 있어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인건비 49,279,344천원, 물건비 27,978,882천원, 경상이전 137,477,173천원, 자본지출 159,517,335천원, 융자 및 출자 143,613천원, 보전재원 10,000,000천원, 내부거래 4,629,528천원, 예비비 및기타 10,650,700천원이고,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비용 7,308,074천원, 자본적지출 1,650,000천원, 예비비 100,000천원으로 편성되었다. 예산절감에 따른 절감분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출요구가 증가되었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단위:천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합 계**		**399,676,575**	**395,925,649**	**3,750,926**
	지 방 세		13,823,632	13,823,632	-
	세외 수입		19,322,035	18,107,059	1,214,976
		경상적세외수입	6,376,773	6,376,214	559
		임시적세외수입	12,945,262	11,730,845	1,214,417
	지방교부세		177,937,462	177,937,462	-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000,000	2,000,000	-
	보 조 금		163,362,822	161,794,883	1,567,939
		국고보조금등	137,535,160	136,033,096	1,502,064
		시·도비보조금등	25,827,662	25,761,787	65,87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230,624	22,262,613	968,011
		보전수입등	21,639,800	21,175,217	464,583
		내부거래	1,590,824	1,087,396	503,428
세출	**합 계**		**399,676,575**	**395,925,649**	**3,750,926**
	경상예산		214,735,399	213,598,165	1,137,234
		인건비	49,279,344	49,149,719	129,625
		물건비	27,978,882	27,803,994	174,888
		경상이전	137,477,173	136,644,452	832,721
	자본지출		159,517,335	158,291,252	1,226,083
	융자 및 출자		143,613	23,400	120,213
	보전재원		10,000,000	10,000,000	-
	내부거래		4,629,528	3,542,132	1,087,396
		기타회계전출금	1,590,824	503,428	1,087,396
		기금전출금	3,038,704	3,038,704	-
	예비비 및 기타		10,650,700	10,470,700	180,000
		예비비	8,031,646	8,031,646	-
		반환금기타	2,619,054	2,439,054	180,000

□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세입	**합 계**		**9,058,074**	
	상수도 사업수익		5,020,286	
		영업수익	3,817,202	
		영업외 수익	1,203,084	
	자본적 수입		3,607,200	
		자본잉여금 수입	3,607,200	
	이월금		430,588	
		이월금	430,588	
세출	**합 계**		**9,058,074**	
	상수도 사업비용		7,308,074	
		영업비용	7,308,074	
	자본적지출		1,650,000	
		유형자산 취득	1,650,000	
	예비비		100,000	
		예비비	100,000	

8. 역대 고창군수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1	엄 주 완	1945. 03 ~ 1947. 04 (25개월)
2	허 홍 석	1947. 04 ~ 1948. 03 (11개월)
3	안 보 길	1948. 03 ~ 1948. 12 (09개월)
4	오 보 균	1948. 12 ~ 1950. 02 (14개월)
5	유 환 조	1950. 02 ~ 1950. 05 (03개월)
6	엄 병 선	1950. 05 ~ 1950. 12 (07개월)
7	백 남 기	1950. 12 ~ 1952. 04 (16개월)
8	고 재 열	1952. 04 ~ 1953. 12 (20개월)
9	김 윤 상	1953. 12 ~ 1956. 12 (36개월)
10	김 인 덕	1956. 12 ~ 1959. 01 (25개월)
11	김 영 신	1959. 01 ~ 1959. 08 (07개월)
12	임 재 항	1959. 08 ~ 1960. 01 (05개월)
13	김 관 묵	1960. 01 ~ 1960. 05 (04개월)
14	양 창 현	1960. 05 ~ 1960. 10 (05개월)
15	유 남 기	1960. 11 ~ 1961. 06 (07개월)
16	유 용 규	1961. 07 ~ 1961. 12 (05개월)
17	이 정 상	1961. 12 ~ 1962. 11 (11개월)
18	신 상 우	1962. 11 ~ 1965. 03 (28개월)
19	유 범 수	1965. 03 ~ 1966. 12 (21개월)
20	최 완 상	1967. 01 ~ 1967. 11 (10개월)
21	최 봉 채	1967. 01 ~ 1970. 03 (38개월)
22	이 길 연	1970. 03 ~ 1971. 08 (17개월)

대수	성 명	재 임 기 간
23	이 석 재	1971. 08 ~ 1973. 06 (22개월)
24	권 승 주	1973. 06 ~ 1974. 12 (18개월)
25	김 준 수	1974. 12 ~ 1975. 06 (06개월)
26	조 상 훈	1975. 06 ~ 1977. 02 (20개월)
27	김 년 철	1977. 02 ~ 1979. 05 (27개월)
28	유 완 순	1979. 05 ~ 1980. 07 (14개월)
29	송 재 구	1980. 08 ~ 1981. 07 (11개월)
30	유 수 택	1981. 07 ~ 1982. 11 (16개월)
31	유 만 영	1982. 11 ~ 1983. 04 (05개월)
32	고 광 순	1983. 04 ~ 1985. 03 (23개월)
33	이 윤 갑	1985. 03 ~ 1988. 02 (35개월)
34	주 우 철	1988. 02 ~ 1988. 12 (10개월)
35	김 완 주	1989. 01 ~ 1991. 01 (24개월)
36	박 병 식	1991. 01 ~ 1991. 12 (11개월)
37	최 충 일	1991. 12 ~ 1992. 07 (07개월)
38	장 현 돈	1992. 07 ~ 1994. 01 (18개월)
39	양 규 장	1994. 01 ~ 1994. 12 (12개월)
40	원 종 태	1995. 01 ~ 1995.06 (06개월)
41	이 호 종	1995. 07 ~ 1998. 06 (36개월)
42	이 호 종	1998. 07 ~ 2002. 06 (48개월)
43	이 강 수	2002. 07 ~ 2006. 06 (48개월)
44	이 강 수	2006. 07 ~ 2010. 06(48개월)
45	이 강 수	2010. 07 ~ 2014. 06(48개월)

9. 역대 의장

연번	성 명	선거구	취임당시 연 령	취임당시 의정경력	기 간	비 고
1	반기진	성송면	56	초선	제1대 전반기	
2	김동훈	고창읍	56	초선	제1대 후반기	
3	이돈우	무장면	61	재선	제2대 전반기	
4	최석기	공음면	50	재선	제2대 후반기	
5	진남표	고창읍	51	3선	제3대 전반기	
6	진남표	〃	53	3선	제3대 후반기	
7	성호익	아산면	47	4선	제4대 전반기	
8	최석기	공음면	58	4선	제4대 후반기	
9	장세영	부안면	58	재선	제5대 전반기	
10	박현규	해리면	50	재선	제5대 후반기	
11	이만우	라 선거구	55	재선	제6대 전반기	
12	박래환	가 선거구	53	재선	제6대 후반기	

10. 역대 부의장

연번	성 명	선거구	취임당시 연 령	취임당시 의정경력	기 간	비 고
1	김동훈	고창읍	54	초선	제1대 전반기	
2	류길규	신림면	64	초선	제1대 후반기	
3	김기채	대산면	49	재선	제2대 전반기	
4	고병윤	성내면	57	재선	제2대 후반기	
5	성호익	아산면	43	3선	제3대 전반기	
6	이만우	해리면	46	재선	제3대 후반기	
7	김상필	고창읍	60	재선	제4대 전반기	
8	최인규	흥덕면	52	재선	제4대 후반기	
9	이재정	성내면	50	재선	제5대 전반기	
10	김갑성	대산면	66	초선	제5대 후반기	
11	박래환	가 선거구	51	재선	제6대 전반기	
12	조병익	가 선거구	59	초선	제6대 후반기	

11. 역대 상임위원장

□ 운영위원장

연번	성 명	선거구	취임당시 연 령	취임당시 의정경력	상임위원회명	재임기간	비 고
1	고병윤	성내면	51	초선	운영위원회	1대 전반기	
2	김기채	대산면	44	초선		1대 후반기	
3	성호익	아산면	40	재선		2대 전반기	
4	원병희	흥덕면	61	초선		2대 후반기	
5	유길승	고수면	43	재선		3대 전반기	
6	최인규	흥덕면	47	초선		3대 후반기	
7	심재규	성송면	58	재선		4대 전반기	
8	김남규	무장면	53	초선		4대 후반기	
9	박래환	고창읍	47	초선		5대 전반기	
10	이재정	고창읍	51	재선		5대 후반기	
11	오덕상	나 선거구	54	초선	〃	6대 전반기	
12	오덕상	나 선거구	56	초선	〃	6대 후반기	

□ 자치행정위원장

연번	성 명	선거구	취임당시 연 령	취임당시 의정경력	상임위원회명	재임기간	비고
1	김양진	상하면	43	초선	내무위원회	1대 전반기	
2	최석기	공음면	46	초선	〃	1대 후반기	
3	최석기		48	재선	〃	2대 전반기	
4	이종위	성송면	42	초선	〃	2대 후반기	
5	이만우	해리면	44	재선	자치행정위원회	3대 전반기	
6	이맹근	성내면	62	초선	〃	3대 후반기	
7	최인규	흥덕면	49	재선	〃	4대 전반기	
8	전춘식	상하면	53	재선	〃	4대 후반기	
9	박현규	해리면	49	재선	〃	5대 전반기	
10	박래환	해리면	49	초선	〃	5대 후반기	
11	김종호	가 선거구	55	재선	〃	6대 전반기 (2010.7.1.~2011.3.12.)	
	윤영식	나 선거구	53	초선	〃	6대 전반기 (2011.3.28.~2012.6.30)	
12	이상호	다 선거구	52	초선	〃	6대 후반기	

□ 산업건설위원장

연번	성 명	선거구	취임당시 연 령	취임당시 의정경력	상임위원회명	재임기간	비고
1	전종열	심원면	45	초선	산업건설위원회	1대 전반기	
2	이돈우	무장면	59	초선	〃	1대 후반기	
3	고병윤	성내면	55	재선	〃	2대 전반기	
4	유종윤	신림면	56	초선	〃	2대 후반기	
5	전재준	부안면	66	재선	〃	3대 전반기	
6	유길승	고수면	45	재선	〃	3대 후반기	
7	전춘식	상하면	50	재선	〃	4대 전반기	
8	박병옥	심원면	59	초선	〃	4대 후반기	
9	김갑성	대산면	65	초선	〃	5대 전반기	
10	이옥순	비례대표	42	초선	〃	5대 후반기	
11	임정호	다 선거구	51	초선	〃	6대 전반기	
12	조금자	비례대표	68	초선	〃	6대 후반기	

12. 역대 의회사무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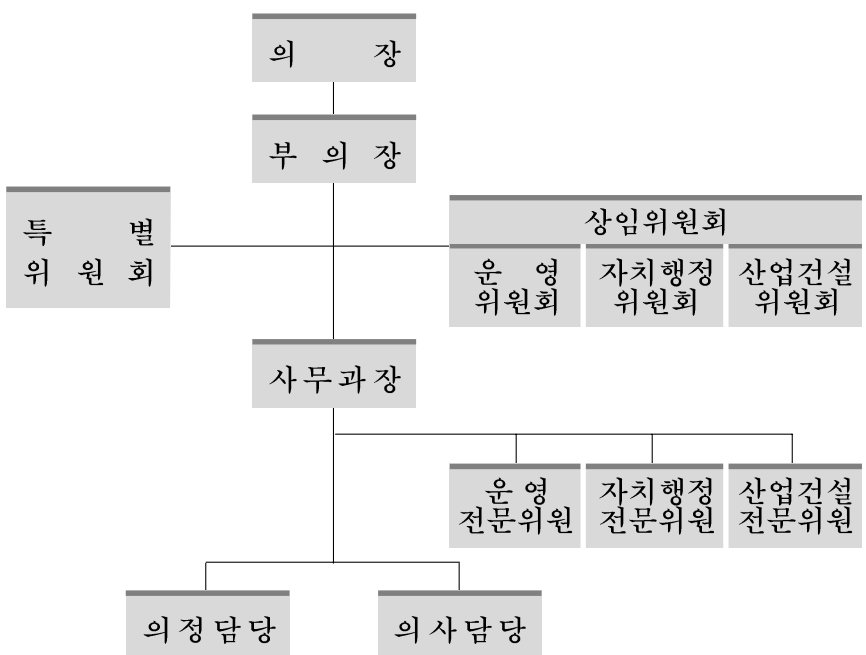
연번	성 명	취임당시 직 급	취임당시 연 령	재 임 기 간	비 고
1	홍종섭	행정5급	53	1991. 04. 15 – 1993. 07. 28	
2	표희종	행정5급	57	1993. 07. 29 – 1994. 04. 14	
3	양규태	행정5급	54	1994. 04. 15 – 1994. 12. 23	
4	정창진	행정5급	59	1994. 12. 23 – 1996. 12. 31	
5	안재식	행정5급	54	1997. 01. 03 – 1998. 11. 04	
6	김준희	행정5급	47	1998. 11. 05 – 2001. 02. 11	
7	염규용	행정5급	53	2001. 02. 12 – 2001. 04. 02	
8	김용관	행정5급	52	2001. 04. 03 – 2003. 01. 10	
9	박채주	행정5급	55	2003. 01. 11 – 2004. 07. 30	
10	김영관	행정5급	53	2004. 07. 31 – 2008. 01. 30	
11	송하현	행정5급	53	2008. 01. 31 – 2010. 01. 30	
12	김용운	행정5급	53	2010. 01. 31 – 2011. 07. 28	
13	봉필광	행정5급	55	2011. 07. 29 – 2014. 07. 16	

제2절 고창군의회 기구 현황

1. 의회 기구

의결기관인 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의장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운영, 자치행정, 산업건설)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하며 전문위원은 각 위원회 운영을 보좌한다. 고창군의회 기구는 다음과 같다. 고창군의회 기구는 다음과 같다.

의회기구표



2. 의회 현황

□ 제1대 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 의원의 정수는 총 15명이고, 고창읍 2명 13개면에서 각 1명씩이다. 초대 전반기 의장은 성송면 선거구의 반기진 의원이며, 부의장은 고창읍 선거구의 김동훈 의원으로 그 임기는 1991. 4. 15~1993. 4. 14일로 만료되었으며, 후반기 의장은 고창읍 선거구의 김동훈 의원이고 부의장은 신림면 선거구의 류길규 의원으로 임기는 1993. 4. 15~1995. 6. 30일까지이다. 김동훈 의장이 일신상의 사정에 의하여 1995년 3월 29일자로 의원직을 사퇴하여 부의장 류길규 의원이 1995. 3. 30~6. 30일까지 의장 직무대리를 하였다. 고창군의회 제1대 의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력	비 고
의 장	김동훈	37. 11. 02	고창읍 읍내리 268-5	고 졸	
부의장	류길규	29. 12. 18	신림면 무림리 139	대학원졸업	
의 원	진남표	47. 02. 10	고창읍 교촌리 삼우연립 204호	대학원수료	
〃	이종운	46. 05. 10	고수면 상평리 636	고 졸	
〃	최형식	52. 11. 08	아산면 중월리 335	고 졸	93. 7. 15 퇴직
〃	성호익	55. 04. 03	아산면 목동리 272	대학원수료	93.11.19 의원당선
〃	이돈우	34. 01. 17	무장면 강남리 198	국 졸	
〃	최석기	47. 03. 10	공음면 칠암리 558	고 졸	
〃	김양진	48. 11. 04	상하면 검산리 433	고 졸	94. 5. 7 사망
〃	오균호	45. 12. 16	해리면 하련리 208	대학원수료	
〃	반기진	35. 01. 20	성송면 향산리 79	고 졸	
〃	김기채	49. 02. 17	대산면 매산리 1079	대 퇴	
〃	전종열	46. 09. 26	심원면 월산리 629	고 졸	
〃	신세재	43. 06. 13	흥덕면 사천리 53	대 졸	93. 1.26 퇴직
〃	김백수	40. 03. 30	흥덕면 오호리 151	대 졸	93. 3.26 의원당선
〃	고병윤	40. 05. 12	성내면 옥제리 543	고 졸	
〃	전재준	32. 08. 05	부안면 중흥리 146	고 졸	92. 2.29 퇴직
〃	김준형	48. 10. 04	부안면 중흥리 128	대 졸	92. 8.26 의원당선

□ 제2대 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 의원의 정수는 총 15명이고, 고창읍 2명 13개 면에서 각 1명씩이다. 제2대 전반기 의장은 무장면 선거구의 이돈우 의원이며 부의장은 대산면 선거구의 김기채 의원으로 그 임기는 1995. 7. 1~1996. 12. 31일로 만료되었으며, 후반기 의장은 공음면 선거구의 최석기 의원이고 부의장은 성내면 선거구의 고병윤 의원으로 임기는 1997. 1. 1~1998. 6. 30일까지 의장단으로 고창군의 지방자치 발전에 노력하였다.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력	비 고
의 장	최석기	47. 3.10	공음면 칠암리558	고 졸	
부의장	고병윤	40. 5.12	성내면 옥제리543	고 졸	
의 원	진남표	47. 2.10	고창읍 교촌리 삼우연립 204호	대학원수료	
〃	김상필	42. 3.16	고창읍 읍내리590-1	국 졸	
〃	유길승	55. 3.25	고수면 황산리 문화마을 1-4	대 졸	
〃	성호익	55. 4. 3	고창읍 읍내리 건양A 나동101	대학원수료	
〃	이돈우	34. 1. 7	무장면 강남리198	국 졸	전반기 의장
〃	노병열	43. 1.20	상하면 장호리505	국 졸	
〃	이만우	54.12.29	해리면 하련리156	방통대 재	
〃	이종위	55. 3.27	성송면 계당리79	중 퇴	
〃	김기채	49. 2.17	대산면 매산리1079	대 퇴	전반기 부의장
〃	전종열	46. 9.26	심원면 월산리629	고 졸	
〃	원병희	36. 7.25	흥덕면 신송리215	대 졸	
〃	유종윤	41. 2.10	신림면 무림리103	중 졸	
〃	김준형	48.10. 4	부안면 중흥리128	대 졸	

□ 제3대 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 의원의 정수는 총14명이며 14개 읍·면에서 각 1명씩이다. 제3대 전반기 의장은 고창읍 선거구의 진남표 의원이며 부의장은 아산면 선거구의 성호익 의원으로 그 임기는 1998. 7. 1~2000. 6. 30일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후반기 의장은 고창읍 선거구의 진남표 의원이고 부의장은 해리면 선거구의 이만우 의원으로 임기는 2000. 7. 1~2002. 6. 30일까지 의장단으로 고창군의 지방자치 발전에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3대 고창군의회 의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3대 고창군의회 의원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력	비 고
의 장	진남표	47. 2.10	고창읍 교촌리 삼우연립 204호	대학원수료	전반기 의장
부의장	이만우	54.12.29	해리면 하련리 156	대 퇴	
의 원	유길승	55. 3.25	고수면 황산리 문화마을 1-4	대 졸	
〃	성호익	55. 4. 3	고창읍 읍내리 건양A 나동101	대학원수료	전반기부의장
〃	정기표	47. 9. 8	무장면 덕림리 332	대학원수료	
〃	최석기	47. 3.10	공음면 칠암리 558-6	대학원수료	
〃	전춘식	52.11. 2	상하면 하장리 985-7	대학원수료	
〃	심재규	44.11.16	성송면 사내리 산27	중 퇴	
〃	김기채	49. 2.17	대산면 매산리 1079	대학원수료	
〃	한동수	37. 8.13	심원면 월산리 747	고 졸	2002.4.17 사망
〃	최인규	53. 5.23	흥덕면 흥덕리 238-7	대학원수료	
〃	이맹근	38.12.12	성내면 양계리 210	고 졸	
〃	류길규	29.12.18	신림면 무림리 139	대학원졸업	2002.1.6 사망
〃	전재준	32. 8. 5	부안면 중흥리 146	고 퇴	2000.6.6 사망
〃	장세영	49. 8.29	부안면 검산리 71	고 졸	2000.10.26 당선

□ 제4대 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 의원의 정수는 총14명이며 14개 읍·면에서 각 1명씩이다. 제4대 전반기 의장은 아산면 선거구의 성호익 의원이며, 부의장은 고창읍 선거구의 김상필 의원으로 그 임기는 2002. 7. 1~2004. 6. 30일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후반기 의장은 공음면 선거구의 최석기 의원이고 부의장은 흥덕면 선거구의 최인규 의원으로 임기는 2004. 7. 1~2006. 6. 30일까지 의장단으로 고창군의 지방자치 발전에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4대 고창군의회 의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4대 고창군의회 의원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력	비 고
의 장	최석기	47.03.10	공음면 칠암리 558-6	고 졸	
부의장	최인규	53.05.23	흥덕면 흥덕리 238-7	고 졸	
의 원	김상필	42.03.16	고창읍 읍내리 590	독 학	전반기 부의장 2005.5.26사망
〃	정종구	60.03.25	고수면 외촌리 119	고 졸	
〃	성호익	55.04.03	아산면 목동리 272	대 졸	전반기 의장
〃	김남규	52.05.07	무장면 무장리 59-2	초 졸	
〃	전춘식	52.11.02	상하면 하장리 985-7	대 졸	
〃	박현규	58.08.13	해리면 동호리 532	고 졸	
〃	심재규	44.11.16	성송면 사내리 산27	초 졸	
〃	정원환	57.01.23	대산면 성남리 51	고 졸	
〃	박병옥	46.05.16	심원면 월산리 744-2	고 졸	
〃	이재정	57.12.03	성내면 양계리 205-7	독 학	
〃	이귀섭	56.01.26	신림면 도림리 416	중 졸	
〃	박영구	52.03.16	부안면 중흥리 176-2	고 졸	

□ 제5대 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 의원의 정수는 총10명이며 가선거구(고창 · 아산 · 신림)에서 3명, 나선거구(심원 · 흥덕 · 성내 · 부안)에서 2명, 다선거구(고수 · 공음 · 성송 · 대산)에서 2명, 라선거구(무장 · 상하 · 해리)에서 2명, 그리고 비례대표 1명이다. 제5대 전반기 의장은 나선거구의 장세영 의원이며, 부의장은 나선거구의 이재정 의원으로 그 임기는 2006. 7. 1~2008. 6. 30일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후반기 의장은 라선거구의 박현규 의원이고 부의장은 다 선거구의 김갑성 의원으로 임기는 2008. 7. 1~2010. 6. 30일까지 의장단으로 고창군의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평가받고 있다. 제5대 고창군의회 의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5대 고창군의회 의원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력	비 고
의 장	박현규	1958.08.13	해리면 동호리 532	고 졸	
부의장	김갑성	1942.10.15	대산면 매산리 408	고 졸	
의 원	이재정	1957.12.03	성내면 양계리 205-7	독 학	전반기 부의장
〃	박래환	1959.04.22	고창읍 읍내리 617	대 졸	
〃	이옥순	1966.02.16	고창읍 월곡리 주공Ⓐ 102-804	고 졸	
〃	김종호	1955.05.05	고창읍 월곡리 제일Ⓐ 104-1308	고 졸	
〃	조민규	1966.12.27	고창읍 읍내리 218	대 졸	
〃	장세영	1949.08.29	부안면 중흥리 166-9	고 졸	전반기 의장
〃	김범진	1962.07.01	대산면 성남리 20	대 졸	
〃	이만우	1954.12.29	해리면 하련리 202	대 퇴	

□ 제6대 고창군의회

고창군의회 의원의 정수는 총10명이며 가선거구(고창 · 아산 · 신림)에서 3명, 나선거구(심원 · 흥덕 · 성내 · 부안)에서 2명, 다선거구(고수 · 공음 · 성송 · 대산)에서 2명, 라선거구(무장 · 상하 · 해리)에서 2명, 그리고 비례대표 1명이다. 제6대 전반기 의장은 라선거구의 이만우 의원이며, 부의장은 가선거구의 박래환 의원으로 그 임기는 2010. 7. 1~2012. 7. 7일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후반기 의장은 가선거구의 박래환 의원이고 부의장은 가 선거구의 조병익 의원으로 임기는 2012. 7. 7~2014. 6. 30일까지 이다.

의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6대 고창군의회 의원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력	비 고
의 장	박 래 환	1959.04.22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85 나동 305호(삼영남흥맨션)	대 졸	전반기 부의장
부의장	조 병 익	1952.07.14	고창읍 월산길 5	고 졸	2011.4.27 ~2014.6.30
의 원	오 덕 상	1955.10.25	흥덕면 선운대로 3781	대 졸	
〃	이 상 호	1960.04.13	고수면 대성길 21	대 졸	
〃	조 금 자	1943.11.07	고창읍 성산4길 40-8	초 졸	
〃	조 규 철	1966.09.12	아산면 갑평1길 15	대 퇴	
〃	윤 영 식	1958.01.03	심원면 심원로 270-12	대 졸	
〃	임 정 호	1958.11.25	공음면 수원길 59-6	고 졸	
〃	박 현 규	1958.08.13	해리면 구동호2길 34	대 퇴	2010.7.1. ~2014.6.26
〃	이 만 우	1954.12.29	심원면 월산리 744-2	대 퇴	전반기 의장 2010.7.1.~2014.3.31
〃	김 종 호	1955.05.05	고창읍 월곡1길51 104-1308(제일A)	고 졸	2010.7.1. ~2011.3.12

※ 김종호 의원사망(2011.3.12.)에 따른 보궐선거(2011. 4. 27.)실시로 조병익 의원 당선

3. 의회사무과 현황

고창군의회의 사무과는 전문위원실과 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8명으로 사무과장 1명, 전문위원 3명, 담당주사 2명, 정규직원 8명과 청원경찰 1명, 사무보조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의회사무과 직원현황

(2014. 6. 30. 현재)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봉 필 광	
〃	자치행정전문위원	정 만 수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 동 욱	
〃	운영전문위원	홍 정 묵	
〃	의정담당	윤 명 수	
〃	직 원	권 인 태	
〃	〃	정 광 진	
〃	〃	배 효 원	
〃	〃	고 재 철	
〃	〃	박 계 삼	
〃	〃	김 세 창	
〃	〃	김 경 민	사무보조
〃	〃	박 상 미	〃
〃	의사담당	이 종 선	
〃	직 원	김 진 성	
〃	〃	이 명 훈	
〃	〃	김 남 종	청원경찰
〃	〃	송 한 미	사무보조



제3절 고창군 선거 현황

1. 전국 선거

가. 국회의원 선거

1) 제헌의원 선거

1948년 2월 UN소총회에서는 "가능지역내의 선거 실시에 관한 권한"을 UN한국위원단에 부여하는 결의를 함에 따라 한국위원단은 바로 가능지역인 남한 내에서의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미군정당국이 선거준비와 집행을 맡았다.

군정당국은 먼저 1947년 9월에 공포된 남조선과도 정부 법률 제5호 '입법의원 선거법(立法議員選擧法)'을 골자로 해서 잠정적인 국회의원선거법(군정법령 제175호)를 제정하였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권은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반민족행위자 등을 제외하고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에 구별 없이 국민으로 만 21세에 달한자에게 부여 한다' 라고 되어 있다.

② 피선거권은 '각 선거구마다 1인의 국회의원을 선거' 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고, 선거구의 확정은 부(府), 군(郡) 및 서울시의 구(區) 단위로 하여 인구 15만 미만은 1개구, 인구 15만 이상에서 25만 미만은 2개구, 인구 25만 이상에서 35만 미만은 3개구, 인구 35만 이상에서 45만 미만의 부(府)는 4개구로 하되 동법(同法) 부표(附表) 제1호에 의하여 총 200개의 선거구를 확정하되 법정선거구획정주의(法定選擧區劃定主義)를 따랐다.

③ 피선거구는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국민으로서 만25세에 달한 자면 누구에게나 부여하였다.

④ 비밀투표를 보장하였으며,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으로 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채택하였다.

⑤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1948년 5월 10일에 총 200개의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치안관계로 인하여 북제주 갑구와 을구가 선거를 실시할 수 없었다. 좌익계와 남북협상파(南北協商派)가 불참하고 많은 정당, 사회단체들이 선거 반대를 주장하였지만 무려 49개의 정당들이 참여함으로써 난립하게 되었다. 선거인의 명부에 등록된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참여하여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는데, 투표결과를 보면 총 의석의 27.5%인 55석을 차지한 대한독촉국민회(大韓獨促國民會)가 제1세력으로 부각되었으며,

선거전에 막강한 위세를 자랑하던 한민당(韓民黨)은 당 중진을 포함한 입후보자들이 대거 탈락하고 91명의 후보 중에서 29명만이 당선되어 총 의석의 14.5%에 머물고 말았다. 그 외에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 등의 군소정당(群小政黨)이 30석 이상의 당선자를 내었고 무소속이 85석을 차지하여 총 의석의 42.5%를 얻었다. 이는 원내에서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하였다.

고창군의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국회의원 2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선거구는 갑구와 을구로 나누었다. 갑구에는 고창을 비롯하여 고수면, 성송면, 무장면, 대산면, 공음면, 상하면이 그리고 을구에는 아산면, 해리면, 심원면, 부안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이 포함되었다.

갑구에는 무소속의 김영동후보가 총 유효투표의 27.3%를 얻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또한 을구에서는 한민당(韓民黨) 소속의 백관수후보가 총 유효투표의 67.5%를 차지함으로써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무소속의 김영동은 조선전업사원의 경력을 가진 노동자 출신으로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급진적인 노선을 추종한 세력들이 지하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가 출생한 무장면은 그 당시에 고창군 인민위원장이 그곳에서 나올 만큼 진보성향이 강했던 지역이었다.

을구에서 당선된 백관수는 일본 명치(明治) 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사장을 역임한 당시의 인물로서 그 명성이 자자하였다. 해방이 되자 그는 1946년에 비상국민회의에 참여하여 민주입법의원의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백관수는 초대 법사위원장과 헌법기초의원으로서 헌법을 비롯한 건국 초기의 각종 법률 제정에 참여하여 건국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1950년 6 · 25가 발발하자 그는 그의 자택에서 공산군에 의해 납북 당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 62세였다.

제헌의회 선거 현황

□ 고창군 갑구

후보자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체명	특표수	비고
임방욱	남	43	고창읍 읍내리	농업	대졸 · 농업	한국민주당	6,963	
이봉춘	〃	59	〃	〃	대졸 · 농업	대한독촉농민총맹	2,091	
오의균	〃	66	〃	〃	한수10년.군수2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6,188	
김기채	〃	41	〃	회사원	대졸.산업사4년	무 소 속	6,499	
김영동	〃	42	무장면 무장리	실 업	중졸.조선전업사업	〃	8,317	당선

□ 고창군 을구

후보자	성별	연령	주소	직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체명	특표수	비고
백관수	남	60	성내면 덕산리	입법의원	일본명치대졸 동아일보사장	한국민주당	19,787	당선
박홍근	〃	47	흥덕면 흥덕리	농업	보전졸·면장5년	무 소 속	4,448	
신포재	〃	44	〃	〃	대중퇴, 국민회장	대한독립조선국민회	5,062	

2)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제헌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으로 끝나면서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를 위해 국회는 1950년 4월에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을 새로이 제정하였는데, 그 까닭은 제헌의원 선거에 적용되었던 선거법이 시한적(時限的)이었던 것으로 미군정(美軍政)과 함께 소멸되었기 때문이었다.

새 선거법은 미군정(美軍政)하에서 제정되었던 제헌의회의원 선거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 단지 달라진 사항이라면 선거구를 200개에서 210개로 늘린 것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조항을 일부 변경시킨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선거권 중에서 달라진 내용을 보면 이 때에는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되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해제하였으며 현역군인, 법관, 검찰관, 심계원(審計員), 감찰원, 경찰관 등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였다.

피선거권 제한 규정 외에는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의 원칙, 소선거구와 다수대표제, 그리고 행정구역 및 인구에 의한 선거구 법정획정주의(法定劃定主義) 등 선거제도상의 중요사항은 변경됨이 없이 그대로 존속되었다.

제2대 총선거는 남북협상파를 포함하여 제헌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그 선거결과 대통령지지자들의 당선이 크게 줄어들었고 무소속(無所屬)이 전체의석의 60%인 126석을 차지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의 지지기반을 위태롭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승만으로 하여금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도록 만들었다.

1952년 1월 정부는 대통령직선제개헌안(大統領直選制改憲案)을 내놓았으나 국회는 이를 찬성 19표, 반대 143표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부결시켰다. 국회를 통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이승만은 직접 경찰력을 동원하고 원외자유당(院外自由黨)을 앞세워 개헌안부결반대(否決反對)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헌법에도 없는 국회의원 소환운동(召還運動)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에 야당은 오히려 개헌정족수(改憲定足數)를 한 사람 넘는 123명의 연서(連署)로 의원내각제안(議員內閣制案)을 제출하여 그에 맞섬으로써 두 세력간의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승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직선제개헌안을 제출하여 야당의 의원내각제에 맞서는 한편, 직선제개헌을 위한 전격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지방의회의원선거(地方議會議員選擧)와 계엄령(戒嚴令)이었다.

서둘러서 시행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원외자유당의 사람들이 당선됨으로써 국회에 대항할 기반을 구축하고, 공비를 소탕한다는 구실로 선포한 계엄령은 직선제개헌안을 통과시킬 의도였다. 계엄령 하에서 의원내각제개헌을 주장한 의원들을 검거하는 등 일대 혼란을 일으킨 후에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연금한 상태에서 모든 법 절차가 무시된 가운데 기립표결(起立票決)로서 대통령직선제(大統領直選制)와 양원제(兩院制)를 골자로 하는 소위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을 찬성 163표, 기권3표로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이른바 부산정치파동(釜山政治波動)이다.

고창군의 제2대 국회의원선거는 다음과 같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고창군 갑구

후보자	성별	연령	주 소	직 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 체 명	득표수	비고
임방욱	남	43	무장면 무장리	국회 의원	중 졸 1대국회의원	국민당	2,373	
김수학	〃	54	고창읍 읍내리	회사 중역	경도제대졸 상공부차관	무소속	10,999	당선
정태환	〃	49	성송면 하고리	농업	한문수학 고창중학이사	〃	7,532	
엄주승	〃	56	고창읍 읍내리	무직	중졸·공무원	〃	895	
김영수	〃	30	고수면 와촌리	상업	명치대학상과졸 회 사 원	〃	사퇴	
강 무	〃	53	대산면 지석리	실업	일본동양대학졸 면 장 만주이민개척단장	〃	3,125	
오의균	〃	67	고창읍 읍내리	농업	한문수학·군수	국민당	1,146	
김기채	〃	42	고창읍 읍내리	회사 사원	대졸·회사원	무소속	4,860	
임창욱	〃	38	고창읍 읍내리	농업	대졸·인쇄업	〃	3,941	
정순묵	〃	40	성송면 계당리	광업	국졸·면서기	〃	사퇴	

□ 고창군 을구

후보자	성별	연령	주 소	직 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 체 명	득표수	비고
박홍근	남	48	흥덕면 사천리	농 업	국졸 · 면 장	무소속	5,678	
서정천	〃	43	심원면 월산리	수리조합 도지부장	수 원 농 고 졸 도농지개량과장	〃	1,326	
원성용	〃	44	흥덕면 신송리	회사원	대졸 · 토건업	〃	2,500	
김봉수	〃	56	고창읍 읍내리	인쇄업	중졸 · 인쇄업	국민당	1,022	
백관수	〃	61	성내면 덕산리	국 회 의 원	일본명치대졸 동아일보사장	민국당	6,098	
신용욱	〃	48	흥덕면 사천리	항 공 산 업	동경항공전문대졸 대한항공사장	무소속	6,360	당선
이용우	〃	59	해리면 성 문	농 업	한문수학	〃	1,150	
박주황	〃	29	흥덕면 흥덕리	농 업	대졸 · 교원	〃	2,700	
홍순희	〃	37	고창읍 읍내리	회사원	대졸 · 공무원	〃	4,821	
강석동	〃	41	해리면 금평리	농 업	전문대졸. 농장농감	〃	2,750	
김우성	〃	25	부안면 수남리	농 업	고대예과3년 재학 전국고학생연맹장	〃	879	

갑 · 을구 다같이 후보들이 난립하였다. 갑구의 경우 10명이, 을구의 경우는 11명이 각기 경합을 벌여 국회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헌국회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그 당시의 열망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의 경력을 보더라도 매우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학벌의 경우 한문수학에서 대졸자까지 다양하였고 직업에 있어서도 농업을 위주로 고급 관리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 범위가 심대함을 알 수 있다.

선거결과 갑구에서는 일본에서 경도대학을 졸업하고 상공부차관을 지낸 무소속의 金秀學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의 37%를 얻음으로써 당선되었다.

한편 을구의 경우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이곳의 선거전은 제헌의원을 지낸 바 있는 전국적 인물의 국민당의 백관수 후보와 재력이 튼튼한 무소속의 신용욱후보로 좁혀졌으며 이들간의 선거전은 치열해졌다. 당시 이승만의 후광을 업은 신용욱은 튼튼한 재력을 바탕으로 백관수 후보진영을 공략하여 262표라는 근소한 표차이로 당선되었다. 국가적 인물인 백관수의 탈락은 그 당시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일로 인하여 고창 사람들은 세간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고도 한다.

3) 제3대 국회의원 선거

1952년의 '발췌개헌(拔萃改憲)'에 의해 국회는 민의원(民議院)과 참의원(參議院)의 양원(兩院)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등과 같은 국내외의 혼란된 정세로 인하여 참의원은 구성되지 못하고 1954년에 제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도 참의원 선거는 실시되지 못하고 민의원 의원선거만이 개성시를 포함한 휴전선 이북지역의 7개 선거구를 제외한 203개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 헌법상으로는 양원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민의원 의원만을 선출하였기 때문에 1950년의 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제도상의 변화는 없었지만 자유당(自由黨)과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이 각각 공천자를 내어 우리의 선거사상 처음으로 입후보자 공천제를 실시하는 소위 정당정치(政黨政治)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특이한 사실은 전체투표의 36.8%를 얻은 자유당(自由黨)이 114석을 차지한 반면 전체 투표의 47.9%를 얻은 무소속이 67석 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소선거구 다수투표제의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즉 선거구의 크기가 모두 다르고 후보자의 득표 차이에는 관계없이 최다득표자를 뽑음으로써 소수지지에 의한 다수당(多數黨)이 출연하기 쉽다는 단점이 드러난 것이다.

고창군의 경우 갑구에서는 7인의 후보가 경쟁을 벌인 반면 을구에서는 3인의 후보가 경쟁을 하게 되었다.

갑구의 경우 자유당의 공천은 받은 진의종후보와 무소속의 정세환후보의 싸움이었다. 젊은 지식인으로서 집권당의 공천을 받은 진의종 후보는 젊은층에 파고들어 지지기반을 확보해 나갔으나 대산, 무장 등 갑구지역에 가장 많은 성씨를 가진

정세환 후보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선거결과 진의종 후보는 10,458표를 얻었고, 정세환 후보는 10,713표를 획득함으로써 정세환 후보가 255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진의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갑구의 선거는 혈연관계가 투표행위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 좋은 사례라고 보여진다.

을구의 경우는 자유당의 현역의원인 신용욱후보와 무소속의 홍순희 후보간의 경쟁이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이라고 소문날만큼 이승만과 깊은 관계를 가진 신용욱은 탄탄한 재력으로 재선되었다. 그는 6,977표 차로 홍순희 후보를 가볍게 누르고 당선되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고창군 갑구

후보자	성별	연령	주 소	직 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 체 명	득표수	비고
진의종	남	32	무장면 무장리	변호사	경성제대법과졸 상공부광부장	자유당	10,458	
서형남	〃	48	고창읍 읍내리	의 사	세브란스의전졸 의 학 박 사	국민당	1,443	
정세환	〃	38	대산면 율촌리	농 업	일본정치대학졸 가 사 에 종 사	무소속	10,713	당선
김영구	〃	53	무장면 성내리	회사원	동 양 대 학 졸 대한날염공사장	〃	2,789	
강 무	〃	57	대산면 지석리	농 업	일본동양대학졸 면 장 5 년	〃	1,155	
임창욱	〃	42	고창읍 읍내리	〃	조 도 전 대 학 졸 금 융 조 합 장	〃	4,563	
신삼훈	〃	47	고창읍 읍내리	〃	국졸 · 대한노총 고 창 군 연 맹 장	대한노총	1,079	

□ 고창군 을구

후보자	성별	연령	주 소	직 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 체 명	득표수	비고
신용욱	남	52	서울 종로구 청운동	민의원 의 원	대 졸 민 의 원 의 원	자유당	16,103	당선
홍순희	〃	41	고창읍 읍내리	회사원	일본명치대졸 홍해산업(주)전무	무소속	9,126	
민정식	〃	55	서울 종로구 4가	〃	조 도 전 대 졸 동양맥주감사역	〃	3,801	

4) 제4대 국회의원 선거

1956년의 제3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집권세력과 야당은 다같이 1958년에 실시되는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에 따른 선거법개정이 중요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1952년 발췌개헌 이후의 헌법은 국회의 구성을 양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950년에 제정된 의회의원 선거법은 단원제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참의원 선거를 위한 법개정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은 선거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입후보자의 등록절차 간소화, 선거의 공명성 확보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여당은 이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 공영제의 실시, 선거자금의 제한, 선거사범의 벌칙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와 같이 두 개정안은 그 내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법안을 둘러싼 파란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여야는 80여 차례나 협상을 벌여 단일안을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1958년 1월 민의원 의원선거와 참의원 의원선거를 분리한 '민의원 의원선거법(民議院議員選擧法)' 을 공포하였다.

1958년의 민의원 선거법과 1950년의 국회의원 선거법을 비교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의 확정 · 설치방법 및 당선인 결정, 투표방식 등 투표제도상의 기본골격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야당의 요구에 의해 투표참관인(投票參觀人) 의 권한 확대, 각급 선거위원회의 의원 중 일정수의 정당에 의한추천 등이 보완 또는 강화되었다. 한편으로 여당의 주장에 의해 후보난립을 막기 위한 기탁금제(寄託金制) 와 선거공영제가 실시되고 선거비용과 선거운동이 대폭 제한되었다.

참의원 의원선거법은 선거구를 각 시(市)와 도(道)단위로 하여 인구 60만에 2인씩 선출하는 것과 선거구 수를 30개, 의원정수를 70인으로 할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 외의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민의원 의원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선거는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는 1958년 5월 2일에 실시하여 3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도 30개 선거구가 늘어난 233개의 선거구에서 총선거인의 90.6%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선거 후에 법원에 제기된 선거소송이 105건에 달했고 여론에 못이긴 자유당이 당선된 10개의 선거구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선언할 만큼 행정력이 총동원된 부정선거였다.

선거결과 특징적인 것은 첫째, 자유당이 126석을, 민주당이 79석, 통일당이 1석을, 그리고 무소속이 27석을 차지함으로써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가 수립된 것이다. 둘째, 1956년의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나타난 여촌야도(餘村野都) 의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자유당이 126석을 차지하긴 하나 이중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26개 시지역에서 당선된 의석은 13석에 불과하였고, 민주당의 79석 중에서 43석은 도시지역에서 얻은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3대 선거에서와 같이 제1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소선거구 다수투표제의 이점을 이용하여 자유당은 득표율 42.1%에 의석수는 54.1%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민주당과 무소속은 34.2%와 21.5%의 득표를 하였으나 실제의 의석수는 33.9%와 11.6%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고창군의 민의원선거의 양상은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 현상 즉 '여촌야도(餘村野都)'가 들어맞지 않았다는데 있다.

갑구의 경우에는 무소속의 정세환 후보가 재선되었고, 을구의 경우는 야당인 민주당의 홍순희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갑구의 후보가 무소속이면서도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정씨문중(鄭氏門中)의 지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본다. 정씨 자신이 소탈하여 인심을 잃지 않고 아직도 혈연이 투표행위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 풍토에서 그의 당선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을구의 경우에는 재력이 약한 민주당의 홍순희 후보가 재력이 강한 여당의 신용욱 후보를 누를 수 있었는데 이은 홍순희에 대한 동정과 민의원으로서의 신용욱 후보가 보여준 실적에 유권자들이 실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력을 쥔 신용욱의 권력남용은 지지자들의 반감을 사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그의 지지자들이 이탈하여 그는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

□ 고창군 갑구

후보자	성별	연령	주 소	직 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 체 명	득표수	비고
진의종	남	36	무장면 무장리 260	변호사	대졸 · 회사원	자유당 공천	10,296	당선
이 범	〃	54	서울 종로구 원남동 28-4	회사원	상고졸 · 정당인	민주당 공천	2,985	
조병후	〃	36	고창읍 월산리 482-5	농 업	고려대졸 · 대한상무회전북지회장	무소속	9,673	
정세환	〃	42	대산면 율촌리 174	민의원	일본대졸 · 민의원	무소속	10,946	당선

※ 金秀學은 제4대 국회의원선거의 고창군 갑선거구에 후보등록 하였다가 사퇴함.

□ 고창군 을구

후보자	성별	연령	주 소	직 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 체 명	득표수	비고
신용욱	남	56	서울 종로구 청운동 51-21	민의원	비행전문졸업 민 의 원	자유당 공천	14,543	
홍순희	〃	45	고창읍 읍내리 87	회사원	대졸 · 정당인	민주당 공천	15,321	당선

5) 제5대 국회의원 선거

1960년 4 · 19의거로 이승만이 사임함으로서 제1공화국이 붕괴되고, 제2공화국

수립을 위한 개헌 작업이 진행되었다. 1960년 6월 15일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국회의원 가운데 208대 3이라는 절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다.

제3차 개정헌법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법이 마련되었다는데 헌법과 선거법 모두 선거부정을 막고, 자유 공명선거를 보장하는 내용을 보강하였다. 우선 헌법에서

중앙선거위원회(中央選擧委員會)가 처음으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의거하여 민의원은 선거위원회법(選擧委員會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선거관리기구의 명실상부한 독립을 통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자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선거법도 자유·공명선거의 실시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제4대 민의원선거에 적용되었던 협상선거법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① 입후보 등록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천장제도(推薦狀制度)를 폐지하였다.

② 선거권을 더욱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選擧人名簿)는 매년 1월 1일 현재로 그 구역 내에서 6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기본선거명부(基本選擧名簿)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그 구역 내에서 60일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작성하는 보통선거명부(普通選擧名簿)를 병용토록 하였다.

③ 부재자(不在者)의 현지투표(특히 軍에 있어서의)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기 어려움에 따라 부재자투표제도(不在者投票制度)를 채택하였다.

④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참관인제도(投票參觀人制度)를 강화하고 릴레이식 투표방지를 위한 투표용지 일련번호삽입제(一連番號揷入制) 채택하였다.

자유·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의 변경을 제외하면 선거제도상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4·19의거가 젊은 학생들과 청소년층의 힘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하여 헌법에서 선거권을 21세에서 20세 이상으로, 그리고 참의원 피선거권을 35세에서 30세 이상으로 각각 내렸다.

제5대 민의원선거는 7월 29일에 전국 233개 선거구에서 총선거인의 84.3%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제1공화국에서의 선거와는 달리 경찰과 관권의 개입은 없었으나 일부에서는 매표매수행위(買票買收行爲)가 자행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선거결과 예상대로 민주당이 압승하였는데 민주당은 총의석의 75.1%인 175석을 차지하였다. 한편 자유당은 2석밖에 얻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와해되었고, 그 외에 사대당(私大黨)이 4명, 한민당(韓民黨)과 통일당(統一黨)이 각 1명씩 당선자를 내었다. 그리고 무소속은 전체 의석의 21.1%인 49석을 얻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 자체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었고, 또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多數代表制)가 강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 데에 있다고 보여 진다. 민주당은 총 투표의 41.7%를 얻었으나 의석에서는 총 의석의 75.1%를 얻었고, 무소속의 경우는 총 투표의 46.8%를 얻었으나 의석에 있어서는 21.1%를 얻는데 그쳤다. 또한 사대당(事大黨)은 총 투표의 6%를 얻었으나 의석에서는 1.7%를 얻었고, 자유당은 2.7%의 득표에 0.9%의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고창군의 민의원선거의 경우 갑구에서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柳津후보가 당선되었고, 을구에서는 무소속의 金相欽후보가 각각 당선되어 고창군에서는 민주당이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다.

갑구에서 당선된 유진 후보는 서울대 영문학 교수로 그 당시 그의 저서인 구문론이 대학입시생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다. 영문학을 전공한 대학교수가 민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예는 그리 흔하지 않은 것이다. 그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4 · 19이후의 제2공화국 주체가 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도 있지만 대학교수로서의 신선한 이미지와 적지 않은 유씨 종친들의 지지가 또한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이나 근소한 표 차이로 정세환 후보에게 연속적으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진의종 후보는 이번에는 유진 후보에게 25표라는 근소한 표차로 또 다시 패배하고 말았다. 한편 불리한 자유당의 소속으로 출마한 정세환 후보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4,998표라고 하는 상당수의 득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때까지도 혈연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제5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고창군 갑구

후보자	성별	연령	주 소	직 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 체 명	득표수	비고
정세환	남	44	대산면 율촌리 174	민의원	일본대학전문부졸 민 의 원	자유당	4,998	
김우정	〃	50	서울 마포구 아현동 463-28	회사장	민주일보사장 대한행정신문사장	무소속	2,707	
김정석	〃	35	성송면 향산리 415	회사원	해양대학졸 해양대학조교수	〃	2,899	
배상기	〃	38	고창읍 읍내리 185	양조업	성균관대정경대수료 도의회의장	〃	5,668	
진의종	〃	38	나주군 나주읍 교동리	회사 취정역	경성제대법과졸 상공부광무국장	〃	8,775	
유 진	〃	54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137	출판업	연희전문졸 경도동지사대학 영문학부졸 서울대교수	민주당	8,800	당선

□ 고창군 을구

후보자	성별	연령	주 소	직 업	학력 및 경력	소속정당 단 체 명	득표수	비고
원영희	남	31	전주시 풍남동	농 업	고 려 대 학 졸 삼남일보편집위원	무소속	2,016	
김효남	〃	37	흥덕면 후포리 495	〃	단국대학1년중퇴	〃	6,792	
이형연	〃	26	서울 종로구 화동 90	기 자		민주당	4,736	
홍순희	〃	47	고창읍 읍내리 77	민의원		무소속	4,636	
신용욱	〃	58	서울 종로구 청운동 52-21	회사장		〃	5,907	
김상흠	〃	39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25	회사원		〃	7,648	당선

을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상흠 후보가 민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친 김성수의 후광이 크게 작용하였다. 김성수는 2대 부통령을 역임하였고, 동아일보와 고려대학교를 설립한 고창이 배출한 전국적 인물이었다.

김상흠 외에 그 당시 부친의 후광을 업고 정계에 진출한 대표적인 예로는 조병옥의 아들인 조윤형과 신익희의 아들인 신하균을 들 수 있다. 당시에 정계의 '삼총사'라고 불리운 김상흠, 조윤형, 신하균은 큰 기대를 모았었다.

김상흠은 그 자신은 고창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그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의 정치문화를 반영한 일단으로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후대가 거두어들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기대가 그의 자식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6) 제6대 국회의원 선거

5·16군사정부(軍事政府)는 제5차 개정헌법을 공포한 후 민정이양을 위한 대통령선거에 적용될 선거법을 제정하여 1963년 1월 16일 공포하였다. 국회의원선거법의 경우 8월에 제1차 개정을 거쳐 11월 26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했다. 선거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사범의 피선거권 회복기간을 연기하고 병역기피자(兵役忌避者)에 대해서

형의 집행완료 내지는 면제된 후 7년간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였다.

② 선거구(選擧區)를 지역구(地域區)와 전국구의 2종으로 하고 지역구는 과거의 233개의 선거구를 변경하여 131개구로 하고 전국구는 지역구의 3분의 1인 44석으로 하였다.

그리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병용하기로 하였다.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운영에 있어 각 정당이 후보를 미리 서열적으로 확정하여 공표하는 엄정구속명부제(嚴正拘束名簿制)를 실시하였다.

③ 후보자의 정당추천제(政黨推薦制)를 실시하였다.

④ 선거운동은 정당 본위로 하고 개인의 선거운동은 제한하였으며, 공영선거운동(公營選擧運動)을 확장하고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제3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비례대표제는 사표(死票)를 구제하고 전국적인 인물이나 직능대표(職能代表)를 선출한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이 비례대표제는 양당정치를 실현한다는 명분아래 제1당과 제2당에게 유리한 배분방식(配分方式)을 가지고 있었다. 제1당은 득표비율(得票比率)이 100분의 50을 넘으면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득표율에 따라 배분 받으며, 득표율이 100분의 50미만일 때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국구 의석의 2분의 1을 배정받게 되었다. 제2당은 제3당 이하 정당들이 득표한 총득표의 2배를 초과할 때에는 제1당에 배분되고 남은 잔여의석을 득표율에 따라 배분 받았으나 이를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득표비율에 관계없이 잔여의석의 3분의 2를 배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1당과 제2당에게 배분되고 남은 잔여의석은 득표비율에 따라 제3당 이하에 배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봉쇄조항(封鎖條項)을 두어 지역선거에서 3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으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전국구 의석배분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였다.

1963년 11월 26일 전국 131개 지역구에서 제6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2년 7개월 동안의 군정기간(軍政期間)동안 혁명정부를 책임진 박정희가 민주공화당의 대통령으로 출마하여 민정당의 尹潽善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민주공화당은 유리한 조건에서 난립한 야당을 상대로 하여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총선거인의 72.1%가 투표에 참가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은 33.5%, 민정당 20.1%, 구민주당계(舊民主黨係)의 민주당(民主黨)은 13.6%, 국민당은 8.8%, 자유민주당은 8.1%, 그리고 이외의 7개의 군소정당들이 도합 13.9%의 득표를 하였다. 그러나 소선구 다수대표제의 특징이 나타나 공화당은 득표율보다 훨

씬 높은 전국의석의 68%에 해당하는 88석을 차지하였다. 민정당의 경우는 지역구 의석의 20.6%인 27석을 얻어 득표비율이 의석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정당에 있어서는 의석 점유율이 득표비율이 훨씬 못미치는 것이었다. 공화당(共和黨)은 전국구 의석에서도 유리하게 배분받았다. 33.5%의 득표율로 44석의 총의석 중에서 절반인 22석을 배정받았다. 그리고 제2당인 민정당(民政黨)은 20.1%의 득표율로 전국구 의석의 31.8%인 14석을 배정 받았다. 그 외에 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은 각각 5석과 3석을 배정받았고, 나머지 정당은 모두 당선자 3명과 득표비율 5%의 조건에 미달되어 전국구 의석이 돌아가지 않았다.

제6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62.11.10)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14	48	183,385	89,827	64,084	1,903	65,987 (2,467)	23,840	73.5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 명	주 소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자유민주당	김 수 학	고창읍 읍내리 202	대 졸	2대국회의원	3,241	당선
신 흥 당	손 명 섭	고창군 심원면 302	정읍농고졸	육군특수대근무	1,524	
국민의당	이 형 연	서울 서대문구 292-450	대 졸	언 론 인	9,382	
보 수 당	진 두 은	흥덕면 흥덕리 352	고 졸	흥덕중학원장	2,181	
민 주 당	강 택 수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7의558	대 졸	초대참의원	7,357	
민 정 당	김 상 흠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35	연 전 졸	제5대민의원	16,680	당선
추 풍 회	안 판 동	흥덕면 흥덕리 560	독 학	9지구당조직책	1,361	
민주공화당	성 정 기	서울 신당동 372-444	대 졸	삼양교역주식회사 상 무 이 사	16,531	

고창군의 경우에는 선거구에 있어서 종전에는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으나 선거법의 개정으로 1인만을 선출하도록 변경되었다.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해가 갈수록 투표율이 낮아져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73.5%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무효투표는 선거가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0여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권자들 중에 무학자가 그 정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촌야도'의 현상이 아니라 야당인 민정당 김상흠 후보가 민주공화당의 성정기 후보를 149표차로 힘겹게 누르고 당선되었다.

김상흠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제5대 국회가 5·16으로 말미암아 단명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 보내야 한다는 동정여론과 인촌 김성수의 후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아주 아깝게 패배한 성정기 호보는 1963년 12월 5일 개표(開票) 및 계표부정(計票不正)을 들어 선관위원장 정진홍(鄭鎭洪)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964년 12월 10일에 원고의 소취하로 간주되어 재판은 종결되었다. 따라서 김상흠 후보의 당선은 유효하게 되었다.

7)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제6대 국회는 1963년에 실시된 선거법에 여러 가지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개원 초부터 지적하여 오다가 그 임기가 끝날 무렵인 1966년 12월 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은 이전 선거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다만 몇가지 운용상의 문제점만을 시정하였다.

첫째, 선거인명부 사본교부제의 신설

둘째, 선거운동 제한규정의 일부 완화

셋째, 투표통지표의 교부제도 변경

넷째,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구역표를 새로 정립한 것 등이다.

이와 같이 선거법에 의하여 1967년 6월 8일 제7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참여율은 76.1%였으며, 집권당인 공화당은 선거직전 통합야당(統合野黨)으로 출발한 신민당(新民黨)을 누르고 압승을 거두었다. 공화당은 50.6%의 득표율로 지역구 102석, 전국구 27석을 차지하였고, 신민당은 32.7%의 득표율로 지역구 28석, 전국구 17석을 각각 얻었다. 이들 외에 9개의 정당이 참여하여 총합계 16.7%의 표를 얻었으나 전국구 배분방식에 따라 대중당만 유일하게 단 하나의 의석을 차지하였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양당제가 아닌 1.5의 정당체제가 확립되어

거대여당의 독주가 예견되었다.

고창군의 경우 투표율은 82.6%로 전국 투표율의 76.1%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무효투표도 투표율의 증가와 더불어 많아졌다. 제6대 국회의원선거 경우에는 1,903표였으나 7대에 이르러서는 3,419표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집권당이 과열하게 유권자를 투표에 참여시킨 결과라고 보여진다. 즉 어떻게 투표하는지를 모르는 무학자들을 투표에 참여시킴으로써 무효표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선거의 결과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이 다른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고창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민주공화당의 愼鏞南후보는 5대, 6대 국회의원이었던 김상흠 후보와 12,151표 차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신민당의 김상흠 후보와 통일사회당의 孫明燮후보는 당선된 신용남 후보의 부위원장인 丁奎潤을 걸어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원인은 모든 경찰력과 행정조직 그리고 공화당 조직이 삼위일체가 되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이고, 또한 부정선거에 의해 이루어진 당선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원고가 제시한 소장에 기록된 부정사실을 몇가지만 기술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같은 해 5월 3일에 치러진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인의 총수는 부재자신고인 223명을 포함하여 86,311명이었던 것이 6월 8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 때에 이르러서는 불과 1개월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인데 부재자신고인 3,910인을 포함하여 10,024인이나 급증한 96,335인으로 사전에 결탁하여 격지자로서 투표가 불가능한 자는 물론이고 그 중세에 혹은 5년 내지는 10년 전에 사망한 유령자까지 유권자로 조작하여 6·8국회의원선거 명부에 등재된 부재자신고인 3,910명을 제외한 순증가분 7,337매의 유령유권자 등의 투표 통지표와 5·3대통령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유령유권자 약 6,000명의 통지표를 합한 약 13,000여표 가운데 약 8,000표의 통지표를 면직원 각리의 참사 및 공화당원 등으로 하여금 미리 확보케 하여 이들 모두 사위(대리)투표케 함으로써 당시 공화당의 공천을 받은 신용남 후보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케 하여 당선될 수 있었다.

② 공화당 조직은 행정조직을 총동원하여 전유권자(全有權者)의 성분을 분석하고 조사케 하고 신민당의 공천을 받은 김상흠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투표통지표 8,000매를 매당 100원 내지 200원씩 매수하여 고의로 기권하게 함으로써 김상흠 후보가 득표할 8,000표를 사전 득표방해를 하였다.

③ 각 면장, 부면장등은 면직원과 리참사들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작성시부터 투표통지표 교부시까지 신민당의 김상흠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 약 2,000인에게

고의로 선거인명부에 누락케 하였거나 투표통지표를 교부치 않음으로써 신민당 공천자인 김상흠 후보의 득표 2,000여표를 사전에 방해하는 부정을 자행하였다.

④ 부재자신고인 명부에 나타난 총 3,910인 중에 약 50%에 해당하는 2,000인의 거소를 각기 본인들이 신고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장들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허위로 기재하고 신고케 하여 부재자신고인 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지역구 선거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시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투표용지를 일괄 회수해서 그중 거소가 전혀 다른 투표용지 2,000통 가운데 500통은 다시 반송되어 오도록 하고 잔여 1,500통은 당시 공화당의 공천자인 신용남 후보에 기표해서 회송용 봉투에 넣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우송함으로써 선거관리상의 부정을 감행하였고, 따라서 피고 신용남은 1,500표를 부정득표하였다.

⑤ 흥덕면 제1투표구 동사리 죽정부락 선거인 120인에게 일금 3만원을 지급 또는 지급키로 약속하고 공화당에서 이들에게 공개투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흥덕면 제3투표구, 해리면 제1·2투표구 등 도합 약 2,120인의 선거인에게 공개투표하도록 하는 불법·부정을 감행하였다.

⑥ 해리면 제1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은 신민당의 공천자인 김상흠 후보를 선거인에게 위원장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를 배부함으로써 원고가 투표할 100표를 무효표가 되게 하는 부정을 자행하였다.

이 같은 내용들 이외에도 많은 부정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당선무효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위의 ①항에서 지적한 부정사실 가운데 신용남이 관의 협조아래 유령유권자 등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사위(대리)투표를 함으로써 부정득표한 ①항의 8,000여표와 ②항의 원고가 득표할 8,000여표의 투표용지를 매수함으로써 고의로 기권케 하여 피고가 그 반사적 이익을 본 8,000표, 그리고 ③항의 원고가 득표할 2,000표를 투표통지표를 교부치 않았거나 또는 선거인 명부에 아예 누락시킴으로써 역시 피고 신용남 후보가 그 반사적 이익을 보게된 2,000표, 또한 ④항의 1,500표의 부재자신고인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피고 신용남 후보란에 기표해서 우송하여 부정 득표한 1,500표, 그리고 ⑤항의 원고가 득표할 표를 무효표가 되게 한 100표 등 이를 종합해 보면 총 19,600표를 피고 신용남 후보가 부정득표를 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득표할 표를 감소시킴으로써 반사적 이익을 본 것이므로 차점자인 원고와 표차 12,151표를 감한 7,449표차로 도리어 피고 신용남 후보가 낙선할 것이 분명하므로 당시 공화당의 신용남 후보의 당선결정공고가 무효임이 명백하다는 것이었다.

이 소송은 법원에서 선거 전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받아 보궐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보궐선거는 1968년 9월 24일에 실시되었는데 후보자가 지난 선거보다 2인이 늘어나서 모두 7명이 경합을 벌였다. 투표율은 82.6%에서 75.1%로 낮아졌으나, 무효표는 3,419표에서 4,933표로 증가하였다. 후보등록에 있어서는 자유당의 정세환 후보와 통일사회당의 손명섭 후보가 재출마하지 않고 들어갔으며 정의당의 임균석후보, 자민당의 손일권후보, 통일사회당의 유영봉후보, 그리고 서울에서 3·4대 민의원을 지낸 바 있고, 대통령에 출마하여 낙선한 통일당의 오재영후보가 가세하였다.

선거결과 대중당으로 나온 신용남 후보가 32,563표를 얻어 신민당의 김상흠 후보를 3,519표 차로 누르고 재승리하였다. 이 보궐선거에서 당락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지난 선거와는 달리 당선자와 차점자간의 표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제7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66.10.10)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14	49	196,414	96,335	76,131	3,419	79,550 (3,236)	16,785	82.6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 명	주 소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자 유 당	정 세 환	대산면 174	대졸	제3·4대 국회의원	1,269	
민 중 당	진 두 은	흥덕면 흥덕리	고졸	흥덕중학원장	891	
신 민 당	김 상 흠	서울서대문구 북아현동 35	대졸	국 회 의 원	27,804	
민주공화당	신 용 남	흥덕면 사천리 69	대졸	대한민국항공사장	39,955	당선
통일사회당	손 명 섭	심원면 302	고졸	통사당중앙당임위원	570	

제7대의원 보궐선거 현황

□ 투표상황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62.11.10)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14	49	196,414	96,505 (5,172)	67,485	4,933	72,418 (4,166)	24,087	75.1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 명	주 소	학 력	경 력	득표수	비고
신 민 당	김 상 흠	읍내리 196	연 전 졸	제5 · 6대국회의원	29,044	
정 의 당	임 균 석	부안면 433	대 졸	정의당·중앙당당위원	1,832	
대 중 당	신 용 남	흥덕면 사천리 69	대 졸	대한민국항공사장	32,563	당선
자 민 당	손 일 권	극성면 신기리 306	대 졸		969	
민 중 당	진 두 은	흥덕면 353	고 졸	63·67년국회의원입후보	292	
통일사회당	유 영 봉	영등포구 봉천동 46	중 졸	통 일 당 당 무 위 원		사퇴 9.21
통 한 당	오 재 영	서울 마포동 195-2	보통교4년 중 퇴	3 · 4대 민 의 원	2,785	

8) 제8대 국회의원 선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7대 국회의원선거는 압승으로 끝났으나 선거과정에서 저질러진 부정행위들로 말미암아 선거 후 쉽게 정상화될 수 없었다. 야당은 선거가 모두 부정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일부만을 인정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의견이 팽팽이 맞선 가운데 여야는 제3차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안에 합의하였다.

선거법의 개정에 있어서 야당은 기본적으로 관권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고 투·개표의 부정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선거법의 주요개정내용은 지역구 15개구가 증설되는 것을 제외하면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운동의 방법, 투표용지의 형식 · 인쇄 · 배부방식, 개표 참관과 무효표의 기준 등 선거절차에 관한 것이었다. 즉 선거제도의 기본골격에는 변화가 없고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제3차 개정을 거친 선거법은 1969년 10월 17일의 소위 삼선개헌안(三選改憲案)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고 난 다음 다시 한번 개정되었다. 국민투표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문제로 여·야간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막후 접촉에서 다시 선거제도의 개선이 모색되었다. 제4차 개정선거법은 1970년 12월 22일 공포되었는데 역시 관권의 개입과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개정의 목적이었다. 이에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사의 기공식(起工式), 단합대회, 야유회, 종친회 등의 금지, 선거기간 중 공무원의 통상적 업무 외의 출장금지 등의 규제조항이 첨가되었다. 그리고 선거구가 다시 7개구 증설되고 전국구 의석배분(議席配分)요건 중 종래의 지역구 3석 이상을 5석 이상으로 개정하여 배분기준을 높였다.

제7대 국회에서 2번이나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여 1971년 5월 25일 제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투표율은 73.2%이었다.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은 관권의 개입이 제7대 선거보다는 줄어들었으나 금력선거(金力選擧)라고 불리울 만큼 돈에 의한 매수가 극심하였다.

선거결과는 제1당의 신민당(新民黨)이 42.5%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지역구에서 65석과 전국구 24석을 각각 얻어 지역구 153석과 전국구 51석 총 204석의 43.6%를 차지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보였다. 반면 집권당인 공화당은 48.9%의 득표율로 지역구에서 86석, 전국구에서 27석을 얻어 총 의석의 55.4%인 113석만 얻음으로써 그 세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양당체제가 확립되었으며 여당에 버금가는 야당의 부상은 박정희 정권에 새로운 정치적 위협이 되었다.

고창군의 경우 투표율은 79.9%로 전국의 수준인 73.2% 보다는 높았다. 그리고 무효투효는 3,161표로 아직도 높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경우에는 민주공화당의 신용남 현역의원과 신민당의 진의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안종엽후보가 출마하여 결국 신민당의 진의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진의종 후보는 유효투효 66,805표 중에서 40,765표를 얻어 61.0%를 차지함으로써 여유있게 당선될 수 있었다. 이로써 진의종 후보는 제3대 국회의원에 32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출마하여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이어 제4대와 제5대에 재도전하였으나 역시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제8대에는 야당의 공천을 얻어 실로 오랜만에 선량의 꿈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국회의원이 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단행된 유신(維新)으로 말미암아 국회가 해산되어 국회의원직을 내 놓는 비운을 맛보아야 했다.

제8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62.11.10)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14	56	188,803	87,612 (3,552)	66,805	3,161	69,966 (3,359)	17,646	79.9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 명	주 소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민주공화당	신 용 남	홍덕면 사천리 69	대 졸	제7대국회의원	23,012	34.4%
신 민 당	진 의 종	서대문구 부암동 210-27	대 졸	상 공 부 차 관	40,765	61.0%
민 중 당	안 종 엽	대산면 산정리 467	고 졸	신민당10지구당 선 전 부 장	1,435	2.1%

9) 제9대 국회의원 선거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이라는 정치적 대변혁이 실시됨으로써 전국에 걸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따라서 모든 정당활동이 중지되고 국회가 해산되었으며, 그 기능과 권한은 비상국무회의(非常國務會議)로 넘어갔다.

대통령선출도 종전의 직접선거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주권적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선축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이 대통령의 추천에 의거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헌정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간접선거를 헌법에 의하여 보장하는 사례를 남겼던 것이다.

간접선거제도의 도입 외에도 유신초기의 선거제도는 그 이전의 것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유신헌법이 확정 · 공포된 직후 제정된 6년 임기의 지역구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법에 잘 나타나 있으며, 새로운

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철저한 공영제 선거운동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전국구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73개 선거구로 하여 선거구에서 2인씩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②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지역구의 기준인 인구수 조항이 없어졌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지역구를 나누었으나 유신 체제하에서는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고 각 선거구의 인구를 감안하여 획정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인구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못되었다.

③ 제3공화국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유신체제하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④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채택하여 개별적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였으며,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거벽보의 첨부, 선거공보의 발행, 후보자가 참가하는 합동연설회에서만 하도록 하였다.

⑤ 정당원과 선거운동 관계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유신체제하의 선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1구 2인의 중선거구제의 채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선거제도는 대정당(大政黨)에게만 유리한 1구 1인의 소선거구가 지닌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으나 '동반선거' 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여당의 공천이 사실상 당선과 직결됨으로써 공천권을 가진 정당간부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지역민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기준 인구수의 색채는 선거구간의 대소(大小)의 격차를 크게 벌림으로써 자칫 평등선거의 원칙을 어길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집권당에 의하여 선거구가 멋대로 그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었다.

실제적인 예를 들면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대 선거구인 서울 성북구의 선거인수는 532,514명으로서의 최소 선거구인 강원도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선거인수인 107,266명보다 다섯배나 많은 것이었다. 그리고 야당의 지지기반이 되어온 대도시의 선거구가 큰 선거구인 점을 고려한다면 인구수의 삭제는 여당에 의하여 선거구가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거제도에 의하여 1973년 2월 27일에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선거는 총선거인의 72.9%가 참여하는 비율을 보였다. 선거결과 집권당인 공화당은 전체 38.7%의 득표율로 73명의 당선자를 냈으며, 제1야당인 신민당은 32.5%의 득표율로 52명, 민주통일당은 1.4%의 득표율로 2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그리고 무소속에서는 19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고창군의 경우는 선거법에 의하여 고창군과 부안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다. 지리적으로나 교통편 및 교류의 측면에서 보면 고창군과 정읍군이 같은 선거구로 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인구수에서 보면 고창군과 부안군이 비슷하여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인수를 보면 고창군은 81,133명이고 부안군은 75,426명으로 고창군이 8,707명이 더 많다. 이와 같이 인구수에서 보면 고창군과

부안군이 같은 선거구가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나 그 당시 혁명주체세력으로 실세이었던 김제출신의 장경순과 부안군의 이병옥이 김제군과 부안군이 같은 선거구로 될 경우 집권당의 공천을 받을 때 둘 중의 하나가 탈락될 수도 있다는 계산에서 김제군과 정읍군을 같은 선거구로 묶고 고창군과 부안군을 한 선거구로 묶게 된 내력이라고 보여진다.

고창군과 부안군의 투표율을 보면 고창군 77.5%이고 부안군은 71.7%로써 고창군의 투표율이 다소 높았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된 것처럼 '동반당선'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부안군에서는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의 이병옥후보가, 고창군에서는 제1야당인 신민당의 김상흠후보가 출마하였고, 무소속으로는 부안군 출신의 김정기후보와 고창군 출신의 진의종후보가 연고지의 표를 의식하고 출마하였다. 그러나 집권당과 제1야당의 '동반당선'의 경향에도불구하고 제1야당의 김상흠 후보는 제일 저조한 득표를 기록하여 낙선하고 말았다. 그가 낙선하고 진의종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제5대와 제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흠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알만큼 알았다는 인식과 평상시에는 지역의 관리에 소홀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중앙에서 공천을 얻어 내려오는 낙하산식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유권자들이 식상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진의종 후보는 제3·4·5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근소한 표차로 계속 낙선했다가 제8대에 들어 제1야당인 신민당의 공천을 얻어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으나 의원직 1년여만에 유신의 대변혁으로 국회의원직을 사임해야 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동정이 그를 당선되게 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진의종은 한국전력이나 상공부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고창군 출신들을 등용하여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 평소에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제9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군 명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72.9.30)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25	146	339,458	159,559 (4,849)	116,548	2,790	119,338 (4,078)	40,221	74.8
고창군	14	78	181,262	84,133 (2,476)	63,588	1,657	65,245 (4,678)	18,888	77.5
부안군	11	68	158,196	75,526 (2,373)	52,960	1,133	54,093	21,333	71.7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 명	주 소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민주공화당	이 병 옥	부안군 부안읍 소외리 105	대 졸	6·7·8대국회의원	39,684	당선
신 민 당	김 상 흠	서울 종로구 가회동 27-1	대 졸	5·6대국회의원	23,664	
무 소 속	김 정 기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56-1	동경고등학교 운전기과졸	교 원	24,655	
무 소 속	진 의 종	서울서대문구 부암동 210-27	경성제국대졸	제8대 국회의원	28,545	당선

10)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제10대 국회의원 임기를 1년여 남짓 남겨놓고 제9대 국회는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였다. 1972년에 제정된 선거법의 기본골격에는 변화가 없었고 지엽적인 것들만 개정되었다. 즉 선거구의 증설, 합동연설회 횟수의 증가, 투·개표 참관인의 범위 및 선정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것이었다.

제10대 국회의원선거는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유신체제에 관한 논쟁이 일체 금지된 상태에서 1978년 12월 12일 치러졌다. 지역구도 제9대 때보다 4개가 증설되어 총 77개구였다. 선거결과 공화당이 전체 지역구 의석의 44.2%인 68석을 차지하였고, 제1야당인 신민당은 39.6%인 61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민주통일당은 1.9%인 3석에 머물었다.

그러나 득표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민당이 32.8%로서 공화당의 31.7%보다 1.1%를 앞서게 되었다. 야당이 여당보다 득표율에 있어서 앞선 것은 총선사상 처음 있는 일로써 이는 국민의식의 성장과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군 명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78.10.31)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25	148	313,324	154,494 (4,980)	128,055	2,157	130,212 (4,845)	24,282	84.3
고창군	14	78	164,386	79,266 (2,359)	63,977	1,215	70,192 (4,845)	9,074	88.6
부안군	11	70	148,938	75,228 (2,261)	59,078	942	60,020	15,208	79.8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 명	주 소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민주공화당	이 호 종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436	고대상과졸	은성산업 (주) 대표이사	36,478	당선
신 민 당	진 의 종	서울 서대문구 부암동 210-27	경성대 법과졸	제8. 9대 국회의원	34,831	
민주통일당	김 일 범	부안군 부안읍 151-1	원광대졸	전북제6지구당 위원장	5,748	
무 소 속	김 종 수	부안군 부안읍 263	전북법정대 정치외교과졸	신민당·중앙당 경리부장	7,346	
무 소 속	박 용 기	부안군 부안읍 431-3	남원농고졸	전 북 곡 물 협 회 장	36,941	당선
무 소 속	정 균 환	고창군 대산면 광대리 439	성 균 관 대 정치외교과졸	無	6,675	

고창군의 경우 제9대 선거처럼 선거구에는 변화가 없이 부안군과 한 선거구가 되어 선거가 치러졌다.

투표율은 고창군이 88.6%로서 부안군의 79.8%보다 8.8%가 높았다. 무효투표 역시 고창군과 부안군이 거의 비슷하게 1,000여 표를 기록하고 있다.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은 고창군 출신의 李昊鍾을 추천하였고 제1야당인 신민당 역시 고창군 출신의 진의종 현역의원을 추천하였다. 또한 무소속으로 鄭均桓이 후보로 출마하였다.

부안군 출신으로는 재력이 좋은 것으로 소문난 무소속의 朴龍基와 역시 무소속인 金鍾洙, 그리고 민주통일당의 金一凡이 출마하여 고창군 출신이 3인, 그리고 부안군 출신이 3인으로 자기 지역을 기반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고창군의 경우 집권당과 제1야당이 맞붙는 결전장이어서 두 후보에 표가 고르게 분산되었으나 부안군의 경우는 박용기 후보가 부안 출신의 타 후보들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많은 득표를 할 수가 있었다.

투표결과 무소속의 박용기 후보가 36,941표를 얻어 최고 득표자로 당선되었으며 고창출신의 이호종 후보는 36,478표를 얻어 같은 고창군 출신의 신민당의 진의종 후보보다 1,637표를 더 얻어 차점자로 당선되었다.

11)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됨에 따라 12월 6일 유신헌법의 절차

에 따라 崔圭夏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최규하 정부는 출범 즉시 '위기관리정부(危機管理政府)' 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한 후 새로 구성될 정부에 정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5 · 17광주항쟁(光州抗爭)이라는 유혈사태가 벌어지자 최규하 대통령은 사임하고 다시 유신헌법의 절차에 따라 계엄당국을 책임지고 있던 全斗煥장군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제5공화국 수립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내놓고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한 후에 10월 26일 이를 공포하였다.

제5공화국의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원칙과 국회의원의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 그때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던 국가보위입법회의(國家保衛立法會議)가 새로운 국회의원선거법을 제정하여 1981년 1월 29일 공포하였다. 새로운 선거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유신헌법에서와 같이 지역구의 기준인구수를 명시하지 않았다. 즉 지역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② 선거구는 지역구와 전국구 제도를 병용하며 전국구의원의 정수는 지역구의 2분의 1로 한다.
③ 지역구는 92개를 두되 1개 지역구에 의원 2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한다.
④ 전국구 의석의 배분에 있어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지역구 선거의 의석 수에 있어 제2당이하의 정당에게 그 의석의 비율 순으로 배분한다.
⑤ 전국구에서의 당선은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제출한 전국구 후보자 명단에 기재된 순위에 의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선거법이 지니는 특징은 선거구의 획정문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제출된 명부상의 순번에 따라 당선이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전국구 비례대표제에 관한 것이다.

우선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기준인구에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유신체제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선거구와 작은 선거구간의 크기에 있어 많은 격차가 생겼다. 예를 들면 서울의 최대 선거구인 동대문구의 인구는 511,208명인데 반하여 최소 선거구인 전북의 진안(鎭安), 무주(茂朱), 장수(長水)는 불과 100,544명으로써 동대문구의 선거구 5분의 1에 불과한 많은 격차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선거구의 획정은 대도시에 야당의 세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당이 매우 유리하도록 짜여

졌다고 할 수 있다.

제5공화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국구 비례대표제(全國區比例代表制)라고 할 수 있다.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제3공화국에서도 채택된 바 있으나 제5공화국에서 채택한 비례대표제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로 제3공화국에서는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의석이 지역구 의석의 3분의 1로 배정되었으나, 제5공화국에서는 2분의 1을 배정하여 전국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둘째로 제3공화국에서는 제1야당에게 전체 전국구의석의 최소 50%에서 최다 3분의 2까지를 배정하고 제2당에게는 제1당이 차지하고 난 뒤에 남은 잔여의석의 최소 3분의 2까지를 배정하여 제1당과 제2당에게 프레미엄이 주어졌던 것이다. 이는 양당정치를 위한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5공화국에서는 정치적 안정을 추구한다는 기치 아래 제1당에게 무조건 3분의 2를 배분하고 제2당부터는 지역구의 의석수에 따라 잔여의석을 나누도록 하였다. 즉 제1당에게만은 높은 프레미엄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셋째, 제3공화국에서는 전국구 의석의 배정을 각 정당의 지역구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제5공화국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배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제11대 국회의원선거는 1981년 3월 25일에 실시되었다. 많은 구정치인의 정치활동이 묶인 상태에서 1개의 정당이 후보를 냈으며 또한 106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선거참여율은 78.4%였으며, 선거 결과 집권당인 민주정의당(民主定義黨)이 35.8%의 득표율로 90석을 얻어 제1당이 되었고, 민주한국당(民主韓國黨)이 21.6%의 득표율로 57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이 10.3%로 7석을 얻었다. 전국구 의석은 민주정의당이 전국구 전체의석의 3분의 2인 61석을, 그리고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은 각각 24석과 7석이 배분되었다. 따라서 제1당인 민주정의당은 35.6%의 득표율로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하여 전체의석의 54.7%를 차지함으로써 국회내에서의 안정세를 확보하였다.

고창군의 경우 선거구에서 변화가 있었다. 이전까지만 하여도 부안군과 한 선거구로 되어 있었으나, 제11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정읍군과 묶여 한 선거구로 되었다.

정읍군 인구수와 고창군의 인구수를 비교할 때 정읍군의 인구수는 232,741명으로 고창군의 인구수 149,080명보다 83,661명이 더 많다. 선거인 수에 있어서도 정읍군의 경우 117,898명으로 고창군의 76,411명에 비하여 41,487명이 더 많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군 명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31	189	381,821	194,309 (6,437)	156,374	1,854	158,228 (6,096)	36,081	81.4
고창군	14	78	149,080	76,411 (23,586)	61,105	684	61,789	14,622	80.9
정읍군	17	111	232,741	117,898 (4,079)	95,269	1,170	96,439 (6,096)	21,459	81.8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 명	주 소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민주사회당	조병후	고창읍 월산리 528-2	대 졸	육군대령예편	9,473	
민주정의당	진의종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260	대 졸	제8.9대국회의원	61,443	당선
신 정 당	신정재	서울 마포구 공덕동 29-5	대 졸	광일기업대표	3,699	
한국국민당	이호종	성내면 신성리 436	대 졸	제10대국회의원	20,316	
원일민립당	이경태	정읍군 고부면 백운리 442	장로교성서연구과졸	대한청소년신문 논설위원	3,374	
민주한국당	김원기	정읍 정주읍수성리 643-19	대 졸	제10대국회의원	41,789	당선
무 소 속	노동채	고창 부안면 송현리 187	대 졸	새교육신문사장	16,280	

투표참여율은 고창군이 80.9%, 정읍군이 81.8%로 비교적 비슷하다. 무효표의 경우 선거를 치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이제는 1,000표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후보자를 보면 민주정의당의 진의종 후보와 민주한국당의 김원기 후보, 그리고 민주사회당의 조병후, 신정당의 신정재, 한국국민당의 이호종, 원일민립당의 이경태, 그리고 무소속의 노동채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지역별로 후보자를 살펴보면 고창군 출신으로 진의종, 조병후, 신정재, 이호종, 노동채 후보이고 정읍군 출신으로는 김원기와 이경태 후보 2인 뿐이었다.

선거결과는 민주정의당의 진의종 후보가 61,443표를 차지하여 1등으로 당선되었고 민한당의 김원기 후보가 41,789를 차지하여 2등으로 당선되었다. 후보들 중에 10,000표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제10대 국회의원을 지낸 한국국민당의 이호종 후보가 20,316표를, 무소속의 노동채 후보가 16,280표를 얻었다. 이는 고창군 지역의 투표가 열전이었음을 의미한다.

12)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제11대 국회는 제12대 국회위원선거를 앞둔 1984년 7월 25일 국회의원선거법을 부분 개정하였다. 개정의 내용은 주로 선거운동의 규제와 투·개표 참관인 제도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선거제도의 골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제12대 국회의원선거는 1985년 2월 12일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에는 선거 직전에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조치가 풀린 구야당계(舊野黨系)의 정치인들이 새롭게 조직한 신한민주당(新韓民主黨)을 중심으로 하여 대거 참여하였다. 선거결과 민주정의당이 35.3%의 득표율로 87명의 당선자를 냄으로써 제1당의 자리를 계속 지켰고 신당인 신한민주당이 29.3%의 득표율로 50석을 얻어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그 외에 민한당과 국민당이 19.7%와 9.2%를 각각 얻어 26석과 15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전국구 의석은 이러한 지역구의 의석 수에 따라 민주정의당이 61석을, 신한민주당이 17석을, 그리고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의 각각 9석과 5석을 배정받았다. 이 선거에서도 제1당인 민정당은 35.3%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이 53.6%를 차지함으로써 원내에서의 안정세를 계속 확보하게 되었다.

고창군의 경우 1981년 7월 1일에 시로 승격한 정주시(井州市)를 포함하여 기존의 정읍군과 묶어 한 선거구로 되었다.

고창군의 투표율은 8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무효표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때 1,174표로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후보자들의 경합을 살펴보면 민주정의당의 전종천 후보를 비롯하여 신한민주당의 이원배 후보, 그리고 제10·1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원기 후보가 민주한국당으로 출마하였다. 그러나 제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고 정정법(政淨法)에 묶여 제11대 국회의원 출마할 수 없었던 유갑종은 신한민주당의 공천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신민주당(新民主黨)을 창당하여 출마하였다. 제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1년여의 의원직 생활을 하다가 이듬해에 유신으로 말미암아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던 전력과 감옥생활을 했다는 과거의 경력이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음으로서 고창의 전종천 후보에 이어 차점자로 당선될 수 있었다.

민주정의당의 전종천 후보는 정읍과 고창에서 골고루 지지표가 나와 68,248표라고 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신한민주당의 공천을 놓고 이원배와 김원기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이원배에게 낙점되자 김원기는 민주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으나 이원배 후보가 26,314표, 김원기 후보가 26,449표를 얻음으로써 거의 대등한 지지표를 획득하였지만 떨어지고 말았다. 이밖에도 한국국민당으로 출마한 유종기 후보가 있으나 그의 득표는 2,212표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출신별로 살펴보면

전종천 후보만이 고창군에서 단독으로 출마하였고 정주시와 정읍군에서 나머지 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자기 자신들의 지역표를 놓고 경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정주시와 정읍군의 표는 분산된 반면 고창군의 표는 전종천 후보에게 몰림으로써 다득표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읍면수	투표구수	인구수 (85.1.31)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14	78	135,843	75,120 (3,011)	60,185	1,174	61,357	13,761	81.7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성 명	주 소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한국국민당	유종기	정주시상동 498-3	대졸	동학사상연구소장	2,212	
신민주당	유갑종	정주시상동 18	〃	제8대 국회의원	37,688	당선
민주정의당	김종천	정주시시기2동 170-17	〃	치안본부치안감	68,248	당선
신한민주당	이원배	정읍군입암면봉양리 472	〃	정 치 인	26,314	
민주한국당	김원기	정주시수성동 450-14	〃	제10·11대국회의원	26,449	

13)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1980년 10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출범한 제5공화국은 경제실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였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어 가는 87년에 들어서서 국민들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한편으로 제5공화국은 88년도에 시행하는 하계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제5공화국 헌법을 고수한다는 4·13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를 기점으로 하여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폭발하자 민주정의당의 차기 대권후보자인 노태우는 민주화를 위한 6·29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헌법에 관한 개정작업이 진행되어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된 헌법이 공포되었다.

새 헌법은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어 전문(前文)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제5공화국의 헌법과 비교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헌법 편재상 제5공화국의 헌법이 '정부'를 '국회' 보다 앞에 놓아 두고 있으나 새롭게 개정된 헌법에서는 그 반대로 '국회'를 '정부' 앞에 배치함으로써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중시하고 있다. 둘째 대통령 선출에 있어서 제5공화국에서는 7,000인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으나 새로운 개정헌법에서는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셋째, 대통령 임기에 있어서 제5공화국 헌법은 7년 단임으로 하였으나 새 헌법에서는 5년 단임으로 하였다. 넷째, 구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새 헌법에서는 국회해산권의 권한을 삭제하였다. 다섯째, 국회의 권한에 대하여 구헌법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신 개정헌법은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감사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정기국회의 회기에 대해서 구헌법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새 개정헌법에서는 10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6공화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은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선거법에 관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 제5공화국 헌법이 지역구에 대하여 92개를 두고 1지역구에 의원 2인씩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으나, 신 개정헌법은 지역구를 224개로 늘리고 1구에 1인씩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② 전국구의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제5공화국 선거법이 지역구의 2분의 1로 하였으나 개정선거법에서는 3분의 1로 감축하였다.

③ 전국구 의석의 배분에 있어서 구선거법은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우선 배정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지역구 선거의 의석수에 있어 제2당 이하의 정당에게 그 의석의 비율로 배분하였으나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제1당이 된 정당이 지역구 총의석의 50% 미만일 때는 전국구 총의석의 2분의 1을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제2당 이하의 정당에 그 지역구 의석비율로 배분한다. 전국구 의석을 배분 받을 수 있는 정당은 5석 이상의 지역구를 얻은 정당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선거 결과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전국적으로 평균 75.8%의 투표율을 보였다.

정당별로 득표상황을 보면 민주정의당이 33.96%를, 평화민주당이 19.26%를, 통일민주당 23.83%를, 신민주당이 15.59%를, 그리고 한겨레민주당이 1.25%를 각각 얻었으나 나머지 정당들, 즉 민주한국당, 한국 국민당, 기독성민당, 민중의당, 사회민주당, 우리정의당, 제3세대당, 한국의통일 한국당 등은 1%미만에 머물렀다. 그러나 무

소속은 4.75%를 획득했다.

지역구 당선자의 경우를 보면 민정당이 총 224석 중에서 87석을, 평화민주당이 54석을, 통일민주당이 46석을, 신민주공화당이 27석, 한겨레민주당이 1석, 그리고 무소속이 9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전국구 의석의 배분은 민주정의당에 38석, 평화민주당에 16석, 통일민주당에 13석, 신민주공화당에 8석이 각각 배분되었다. 결과적으로 총의석 299석 중에서 민주정의당이 125석, 평화민주당이 70석, 통일민주당이 59석, 신민주공화당이 35석, 한겨레민주당이 1석, 무소속이 9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특징은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야당인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 이상의 의석들을 확보하여 이른 바 4당체제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총득표율에서는 통일 민주당에 4% 이상 뒤진 평화민주당이 의석수에 있어서는 통일민주당을 8석이나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소선거구제가 지니는 특성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번 13대 선거가 이른바 지역감정에 의하여 지역성을 크게 띠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정의당은 경북 · 강원 · 충북 및 경기에서 득세한 반면, 평화민주당은 전남 · 북과 서울에서, 통일민주당은 부산과 경남에서, 신민주공화당은 충남과 충북 일부에서 강세를 보였던 것이다. 서울의 경우는 평민당이 다소 우위를 차지한 반면, 민정당 · 민주당 · 공화당이 각축전을 벌였다.

고창군의 경우 투표율은 81.6%로 전국 평균의 75.8%를 상회하고 있다.

후보자별 득표상황은 평화민주당의 정균환 후보가 31,188표를 차지하여 총 유효투표의 54.3%를 얻음으로써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정균환 후보가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른 바 '황색바람' 이라고 하는 평화민주당의 바람이 고창지역에도 거세게 몰아쳤기 때문이다. 전라 남 · 북도의 어느 선거구에서도 평화민주당은 압승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 이외에도 유권자수가 많은 정씨 문중의 지지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연의 지원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79	121,679	71,420 (2,887)	57,425	856	58,281	13,139	81.6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기호	성 명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민주정의당	1	이호종	대 졸	제10대 국회의원	13,159(22.9%)	
통일민주당	2	정재길	〃	전북대교수	2,421(4.2%)	
평화민주당	3	정균환	〃	평화당조직4국장	31,188(54.3%)	당선
무소속	4	노동채	〃	언 론 인	10,657(18.5%)	

14)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1992년 3월 24일에 실시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등록된 후보자수는 지역구 1,052명, 전국구 154명 등 총 1,206명으로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는 총 유권자수 29,003,828명중 20,843,482명이 참여 71.9%의 투표율을 보여 역대 국회의원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개표결과 지역구는 민주자유당 116명, 민주당 75명, 통일국민당 24명, 신정당 1명, 무소속 21명이 당선되었으며, 전국구는 지역구의 의석비율에 따라 민주자유당에 33명 민주당에 22명, 통일국민당에 7명이 배분되어 국회의원 총 당선자는 민주자유당 149명, 민주당 97명, 통일국민당 31명, 신정당 1명, 무소속 21명이 되었다. 그러나 공명민주당, 민중당은 이번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등록하였으나 당선된 후보자가 한 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함으로써 92년 3월 30일 정당법 제3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공명선거정당협의회개최 등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 등의 선거법준수 및 깨끗하고 질서 있는 선거운동유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대처, 그리고 언론기관, 각종사회단체, 직능단체, 학교 등의 협조·연계를 통한 국민의식개혁운동의 범국민적인 전개 등 공명선거 정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역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평온하고 질서 있는 가운데 공명하게 치러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14대 고창군의 국회의원 선거는 총유권자 64,004명중 49,669명의 투표로

투표율은 77.6%이며 전국 평균 (71.9%)을 5.7% 상회하고 있으며 기호 1번 민주자유당의 이호종 후보와 기호 2번인 민주당의 정균환 후보, 기호 3번 통일국민당의 노동채 후보가 경합을 벌여 정규환 후보가 26,061표로 총 유효투표수의 53.2%를 차지하여 당선되었다.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제13대

에 이어 황색바람의 열풍과 정균환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 투표상황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78	95,858	64,004	48,963	706	49,669	14,335	77.6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기호	성 명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민주자유당	1	이호종	대 졸	제10대국회의원	17,868(36.5%)	
민 주 당	2	정균환	〃	제13대국회의원	26,061(53.2%)	당선
통일국민당	3	노동채	〃	언 론 인	5,034(10.3%)	

15)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96년 4월 11일에 실시한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이후 처음 실시된 총선거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후보자 등록 수는 전국구 161명, 지역구 1,389명 총 1,550명이며, 지역구후보자의 평균 경쟁률은 5.5:1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의 평균 경쟁률 4.4:1(제13대국선시 4.7:1)보다 높았으며, 67년 제7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는 총 유권자수 31,488,294명(남자 15,490,279, 여자 15,998,015)으로 인구수45,928,048('96. 3. 20 현재)의 68.6%였으며, 지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수와 비교하여 보면 2,484,466명(6.8%)증가 하였다.

개표결과 지역구는 신한국당 121명, 새정치국민회의 66명, 통합민주당 9명, 자유민주연합 41명, 무소속 16명이 당선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법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선거법에서 포괄적 제한, 금지규정을 폐지하고, 개별적 제한, 금지규정으로 제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가 대폭 확대되었다.

따라서 합동연설회와 정당, 후보자 연설회 등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 보다는 후보

자가 직접 유권자를 대면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등 개별적인 선거운동방법이 널리 활용되어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안정되고, 질서 있고 공명하게 치러졌다. 제14대 고창군의 국회의원 선거는 총유권자 59,723명중 43,236명의 투표로 투표율은 72.39%이며, 기호1번 신한국당 김주섭, 기호2번 새정치국민회의 정균환 후보가 경합을 벌여 정균환 후보가 27,575표로 총 유효투표자수의 67%을 차지하여 당선되었다.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은 정균환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현황

□ 투표상황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52	84,559	59,723	40,968	2,268	43,236	16,487	72.4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기호	성 명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신 한 국 당	1	김주섭	대 졸	신한국당위원장	13,393	
새정치국민회의	2	정균환	대 졸	제14대국회의원	27,575	당선

16)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2000년 4월 13일(목)에 실시한 제16대 국회의원선거는 국회의원정수가 26석이 감소되고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 기간중에 구·시·군 선관위에 설치하도록 하는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었으며 고창,부안 선거구가 통합되어 1개 선거구로 실시되었다.

후보자 등록수는 전국구 139명, 지역구 1,040명 총 1,179명이며, 지역구후보자의 평균 경쟁률은 4.6:1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평균 경쟁률 5.5:1보다 낮았다.

투표는 총유권자수 33,482,387명(남자 16,436,931명, 여자 17,045,456명)으로 인구수 47,424,300(2000.3.22현재)의 70.6%였으며, 지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수와 비교하여 보면 1,994,093명(6.3%)증가 하였다.

개표결과는 한나라당 133명, 새천년민주당 115명, 자유민주연합 17명, 민주국민당 2명, 희망의 한국신당 1명, 무소속 5명이 당선되었다.

제16대 고창·부안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는 총유권자 114,266명중 73,491명의 투표로 투표율은 64.3%이며, 기호 2번 새천년민주당의 정균환 후보가 50,873표로 총 유효투표자수의 70.6%을 차지하여 당선되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현황

□ 고창·부안 선거구 투표상황

위원회명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고창군	33	75,789	56,673	36,851	830	37,681	18,992	66.5
부안군	40	76,992	57,593	35,175	635	35,810	21,783	62.2
계	73	152,781	114,266	72,026	1,465	73,491	40,775	64.3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기호	성 명	생년월일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한나라당	1	이 백 용	36.10.19	초 졸	평통고창군위원장	2,288	
새 천 년 민 주 당	2	정 균 환	43. 7.23	대학원졸	국민회의 사무총장 김대중총재특보단장	50,873	당선
자유민주연 합	3	김 손	47.12.18	대 졸	김종필명예총재특보	2,878	
무 소 속	4	김 경 민	54. 6.18	대 졸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부의장	8,241	
무 소 속	5	김 종 엽	43. 3.17	미 기 재	재경부안군향우회장 신일금속센터(주)대표	5,897	
무 소 속	6	오 인 석	52. 5.25	미 기 재	김대중대통령후보 수행비서 및 보좌역	1,849	

17)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2004년 4월 15일(목)에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국회의원정수가 26석이

증가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되었으며, 예비후보자 등록제도가 시행되어 종전의 후보자등록 시점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 서로 먼저 등록을 하려던 진풍경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제16대에 이어 고창 · 부안 선거구가 통합되어 1개 선거구로 실시되었다.

후보자 등록수는 전국구 190명, 지역구 1,175명이며, 지역구 후보자의 평균 경쟁률은 4.8:1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평균 경쟁률 4.6:1과 비슷했다.

투표는 총선거인수 35,596,497명(남자 17,490,343명, 여자 18,106,154명) 중 총투표자수 21,581,550로 60.6%이었으며, 이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시의 선거인수 33,482,387명 보다 2,114,110명(5.9%)이 많은 수이다.

개표결과는 전체 299석 중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4석, 기타 3석으로 구성되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주요 특징적인 사항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 그동안의 여소야대 국회가 거대 여당체제로 전환되었고, 최초로 도입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시행에 힘입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이 원내 입성하였으며, 총 299명의 국회의원 중 211명이 초선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3~40대 의원비율이 4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여성의원의 비율도 13%(39명)로 두 자리 숫자로 크게 증가하였다.

제17대 고창 · 부안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는 총유권자 106,145명중 65,607명의 투표로 투표율은 61.8%이며, 우리당의 김춘진 후보가 23,328표로 총 유효투표자 수의 35.6%을 차지하여 당선되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현황

□ 고창 · 부안 선거구 투표상황

위원회명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고창군	33	66,775	52,471	32,904	597	33,501	18,970	63.8
부안군	40	68,004	53,674	31,427	679	32,106	21,568	59.8
계	73	134,779	106,145	64,331	1,276	65,607	40,538	61.8

□ 후보자별 득표상황

가) 정당별 득표상황

위원회명	선거인수	투표수	정당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국민통합21	공화당	민주노동당	그외	계		
고창군	52,471	33,503	985	8,651	17,029	326	403	963	2,979	1,262	32,598	905	18,968
부안군	53,674	32,106	1,351	7,776	13,070	431	1,721	150	5,373	1,227	31,099	1,007	21,568
계	106,145	65,609	2,336	16,427	30,099	757	2,124	1,113	8,352	2,489	63,697	1,912	40,536

나)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기호	성 명	생년월일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한나라당	1	김 준	42.06.05	대학원졸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한나라당 위원장	1,221	
민주당	2	정균환	43.07.23	대학원졸	국민회의 사무총장 김대중총재특보단장	19,204	
열린우리당	3	김춘진	53.01.24	대학원 박사	전 대통령 의료자문의 대한보건협회 부회장	23,328 (36.26%)	당선
자민련	4	김영두	37.04.17	중학 중퇴	1998,2002 도의원입후보 새만금완공범전북 도민총연대공동대표	563	
무소속	5	김경민	54.06.18	대 졸	새정치국민회의정책 위원회 부의장	10,575	
무소속	6	김옥현	42.02.05	대학원 수료	사)밀알중앙회 부총재 밀알중앙회 전북지구회장	1,091	
무소속	7	김주섭	10.10.01	대학원 석사	국무총리정무수석 비서관 한국담배인삼공사초대감사	7,787	
무소속	8	조민구	47.02.07	대학원 졸업	15대 국회의원 출마 한국정치·정보학회 위원	562	

□ 읍면 투표구별 후보자 득표현황(고창군)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	자민련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 준	정균환	김춘진	김영두	김경민	김옥현	김주섭	조민구			
합계	52,471	33,501	413	11,068	11,667	192	1,572	891	6,908	193	32,904	597	18,970
부재자	1,709	1,495	2	603	487	29	86	11	228	5	1,451	44	214
고창읍1	3,226	2,044	16	656	788	5	102	43	406	7	2,023	21	1,182
고창읍2	1,685	1,046	12	325	395	7	66	24	204	1	1,034	12	639
고창읍3	1,406	865	2	272	353	3	30	41	153	5	859	6	541
고창읍4	1,958	1,232	6	459	441	3	55	31	223	2	1,220	12	726
고창읍5	1,601	984	18	308	359	2	55	34	189	6	971	13	617
고창읍6	1,944	1,260	9	380	463	5	87	98	199	6	1,247	13	684
고창읍7	1,893	1,227	11	405	501	6	51	27	209	2	1,212	15	666
소계	15,422	10,153	76	3,408	3,787	60	532	309	1,811	34	10,017	136	5,269
고수면1	1,068	680	11	180	265	5	54	32	106	8	661	19	388
고수면2	1,434	927	14	268	350	6	60	38	168	7	911	16	507
소계	2,502	1,607	25	448	615	11	114	70	274	15	1,572	35	895
아산면1	2,020	1,289	16	393	445	7	49	30	309	11	1,260	29	731
아산면2	963	576	11	212	199	2	13	28	90	11	566	10	387
소계	2,983	1,865	27	605	644	9	62	58	399	22	1,826	39	1,118
무장면1	1,499	896	8	326	283	6	20	20	207	7	877	19	603
무장면2	1,702	1,037	14	415	292	4	31	26	225	7	1,014	23	665
소계	3,201	1,933	22	741	575	10	51	46	432	14	1,891	42	1,268
공음면1	1,660	1,046	16	371	392	2	24	27	193	4	1,029	17	614
공음면2	1,237	776	7	334	231	2	25	14	153	6	772	4	461
소계	2,897	1,822	23	705	623	4	49	41	346	10	1,801	21	1,075
상하면1	1,063	672	9	194	235	1	50	13	148	6	656	16	391
상하면2	1,501	872	13	274	238	6	120	15	169	11	846	26	629
소계	2,564	1,544	22	468	473	7	170	28	317	17	1,505	42	1,020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	자민련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 준	정균환	김춘진	김영두	김경민	김옥현	김주섭	조민구			
해리면 1	1,904	1,191	23	399	404	5	56	42	231	4	1,164	27	713
해리면 2	1,333	785	19	316	241	4	29	9	156	4	778	7	548
소계	3,237	1,979	42	715	645	9	85	51	387	8	1,942	34	1,261
성송면 1	1,291	851	9	343	274	10	36	30	125	4	831	20	440
성송면 2	826	542	7	241	151	1	17	12	102	3	534	8	284
소계	2,117	1,393	16	584	425	11	53	42	227	7	1,365	28	724
대산면 1	2,221	1,458	17	650	470	10	65	36	184	6	1,438	20	763
대산면 2	1,767	1,111	17	321	475	8	38	23	199	13	1,094	17	656
소계	3,988	2,569	34	971	945	18	103	59	383	19	2,532	37	1,419
심원면 1	1,411	930	16	460	260	9	38	16	100	7	906	24	481
심원면 2	1,352	842	10	430	232	3	35	22	92	5	829	13	510
소계	2,763	1,772	26	890	492	12	73	38	192	12	1,735	37	991
흥덕면 1	1,739	1,128	16	269	360	6	53	9	378	6	1,097	31	611
흥덕면 2	1,536	901	11	170	362	7	34	12	285	4	885	16	635
소계	3,275	2,029	27	439	722	13	87	21	663	10	1,982	47	1,246
성내면 1	1,383	933	6	100	281	5	31	15	469	3	910	23	450
성내면 2	863	541	11	50	162	2	24	7	267	5	528	13	322
소계	2,246	1,474	17	150	443	7	55	22	736	8	1,438	36	772
신림면 1	1,401	882	11	259	318	4	19	23	226	8	868	14	519
신림면 2	1,008	653	12	192	246	2	13	21	157	2	645	8	355
소계	2,409	1,535	23	451	564	6	32	44	383	10	1,513	22	874
부안면 1	1,644	1,093	20	297	444	8	79	34	185	4	1,071	22	551
부안면 2	1,223	718	13	190	260	7	26	28	172	3	699	19	505
소계	2,867	1,811	33	487	704	15	105	62	357	7	1,770	41	1,056
잘못투입된투표지	0	18	0	6	10	0	1	0	1	0	18	0	-18

□ 읍면 투표구별 후보자 득표현황(부안군)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	자민련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 준	정균환	김춘진	김영두	김경민	김옥현	김주섭	조민구			
합계	53,674	32,106	808	8,136	11,661	371	9,003	200	879	369	31,427	679	21,568
부재자	1,637	1,354	23	248	591	35	291	5	58	18	1,269	85	283
부안읍1	2,132	1,210	44	304	475	7	306	12	39	8	1,195	15	922
부안읍2	1,775	1,084	58	314	313	14	283	6	25	8	1,021	13	741
부안읍3	1,911	1,109	35	325	390	5	298	5	24	11	1,093	16	802
부안읍4	2,383	1,359	40	329	518	5	387	41	37	9	1,329	30	1,024
부안읍5	2,286	1,359	26	386	448	18	416	5	25	16	1,340	19	927
부안읍6	3,097	1,843	29	480	637	11	612	5	45	11	1,830	13	1,254
부안읍7	1,428	814	19	203	343	5	200	5	16	7	798	16	614
소계	16,649	10,082	274	2,589	3,715	100	2,793	47	269	88	9,875	207	6,567
주산면1	1,115	665	28	101	284	11	204	4	13	7	652	13	450
주산면2	1,272	807	31	143	297	5	274	7	18	9	784	23	465
소계	2,387	1,472	59	244	581	16	478	11	31	16	1,436	36	915
동진면1	1,696	991	36	271	415	8	210	2	16	10	968	23	705
동진면2	853	544	16	149	228	4	100	3	28	4	532	12	309
동진면3	1,280	754	23	169	293	5	225	5	16	9	745	9	526
소계	3,829	2,289	75	589	936	17	535	10	60	23	2,245	44	1,540
행안면1	1,179	722	13	212	228	3	235	4	12	7	714	8	457
행안면2	1,205	694	25	159	228	5	240	1	17	10	685	9	511
소계	2,384	1,416	38	371	456	8	475	5	29	17	1,399	17	968
계화면1	1,503	812	13	188	254	8	319	8	5	5	800	12	691
계화면2	1,277	712	14	153	233	8	263	5	17	5	698	14	565
계화면3	1,196	600	6	53	285	4	213	2	19	5	587	13	596
계화면4	790	434	8	77	152	5	163	1	13	3	422	12	356
소계	4,766	2,558	41	471	924	25	958	16	54	18	2,507	51	2,208
보안면1	810	508	14	179	157	1	118	4	13	11	497	11	302
보안면2	963	599	20	199	160	10	139	7	43	5	583	16	364
보안면3	1,205	775	17	231	244	7	205	8	44	5	761	14	430
소계	2,978	1,882	51	609	561	18	462	19	100	21	1,841	41	1,096

투표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	자민련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김 준	정균환	김춘진	김영두	김경민	김옥현	김주섭	조민구			
변산면 1	1,665	910	23	404	211	6	214	2	17	7	884	26	755
변산면 2	866	494	16	207	96	9	133	5	8	4	478	16	372
변산면 3	1,750	998	27	494	111	29	278	6	18	11	974	24	752
소계	4,281	2,402	66	1,105	418	44	625	13	43	22	2,336	66	1,879
진서면 1	1,664	948	17	290	232	16	321	7	40	8	931	17	716
진서면 2	465	288	10	86	86	4	80	2	15	2	285	3	177
진서면 3	415	255	7	63	84	5	75	3	12	1	250	5	160
소계	2,544	1,491	34	439	402	25	476	12	67	11	1,466	25	1,053
백산면 1	1,828	1,170	18	268	519	7	271	11	22	27	1,143	27	658
백산면 2	1,142	732	25	162	258	6	168	6	11	76	712	20	410
백산면 3	416	298	1	92	128	2	58	1	4	8	294	4	118
소계	3,386	2,200	44	522	905	15	497	18	37	111	2,149	51	1,186
상서면 1	1,630	1,048	17	145	302	18	494	7	30	5	1,018	30	582
상서면 2	824	531	8	155	181	6	166	1	7	1	525	6	293
소계	2,454	1,579	25	300	483	24	660	8	37	6	1,543	36	875
하서면 1	1,326	807	21	144	286	11	306	5	15	8	796	11	519
하서면 2	1,027	558	12	122	164	9	220	4	8	6	545	13	469
하서면 3	951	502	11	92	184	38	150	1	13	3	492	10	449
소계	3,304	1,867	44	358	634	58	676	10	36	17	1,833	34	1,437
줄포면 1	2,118	1,242	30	315	536	9	248	14	57	5	1,214	28	876
줄포면 2	495	296	10	58	160	1	40	1	17	3	290	6	199
줄포면 3	556	342	11	54	201	3	45	2	12	3	331	11	214
소계	3,169	1,880	51	427	897	13	333	17	86	11	1,835	45	1,289
위도면 1	1,270	758	6	97	562	6	27	14	21	8	741	17	512
위도면 2	273	196	0	2	179	1	1	0	7	0	190	6	77
소계	1,543	954	6	99	741	7	28	14	28	8	931	23	589
잘못투입된투표지		34	0	13	8	1	7	0	2	0	31	3	- 34

1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2008년 4월 9일(수)에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는 고창,부안 선거구가 통합되어 1개 선거구로 실시되었다. 후보자 등록수는 고창 · 부안지역에서 3명으로 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부안지역 후보가 2명, 고창지역 후보가 1명이 나왔다.

제18대 고창 · 부안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는 총유권자 100,245명중 47,292명의 투표로 투표율은 47.2%이며, 기호 1번 통합민주당의 김춘진 후보가 35,662표로 총 유효투표자수의 77.4%을 차지하여 재선에 성공하였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현황

□ 고창 · 부안 선거구 투표상황

위원회명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고창군	33	60,962	49,730	23,095	642	23,737	25,993	47.7
부안군	40	62,310	50,515	22,971	584	23,555	26,960	46.6
계	73	123,272	100,245	46,066	1,226	47,292	52,953	47.2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기호	성 명	생년월일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통합민주당	1	김 춘 진	53.01.24	대학원졸	국회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의료자문의	35,662	당선
한나라당	2	김 종 훈	60.06.06	대 졸	한나라당 전북도당 대변인 전북 근대5종연맹회장	6,571	
평화통일 가정당	3	서 동 주	65.03.07	대학원졸	한국일본미국목회 선교15년 세계평화청년연합 전북회장	3,833	

19)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년 4월11일(수)에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최초의 선거로, 1개 선거구(고창 · 부안)로 실시되었다. 후보자 등록수는 고창 · 부안지역에서 3명으로 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부안지역 후보가 2명, 고창지역 후보가 1명 나왔다.

제19대 고창 · 부안 선거구의 국회의원 선거는 총유권자 99,797명 중 60,108명의 투표로 투표율은 60.2%이며, 기호2번 민주통합당 김춘진 후보가 23,097표로 총 유표투표자수의 39.3%를 차지하여 3선에 성공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현황

□ 고창 · 부안 선거구 투표상황

위원회명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표자수			기권자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고창군	33	60,962	49,730	23,095	642	23,737	25,993	47.7
부안군	40	62,310	50,515	22,971	584	23,555	26,960	46.6
계	73	123,272	100,245	46,066	1,226	47,292	52,953	47.2

□ 후보자별 득표상황

정당명	기호	성 명	생년월일	학력	경 력	득표수	비고
민주통합당	2	김춘진	53.01.24	대학원졸	국회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의료자문의	23,097	당선
무소속	6	김만균	56.11.22	대학원졸	재경고창청년회 초대회장 ㈜성산무역 대표이사	15,782	
무소속	7	김종규	51.11.08	대학원졸	민선제3기 부안군수 전북사랑나눔이사장	19,819	

□ 역대 국회의원 선거일

역대별	공 고 일		선 거 일		선거기간(일)	임기(년)	선거구수	의원정수(명)	비 고(해 산)
	년월일	요일	년월일	요일					
초대(제헌)	1948.8.30	화	1948.5.10	월	42	2	200	200	
제 2 대	1950.4.12	수	1950.5.30	화	49	4	210	210	
제 3 대	1954.4.7	수	1954.5.20	목	44	4	203	203	
제 4 대	1958.3.31	월	1958.5.2	금	33	4	233	233	60.6.23
제 5 대	1960.6.27	월	1960.7.29	금	33	4	233	233	61.5.16
제 6 대	1963.10.26	토	1963.11.26	화	32	4	131	175	
제 7 대	1967.5.8	월	1967.6.8	목	32	4	131	175	
제 8 대	1971.5.1	토	1971.5.25	화	25	4	153	204	72.10.17
제 9 대	1973.2.9	금	1973.2.27	화	19	6	73	219	
제 10대	1978.11.24	금	1978.12.12	화	19	6	77	231	80.10.27
제 11대	1981.3.5	목	1981.3.25	수	21	4	92	276	
제 12대	1985.1.23	수	1985.2.12	화	21	4	92	276	
제 13대	1988.4.8	금	1988.4.26	화	19	4	224	299	
제 14대	1992.3.7	토	1992.3.24	화	18	4	237	299	
제 15대	법정화		1996.4.11	목	17	4	253	299	
제 16대	법정화		2000.4.13	목	17	4	227	273	
제 17대	법정화		2004.4.15	목	14	4	243	299	
제 18대	법정화		2008.4.9	수	14	4	245	299	
제 19대	법정화		2012.4.11	수	14	4	246	300	

나. 참의원 선거

1952년 발췌개헌(拔萃改憲) 이후 헌법은 국회를 양원(兩院)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의원 의원만을 선출하여 오던 국회는 1958년에 치르게 될 제4대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법개정 문제가 대두되었다. 야당은 각급 선거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입후보자 등록절차의 간소화, 선거의 공명성 확보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여당은 이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대폭 제한, 선거공영제의 실시, 선거자금의 제한, 선거사범의 벌칙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두 개의 개정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법안의 상정과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파란이 예상되었다. 이에 대해서 여야는 80차례의 협상을 거쳐서 양안을 절충한 단일협상안을 작성하여 1958년 1월 민의원 의원선거와 참의원 의원선거를 분리한 '민의원의원 선거법(民議院議員選擧法)'을 공포하였다.

참의원 의원 선거법은 선거구를 각 시(市), 도(道) 단위로 하여 인구 60만에 2인씩 선출하는 것과 선거구 수를 30개, 의원정수를 70인으로 할 것을 골자로 하였다. 그 외에 선거에 관한 일반사항은 민의원선거법을 준용(準用)토록 하였고 법 공포 후 1년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의원선거는 실시되지 못하고 1960년 4 · 19를 맞이하게 되었다. 4 · 19 이후 제2공화국을 위한 개헌작업이 진행되었는데 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內閣責任制)와 양원제(兩院制)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의원 선거와 관련된 조항도 수정되었는데, 1958년에 마련된 참의원 선거법과 비교하여 볼 때 몇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① 선거구를 서울특별시와 도(道)단위로 하고 의원정수를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2인 내지 8인으로 하였으나 3년마다 2분의 1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정당별 당선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자가 해당선거구 의원정수의 반수 이하의 후보자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제한연기투표제(制限連記投票制)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선거법에 의하여 1960년 7월 29일에 전국 233개의 선거구에서 총선거인의 84.3%가 참여한 가운데 제5대 민의원선거와 더불어 초대 참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대선거구제 실시로 후보자는 최저 7인에서 최고 34인까지 출마하였으며, 정치의식과 수준이 낮은 관계로 서울을 제외한 그밖의 9개의 도에서 기호 1번이 전부 당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은 총의석의 53.4%인 31석을 차지하였고 자유당은 겨우 4석만을 얻었다. 그 외에 사회당, 한국사회당 등이 각 1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무소속의 당선자는 전체의 34.5%인 20명이었다.

대선거구제와 제한연기투표제에 의하여 민주당은 39.0%의 득표로 53.4%의 의석을 차지한 반면에 무소속은 49.3%의 득표율로 총의석의 34.5%만을 차지하였다.

전라북도의 경우 도 전역을 2부로 나누고 선거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은 85.5%로서 전국 평균인 84.1%와 거의 비슷한 투표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선거결과 6명

의 참의원 정원 가운데 민주당이 4명, 무소속이 2명의 후보를 당선시켰다.

고창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고창 출신의 강택수 후보가 민주당의 공천을 얻어 참의원 부의장으로 피선된 소선규 의원에 이어 차점자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다.

□ 초대 참의원선거 현황

후보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및 경 력	소속정당및 단체명	득표수	비고
계			16인			1,878,900	
양 춘 근	남	36	무 직	청주대졸, 육군 대령	무 소 속	163,181	당선 2부
강 택 수	〃	53	〃	일본동양대졸, 전주사범교장	민 주 당	197,071	당선 1부
유 수 복	〃	45	〃	전주고보졸, 도의원	〃	133,392	
엄 민 영	〃	45	변호사	일본구주상대졸, 미시카고 대학원졸, 경희대법대학장	〃	133,459	당선 2부
이 승 목	〃	59	무 직	明大전문부졸	무 소 속	53,734	
송 방 용	〃	47	이 사	연전졸, 제2·3대 민의원	〃	165,206	당선 1부
민 정 식	〃	61	무 직	와세다 대졸 민주당중앙상임위원	민 주 당		사퇴
신 규 식	〃	53	민의원	와세다 대졸 제3·4대 민의원	자 유 당	93,573	
박 동 근	〃	47	광 업	상고졸, 도의회 의장	무 소 속	53,740	
이 우 식	〃	58	변호사	경성법전 졸, 대법관	〃	91,748	
김 기 옥	〃	45	변호사	변호사 시험합격	민 주 당	124,514	
이 요 한	〃	61	농 업	佛專 2년 졸 제헌의원 · 전북지사	자 유 당	79,984	
노 긍 식	〃	56	문교재 단이사	고려대 졸, 서울시상공국장	무 소 속	46,668	
엄 병 학	〃	42	농 업	전주고보 4년 수료 제2대 민의원	민 주 당	139,983	당선 2부
소 선 규	〃	56	정치인	福島高 상졸 민주당정책위원회의장	〃	264,695	당선 1부
김 수 학	〃	64	회 사 중 역	京都帝大 졸, 제2대 민의원	자 유 당	67,259	
김 봉 두	〃	54	농 업	일본 明大 졸, 제헌의원	무 소 속	70,883	
김 대 용	〃	47	변호사	九州帝大 졸, 판사	〃		사퇴

□ 초대 참의원 정당별 당선 상황

구분 \ 정당별	민주당	자유당	무소속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한국독립당	기타단체	합계
후보자수	60	11	115	7	2	1	5	201
당선자수	31	4	20	1	1	–	1	58

2. 지방 선거

□ 광역 단체장 선거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결과 전라북도지사는 민주당의 유종근씨가 623,295표 득표율 67.2%를 획득하여 민주자유당의 강현욱씨를 제치고 초대 민선도지사에 당선되었으며,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전라북도지사 선거 역시 새정치국민회의 유종근 도지사가 단독출마 758,141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가. 도의원(광역의회 의원) 선거

1) 제1대 도의원 선거

제헌헌법은 제96조와 제97조에서 지방의회 구성을 포함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다. 제헌국회는 이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정을 서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즉각적인 실시를 주장하는 국회와 분권화(分權化)에 따르는 집권의 불안을 고려하여 법률공포 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실시하자는 李承晩측과의 정치적 대립으로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에야 제정 공포하였다. 이 초대 지방자치법은 다시 동년 12월 제1차 개정을 거쳐 수정 보완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서울시와 도 및 시·읍·면으로 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내에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켜 상호견제케 한다.
③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지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한다.
④ 집행기관으로 서울시에는 서울시장, 도에는 도지사, 그리고 시·읍·면에는 각각 시·읍·면장을 두며 이들 중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들에 의하여 간접 선출된다.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마련된 이후에도 정부는 지방자치의 실시를 계속 미루어 오다가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자 1950년 12월에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한국동란(韓國動亂)이 발발함으로써 무산되었다. 그러다가 이승만 정부는 갑자기 1952년 4월 임시수도를 부산에 두고 있는 전쟁의 와중 속에서 지방의회선거를 공포하였는데, 이것은 대통령 직선개헌을 위해 반국회운동을 전개할 의도를 지닌 이승만의 책략의 일환으로 이해되었다. 이승만은 국회의 간선에 의해서 다시 대통령으로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직선개헌을 시도하였는데 원외자유당의 세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를 장악하도록 하여 반국회운동을 전개할 발

판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지방의회선거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전쟁 중에 선거가 치루어진 지방자치법 중에서 지방자치장 선출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의 선출에 관한 조항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회의원선거에서와 같이 선거권 연령은 만21세 이상이며, 금치산자(禁治産者) 나 형집행(刑執行) 중에 있는 자 등이 아닌 자로서 6개월 이내 동일자치단체(同一自治團體)의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이면 모두 선거권이 주어진다.

②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선거권자에게 주어지며 특정한 공직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선거구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도의회의원 선거구는 행정구역인 시 · 군 · 구의 구역으로 한다. 인구 30만 이상의 시는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나눌 수 있고 각 선거구의 의원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선거구에서 다수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시.읍.면 의회 의원의 선거구 분할 및 의원정수는 도규칙(道規則)으로 정하되 이 역시 1선거구에서 다수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④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점자 순위에 의하고 후보자가 의원정수에 미달할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도록 한다.

□ 전라북도의원 소속정당 사회단체 일람표

시군명	의원정수	자유당	민주당	한 청	국민회	무소속
계	32	16	1	6	1	8
전주시	2	1				1
군산시	2	1	1			
이리시	1	1				
진안군	2					2
금산군	2	2				
무주군	1	1				
장수군	1			1		
임실군	2	2				
고창군	4	3		1		
부안군	3	1				2
김제군	5	2		2	1	
옥구군	3	1		1		1
익산군	4	1		1		2

□ 도의원 당선 상황표

의원정수	유권자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4	64,659	54,518	51,586	3,322

□ 제1대 도의원 선거현황

후보자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정 당	득 표	비고
안기남	1914. 2.14	대산면 매산리	농 업	중졸	면 장	자유당	11,129	당선
박동차	1903. 7. 5	고창읍 읍내리	〃	대졸	중학교장	〃	7,516	〃
배상기	1923. 2.25	고창읍 읍내리	〃	전졸	한청군부단장	한 청	7,046	〃
박성열	1916. 1.12	무장면 무장리	〃	중졸	면 장	자유당	6,413	〃
정순묵	1906. 6.14	성송면 계당리	광 업	〃	회사사장	〃	5,021	차점
국훈엽	1913. 5.14	흥덕면 흥덕리	농 업	국졸	〃	무소속	3,775	
이승연	1916. 3.20	정주시 수성동	기 자	중졸	학 원 장	〃	4,035	
이창규	1906. 2. 2	심원면 연화리	농 업	〃	면 장	〃	3,496	
김재옥	1916. 1.10	전주시 전동 121	변호사	대졸	판 사	〃	3,155	

이러한 선거규정에 의하여 전선(戰線)에 인접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와 계엄령이 선포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었다.

1952년 5월 10일에 실시된 전국 도의회 의원선거는 총선거인의 81%가 투표에 참가하여 306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다. 선거결과 야당인 민주당(民主黨)은 4명의 당선자를 내는데 그친 반면 여당인 자유당은 의원 총수의 48%인 147석으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한청(韓靑), 노총(勞總), 국민당(國民黨)등의 친여세력을 합하면 여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0%에 달하였다.

고창군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의원 소속정당 사회단체 일람표>에서 보는 것처럼 4인의 정수에서 자유당이 3석, 한청(韓靑)이 1석씩을 차지하였다. 또한 정원 4석을 놓고서 9인의 후보가 경쟁하여 2.3대 1의 경쟁력을 보였다.

2) 제2대 도의원 선거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 파동이 지나고 제3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지방자치법은 1956년 2월과 7월, 2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형태와 지방선거의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시·읍·면장이 지방의회에 간접 선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주민에 의한 직접 선출로 바뀐 것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권(不信任權)이 폐지된 것이다.

이밖에 또 다른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선거권에 있어서 주소 요건을 6개월에서 90일로 완화하였고 둘째, 금고(禁錮)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사면된 후 3년까지 그 피선거권을 제한하였다는 것과 셋째, 선거구에 있어 서울특별시·도의회 의원선거구는 민의원 의원선거구를 분할·확정하여 1구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서울특별시와 도의원 선거가 1956년 8월 13일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었는데, '여촌야도(與村野都)'의 투표현상이 나타났다. 도시성이 약한 충청북도에서는 의원정수 30석 중에서 1석을 제외하고는 자유당이 전 의석을 차지하였고, 강원도의 경우도 총25석 중에서 2석을 제외한 23석을 자유당이 차지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의원정수 47명 중 자유당은 단 1석을 차지하였을 뿐이고 민주당이 40석,

무소속이 5석, 그리고 농민회가 1석을 차지하였다. 부산의 경우에도 19석 중에서 4석만을 자유당이 차지하였을 뿐이고 무소속이 10석, 국민회가 3석, 민주당이

2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대구의 경우 총 9석 중에서 2석만을 자유당이 차지하였고, 민주당이 6석, 무소속이 1석을 각각 얻었다.

전라북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원 44석 중에서 자유당이 16석, 민주당이 6석, 그리고 나머지 22석을 무소속이 차지하였다.

제2대 도의원 선거 현황

□ 제1선거구

후보자	성별	나이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배 상 기	남	35	고창군 고창읍 85	양조	대 졸	도의원	자유	12,139	당선
김 인 석	〃	38	고창 대산 중산리	농업	중 졸	수리조합장	자유	9,126	차점

□ 제2선거구

후보자	성별	나이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국 훈 염	남	43	고창 흥덕 흥덕리	농업	중 졸	회사사장	자유	5,945	당선
이 승 연	〃	40	고창 부안 오산 183	〃	정치학교졸	당 원	민주	5,256	차점
김 영 춘	〃	41	고창 신림 법지 205	〃	경학원졸	면 장	무	1,595	
유 열 석	〃	53	고창 신림 외화리	〃	중 졸	면 의 원	자유	3,130	
김 이 수	〃	35	고창 부안 용산 490	〃	전 문 졸	교 원	무	2,073	
윤 형 중	〃	43	고창 부안 사창리	〃	중 졸	면 의 원	〃	860	
유 제 환	〃	36	고창 아산 목동리	〃	〃	면 장	〃	3,146	

□ 제3선거구

후보자	성별	나이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박 성 열	남	40	고창 무장 무장 64	농업	중 졸	도의원	자유	8,869	당선
김 철 수	〃	26	고창 해리 방축리	〃	대 재	〃	무	7,195	차점
이 주 협	〃	31	고창 해리 사반 187	〃	중 졸	면서기	〃	2,106	
이 종 섭	〃	44	고창 해리 라성 100	〃	대 졸	교 원	〃	3,171	

고창군의 경우 정원수에 있어서 제1대 때에는 4인이었으나 이번에는 3인으로 조정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1대 때에는 고창군 전체에서 4인을 득표순으로 뽑는 중선거구제였으나 제2대 때에는 각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되었다. 따라서 고창군의 선거구는 3지구로 분할되었는데, 제1선거구는 고창읍, 고수면, 성송면, 대산면이 포함되었고, 제2선거구는 성내면, 흥덕면, 신림면, 부안면, 아산면을, 그리고 제3선거구는 심원면, 해리면, 상하면, 공음면, 무장면을 포함하였다.

당선자들은 모두가 무소속이었다. 제1선거구에서 당선한 배상기 의원은 제1대 때에도 도의원에 당선된 관록을 가진 재선의원으로, 제2대 전라북도의회에서 부의장으로 피선되는 영광을 누렸다.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훈엽 의원은 제1대 때에는 도의원선거에서 낙선하였으나, 권토중래(捲土重來)하여 기어코 당선을 차지하여 초선의원이 되었다.

제3선거구에서 당선한 박성열 의원은 제1대에 이어 또다시 당선되는 재선의원이 되었다. 각 후보별 득표현황은 위와 같다.

3) 제3대 도의원 선거

'여촌야도(與村野都)'의 현상이 1958년 5월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나타났고,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장(長)의 선거에도 계속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자유당은 시·읍·면장의 주민직선조항을 폐지하고 이를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1958년 12월 24일 소위 2·4파동시 자유당 의원들만에 의해 신국가보안법(新國家保安法)과 함께 통과되었는데 그 개정내용은 '시장은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읍·면장은 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선거가 1960년 8월에야 있을 예정

이기 때문에 법은 사용되지 못한 채 4 · 19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헌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도 바꾸어짐으로써 지방자치법은 또 한차례의 손질을 요구하였다. 7 · 29총선 이후 구성된 국회는 곧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둘렀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선거관계 조항을 이전의 지방자치법의 관계조항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완전한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헌법에 규정된 시 · 읍 · 면장은 물론이고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다.

② 선거권의 연령을 민의원(民議院) 및 참의원(參議院) 선거에서와 같이 만20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그리고 피선거권에 있어서 지방의회 및 시 · 읍 · 면장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만25세 이상으로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의 경우는 만30세 이상으로 하였다.

③ 서울특별시장 선거에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후보자의 이름을 기명하는 자서식(自書式) 투표제도를 채택하였다.

④ 민의원과 참의원선거에서와 같이 부재자투표를 인정하였다.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선거구와 당선자 결정은 서울특별시와 도에 있어서는 소선거구제와 다수대표제를, 시 · 읍 · 면에 있어서는 1선거구에서 다수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선거법에 의하여 제3대 도의원선거가 1960년 12월 12일에 치러졌다. 선거 결과 특징적인 것은 첫째, 투표참여율이 1차와 2차 선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제1차 도의원선거의 투표율은 81%, 제2차 선거의 투표율은 86%였으나 제3차 선거의 투표참여율은 61.4%에 머물렀다. 둘째,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전체 의석 중 민주당과 신민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무소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에서는 유권자 1,096,308명의 71.8%인 787,629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는데 이러한 투표율은 제1회의 83%, 제2회의 90%에 비하여 월등하게 저조한 것으로 점차 도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퇴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도내 도의원 정수 48명에 대해 178명이 입후보하여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당선자를 당적별로 보면 민주당이 26명, 무소속이 17명, 신민당이 5명으로 되어 있다.

1960년 12월 12일에 실시된 제3대 도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고창지구 출신은 정기수, 박용석, 이인규, 이승연 등 4명이었다.

4) 제4대 도의원 선거

1988년 4월 26일에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與小野大)라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와 민주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고, 지금까지 그 실시를 미루어 온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하게 재연되었다.

야당의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국회는 제12대 국회에서 제정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88. 4. 6 제정)을 전면 개정하여 1990년 12월 31일 이를 의결하였고 이듬해인 1991년 2월 1일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30년 만에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시·도의 광역의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시·군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을 넘는 시·군에 있어서는 30만을 초과하는데 매 20만까지 마다 1인을

더하고 인구가 7만 미만이 되는 자치구 시·군은 2인씩을 선출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광역의회는 정당활동을 허용하고 있어서, 각 정당은 1인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고창군의 경우에는 3선거구로 나뉘어 졌는데, 제1선거구에는 고창읍, 고수면, 성송면, 대산면 등이 포함되고, 제2선거구에는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제3선거구에는 아산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등이 포함되었다.

1991년 6월 20일에 실시된 광역의회의 선거결과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감정이 그대로 판을 쳐 이 지역에서는 평민당이 압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라북도의 경우 평민당이 모든 의석을 석권함으로써 한국의 정치판도를 그대로 재연하게 되었다. 고창군의 경우에도 3인의 당선자 모두가 평민당원이었다.

각 선거구의 투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제1선거구

후 보 자	당 소 속	득 표 수	비 고
탁 정 연	민주자유당	2,825	
최 백 규	평 민 당	9,606	당 선
정 후 영	무 소 속	3,915	

□ 제2선거구

후 보 자	당 소 속	득 표 수	비 고
박 성 우	민주자유당	3,878	
최 강 선	평 민 당	6,742	당 선
김 영 준	무 소 속	1,264	
이 상 진	무 소 속	3,250	

□ 제3선거구

후 보 자	당 소 속	득 표 수	비 고
박 병 엽	민주자유당	2,625	
김 용 원	평 민 당	9,140	당 선

5) 제5대 도의원 선거

새로운 선거문화 형성에 기틀이 될 수 있는 통합선거법이 '94. 3. 16 제정 공포된 이후 헌정사상 처음으로 4개 지방선거를 '95. 6. 27일 실시하였다.

시·도의 광역의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시·군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을 넘는 시·군에 있어서는 30만을 초과하는데 매 20만까지 마다 1인을 더하고, 인구가 7만 미만이 되는 자치구는 시·군은 2인씩을 선출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광역의회는 정당활동이 허용되고 있어서, 각 정당은 1인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고창군의 경우에는 3선거구로 나뉘어졌는데, 제1선거구는 고창읍, 고수면, 성송면, 대산면 제2선거구는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심원면 제3선거구는 아산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이 포함된다.

이번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수가 많고 선거운동의 다양화에 따라 종전의 단일선거보다 복잡, 과다한 선거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선거사무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처리의 신속화를 도모하였다.

고창군 광역의회 선거는 제3선거구에 6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2 :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새 선거법의 정신과 깨끗한 선거운동 실천으로 평온하고 질서 있는 선거를 실천함으로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 각 선거구별 투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제1선거구

후보자	성별	나이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김 영 석	남	48	고창읍 읍내리 덕산 진흥하이츠 308	상 업	대건신학 대 수료	신협이사·고창 여고육성회장	민 주 자유당	8,435	
최 백 규	〃	54	고창읍 교촌리 214	정당인	전북대	제4대 의원	민주당	9,953	당선

□ 제2선거구

후보자	성별	나이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봉 병 대	남	56	공음면 용수리	무	전북대	새마을운동고창지부장 민주평통군협의회장	민 주 자유당	5,199	
최 강 선	〃	55	상하면 하장리 934-4	상업	법 성 상 고	새마을금고이사장 민주당고창부위원장	민주당	8,527	당선

□ 제3선거구

후보자	성별	나이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	비고
임 동 규	남	51	신림면 가평리 431	상업	전북대	새마을운동고창지부장 국 제 농 기 계 대 표	민 주 자유당	6,198	
김 용 원	〃	63	흥덕면 흥덕리 357-2	수의사	전북대	농협중앙회자문위원 전북대수의대부회장	민주당	6,859	당선

6) 제6대 도의원 선거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고창군 도의원 선거구는 3개 선거구에서 2개의 선거구로 조정되었는데 제1선거구는 고창읍, 아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이 1선거구로 조정되고, 제2선거구는 고수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으로 조정되었다.

제6대 도의원(광역의원) 선거결과 새정치국민회의 후보 2명이 당선되었다.

□ 제1선거구

후보자	성별	생년 월일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 (득표율)	비고
이 상 복	남	46.5.13	고창읍 읍내리292	정당인	경희대 행정학과 4년중퇴	새정치국민회의상근부위원장 고창군 행정자문위원	새정치 국민회의	10,698 (46.2)	당선
김 영 석	〃	47.2. 4	고창읍 성두리 464-2	주유소 경 영	광주대건 신학대 3년중퇴	고창신용협동조합이사 고창군문화원운영위원	무소속	6,065 (26.2)	
김 용 원	〃	32.9.19	흥덕면 흥덕리357-2	수의사	전북대 수의학과 졸업	전라북도의회산업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무소속	6,396 (27.6)	

□ 제2선거구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득표율)	비고
정 길 진	남	41.1.11	고창읍 교촌리 282	정당인	고려대 법학과 졸업	고창남중학교교장 새정치국민회의고창군 지구당 부위원장	새정치 국민회의	11,670 (66.6)	당선
최 강 선	〃	40.2.25	상하면 하장리 943-4	상 업	법성상고 졸업	전라북도의회4,5대의원 새정치국민회의고창군 지구당 부위원장	무소속	5,858 (33.4)	

7) 제7대 도의원 선거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종전의 지방선거와는 상당히 변화된 환경에서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인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제17회 월드컵 축구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기간 중에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수준과 선거문화가 지구촌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이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실시되었고, 제도적으로도 시·도의원선거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유권자가 지역선거구의 후보자중심에서 벗어나 정당의 이념이나 정강·정책에 대한 정당중심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고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서 후보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되어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이루었다.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고창군 도의원 선거구는 제2회 때와 마찬가지로 2개의 선거구로서 제7대 도의원(광역의원) 선거결과 민주당과 무소속 각1명이 당선되었다.

□ 제1선거구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득표율)	비고
유 병 천	남	52.11.06	고창읍 교촌리 244	축산업	영선고등 학교졸업	고창중학교축구부후원회장 고창중고6,46동창회장	민주당	9,814 (42.2)	
손 영 훈	남	64.06.27	심원면 연화리 709-2	자영업	전주대학교 지역개발 대학원 졸업	해군장교(중위) 전역	무소속	1,972 (8.5)	
양 대 웅	남	71.12.03	고창읍 읍내리 324-56	시민 운동가	한국외국어 대학교 졸업	한국청년연합회 지방자치센터부소장 환경운동연합녹색후보	무소속	1,045 (4.5)	
정 길 진	남	41.01.11	고창읍 교촌리 285	전라북 도의회 의원	고려대학교 졸업	새천년민주당고창군 부안군지구당부위원장 (현)전라북도의회 의원	무소속	10,443 (44.9)	당선

□ 제2선거구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득표율)	비고
고 석 원	남	47.01.10	무장면 무장리283-1	영선중고등학교 이사장	동국대학교 졸업	민족통일 고창군협의회장 (현)고창신협이사장	민주당	8,713 (51.5)	당선
송 영 로	남	31.10.22	고창읍 읍내리654-4	무	원광대학교 졸업	전주대일신협이사장 한국예총고창지부 제2대3대회장	무소속	2,097 (12.4)	
오 교 만	남	55.03.24	대산면 갈마리 195	농업	영광고교 졸업	농민운동 15년	무소속	6,093 (36.0)	

8) 제8대 도의원 선거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고창군 도의원 선거구는 제3회 때와 마찬가지로 2개의 선거구로서 선거구별 후보자가 2명씩 나와 각각 2: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제1선거구의 경우 선거인수 31,114명에 투표수는 2,678명으로 72.9%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제2선거구의 경우 선거인수 20,618명에 투표수는 15,178명으로 73.6%의 투표율을 보였다. 제8대 도의원(광역의원) 선거결과 민주당에서 2명이 당선되었다.

□ 제1선거구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득표율)	비고
진 남 표	남	47.2.10	고창읍	정당인	경기대 2년 휴학	고창군 제1,2,3대 의원 고창군지역개발회장	열린우리당	9,814 (44.3)	
최 강 선	〃	40.2.25	고창읍	자영업	전북대학교 졸업	민주당고창지구당 사무국장	민주당	12,305 (55.6)	당선

□ 제2선거구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득표율)	비고
오 교 만	남	55.3.24	대사면 갈마리 195	정당인	영광고교 졸업	고창군농민회장 고창군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열린우리당	6,895 (47.0)	
고 석 원	남	47.1.10	무장면 무자리 283-1	전라북도의회 의원	동국대 졸업	민족통일 고창군협의회장 고창신협이사장	민주당	7,754 (52.9)	당선

9) 제9대 도의원 선거

2010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고창군 도의원 선거구는 제3회 때와 마찬가지로 2개의 선거구로 선거구별 후보자가 2명씩 나와 각각 2: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제1선거구의 경우 선거인수 31,114명에 투표수는 2,678명으로 72.9%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제2선거구의 경우 선거인수 20,618명에 투표수는 15,178명으로 73.6의 투표율을 보였다. 제8대 도의원(광역의원) 선거결과 민주당에서 2명이 당선되었다.

□ 제1선거구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득표율)	비고
임 동 규	남	44.12.16	고창읍 동리로 11-1	정당인	전북대학교 졸업	전라북도의원 전북새마을회장	민주당	단독 후보	당선

□ 제2선거구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	경 력	소속	득표수(득표율)	비고
오 균 호	남	45.12.16	해리면 해리중앙로89-1	축산업	석곡초등학교 졸업	제1대 고창군의원 제16·17대 고창부안축협 조합장	민주당	7,063 (51.6)	당선
오 교 만	남	55.3.24	대산면 갈마1길 17	자영업	영광고교졸업	고창군농민회장 고창군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무소속	6,614 (48.3)	

나. 군의원 선거

1) 제1대 군의원 선거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이 1990년 12월 31일 전문개정이 이루어지고, 91년 2월 1일 동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됨으로써 동년 3월 26일에 자치구 시·군을 포함하는 기초의원 의원선거가 일제히 실시되었다.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에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을 넘는 읍·면·동에 있어서는 2만을 초과하는 매 2만까지 마다 1인을 더한다. 이 경우 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하고, 45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정수를 45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70만을 초과하는 구·시·군의 정수는 50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고창군의회는 각 면 단위로 1인씩 13명과 고창읍 2인을 합쳐 15인으로 구성되었다. 기초단체 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특색은 정당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앙정치의 영향을 배제하고 순수 지방자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 법제정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정당이 관여하는 선거가 되었다. 후보들은 득표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홍보물에 당적표시를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지역감정을 암암리에 이용하였다. 고창군의 경우에도 야당인 평민당 관련 후보자들이 대거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후보자 현황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고창읍	1	김상필	남	1942. 3. 16	고창읍읍내리 590-1	상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수료	고창고 육성회장 구시포종합개발위원장	
	2	김창용	〃	1933. 12. 11	고창읍읍내리 256-12	상업	고 졸	평민당 부위원장	
	3	진남표	〃	1947. 2. 10	고창읍교촌리 85-10	사업	전주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지역개발연구회장	당선
	4	김동훈	〃	1937. 11. 2	고창읍읍내리 268-5	상업	고 졸	고창농협이사·감사 고창농조이사	당선
고수면	1	김옥현	〃	1932. 5. 23	고수면장두리 139	농업	고 졸	고창농협이사·감사 고창농조이사	
	2	이종운	〃	1946. 5. 10	고수면상평리 636	농업	고 졸	평민당고수면책	당선
	3	유길승	〃	1955. 3. 25	고수면남산리 439	농업	인천체육대 졸	고수면체육회부회장 고수면청년회장	
아산면	1	유현태	〃	1931. 2. 1	아산면목동리 158	농업	중 졸	아산농협조합장16년역임 아산중학교육성회장	
	2	최형식	〃	1952. 11.18	아산면중월리 335	상업	고 졸	정읍농고학생회장 고창자동차공업사대표	당선
	3	성호익	〃	1955. 4. 3	아산면목동리 272	농업	대학원수료	고창군애향청년회이사 (유)대부관광사장	
무장면	1	이돈우	〃	1934. 1.17	무장면강남리 178	농업	성균관유도회 본부경학원 수료	무장향교전교 고창군삼향지부편찬위원장 정읍검찰청 청소년선도위원	당선
	2	김남규	〃	1952. 5. 7	무장면무장리 59-2	상업	국 졸	영선중학교육성회장 체육회 부회장	
	3	정기표	〃	1947. 9. 8	무장면덕림리 332	건설	고 졸	민주평통위원	
	4	임병길	〃	1934. 11.20	무장면송현리 295	농업	고 졸	고창군정자문위원	
	5	박진수	〃	1954. 4. 8	무장면무장리 345-2	농업	고 졸	무장면체육회총무 평민당민연청지회장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공음면	1	최석기	남	1947. 3.10	공음면칠암리 558-3	상업	고 졸	공음농협감사 평민당공음면조직책	당선
	2	라길주	〃	1943. 10.11	공음면칠암리 588-3	사업	고 퇴	신영석재이사	
	3	김윤철	〃	1949. 10. 3	공음면장곡리 365	농업	전북농대 졸	새마을지도자	
상하면	1	이우연	〃	1944. 12. 8	상하면자룡리 360	농업	고 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상하면새마을협의회장	
	2	김양진	〃	1948. 11. 4	상하면검산리 432	농업	고 졸	평민당고창지구당 조직부장	당선
해리면	1	김한병	〃	1926. 2. 6	해리면하련리 110-6	농업	고 졸	정주지청선도위원회 고창군회장	
	2	한충호	〃	1957. 12.7	해리면하련리 205-2	상업	고 졸	석산고총동창회장 한겨레신문지국장 평민당대의원교육부장	
	3	이만우	〃	1954. 12.29	해리면하련리 155	수산업	방통대재	고창JC회장 평민당해리면운영위원장	
	4	오균호	〃	1945. 12.16	해리면하련리 208-6	상업	건국대학교 대학원수료	해리초중고등학교 육성회장	당선
성송면	1	이종위	남	1955. 3. 27	성송면계당리 571-2	상업	고 퇴	평민당성송면책 항공학교설립반투위원장	
	2	반기진	〃	1935. 1. 20	성송면향산리 79-1	농업	고 졸	전새마을군지회장 새마을협의회도부회장	당선
대산면	1	조중현	〃	1933. 11.13	대산면매산리 175-7	농업	대학원수료	전북부산물비료 협의회장	
	2	정봉수	〃	1943. 11. 9	대산면광대리 589	농업	고 졸	대성고등학교이사	
	3	구귀희	〃	1943. 10. 5	대산면연동리 601	농업	고 졸	동아일보대산지국장	
	4	김정기	〃	1940. 5. 15	대산면중산리 927	농업	고 졸	대산농협이사	
	5	김기채	〃	1949. 2. 17	대산면매산리 1079	농업	대 퇴	민주당군선거대책위원 고창경찰서행정자문위원 평통정책자문위원	당선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심원면	1	이재수	남	1951. 8. 21	심원면연화리 723-3	수산업	중 졸	평민당심원면책 세진수산 대표	등록무효
	2	유기봉	〃	1940. 3. 28	심원면두어리 327	농업	국 졸	고창군청군정자문위원 심원농협수석이사	
	3	전종열	〃	1946. 9 .26	심원면월산리 629	수산업	고 졸	산림조합감사 청소년선도위원	당선
	4	이갑용	〃	1934. 5. 15	심원면주산리 667	농업	고등공민수 료	1970~1987년까지 심원면 야당면책역임	
흥덕면	1	신세재	〃	1943. 6. 13	흥덕면사천리 53	농업	대 졸	예비군 중대장 선거인 당선	당선
	2	이백용	〃	1936. 10. 19	흥덕면치룡리 596-5	도정업	전남대 행정대학원	민주평통자문회의 고창군위원장	
성내면	1	고병윤	〃	1940. 5. 12	성내면옥제리 543	농업	고 졸	성내단협 근무 성내면 농민회장	당선
	2	박병엽	〃	1936. 7. 27	성내면산림리 279	농업	고 졸	성내초등학교 육성회장	
신림면	1	신동하	〃	1942. 1. 22	신림면벽송리 57	농업	중 졸	법률신문 고창보급소장	
	2	유길규	〃	1929. 12.18	신림면무림리 139	농업	전 북 대 대학원졸	신 림 단 협 장 (주) 한 림 공 영 이 사 평민당고창지구당운영위원	당선
	3	유환영	〃	1938. 2. 8	신림면무림리 124	농업	국학대학 법률과졸	신림면새마을협의회장 고창군군정자문위원	
	4	이동범	〃	1948. 4. 29	신림면덕화리 287	농업	전북대학 원재학	신 림 단 협 이 사 고창군농촌지도지부회장	
부안면	1	전재준	〃	1932. 8. 5	부안면중흥리 146	상업	고 퇴	중흥정미소 운영 새마을금고이사장	당선
	2	김해동	〃	1937. 2. 24	부안면사창리 243	도정	국 졸	고창군군정자문위원 한국양곡가공협회고창지부장 삼계농협이사	
	3	장세영	〃	1949. 8. 29	부안면검산리 71	상업	고 졸	정주지청상임 선도위원	

2) 제2대 군의원 선거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로 새로운 선거문화 형성에 기틀이 될 수 있는 통합선거법이 '94. 3. 16제정 공포된 이후 헌정사상 처음으로 4개 지방선거를 '95. 6. 27 실시하였다.

제2대 고창군 군의원 선거는 37명이 입후보하여 2.5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음면의 최석기 의원의 무투표 당선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재선되고, 8명의 의원이 군의원에 새로 입성하였다.

□ 제2대 군의원 선거 후보자 현황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고창읍	1	김동훈	남	1937. 11. 2	고창읍읍내리 268-5	상업	고 졸	제1대 의원 농협이사.감사	
	2	이연수	〃	1935. 4. 20	고창읍읍내리 324	광업	중 졸	제일건설 대표 고창고육성회장	
	3	진남표	〃	1947. 2. 10	고창읍교촌리 85-10	사업	대학원 수료	제1대 의원 지역개발연구회장	당선
	4	김상필	〃	1942. 3. 16	고창읍읍내리 590-1	상업	대학원 수료	고창고육성회장 구시포개발위원장	당선
	5	박태수	〃	1938. 8. 5	고창읍신월리 356	상업	고 졸	예비군중대장 재향군인회이사	
	6	김승현	〃	1946. 7. 20	고창읍읍내리 364-3	회사원	대 졸	교보생명영업소장	
고수면	1	이상용	〃	1939. 4. 14	고수면예지리 374	농업	대 졸	고수농협조합장	
	2	이종운	〃	1946. 5. 10	고수면상평리 636	농업	고 졸	제1대 의원 평민당고수면책	
	3	유길승	〃	1955. 3. 25	고수면황산리 1-4	농업	인천체대 졸	고수면청년회장 고창군체육회이사	당선
아산면	1	강신교	〃	1948. 4. 28	아산면하갑리 67	농업	방통대졸	예비군중대장 농업신문지국장	
	2	성호익	〃	1955. 4. 3	아산면목동리 158	관광	대학원 수료	제1대 의원 경찰서질서위원장	당선
무장면	1	김남규	〃	1952. 5. 7	무장면무장리 59-2	상업	국 졸	영선중육성회장 체육회 부회장	
	2	이돈우	〃	1934. 1. 17	무장면강남리 178	농업	경학원 수료	제1대 의원 무장향교 전교	당선
공음	1	최석기	〃	1947. 3. 10	공음면칠암리 558-3	상업	고 졸	제1대 의원 고창군체육회이사	당선
상하면	1	전춘식	〃	1952. 11 .2	상하면하장리 985-7	농업	방통대졸	상하청년회장 농업후계자회장	
	2	노병열	〃	1943. 1.22	상하면장호리 505	농업	국 졸	상하중육성회장 경찰서방범자문위원	당선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해리면	1	한충호	남	1957. 12. 7	해리면하련리 205-2	상업	고 졸	석산고총동창회장 평민당대의원교육부장	
	2	오균호	〃	1945. 12.16	해리면하련리 208-6	상업	대학원 수료	제1대 의원 해리초중고육성회장	
	3	이만우	〃	1954. 12.29	해리면하련리 156	농업	방통대 재학	고창J·C회장 해리고동문회장	당선
성송면	1	김영호	〃	1952. 2. 22	성송면괴치리 519	농업	국 졸	성송농민회장 민주동지회사무국장	
	2	심재규	〃	1944. 11.16	성송면사내리 산27	농업	중 퇴	성송농협이사	
	3	이영엽	〃	1947. 12. 7	성송면계당리 246	농업	고 졸	의용소방대장 농업후계자회장	
	4	이종위	〃	1955. 3. 27	성송면계당리 79	농업	대학원 수료	평민당중앙대의원 고창J.C회장	당선
대산면	1	오통열	〃	1948. 8. 25	대산면매산리 182-10	농업	대 졸	모양라이온스이사 작목회장	
	2	김기채	〃	1949. 2. 17	대산면매산리 1079	농업	대 중퇴	제1대 의원 민주당선거대책위원	당선
심원면	1	박흥열	〃	1959. 4. 6	심원면주산리 37	양식업	방통대 재학	청년회장 민족통일위원	
	2	이재수	〃	1951. 8. 21	심원면연화리 723-3	수산	중 졸	평민당심원면책 세진수산 대표	
	3	전종열	〃	1946. 9. 26	심원면월산리 629	수산	고 졸	제1대 의원 정읍지청상임선도위원	당선
흥덕면	1	김백수	〃	1940. 3. 30	흥덕면오호리 151	농업	대 졸	제1대의원 흥덕농협장	
	2	원병희	〃	1936. 7. 25	흥덕면신송리 215	농업	전북법대 졸	농협군지부신용부장 민주당흥덕협의회장	당선
	3	최인규	〃	1953. 5. 23	흥덕면흥덕리 238-11	상업	고 졸	흥덕중동창회 총무	
성내면	1	이맹근	〃	1938. 12.12	성내면양계리 210	농업	고 졸	성내면장	
	2	고병윤	〃	1940. 5. 12	성내면옥제리 543	농업	고 졸	제1대 의원 민주당중앙대의원	당선
신림면	1	유길규	〃	1929. 12.18	신림면무림리 139	농업	전북대학원졸	제1대 의원 평민당고창운영위원	
	2	유종윤	〃	1941. 2. 10	신림면무림리 103	농업	경영자반 수료	신림농협장4대 신림중육성회장	당선
부안면	1	전재식	〃	1930. 2. 27	부안면송현리 537	농업	국 졸	부안농협장	
	2	김준형	〃	1948. 10. 4	부안면중흥리 128	농업	경희대졸	제1대 의원 고창군체육회이사	당선

3) 제3대 군의원 선거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실시된 제3대 고창군 군의원 선거는 고창읍 선거구의 의원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조정되어 고창군의 총 의원 정수는 제2대 선거 때보다 1명이 줄어든 14명으로 조정되어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3대 고창군 군의원 선거는 31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아산면 선거구 성호익 의원의 무투표 당선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이 재입성하고 8명의 의원이 바뀌었다.

□ 제3대 군의원 선거 후보자 현황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고창읍	가	김승현	남	1946. 7. 20	고창읍읍내리 518-5	회사원	대 졸	아파트연합회장 병술회회장	
	나	진남표	〃	1947. 2. 10	고창읍교촌리 81-4	사업	대학원 수료	제1,2대 군의원 지역개발연구회장	당선
	다	김상필	〃	1942. 3. 16	고창읍읍내리 590-1	상업	대학원 수료	제2대 군의원 새정치국민회의고창읍지방자치위원장	
고수면	가	이상용	〃	1939. 4. 14	고수면예지리 394	농업	대 졸	고수농협조합장 새정치국민회의고수면지방자치위원장	
	나	유길승	〃	1955. 3. 25	고수면황산리 374	농업	인천체대졸	고수면청년회장 제2대 군의원	당선
아산면		성호익	〃	1955. 4. 3	아산면목동리 272	관광	대학원 수료	제1,2대 군의원	무투표 당선
무장면	가	정재강	〃	1952. 1. 24	무장면목우리 535-4	농업	고 졸	리장 5년역임 고창군농지개량조합 초대민선대의원	
	나	정기표	〃	1947. 9. 8	무장면덕림리 332	건설	고 졸	새정치국민회의 무장면책	당선
공음면	가	김태환	〃	1958. 6. 8	공음면선동리 783	축산	고 졸	공음중학교동창회장 한전철탑고창군건립 반대위원장	
	나	최석기	〃	1947. 3. 10	공음면칠암리 558-6	농업	고 졸	제2대후반기의장 새정치국민회의공음면지방자치위원장	당선
	다	전춘호	〃	1947. 4. 2	공음면칠암리 565-5	농업	중 퇴	공음농협조합장	
상하면	가	노병열	〃	1943. 1.22	상하면장호리 505	농업	초 졸	제2대 군의원	
	나	전춘식	〃	1952. 11 .2	상하면하장리 985-7	농업	방통대졸	새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회장	당선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해리면	가	오균호	남	1945. 12. 16	해리면하련리 208-6	축산	대학원 수료	제1대 군의원 해리초중고육성회장	
	나	이만우	〃	1954. 12. 29	해리면하련리 155	수산	방통대 중퇴	제2대 군의원 고창J·C회장	당선
성송면	가	이종위	〃	1955. 3. 27	성송면계당리 571-2	농업	대학원 수료	제2대 군의원	
	나	심재규	〃	1944. 11.16	성송면사내리 산27	농업	중 퇴	고창남중학교육성회장 성송농협이사	당선
대산면	가	김기채	〃	1949. 2. 17	대산면매산리 1079	농업	대 중퇴	제1대 의원 민주당선거대책위원	당선
	나	구귀희	〃	1943. 10. 5	대산면연동리 557	농업	초 졸	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대산면이장단협의회장	
	다	정봉수	〃	1943. 11. 9	대산면광대리 589	농업	고 졸	대산농협이사 대산신협이사	
심원면	가	한동수	〃	1937. 8. 13	심원면월산리 747	농업	고 졸	심원초등학교강사 심원면부면장	당선
	나	전종열	〃	1946. 9. 26	심원면월산리 629	수산	고 졸	제1,2대 군의원	
흥덕면	가	최인규	〃	1953. 5. 23	흥덕면흥덕리 238-7	상업	고 졸	새정치국민회의소비자보호특위위원장	당선
	나	김백수	〃	1940. 3. 30	흥덕면오호리 151	농업	대 졸	흥덕농협조합장 제1대 군의원	
	다	오덕상	〃	1955. 10. 25	흥덕면흥덕리 35-2	상업	고 졸	새정치국민회의 선거대책위원장	
성내면	가	이광오	〃	1955. 3. 20	성내면옥제리 539	농업	초 졸	성내초등학교육성회장 성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나	이맹근	〃	1938. 12.12	성내면양계리 210	농업	고 졸	성내면장 성내면체육회장	당선
신림면	가	유종윤	〃	1941. 2. 10	신림면무림리 103	농업	중 졸	신림농협장 제2대 군의원	
	나	유길규	〃	1929. 12.18	신림면무림리 139	농업	대학원졸	제1대 의원 신림단위농협장	당선
부안면	가	전재준	〃	1932. 8. 5	부안면중흥리 146	농업	고 퇴	부안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나	김준형	〃	1948. 10. 4	부안면중흥리 128	농업	경희대졸	제1,2대 군의원 군정자문위원	
		장세영	〃	1949. 08.29	부안면 검산리 71	상업	흥덕중 졸업	동학혁명기념사업회 고창군이사	보궐선거 당선

※ 전재준 의원 사망으로 장세영 의원 보궐선거 당선

4) 제4대 군의원 선거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와 더불어 제17회 월드컵 축구대회의 국내 개최 기간 중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수준과 선거문화가 지구촌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이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실시되었다.

그리고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실시된 전국 자치구 · 시 · 군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수는 3,459개소이고 전국 의원정수는 3,485명이었는데, 자치구 · 시 · 군의 의원정수는 읍 · 면 · 동마다 1인으로 하되 1천미만의 면과 6천미만의 동은 인접 읍 · 면 · 동과 통합하고, 인구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 선출하여 선거구를 조정하도록 되어 고창군의 총 의원 정수는 제3대 의회와 같은 14명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4대 고창군 군의원 선거는 34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아산면 선거구 성호익 의원의 무투표 당선을 포함하여 5명의 의원이 재입성하고 9명의 의원이 바뀌었다.

□ 제4대 군의원 선거 후보자 현황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고창읍	가	김상필	남	1942.03.16	고창읍 읍내리 590-1	상업	독학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새천년민주당고창읍지방자치위원장	당선
	나	김종호	남	1955.05.05	고창읍 월곡리 586	무	고창고교 졸업	고창,아산,신림 예비군지휘관 모양성제전회사무국장	
	다	김승현	남	1946.07.20	고창읍 읍내리 518-5	무	전북대학교 졸업	교보생명바와이씨 생명보험소장	
고수면	가	이종운	남	1946.05.10	고수면 은사리 923	농업	조선대부속중 졸업	고창고육성회부회장 고창군의회 의원	
	나	정종구	남	1960.03.25	고수면 와촌리 119	농업	고창고등학교 졸업	새천년민주당고수면협의회장 고수초등학교운영위원장	당선
	다	유길승	남	1955.03.25	고수면황산리 374	농업	인천체대 졸	고창군의회 제2대3대 군의원	
아산면		성호익	남	1955.04.03	아산면 목동리 272	의원	전주대학교 졸업	고창군의회의원 민주당고창군부안군지구당정책실장	무투표 당선
무장면	가	김남규	남	1952.05.07	무장면 무장리 59-2	상업	무장초교 졸업	무장 애향회장 영선고육성회장 역임	당선
	나	정기표	남	1947.09.08	무장면 덕림리 332	농업	전주상업고 졸업	고창군의회 의원	
공음면	가	최석기	남	1947.03.10	공음면 칠암리 558-6	의원	법성상업고 졸업	고창군의회제1 · 2 · 3대 의원 평화통일자문회의고창군협의회장	당선
	나	박경숙	남	1939.06.21	공음면 선동리 929	무	법성상업고 졸업	고창군 공음면 부면장	
상하면	가	전춘식	남	1952.11.02	상하면 하장리 985-7	농업	방통대졸	제3대 고창군의회 의원 상하면 청년회장	당선
	나	황익성	남	1940.10.14	상하면 자룡리 434-2	수산업	죽산중 졸업	무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해리면	가	이만우	남	1954.12.29	해리면 하련리 155	수산업	방통대 중퇴	고창J · C회장 고창군의회 부의장	
	나	박현규	남	1958.08.13	해리면 동호리 532	수산업	해리고교 졸업	해리면체육회장 해리면지역개발번영회이사	당선
성송면	가	정영섭	남	1957 10.12	성송면 산수리 15	자영업	고창고교 졸업	고창군협우회상임부회장 성송초교총동문회부회장	
	나	심재규	남	1944.11.16	성송면 사내리 산27	농업	고창중 중퇴	고창군의회 의원	당선
	다	김영철	남	1945.09.24	성송면 사내리 산27	무	광주공고 졸업	지방공무원31년근무 성송초등총동문회부회장	
대산면	가	김기채	남	1949.02.17	대산면 매산리 972	농업	조선대공업 전문대중퇴	제1·2·3대 고창군 의회 의원	
	나	구귀희	남	1943.10.05	대산면 연동리 557	농업	대산초등 학교 졸업	동아일보대산지국장 대산면이장단협의회장	
	다	정원환	남	1957.01.23	대산면 성남리 51	축산업	광주고교 졸업	축산 15년	당선
심원면	가	현상곤	남	1949.05.17	심원면 월산리 801-20	상업	심원초등 학교 졸업	심원면체육회장 고창군교육발전연구회사회교육위원	
	나	박병옥	남	1946.05.19	심원면 월산리744-2	농업	정읍농림 고교 졸업	농업기술센터심원상담소장 심원초등학교21회동창회장	당선
	다	전종열	남	1946.09.26	심원면 월산리281-2	수산업	서라벌고교 졸업	제1,2대 군의원	
흥덕면	가	최인규	남	1953.05.23	흥덕면 흥덕리238-7	의원	정읍농림 고교 졸업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제3대 운영위원장	당선
	나	김귀환	남	1942.01.14	흥덕면 신송리 216	농업	건국대학교 중퇴	신송새마을지도자 7년 공무원 20년	
성내면	가	이맹근	남	1938.12.12	성내면 양계리 210	농업	정읍농공 고교 졸업	성내면장 제3대 기초의회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나	이재정	남	1957.12.03	성내면 양계리 205-7	수산업	독학	성내농협이사 고창군수산조정위원	당선
신림면	가	신동하	남	1942.01.22	신림면 벽송리 57	농업	고창중 졸업	새마을전라북도 부협의회장	
	나	이동범	남	1948.04.29	신림면 덕화리 287	농업	흥덕중 졸업	농촌지도자 고창군 연합회장	
	다	이귀섭	남	1956.01.26	신림면 도림리 416	농업	흥덕중 졸업	한국농업경영인 고창군연합회부회장 새천년민주당신림면협의회장	당선
	라	전일행	남	1941.10.25	신림면 벽송리 318	농업	고창고 졸업	신림면장 고창군청문화체육과장	
부안면	가	장세영	남	1949.08.29	부안면 검산리 71	상업	흥덕중 졸업	제3대 고창군의회의원 동학혁명기념사업회고창군이사	
	나	박영구	남	1952.03.16	부안면 중흥리 176-2	농업	정읍고 졸업	회원농업협동조합23년근무 농협중앙회장2을고시합격	당선

5) 제5대 군의원 선거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와 더불어 실시되었다. 그리고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고창군의 총 의원 정수는 제4대 의회 때 14명이었던 것이 제5대에서는 10명으로 변경되었다.

선거구 또한 조정되었다. 가 선거구(3명)는 고창·아산·신림면, 나 선거구(2명)는 심원·흥덕·성내·부안면, 다 선거구(2명)는 고수·공음·성송·대산면, 라 선거구(2명)는 무장·상하·해리면과 비례대표(1명)로 개편되었다. 제5대 고창군 군의원 선거는 30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제5대 군의원 선거 후보자 현황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가선거구	1-가	김종호	남	1955.03.05	고창읍	자영업	고창고 졸	예비군 지휘관, 고창군 혁신위원	당선
	1-나	김홍술	남	1955.09.02	고창읍	축산업	정읍 농림고 졸	대한양돈협회 고창군지부장	
	1-다	유택주	남	1938.07.20	고창읍	농업업	고창고 졸	고창라이온스클럽 회장	
	3-가	오세환	남	1964.11.15	고창읍	정당인	전북대 졸	정균환 국회의원 비서 태평양유족회 기획실장	
	3-나	정후영	남	1952.08.14	고창읍	자영업	한국방송 통신대 졸	농촌지도소 재직 민주당고창지구당 부위원장	
	3-다	조규철	남	1966.09.12	아산면	건설업	우석대 중퇴	고창군농민회 농협개혁 특별위원장	
	6	김승현	남	1946.07.20	고창읍	농업	전북대 졸	교보생명 근무	
	7	박래환	남	1959.04.22	고창읍	자영업	조선대 졸	고창읍 체육회장 새마을금고이사장	당선
	8	신동하	남	1942.01.22	고창읍	농업	고창중 졸	새마을지도자고창군 협의회장	
	9	조민규	남	1966.12.27	고창읍	자영업	전주대 졸	고창청년회의소회장	당선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나선거구	1-가	박병옥	남	1946.05.19	심원면	의원	정읍농림고졸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1-나	이호근	남	1965.07.22	부안면	농업	광주보건대졸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정책위원	
	3-가	이재정	남	1957.12.03	성내면	수산업	독학	한국해양수산 신지식인 중앙회장	당선
	3-나	최인규	남	1953.05.23	흥덕면	의원	정읍농림고졸	3대·4대 고창군의회 의원	
	6	장세영	남	1949.08.29	부안면	도정업	흥덕중 졸	제3대 군의원	당선
다선거구	1-가	김갑성	남	1942.10.15	대산면	농업	광주농업고졸	대산농협 조합장	당선
	1-나	유길승	남	1955.03.25	고수면	건설업	인천체육전문대졸	제2대·제3대 고창군의회 의원	
	3-가	김범진	남	1962.07.01	대산면	축산업	조선대 졸	대산청년회장 고창군낙우회 부회장	당선
	3-나	최석기	남	1947.03.10	공음면	의원	서강정보대 재	제1대~제4대 고창군의회 의원	
	4	임정호	남	1958.11.25	공음면	농업	고등학교 검정고시	고창군 4-H회장 공음면 농민회장	
	6	김용기	남	1959.11.20	공음면	자영업	전주대 졸	공음중 총동창회장 재경공음면민회부회장	
	7	김현중	남	1964.10.17	성송면	자영업	한국체대 재	성송면 청년회장	
라선거구	1-가	이만우	남	1954.12.29	해리면	수산업	한국방송대 중퇴	제2대·제3대 고창군의회 의원	당선
	1-나	황승수	남	1958.10.12	상하면	축산업	전주농림고졸	고창군혁신위원회 위원	
	3-가	김남규	남	1952.05.07	무장면	상업	무장초 졸	무장면 애향회장 제4대 고창군의원	
	3-나	박현규	남	1958.08.13	해리면	의원	군장대 중퇴	4대 고창군의회 의원	당선
	6	정기표	남	1947.09.08	무장면	건설업	전주상고 졸	3대 고창군의회 의원	
비례대표	열린우리당	김정란	여	1959.06.29	고창읍	정당인	고창여고 졸	열린우리당 고창군 여성위원장	
	민주당	이옥순	여	1966.02.16	고창읍	건설업	전북과학대 재	민주당 고창지구당 여성부장	당선
	민주노동당	김혜선	여	1970.03.03	성내면	자영업	고창여고 졸	고창군여성농민회 조직부장	

6) 제6대 군의원 선거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와 더불어 최초로 8개 선거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법과 질서 속에서 공정하게 마무리 되었다.

제5대 고창군의원 선거는 총 10명으로 가 선거구(고창읍, 아산 · 신림면) 3명, 나 선거구(심원 · 흥덕 · 성내 · 부안면) 2명 , 다 선거구(고수 · 공음 · 성송 · 대산면) 2명, 라 선거구(무장 · 상하 · 해리면) 2명과 비례대표(1명)으로 21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2.1: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기 선출된 가 선거구 故김종호의원의 사망(2011.3.12.)으로 인하여 2011년 4월 27일 실시된 재보궐선거로 조병익의원이 당선되었다.

□ 제6대 군의원 선거 후보자 현황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가 선거구	2-가	김진갑	남	1959. 11.12	고창읍	건설업	서강정보대 졸	민족통일고창군협의회장 신체장애인고창군협회후원회장	
	2-나	조규철	남	1966. 09.12	아산면	농업인	우석대 중퇴	아산면체육회장 고창군농민회 농협개혁특별위원장	당선
	2-다	김종호	남	1955. 05.05	고창읍	군의원	고창고 졸	아산면, 고창읍, 신림면 예비군중대장 제5대 고창군의회 의원	당선
	7	박래환	남	1959. 04.22	고창읍	군의원	조선대 졸	고창읍체육회장 제5대 고창군의회 의원	당선
	8	조민규	남	1966. 12.27	고창읍	군의원	전주대 졸	고창군 축구연합회 회장 제5대 고창군의회 의원	
나 선거구	2-가	오덕상	남	1955. 10.25	흥덕면	축산업	전북과학대 졸	고창군 한우협회장 흥덕면체육회장	당선
	2-나	장세영	남	1949. 08.29	부안면	군의원	흥덕중 졸	제3대, 제5대 고창군의회 의원	
	7	윤영식	남	1958. 01.03	심원면	양만업	전주비전대 재	심원농협장 심원면 의용소방대장	당선
	8	최인규	남	1953. 05.23	흥덕면	농업	정읍농림고 졸	고창군의회 부의장 흥덕산업단지지원협의회장	
	9	천남해	남	1944. 04.21	흥덕면	행정사	흥덕중 졸	흥덕면장직무대리 바르게살기흥덕면위원장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다 선거구	2-가	김범진	남	1962.07.01	대산면	축산업	조선대 졸	대산면청년회장 제5대 고창군의회 의원	
	2-나	김영재	남	1949.06.15	공음면	상업 (주유소)	광주대 재	공음초대체육회장 고창인산영농조합법인 대표	
	7	김갑성	남	1942.10.15	대산면	군의원	광주 농업고 졸	대산농협 조합장 제5대 고창군의회 의원	
	8	정영진	남	1957.07.13	성송면	농업	광주 상업고 졸	4-H연맹회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고창지구운영차장	
	9	이상호	남	1960.04.13	고수면	농업	전북 과학대 졸	고창군이장단연합회장 고창군해병대 전우회장	당선
	10	임정호	남	1958.11.25	공음면	농업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	농업경영인고창군부회장 공음면 농협이사(제2대)	당선
라 선거구	2-가	이만우	남	1954.12.29	해리면	군의원	한국방통대 1년 수료	고창JC회장 제2대, 제3대, 제5대 고창군의회 의원	당선
	2-나	김만기	남	19.57.02.07	무장면	관광 여행업	전주대 졸	무장의용소방대장 고창로타리클럽회장	
	7	박현규	남	1958.08.13	해리면	군의원	군장대 중퇴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장 제4대, 제5대 고창군의회의원	당선
	8	김기현	남	1960.04.18	상하면	농업	미기재	고창군 농업경영인 회장 흑미연구회 회장	
	9	김정강	남	1964.01.28	무장면	사회복지사업	원광대 행정대학원 졸	고창군사회복지협의회부회장 전라북도아동복지협회장	
비례대표	민주당	조금자	여	1943.11.07	고창읍	무	원광대 행정대학원 최고여성지도자과정 수료	적십자사 고창지회장	당선

□ 제6대 군의원 선거 후보자 현황(2011. 4. 27. 재보궐선거)

선거구명	기호	후보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 력	경 력	비고
가 선거구		조병익	남	1952.04.22	고창읍	고창병원 근무	고졸	민주당 고창읍 협의회장	당선
		강영길	남	1976.01.27	고창읍	자영업	고졸	JC청년회의소 이사	

다. 읍 · 면의원 선거

1) 제1대 읍 · 면의원 선거

1949년 7월에 제정 공포되어, 그해 12월에 제1차 개정을 통하여 수정 보완된 지방자치법에 의한 제1차 시 · 읍 · 면의원 선거는 1952년 4월 25일에 실시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개헌을 위하여 반국회운동(反國會運動)을 전개하기 위한 책략의 일환으로 전쟁의 와중 속에서도 그 실시를 강행하였던 것이다. 그의 세력기반인 원외자유당 인사들이 지방의회를 장악케 함으로써 반대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회에 대항하여 맞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선거결과 선거인 총수의 약 90%가 선거에 참여하여 378명의 시의원과 1,115명의 읍의원, 그리고 16,051명의 면의원이 선출되었다.

정당별로 보면 자유당이 25.3%, 자유당 기간단체가 31.3%를 차지함으로써 이승만은 그의 세력기반을 시 · 읍 · 면의원 선거에서 구축할 수 있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이 전체의석의 0.2%밖에 차지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승만의 지방의회를 통한 반 국회투쟁의 의도는 적중한 셈이라고 보여진다.

고창군의 경우 면의원 179명중에서 자유당이 84석, 국민회가 5석, 한청이 2석, 그리고 무소속이 86석을 차지하였다.

제1대 면의원들의 득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대 면의원 당선자 득표현황

□ 고창읍(高敞邑)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조필승	45	한문수업	농 업	402	무소속
박동영	41	소 졸	약국상	381	〃
서동현	30	〃	면서기 3년	364	자유당
홍종승	53	〃	경찰관 3년	317	무소속
김일병	38	〃	면서기 3년	270	자유당
신길동	49	〃	군서기 3년	260	무소속
임주성	27	중학중퇴	무	454	〃
조택승	42	한문수업	농 업	414	〃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임홍조	57	소 졸	농 업	298	국민회
김재국	39	중 졸	군서기 3년	404	무소속
서용현	34	〃	〃	402	〃
김재철	42	소 졸	이장 2년	389	〃
유홍석	38	무	농 업	383	〃
유한석	41	한문수업	〃	282	〃

□ 고수면(古水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안병호	55	한문수업	농 업	270	무소속
유용태	35	소 졸	〃	259	자유당
서치용	50	한문수업	〃	219	무소속
김재길	48	〃	〃	199	〃
김규열	65	〃	〃	209	〃
박창휴	40	소 졸	〃	195	〃
김봉회	38	한문수업	〃	182	자유당
김사춘	47	〃	〃	180	무소속
조병학	38	〃	〃	295	〃
안석원	58	〃	〃	225	〃
김옥식	42	〃	〃	222	자유당
유봉석	42	〃	〃	201	무소속

□ 성송면(星松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정기환	44	소 졸	농 업	407	무소속
강수원	41	한문수업	〃	302	〃
정휴섭	44	소 졸	농 업	400	〃
정휴성	50	〃	〃	296	〃
강태문	47	한문수업	〃	318	〃
박금년	47	〃	〃	218	〃
김사석	40	〃	〃	215	〃
정석균	47	〃	〃	197	〃
이기천	37	소 졸	〃	268	〃
김정원	41	중 졸	〃	193	자유당
권혁진	40	소 졸	〃	178	무소속
유 봉	40	〃	〃	163	〃
정기만	41	〃	〃	160	〃

□ 아산면(雅山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유제환	33	중 졸	농 업	366	자유당
박병원	40	소 졸	면서기3년	324	〃
신동구	49	〃	이 장9년	299	〃
강종원	30	중 졸	농 업	257	〃
이관재	42	소 졸	경찰관3년	무투표당선	〃
정사득	52	〃	이장8년	〃	〃
김재열	33	〃	이장5년	〃	〃
오복환	38	〃	농 업	〃	무소속
오석근	39	한문수업	구장8년	〃	〃
조철진	41	〃	농 업	〃	〃
이기호	55	〃	〃	〃	〃
김판근	45	소 졸	이장3년	〃	〃

□ 상하면(上下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김재엽	38	소 졸	면서기3년	280	무소속
김강용	51	〃	농 업	221	〃
김봉채	30	중 졸	철도국3년	181	자유당
전백용	41	소 졸	농 업	133	〃
이영규	44	〃	〃	118	〃
김근호	65	한문수업	면회원2년	108	〃
박영무	34	소 졸	농 업	167	무소속
김재곤	33	〃	면서기3년	156	〃
황치업	47	한문수업	농 업	142	자유당
오태성	33	소 졸	이장3년	146	〃
서규현	36	〃	농 업	128	〃
표상천	45	한문수업	〃	115	〃

□ 해리면(海里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김요철	48	소 졸	농 업	325	자유당
박병욱	38	〃	〃	298	〃
김영태	35	〃	이장3년	291	〃
김대진	39	한문수업	농 업	281	〃
성하석	38	소 졸	이장3년	265	〃
이현택	45	〃	농 업	254	〃
김철수	54	한문수업	이장3년	320	〃
김채형	61	〃	농 업	226	무소속
김용태	39	〃	〃	225	자유당
김일원	39	소 졸	회사원3년	189	〃
이영래	43	한문수업	이장11년	무투표당선	무소속
이성윤	49	〃	이장5년	〃	〃
이권영	45	〃	이장4년	〃	〃

□ 부안면(富安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정인명	33	중학중퇴	면서기 3년	296	무소속
조경환	53	소 졸	면서기 10년	276	〃
윤형중	40	중 졸	면서기 3년	241	〃
신재성	52	한문수업	농 업	192	자유당
강길수	33	소 졸	〃	152	무소속
김일래	54	한문수업	〃	181	자유당
이은우	41	소 졸	면서기 8년	312	무소속
정동학	35	〃	농 업	223	자유당
이전우	30	중학중퇴	면서기 3년	192	무소속
조동환	45	한문수업	농 업	158	〃
안창헌	38	소 졸	〃	195	〃
전성엽	49	한문수업	이장 4년	152	〃
조규성	30	중 졸	농 업	125	〃

□ 흥덕면(興德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김상회	30	중학중퇴	우편국 3년	215	자유당
신용선	55	소 졸	농 업	173	〃
박주찬	46	중 졸	상업 8년	152	무소속
심갑식	43	소 졸	회사원 3년	139	〃
진수성	52	소 졸	구장 3년	109	자유당
이봉길	38	〃	회사원 3년	108	〃
최임환	58	〃	이장 12년	243	〃
변우섭	36	중 졸	이장 4년	183	〃
이채환	39	소 졸	면서기 3년	175	〃
김일남	43	〃	농 업	238	무소속
박봉기	37	〃	〃	206	〃
김종숙	46	〃	〃	193	자유당
김윤병	46	〃	운전수 10년	156	무소속

□ 신림면(新林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김인수	30	소 졸	농 업	351	한 청
박록구	39	한문수업	〃	286	자유당
이춘식	59	〃	〃	231	무소속
조성채	55	소 졸	〃	225	자유당
김장수	27	〃	〃	235	무소속
고광태	33	〃	〃	225	〃
기봉석	26	중학중퇴	〃	208	자유당
이의권	60	한문수업	이장 7년	179	무소속
김정수	26	대학2년 수료	교원 6년	376	자유당
고광남	33	중 졸	면서기 3년	347	〃
오제금	39	한문수업	이장 4년	274	무소속
유희석	49	중 졸	면서기 3년	218	민국당
유종태	39	소 졸	농 업	212	무소속

□ 성내면(星內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이철수	31	중 졸	회사원 9년	275	자유당
정휴선	28	소 졸	농 업	183	〃
이병노	47	〃	국민회 2년	225	〃
황정구	42	중 졸	농 업	248	〃
백남섭	31	소 졸	경찰관 3년	276	〃
이병연	40	중 졸	회사원 1년	232	〃
백남이	55	한문수업	면협의원 1년	206	무소속
고판길	51	소 졸	이장 12년	166	자유당
황봉익	42	〃	농 업	216	〃
노학종	37	〃	이장 3년	216	〃
이재범	49	〃	농 업	139	〃
장희동	41	중학중퇴	경찰관 3년	214	〃

□ 대산면(大山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김재복	39	소 졸	면서기 3년	무투표당선	자유당
김재경	40	한문수업	이장 3년	〃	〃
강지규	39	소 졸	〃	〃	〃
김동흡	59	한문수업	〃	〃	〃
강영수	53	〃	이장 5년	〃	〃
이형석	46	전문3년 수료	농 업	〃	〃
안규연	35	중 졸	상 업	〃	〃
정계묵	40	〃	이장 3년	〃	〃
오응종	35	〃	면장 3년	〃	〃
신두석	59	한문수업	면장 2년	〃	〃
오회근	36	소 졸	무 직	〃	〃
유동식	45	한문수업	농 업	〃	〃
기우섭	52	〃	〃	〃	〃

□ 무장면(茂長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김원용	54	한문수업	면서기 9년	무투표당선	자유당
김방수	47	〃	회사원 9년	〃	〃
김정빈	47	〃	이장 9년	〃	〃
김경수	40	〃	회사원 8년	〃	〃
이응철	45	〃	이장 9년	〃	〃
김맹규	37	소 졸	농 업	〃	〃
정기주	36	〃	소방대장 1년	〃	〃
노동립	36	〃	이장 5년	〃	무소속
정기주	31	〃	농 업	〃	한 청
이강수	53	〃	〃	〃	무소속
정휴춘	36	중 졸	경찰관 3년	〃	〃
정기식	31	대 졸	회사원 3년	〃	〃
김윤성	43	한문수업	농 업	〃	〃

□ 공음면(孔音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박윤구	31	소 졸	군인3년	무투표당선	무소속
채홍업	35	〃	이장3년	〃	자유당
최판길	38	〃	이장2년	〃	무소속
김송회	35	소 졸	소방대장	〃	자유당
김용섭	41	〃	이장8년	〃	〃
배형섭	52	한문수업	농 업	〃	무소속
전근호	56	〃	〃	〃	〃
김영기	25	소 졸	군인8년	〃	〃
정균택	25	〃	군인3년	〃	자유당
문창환	33	중 졸	경찰관3년	〃	〃
정경일	56	한문수업	농 업	〃	무소속
김양규	33	중학중퇴	경찰관3년	〃	자유당
이태진	44	소 졸	농 업	〃	무소속

□ 심원면(心元面)의회

당선자	연령	직 업	학 력	득표수	정 당
정재후	50	한문수업	이장5년	무투표당선	무소속
김요성	45	소 졸	면서기3년	〃	국민회
진세언	48	〃	이장4년	〃	무소속
박년철	38	한문수업	이장5년	〃	국민회
김병우	52	소 졸	면서기5년	〃	무소속
이관헌	35	〃	이장1년	〃	〃
김성열	49	한문수업	국민회장8년	〃	국민회
양진섭	58	〃	이장3년	〃	무소속
김재정	55	〃	면서기3년	〃	〃
이창수	29	소 졸	이장5년	〃	〃
김창기	40	〃	면서기8년	〃	자유당
손양협	52	한문수업	이장5년	〃	〃

2) 제2대 읍·면의원 선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 파동이 지나고 제3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지방자치법은 1956년 2월, 7월 2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개정의 주요내용은 시·읍·면장이 지방의회에서 간선되던 것을 주민에 의한 직선으로 바뀌었다는 것과 지방자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권(不信任權)도 폐지시켰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변경된 선거제도에 의하여 1956년 8월 8일에 시·읍·면장과 시·읍·면의회 의원을 뽑는 동시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자유당은 제1대 지방의회 때보다 높은 안정세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면의회도 갈수록 그러하였다.

고창군의 읍·면장 및 의원들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고창읍(高敞邑)의회 읍장 : 조병고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배종진	남	40	상 업	소 졸	상업10년	무소속
서동현	〃	33	농 업	〃	교 원	자유당
김일병	〃	41	토목청부업	〃	〃	〃
조필승	〃	45	농 업	〃	면의원	무소속
박동완	〃	33	〃	〃	〃 〃	자유당
최만기	〃	31	회사원	중 졸	회사원	무소속
조갑승	〃	42	농 업	소 졸	면서기	〃
임주성	〃	30	〃	대 졸	면의원	〃
박남섭	〃	32	〃	소 졸	자유당	〃
김재성	〃	43	〃	〃		〃
유태석	〃	28	〃	〃	무소속	〃
엄경섭	〃	37	〃	〃	자유당	〃
유홍석	〃	37	〃	〃		〃

□ 고수면(古水面)의회 면장 : 안병일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정성수	남	49	농 업	소 졸	이 장	자유당
안진환	〃	46	〃	한문수업	자유당	〃
이공우	〃	27	〃	중 졸	제대군인	〃
김병두	〃	31	〃	고 졸		〃
이종후	〃	39	〃	중 졸	순 경	〃
오종덕	〃	27	〃	〃	제대군인	〃
박종균	〃	49	〃	한문수업	이 장	〃
김점동	〃	33	〃	소 졸	순 경	〃
유봉석	〃	45	〃	한문수업	면의회의장	〃
김옥식	〃	43	〃	〃	면의원	〃
안석환	〃	35	〃	소 졸	면서기	〃

□ 아산면(雅山面)의회 면장 : 박양묵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강천수	남	34	농 업	소 졸	이 장	무소속
최익상	〃	34	상 업	〃	〃	〃
라홍찬	〃	37	농 업	중 졸	면의회의장	자유당
유영삼	〃	33	〃	중학중퇴	이 장	〃
이준재	〃	42	〃	소 졸	〃	〃
오영환	〃	26	〃	중 졸	군 인	무소속
이관재	〃	40	〃	소 졸	면의원	자유당
임동주	〃	42	〃	〃	이 장	〃
이강환	〃	40	〃	한문수업		〃
조승훈	〃	27	〃	중학중퇴	군 인	〃
김원섭	〃	31	〃	대 졸	면의원	〃
조봉훈	〃	28	〃	소 졸	무소속	〃

□ 무장면(茂長面)의회 면장 : 정길수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서종래	남	37	농 업	소 졸	이 장	자유당
김진철	〃	35	〃	중학중퇴	면의원	〃
김재성	〃	40	〃	소 졸	이 장	〃
박용주	〃	41	〃	소 졸		〃
김 택	〃	46	〃	중학중퇴	면서기	〃
노동립	〃	38	〃	소 졸	면의원	〃
김전순	〃	39	〃	소 졸	이 장	〃
손병일	〃	30	〃	중 졸	면서기	무소속
오봉환	〃	30	〃	소 졸	이 장	자유당
정기식	〃	34	〃	중 졸	면의원	〃
유상욱	〃	33	〃	소 졸	무소속	〃
김필환	〃	34	〃	소 졸	자유당	〃

□ 공음면(孔音面)의회 면장 : 김기성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김두회	남	47	농 업	소 졸		자유당
최복남	〃	39	〃	〃	면의원	〃
라승남	〃	37	〃	〃	신문사원	무소속
김수근	〃	54	〃	〃		〃
이종현	〃	33	〃	〃	소방대장	자유당
유용중	〃	34	〃	대 졸	〃	무소속
정학섭	〃	60	〃	〃	면의회의장	자유당
최필주	〃	35	〃	〃	부면장	〃
남궁현	〃	43	〃	〃	사친회장	무소속
문창환	〃	63	〃	소 졸		〃
전성린	〃	53	〃	소 졸	무소속	〃
최병봉	〃	34	〃	〃	경찰2년	자유당

□ 상하면(上下面)의회 면장 : 방이혁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김재묵	남	33	농 업	대 졸	면의원	자유당
김상득	〃	33	〃	중 졸		〃
이봉란	〃	55	〃	소 졸	면 장	〃
김종오	〃	32	〃	〃	경 찰	〃
김용훤	〃	30	〃	〃	면서기	〃
황치일	〃	36	〃	〃		〃
박영묵	〃	37	〃	〃		〃
노연희	〃	28	〃	〃		〃
서규현	〃	37	〃	한문수업	면의원	〃
노종년	〃	29	〃	소 졸	면서기	〃
노원숙	〃	46	〃	〃		〃

□ 해리면(海里面)의회 면장 : 김영태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성하철	남	40	농 업	소 졸	면서기	민주당
이현삼	〃	28	〃	〃	〃	무소속
이철녕	〃	42	〃	〃	이 장	〃
김맹수	〃	40	〃	〃	〃	자유당
은준표	〃	30	〃	대 졸	회사원	무소속
성하석	〃	37	〃	중 졸	면의원	자유당
박석용	〃	41	〃	소 졸	이 장	〃
박승철	〃	37	공무원	중 졸	회사원	무소속
김일원	〃	41	농 업	소 졸	〃	자유당
이판우	〃	36	〃	〃	이 장	무소속
이한영	〃	38	〃	중 졸	면서기	〃
문규석	〃	44	〃	한문수업	이 장	〃

□ 성송면(星松面)의회 면장 : 권혁진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강대옥	남	39	농 업	소 졸	이 장	자유당
정대묵	〃	34	〃	중 졸	면서기	〃
김녕해	〃	31	〃	소 졸	이 장	〃
정상열	〃	30	〃	중 졸	교 원	민주당
권태홍	〃	37	〃	한문수업	자유당	〃
주동섭	〃	27	〃	중 졸	면서기	〃
강봉원	〃	28	〃	소 졸	〃	〃
정상탁	〃	29	〃	중 졸		〃
권혁승	〃	27	〃	〃	면서기	〃
정방묵	〃	27	〃	〃	〃	〃
권영태	〃	28	〃	〃	군서기	〃
유병태	〃	28	〃	〃	이 장	〃

□ 대산면(大山面)의회 면장 : 정균선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김용현	남	40	농 업	소 졸	이 장	자유당
정재풍	〃	40	〃	〃		〃
조성주	〃	39	〃	중 졸	면의원	〃
김봉기	〃	33	〃	소 졸	이 장	〃
정균창	〃	33	〃	〃	공무원	〃
안종원	〃	25	〃	중 졸		〃
탁판수	〃	44	〃	〃		〃
박일남	〃	31	〃	소 졸	이 장	〃
오응종	〃	53	〃	〃	면 장	〃
이병기	〃	33	〃	〃	신문기자	〃
신일하	〃	33	〃	〃	이 장	〃
정봉채	〃	34	〃	〃	〃	〃

□ 심원면(心元面)의회 면장 : 손양순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이미석	남	35	염 업	중학중퇴	회사원	무소속
이규채	〃	31	농 업	소 졸	〃	자유당
배용담	〃	29	〃	〃	군 인	〃
박일구	〃	42	〃	〃	구 장	무소속
정길만	〃	41	회사원	〃	면서기	〃
이행렬	〃	34	농 업	〃	군 인	자유당
김진근	〃	31	〃	〃	〃	〃
김종술	〃	37	〃	한문수업	구 장	〃
이창수	〃	31	〃	소 졸	면의원	〃
손봉술	〃	36	〃	소중퇴	구 장	〃
손기염	〃	30	〃	중학중퇴	면서기	무소속

□ 흥덕면(興德面)의회 면장 : 신용선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최동환	남	30	농 업	소 졸	이 장	무소속
심갑식	〃	46	상 업	〃	면의원	자유당
신용의	〃	53	농 업	중 졸		〃
정점수	〃	26	〃	소 졸	군 인	참전회
이봉철	〃	47	〃	〃		무소속
송재만	〃	33	〃	〃	이 장	자유당
이재남	〃	28	〃	〃	면서기	무소속
채철묵	〃	39	〃	〃	회사원	자유당
김종숙	〃	49	〃	중학중퇴	면의원	〃
윤평섭	〃	31	〃	소 졸	면서기	〃
박봉기	〃	39	〃	중학중퇴	〃	〃

□ 성내면(星內面)의회 면장 : 고현규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남재동	남	29	농 업	소 졸		무소속
고기상	〃	30	〃	〃		〃
김상영	〃	44	〃	중 졸	회사원	자유당
이국종	〃	45	〃	〃	면 장	〃
황정구	〃	45	〃	〃	면의원	〃
이점열	〃	28	〃	소 졸	〃	〃
백남섭	〃	36	〃	〃	〃	〃
고하상	〃	45	〃	〃		〃
황봉익	〃	47	〃	한문수업	〃	〃
김정의	〃	50	〃	소 졸		〃
노학진	〃	38	〃	〃	〃	〃

□ 신림면(新林面)의회 면장 : 고광남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박동래	남	42	농 업	소 졸	이 장	무소속
윤병찬	〃	30	〃	〃	경 찰	자유당
조익년	〃	29	〃	〃	면서기	무소속
박자승	〃	25	〃	〃	〃	자유당
이남신	〃	29	〃	〃	한의사	무소속
임한풍	〃	38	〃	한문수업	이 장	자유당
김성수	〃	31	〃	소 졸	면의원	무소속
김기립	〃	47	〃	한문수업	이 장	〃
유갑규	〃	31	〃	국 졸	면의원	자유당
이삼규	〃	52	〃	소 졸	면서기	〃
오제금	〃	43	〃	〃	면의원	〃
김원철	〃	29	〃	〃	대청장	〃

□ 부안면(富安面)의회 면장 : 신재성

당선자	성별	연령	직 업	학 력	경 력	정 당
김일래	남	57	농 업	한문수업	면의회의장	자유당
이전우	〃	35	〃	소 졸	면의원	〃
박상규	〃	29	〃	중학중퇴	교 관	〃
최용대	〃	47	〃	소 졸	조합원	무소속
윤경중	〃	45	〃	〃	이 장	〃
이두범	〃	53	〃	한문수업	〃	〃
이정구	남	39	농 업	소 졸	무소속	〃
김윤성	〃	29	〃	중 졸	자유당	〃
조병수	〃	33	〃	소 졸	무소속	〃
조규성	〃	39	〃	중학중퇴	면의원	자유당
김명식	〃	44	〃	농 졸	〃	〃
김갑동	〃	33	〃	소 졸	소방대원	〃

3) 제3대 읍·면의원 선거

허정 과도내각이 퇴진하고 뒤를 이어 들어선 민주당정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자유당이 1958년 2·4파동 때 시·읍·면장의 선거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꾸었던 지방자치법을 다시 직선제로 복귀하는 한편 시비점을 보완하여 4·19정신에 맞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지사 및 특별시장까지 직선토록 하였다. 1960년 11월 1일에 공포된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의해 동년 12월 12일에 서울특별시 및 도의회 의원 선거를 12월 19일에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12월 26일에 시·읍·면장 선거, 12월 29일에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전라북도의 읍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는 정수 92명에 대해 입후보자는 200명으로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율은 80.1%로 비교적 높았다. 투표결과 무소속이 79명, 민주당이 12명, 신민당이 1명으로 무소속이 단연 높은 진출을 보였다.

면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면의원 정수 1,763석을 놓고 3,465명의 후보자가 나서 약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결과 무소속이 1,350명, 민주당이 372명, 신민당이 37명, 기타 3명이 당선되어 면의원 선거에서도 무소속이 단연 우세한 진출을 보였다.

읍장선거에 있어서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8개의 읍장직을 놓고 40명이 입후보

하여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결과 무소속이 7명, 민주당이 1명을 각각 당선시킴으로써 여기서도 무소속의 현저한 진출을 볼수 있다.

또한 164개의 면장직에 대해 783이 입후보하여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결과 무소속이 121명, 민주당이 40명, 신민당이 3명을 당선시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소속이 단연 앞서고 있다. 이러한 무소속의 눈부신 진출과 민주당의 패배는 그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낮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경우라고 보여진다.

〈읍 · 면장〉

고창읍장 : 박은구, 공음면장 : 김기성, 심원면장 : 손기염, 부안면장 : 김부성, 상하면장 : 김상득, 흥덕면장 : 이채한, 고수면장 : 이종후, 해리면장 : 김한병, 성내면장 : 이진범, 아산면장 : 이옥재, 성송면장 : 정기만, 신림면장 : 고광남, 무장면장 : 김진철, 대산면장 정균선(이상 14명)

〈읍 · 면의원〉

고창읍 : 조원승, 최만기, 배종진, 유성종, 이기화, 조필승, 전창섭, 조갑승, 유영회, 김영두, 정영기, 조동수, 이홍우

고수면 : 안보연, 오종덕, 서치용, 정성수, 김수현, 최석금, 이의복, 안재찬, 조상원, 유영원, 이공우,

아산면 : 라홍찬, 김원석, 유세영, 강천수, 박보근, 이종만, 이준재, 조용훈, 오성열, 조영환, 강성환, 윤태조

성송면 : 안병옥, 유남석, 강병기, 권태정, 홍순현, 주동섭, 이권현, 유치욱, 강철수, 정용환, 강흥석, 유현탁

대산면 : 김용환, 신종원, 조중현, 김영춘, 박재학, 김종훈, 최병선, 정창환, 임재연, 정병박, 김천석

무장면 : 김영래, 김재성, 시태순, 이돈, 김해성, 강휴권, 정휴중, 김필환, 오봉환, 서종래, 천내덕, 김영표,

공음면 : 김수근, 김두회, 최필주, 최판길, 라승남, 최복남, 권영술, 강용중, 정태묵, 문창환, 이종현, 전성린

상하면 : 김휴원, 김재천, 손형택, 표태희, 주영곤, 박영택, 이령희, 김대진, 김재영

해리면 : 김재석, 김승곤, 김용기, 최병모, 이정석, 이화범, 이석우, 이석영, 조성하, 이덕연, 손준식

심원면 : 손기염, 배용담, 민병열, 이규채, 진세언, 박연철, 이주헌, 손봉술, 김상호, 오수학

흥덕면 : 이윤석, 김재경, 오원종, 정재식, 김철수, 김진석, 이정석, 이보령
성내면 : 남재동, 이점열, 백남섭, 고영식, 노진하, 황봉익, 박성인, 황정구, 고광득, 이종기, 백일현, 김용숙
신림면 : 유종수, 이명신, 김원철, 오동수, 이정범, 김요진, 이문천, 고대식, 조맹연, 이승열
부안면 : 김종연, 정득채, 박동영, 김정현, 이규열, 이경구, 김용섭, 김신수, 김종술, 최진호, 신현근, 오연철

3. 교육위원 선거

자유당 정권은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49년 12월 교육법을 제정하고 52년 4월 교육법 시행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52년 6월 4일 교육자치제가 한국 헌법사상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 교육위원 선거는 특별시·도와 시·군단위의 2계층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는데, 특별시와 도의 경우에는 시·군대표들로 구성되고, 시·군자치구는 면·읍·동에서 직선된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각 시·군의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선출하였다.

고창군의 경우에는 각 읍·면에서 직선된 1명씩, 14명으로 구성되었다. 고창군 교육감은 이승영씨가 1·2대를, 김용순씨가 3대를 맡았다.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위원회는 각 시·군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 1인의 대표와 도지사가 임명한 3인으로 구성되었는데 고창군에서는 오성탁씨가 1·2·3대의 대표로 선출되어 도교육위원이 되었다. 오씨는 3대 때에 도부의장직을 맡았다.

자유당 시절에 시작되어 3번 실시되었던 교육위원 선거는 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와 더불어 그 막을 내리고 깊은 잠을 자다가 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년 4월 23일에 동시행령이 마련됨으로써 재현될 수 있었다. 30여년만에 부활된 교육자치법은 자유당 시절의 2단계 관할구역을 축소하여 시·도에만 국한하였다. 그리고 교육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되었다. 시·군·구의회에서 2인씩을 도의회에 추천해야 하는데 이때 피추천자 2인 중에 1명 이상은 반드시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 경력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도의회는 각 시·군·구에서 추천한 2인 중에서 1인씩을 선출하는데 이때에도 전체 당선자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경력자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고창군의 경우 유병천씨와 정규동씨가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의회에 상정되었다. 도의회는 비교육 경력자인 유병천씨를 제1,2대 도교육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제3대 도교육위원은 전라북도를 4개 선거구로 구분하여 총 9명의 도 교육위원을 선출하였는데 전주시가 1선거구로 2명, 군산, 김제, 부안이 2선거구로 2명, 익산, 완주, 진안, 무주, 장수가 3선거구로 3명, 정읍, 남원, 고창, 임실, 순창이 4선거구로 2명이 선출되었다.

□ 제1대 고창군 교육위원(고창군 자치 교육위원)

성 명	연 령	직 업	경 력
임 창 욱	41	농 업	면장 3년
김 헌 규	31	농 업	면서기 5년
김 영 수	38	회 사 원	신문기자(대 졸)
성 하 윤	38	농 업	국교후원 차장
정 균 선	38	〃	면협의원
신 석 재	35	〃	면농회장
김 정 수		〃	면직원 8년
정 연 명	34	신문지국	면의회부의장
정 재 순	37	농 업	소 졸
이 창 근	36	중학교장	대 졸
김 재 관	46	농 업	사친회장
김 봉 해	31	〃	중학중퇴
김 윤 식	62	〃	면장 8년
손 갈 순	37	〃	면의회 의장

※ 제1대이후 자료구입 불가

□ 전라북도 광역 교육위원(고창지역 관련)

구분	선출년월	성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선 출 방 법
제1대	91.8.10	유병천	52.11.6	고창여고 서무과장 전북수영연맹부회장 전북보이스카웃연맹이사 고창교육발전연구소장	지역교육청별 기초의회에서 2인을 추천하여 도의회에서 1인선출 1대 교육위원 정수:15인 2대 교육위원 정수:14인
제2대	95.8.18				
제3대	98.8.19	이기붕	52.7.17	대한산악전북연맹부회장 제3대교육위원회의장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 및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되, 선출권역별로 선출(총 4개선거구 9명 선출) 4선거구 : 정읍, 남원, 고창, 임실, 순창(2인)
		최이식	39.3.21	교육부지방교육행정국장 백제예술대교수 ※ 2000.8.14 사임	
	01.3.23	김해곤	29.4.28	군산대학교서무과장 제1,2대교육위원회의장 ※ 2001.3.23 승계	

4. 기타선거

이 항에는 국회의원, 참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가 이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일주체 대의원 선거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이에 해당한다.

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단으로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1972년 12월 15일 실시되었다.

고창군의 경우에는 15명의 대의원 정수를 놓고 36명이 경합하여 2.4대 1의 경쟁을 보였다. 처음 실시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많은 후보자들이 경합을 하였다. 14개 지구 중 어느 지역구에도 무투표 당선이 없었다는 것은 대의원 직책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당선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당선자 명단

선거구 명	당 선 자	생 년 월 일	주소	비고
고 창 읍	김 판 순	1917. 6. 4	고창읍 읍내리 157	
	유 석 만	1938. 3. 5	고창읍 읍내리 353-3	
고 수 면	안 정 회	1935. 5. 24	고수면 황산리 72	
아 산 면	정 선 묵	1938. 4. 5	아산면 용계리 80	
무 장 면	박 성 우	1939. 9. 27	무장면 무장리 280-2	
공 음 면	유 동 혁	1939. 3. 5	공음면 건동리 770	
상 하 면	노 연 업	1939. 5. 6	상하면 하장리 955	
해 리 면	이 덕 연	1933. 11. 9	해리면 동호리 1-6	
성 송 면	강 성 욱	1935. 6. 20	성송면 암치리 319	

선거구명	당선자	생년월일	주소	비고
대 산 면	강 구 정	1929. 7. 23	대산면 회룡리 452	
심 원 면	박 래 표	1934. 2. 20	심원면 연화리 705	
흥 덕 면	김 병 갑	1924. 10. 3	흥덕면 치룡리 596-3	
성 내 면	이 점 열	1928. 2. 3	성내면 양계리 509	
신 림 면	고 일 규	1930. 1. 3	신림면 무림리 452	
부 안 면	박 지 오	1936. 6. 4	부안면 상암리 218	

□ 후보자별 득표사항

선거구명	후보자별 득표수			
고 창 읍	유동란 1,504	김판순 2,945	은봉표 1,318	유석만 2,615
고 수 면	최병일 1,728	안정희 2,019		
아 산 면	정선묵 1,495	김영재 624		
무 장 면	박성우 2,954	정익환 1,637		
공 음 면	정민혁 1,364	유동혁 1, 941	강대진 1,268	
상 하 면	노연업 2,412	김재묵 1,381		
해 리 면	은준표 1,512	이종술 1,618	이덕연 1,883	
성 송 면	강성욱 2,109	정재철 1,639		
대 산 면	조중현 831	강구정 1,937	김범기 1,846	
심 원 면	손양순 1,100	김도성 990	박래표 1,586	
흥 덕 면	김병갑 2,045	이강남 1,745		
성 내 면	이점열 1,720	김태오 966	이수경 848	
신 림 면	고일규 1,667	조주희 1,294	이맹기 1,590	
부 안 면	박지오 2,529	홍순범 1,914		

□ 투표상황

선거구명	투표구수	선거인수	투 표 자 수			기권수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78	(2,748) 86,541	62,574	5,379	65,953	20,588	76.2
고 창 읍	11	(421) 11,376	8,382	171	8,553	2,823	75.2
고 수 면	4	(155) 4,996	3,747	135	3,882	1,114	77.7
아 산 면	6	(226) 6,272	2,119	2,506	4,625	1,647	73.7
무 장 면	5	(261) 6,577	4,591	276	4,367	1,710	74.0
공 음 면	6	(205) 5,996	4,573	120	4,693	1,303	78.3
상 하 면	5	(134) 5,103	3,793	461	4,254	849	83.4
해 리 면	7	(169) 7,085	5,013	407	5,420	1,665	76.5
성 송 면	4	(156) 5,171	3,748	183	3,931	1,240	76.4
대 산 면	5	(220) 6,377	2,614	125	4,739	1,638	74.1
심 원 면	4	(149) 4,676	3,676	148	3,824	852	81.8
흥 덕 면	5	(148) 5,381	3,790	225	4,015	1,366	74.6
성 내 면	5	(151) 5,062	3,534	249	3,783	1,279	74.7
신 림 면	6	(207) 6,337	2,551	158	4,709	1,628	74.3
부 안 면	5	(146) 6,132	4,443	215	4,658	1,474	76.0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가가 1978년 5월 18일에 실시되었다. 고창군의 경우 정수 15인에 32인이 경합하여 평균 2.1대의 경쟁을 보였으나 제1대 때와는 달리 무장면, 성송면, 심원면 등 3개 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왔다.

각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당선자 명단

선거구 명	당 선 자	생 년 월 일	주소	비고
고 창 읍	조 병 태	1935. 8. 21	고창읍 월암리 139	
	김 판 순	1917. 6. 4	고창읍 읍내리 157	
고 수 면	안 정 회	1935. 5. 24	고수면 황산리 72	
아 산 면	라 홍 찬	1920. 12. 30	아산면 목동리 397	
무 장 면	박 성 우	1939. 9. 27	무장면 무장리 280-2	
공 음 면	정 민 현	1936. 7. 6	공음면 군유리 190	
상 하 면	노 연 업	1939. 5. 6	상하면 하장리 943-1	
해 리 면	이 덕 연	1933. 11. 9	해리면 동호리 1-5	
성 송 면	정 철 묵	1935. 1. 15	성송면 산수리 85	
대 산 면	김 범 기	1942. 4. 3	대산면 덕천리 145	
심 원 면	박 래 표	1934. 2. 20	심원면 연화리 725	
흥 덕 면	이 강 남	1931. 11. 7	흥덕면 신덕리 108	
성 내 면	이 점 열	1928. 2. 3	성내면 양계리 509	
신 림 면	한 상 훈	1947. 6. 2	신림면 부송리 309	
부 안 면	박 지 오	1936. 6. 4	부안면 상암리 28	

□ 후보자별 득표사항

선거구 명	후 보 자 별 득 표 수			
고 창 읍	조병태 2,342	김기화 2,276	진남권 540	김판순 2,455
고 수 면	안정회 2,126	김상용 1,764	임환주 2,120	
아 산 면	강정희 2,159	라홍찬 2,440		
무 장 면	박성우무투표당선			
공 음 면	김명식 657	박영석 1,208	정민현 1,648	김길수 1,462
상 하 면	노연업 2,382	김준혁 1,908		
해 리 면	이덕연 2,707	윤석산 2,467		
성 송 면	정철묵무투표당선			
대 산 면	오회근 1,989	김범기 1,993	신우하 1,207	
심 원 면	박래표무투표당선			
흥 덕 면	김병갑 2,002	이강남 2,171		
성 내 면	양순철 1,390	이점열 2,433		
신 림 면	고일규 1,189	한상훈 1,661	김영철 1,559	
부 안 면	박지오 2,936	홍순범 1,814		

□ 투표상황

선거구명	투표구수	선거인수	투 표 자 수			기권수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78	(2,309) 81,941	55,005	1,931	56,936	9,640	85.5
고 창 읍	11	(368) 11,572	9,733	205	9,938	163	83.1
고 수 면	4	(155) 4,670	3,890	124	4,014	645	85.9
아 산 면	6	(169) 5,754	4,599	198	4,797	957	83.3
무 장 면	5	(158) 6,252	무 투 표 당 선				
공 음 면	6	(151) 5,756	4,975	157	5,132	624	89.1
상 하 면	5	(112) 5,063	4,290	217	4,507	556	89.0
해 리 면	7	(210) 6,631	5,174	216	5,390	1,241	81.2
성 송 면	4	(146) 4,673	무 투 표 당 선				
대 산 면	5	(167) 6,207	5,189	188	5,377	830	86.6
심 원 면	4	(88) 4,440	무 투 표 당 선				
흥 덕 면	5	(150) 5,119	4,173	174	4,347	772	81.9
성 내 면	5	(139) 4,632	3,823	95	3,918	714	81.6
신 림 면	6	(181) 5,338	4,409	160	4,569	769	85.5
부 안 면	5	(155) 5,834	4,750	197	4,947	887	84.7

나. 통일주체 대의원과 선거인

<제1대 통일주체 선거인 선거>

1972년 10월 17일 '유신(維新)'의 대변혁에 의하여 제4공화국은 탄생되었다. 1972년 11월 21일에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유신헌법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국민의 전권적 수임기관'으로서 전국에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구 1인에게 1구 5인까지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병용하였고 철저한 선거공영제 아래 선거운동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 선거법에 의하여 1972년 12월 15일과 1978년 5월 18일 각각 제1차와 제2차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다. 1차에서는 전국 1,630개 구에서 2,359명을 선출하였으나 2차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법을 개정하여 1,665개 구에서 2,583인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기능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 지역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소위 '유정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이러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찬반토론도 없이 투표를 진행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되게 하였다. 그리고 유정회 국회의원선거도 또한 대통령의 추천에 의한 유정회 국회의원 명단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하여 치루어진 대통령선거는 1972년 12월 23일과 1978년 7월 6일에 제8·9대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선출하였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시해되자 1979년 12월 6일 최규하를 제10대 대통령으로, 그리고 1980년 8월 27일 제11대 대통령으로 전두환(全斗煥)을 선출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전두환은 1980년 10월 22일 헌법을 개정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1980년 12월 31일에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대신에 대통령선거인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인의 임무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주 업무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과 다른 것이 있다면 대통령선거인은 대통령을 선출할 뿐 지역선거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정회 국회의원에 대한 선출권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구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구와 대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1선거구에서 1인의 대의원선거를 하되 1선거구의 인구가 2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구 2만까지마다 1인의 대의원을 더 추가하여 선거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선거구의 인구가 10만을 초과하여 획정될 경우에는 그 선거구의 대의원 정수는 5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인 선거구와 정수에 대해서는 1선거구에서 2인의 대통령선거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1선거구의 인구가 2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구 1만까지 마다 1인의 대통령선거인을 더 추가하여 선거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1선거구의 인구가 5만을 초과하여 획정하는 경우 그 선거구의 대통령선거인과 정수는 5인으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인은 5,277명으로 이전보

다 2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1981년 2월 11일 전국 1,905개 대통령 선거인 선거구에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5,272명의 대통령 선거인이 선출 되었고 1981년 2월 25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정의당 전두환, 한국국민당 김종철, 민권당 김의택, 민주한국당 유치송 후보 중 전두환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90.2%인 4,755표를 얻어 같은 해 3월 3일 임기 7년의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 제12대 대통령후보자별 득표현황

	투표수	후보자별득표수					무표투표수	기권수	투표율(%)
		한국국민당 김종철	민권당 김의택	민주한국당 유치송	민주정의당 전두환	계			
5,277	5,271	85	26	404	4,755	5,270	1	6	99.9
후보자별득표율(%)		1.6	0.5	7.7	90.2	100			

□ 당선자 명단

선거구명	당선자	생년월일	주소	비고
고창읍	김영완	1946. 3. 22	고창읍 읍내리 223	
	김동훈	1937. 11. 2	고창읍 읍내리 177	
	김정웅	1938. 6. 21	고창읍 덕산리 73	
고수면	서순기	1948. 9. 9	고수면 부곡리 293	
	최병일	1931. 3. 13	고수면 황산리 148	
아산면	강정희	1926. 9. 17	아산면 하갑리 67	
	정금열	1939. 6. 8	아산면 남산리 645	
무장면	정기표	1947. 9. 8	무장면 덕림리 332	
	이달수	1948. 4. 18	무장면 강남리 751	
공음면	김영식	1935. 12. 29	공음면 칠암리 산 28	
	김명회	1938. 2. 27	공음면 선동리 773	
상하면	김기주	1927. 11. 2	상하면 장신리 1002	
	이우연	1944. 12. 8	상하면 자룡리 360	
해리면	이정수	1935. 7. 19	해리면 사반리 179	
	이덕연	1933. 11. 9	해리면 동호리 125	
성송면	김범산	1935. 12. 12	성송면 상금리 172	
	정용환	1928. 8. 17	성송면 학천리 313	
대산면	정창영	1941. 6. 18	대산면 덕천리 123	
	탁정연	1936. 4. 14	대산면 율촌리 529	

선거구명	당선자	생년월일	주소	비고
심원면	한윤석	1940. 9. 1	심원면 만돌리 675	
	이진규	1940. 6. 2	심원면 주산리 170	
흥덕면	신세재	1943. 6.13	흥덕면 사천리 53	
	이백룡	1936.10.19	흥덕면 치룡리 596-5	
성내면	박병엽	1936. 7.27	성내면 산림리 279	
	고광록	1932. 9.12	성내면 옥제리 406	
신림면	윤정현	1932. 3.17	신림면 무림리 81	
	한상훈	1947. 6. 2	신림면 부송리 309	
부안면	주병래	1933. 2. 9	부안면 송현리 234	
	이강봉	1947.11.28	부안면 용산리 산5	

□ 후보자별 득표사항

선거구명	후보자 별 득표수				
고창읍	김영완 1,860	유제선 1,627	김동훈 2,480	유제욱 777	김정웅 2,535
고수면	서순기 1,105	최병일 1,629	안재찬 774		
아산면	강정희 1,748	유찬식 961	정금열 1,450		
무장면	정기표 1,729	이달수 1,511	서길영 1,382		
공음면	김영식 1,506	김명회 1,738	김대석 1,352		
상하면	김기주 1,579	이우연 1,453	김 수 843		
해리면	이정수 1,896	이덕연 1,636	조권행 1,433		
성송면	이영엽 990	김범산 1,465	정용환 1,180		
대산면	김종옥 906	김민현 1,303	정창영 1,468	탁정연 1,313	
심원면	안준현 987	한윤석 1,475	이진규 1,019		
흥덕면	신세재 1,088	이현환 1,005	이백용 1,468	이재남 528	
성내면	이재혁 761	박병엽 926	조병식 646	고광록 867	남재금 411
신림면	윤정현 1,551	한상훈 1,212	고남규 1,167	문성열 117	
부안면	주병래 594	이강봉 90	전재준 258		

□ 투표상황

선거구명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수	투 표 자 수			기권수	투표율(%)
				유효투표	무효투표	계		
계	78	150,292	(2,284) 75,841	63,193	1,110	64,303	(109) 11,538	84.8
고창읍	11	22,260	(330) 11,239	9,279	86	9,365	(23) 1,874	83.4
고수면	4	8,355	(102) 4,144	3,503	52	3,560	(4) 584	85.9
아산면	6	10,355	(158) 5,130	4,159	82	4,241	(6) 889	80.7
무장면	5	11,297	(180) 5,664	4,622	129	4,751	(13) 913	83.9
공음면	6	10,848	(188) 5,322	4,596	81	4,677	(5) 645	87.8
상하면	5	9,138	(139) 4,721	3,875	90	3,965	(12) 756	84.0
해리면	7	11,647	(170) 5,754	4,905	127	5,092	(4) 662	88.5
성송면	4	8,587	(154) 4,297	3,635	94	3,729	(7) 568	86.8
대산면	5	12,064	(167) 6,072	4,990	74	5,064	(7) 1,008	83.4
심원면	4	8,500	(99) 3,930	3,481	57	3,538	(8) 392	90
흥덕면	5	9,411	(148) 4,947	4,089	56	4,145	(8) 802	83.8
성내면	5	8,172	(132) 4,299	3,611	43	3,654	(3) 645	85
신림면	6	9,197	(144) 4,907	4,047	55	4,102	(4) 805	83.6
부안면	5	10,461	(173) 5,415	4,336	84	4,420	(5) 995	81.6

5. 고창군 정당 활동상황

이 장에서는 고창군에서 활동했던 각 지구당의 창당과 소멸 및 변경, 그리고 연락사무소 등에 대해서 약술한다. 그러나 선거관리업무가 1963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자료를 구비하지 못했다.

가. 지구당 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및 소멸상황

□ 민정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2. 10 결성신고 (대표자 김상흠)
- 1963. 4. 18 지구당 등록

□ 민주공화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2. 22 결성신고(대표자 김영인)
- 1963. 5. 22 지구당 등록

□ 자유민주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8. 13 결성신고(대표자 김수학)
- 1963. 5. 22 지구당 등록

□ 추풍회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9. 2 결성신고(대표자 진두은)
- 1963. 9. 21 지구당 등록

□ 국민의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9. 2 결성신고(대표자 김상흠)
- 1963. 9. 4 지구당 등록
- 1963. 9. 15 결성신고(대표자 이형연)
- 1963. 10. 5 지구당 등록

□ 민주당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3. 9. 7 결성신고(대표자 박용석)
- 1963. 9. 12 지구당 등록

□ 신한당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6. 8. 1 결성신고(대표자 유승석)
- 1963. 9. 1 지구당 등록

□ 자유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6. 9. 16 결성신고(대표자 정세환)
- 1967. 1. 23 지구당 등록

□ 민중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7. 4. 27 결성신고(대표자 진두은)
- 1967. 5. 1 지구당 등록

□ 대중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8. 2. 20 결성신고(대표자 이형연)
- 1968. 2. 15 지구당 등록
- 1970. 1. 22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대표자 서용현)
- 1970. 4. 28 지구당 등록

□ 신민당(가칭) : 전북 제9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69. 9. 10 결성신고(대표자 김상흠)
- 1969. 9. 18 지구당 등록

□ 통민당(가칭) : 전북 제10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71. 1. 13 결성신고(대표자 김봉구)
- 1971. 5. 8 중선관정 제813호(71. 5. 5)중앙동 등록 취소통지에 의해 말소

□ 민주통일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73. 1. 16 결성신고(대표자 이희천)
- 1973. 1. 23 지구당 등록

□ 민주정의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0. 12. 15 결성신고(대표자 진의종)
- 1981. 1. 5 지구당 등록

□ 민주한국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0. 12. 30 결성신고(대표자 김진배)
- 1981. 1. 14 지구당 등록

□ 민주사회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0. 12. 30 결성신고(대표자 조병후)
- 1981. 1. 14 지구당 등록

□ 한국국민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0. 12. 30 결성신고(대표자 이호종)
- 1981. 1. 14 지구당 등록

□ 사회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1. 1. 8 결성신고(대표자 정균환)
- 1981. 1. 24 지구당 등록

□ 민권당(가칭) : 전북 제6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1. 1. 14 결성신고(대표자 최재섭)
- 1981. 1. 24 지구당 등록

※ 1988. 3. 17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법률 제4003호)으로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고창군 위원회가 정당사무를 관장하게 되었음.

□ 민주정의당 : 고창군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8. 3. 24 결성신고(대표자 이호종)
- 1988. 4. 6 지구당 등록

□ 통일민주당 : 고창군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8. 4. 2 결성신고(대표자 정재길)
- 1988. 10. 2 활동기간 만료로 소멸

□ 평화민주당 : 고창군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8. 4. 6 결성신고(대표자 정균환)
- 1988. 4. 16 지구당 등록

□ 통일민주당 : 고창군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 1989. 3. 10 결성신고(대표자 정재길)

나. 지구당 등록상황

□ 민정당
- 1963. 4. 10 전북 제9지구당(고창) 등록 (대표자 김재규)
- 1965. 6. 25 민중당으로 신설 합당

□ 민주공화당
- 1963. 5. 6 전북 제9지구당(고창) 등록 (대표자 김형인)
- 1963. 8. 12 대표자 김병탁으로 변경 등록
- 1964. 9. 26 대표자 신용남으로 변경 등록
- 1968. 8. 27 당기위원회 규정 18조(제명)에 의하여 대표자 신용남 제명
- 1969. 3. 4 대표자 이호종으로 변경 등록
- 1970. 7. 29 대표자 직무대행 김병갑 변경 등록
- 1971. 1. 21 법개정에 따라 전북 제10지구당으로 명단 변경 등록
- 1971. 3. 11 신용남으로 변경 등록
- 1971. 8. 23 이호종으로 변경 등록
- 1973. 6. 14 정당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편 보완 제6지구당(고창, 부안)으로 등록 (대표자 이형옥)

- 1979. 7. 18 대표자 이호종으로 변경 등록
- 1980. 11. 10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으로 말소

□ 자유민주당

- 1963. 8. 23 전북 제9지구당(고창) 등록 (대표자 김수학)
- 1964. 12. 4 민정당으로 흡수 합당

□ 국민의당

- 1963. 9. 4 전북 제9지구당(고창) 등록 (대표자 김상흠)
- 1963. 9. 10 중앙당의 지구당 창당취지통지에 따라 말소
- 1963. 10. 5 전북 제9지구당 (대표 이형연)
- 1964. 10. 8 민주당으로 흡수 합당

□ 민주당

- 1963. 9. 12 전북 제9지구당(고창) 등록 (대표자 박종율)
- 1964. 12. 8 대표자를 이형연으로 변경 등록
- 1965. 6. 25 민중당으로 신설 합당

□ 추풍회

- 1963. 9. 21 전북 제9지구당(고창) 등록 (대표자 진두은)
- 1964. 3. 20 대표자 안판동으로 변경 등록
- 1967. 3. 31 통한당으로 당명칭 변경에 따라 지구당의 명칭이 통한당으로 변경 등록

□ 민중당

- 1965. 6. 25 전북 제9지구당(고창) 등록(민정당과 민주당을 흡수하여 신설 합당함) (대표자 김상흠)
- 1967. 4. 7 신민당으로 신설 합당
- 1967. 5. 1 지구당 등록 (대표자 진두은)
- 1972. 9. 18 법개정에 의하여 전북 제10지구당으로 명칭 변경 등록
- 1973. 7. 2 중선관정제 607호 취소통지에 의거 말소

□ 신한당

- 1966. 9. 1 전북 제9지구당(고창)으로 등록 (대표자 이형연)
- 1967. 4. 7 신민당으로 신설 합당

□ 자유당

- 1967. 1. 23 전북 제9지구당(고창) 등록 (대표자 정세환)
- 1970. 2. 2 신민당으로 흡수 합당

□ 통한당
- 1967.3.31 전추풍회가 통한당으로 당명칭 변경에 따라 변경 등록 (대표자 안판동)
- 1971. 5. 4 중선관정제 780호 중앙당 등록 취소통지에 의하여 말소

□ 신민당
- 1967. 4. 7 전북 제9지구당(고창) 등록 (대표자 김상흠) (신한당과 민중당을 흡수하여 신설 합당)
- 1969. 9. 8 정당법 제39조에 의해 자진 해산
- 1969. 9. 18 전북 제9지구당으로 등록 (대표자 김상흠)
- 1970. 2. 2 자유당을 흡수 합당
- 1970. 10. 1 대표자 이원배로 변경 등록
- 1971. 2. 1 제10지구당으로 명칭 변경 등록
- 1972. 4. 13 대표자 진의종으로 변경 등록
- 1973. 6. 27 선거구 조정으로 제6지구당(고창, 부안)으로 개편 보완 등록 (대표자 김상흠)
- 1980. 4. 29 대표자 김상흠으로 변경 등록
- 1980. 11. 10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으로 말소

□ 대중당
- 1968. 2. 15 전북 제9지구당(고창)으로 등록 (대표자 이형연)
- 1969. 12. 26 등록 취소 (법정 당원부족으로)
- 1970. 4. 28 전북 제9지구당으로 등록 (대표자 서갑현)
- 1971. 1. 16 전북 제10지구당(고창)으로 명칭 변경 등록
- 1972. 5. 10 지구당 자진 해산

□ 민주통일당
- 1973. 1. 23 전북 제6지구당(고창, 부안)으로 등록 (대표자 이희천)
- 1978. 5. 8 대표자 김일범으로 변경 등록
- 1980. 11. 10 헌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으로 말소

□ 민주정의당
- 1981. 1. 5 전북 제6지구당(고창, 부안)으로 등록 (대표자 진의종)
- 1981. 2. 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 위원회(정읍)에 이관
- 1990. 2. 15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신설합당

□ 한국국민당
- 1981. 1. 14 전북 제6지구당(고창, 부안)으로 등록 (대표자 이호종)
- 1981. 2. 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 위원회(정읍)에 이관

□ 민주한국당
- 1981. 1. 14 전북 제6지구당(고창, 부안)으로 등록 (대표자 김진배)
- 1981. 2. 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 위원회(정읍)에 이관

□ 민주사회당
- 1981. 1. 14 전북 제6지구당(고창, 부안)으로 등록 (대표자 조병후)
- 1981. 1. 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 위원회(정읍)에 이관

□ 민권당
- 1981. 1. 14 전북 제6지구당(고창, 부안)으로 등록 (대표자 최재섭)
- 1981. 2. 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 위원회(정읍)에 이관

□ 사회당
- 1981. 1. 24 전북 제6지구당(고창, 부안)으로 등록 (대표자 정균환)
- 1981. 2. 23 선거구 조정으로 정당관계서류 선거구 위원회(정읍)에 이관

□ 민주자유당
- 1990. 5. 15 전북 고창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 이호종)
- 1994. 10. 18 대표자 변경등록 (대표자 김주섭)

□ 신민주연합당
- 1991. 4. 13 명칭 변경 등록 신청
- 1981. 4. 15 명칭 변경 승인
- 1991. 9. 16 신민주연합당 민주당 신설 합당

□ 민주당
- 1991. 9. 16 전북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정균환)

□ 통일국민당
- 1992. 3. 7 전북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노동채)
- 1994. 7. 15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의 신설합당

□ 새한국당
- 1992. 11. 16 전북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임동갑)
- 1995. 3. 6 새한국당 민주당 흡수 합당

□ 신민당
- 1994. 7. 8 전북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노동채)
- 1995. 3. 31 신민당 자유민주연합 신설 합당

□ 자유민주연합
- 1995. 5. 31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노동채)
- 2000. 3. 6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김 손)

□ 새정치국민회의
- 1995. 9. 6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정균환)

□ 한나라당
- 1997. 11. 24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김주섭)
- 2000. 3. 10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이백룡)

□ 새천년민주당
- 2000. 3. 13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정균환)

□ 개혁국민정당
- 2002. 11. 15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최강선)

□ 국태민안호국당
- 2002. 11. 22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양인옥)

다. 연락소 등록상황

□ 민주정의당
- 1982. 2. 25 전북 제6지구당 고창군 연락소로 등록 (대표자 이상복)
- 1988. 3. 24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법률 제4003호)에 의거 국회의원 선거구가 정읍, 고창에서 고창지구가 분리되어 소선거구가 되면서 당지구당 연락소는 소멸

□ 자유민주연합 (고창군연락소)
- 2000. 3. 6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이동환)

□ 한나라당 (고창군연락소)
- 2002. 8. 23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대표자 임영남)



제2장 의원선거 및 개원준비

제1절 의원 선거

1. 의원 선거 현황
2. 의원 당선자 현황

제2절 개원 준비

1. 제1대 개원
2. 제2대 개원
3. 제3대 개원
4. 제4대 개원
5. 제5대 개원
6. 제6대 개원

제1절 의원 선거



1. 의원 선거 현황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고창군의회 정수는 10명으로 21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2.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 선거구'는 고창읍, 아산·신림면, '나 선거구'는 심원·흥덕·성내·부안면, '다 선거구'는 고수·공음·성송·대산면, '라 선거구'는 무장·상하·해리면으로 구성되었다.

읍면 투표구별 득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선거구

읍면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민주당 김진갑	민주당 조규철	민주당 김종호	무소속 박래환	무소속 조민규	계		
계	20,005	14,274	2,606	3,550	3,042	2,705	2,011	13,914	360	5,731
부재자	1,040	919	184	237	132	180	158	891	28	121
고창읍	14,243	9,893	1,911	1,759	2,368	2,166	1,487	9,691	202	4,350
아산면	2,642	1,967	191	1,228	120	141	216	1,896	71	675
신림면	2,080	1,495	320	326	422	218	150	1,436	59	585

□ 나 선거구

읍면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민주당 오덕상	민주당 장세영	민주당 윤영식	무소속 최인규	무소속 천남해	계		
계	10,667	8,036	1,776	1,536	1,782	1,682	924	7,700	336	2,631
부재자	493	444	73	143	103	69	27	415	29	49
심원면	2,435	1,849	143	215	1,205	133	67	1,763	86	586
흥덕면	3,102	2,373	942	145	88	940	187	2,302	71	729
성내면	2,039	1,433	346	143	141	264	486	1,380	53	606
부안면	2,598	1,937	272	890	245	276	157	1,840	97	661

□ 다 선거구

읍면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민주당 김범진	민주당 김영재	무소속 김갑성	무소속 정영진	무소속 이상호	무소속 임정호	계		
계	10,799	8,157	1,444	1,330	718	665	1,806	1,797	7,760	397	2,642
부재자	544	488	75	54	27	30	168	123	477	11	56
고수면	2,186	1,617	129	194	67	67	965	119	1,541	76	569
공음면	2,579	2,046	135	450	72	65	171	1,062	1,955	91	533
성송면	1,862	1,369	219	231	78	435	167	152	1,282	87	493
대산면	3,628	2,636	885	401	474	68	335	341	2,504	132	992
잘못투입된투표지	0	1	1	0	0	0	0	0	1	0	−1

□ 라 선거구

읍면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
			민주당 이만우	민주당 김만기	민주당 박현규	무소속 김기현	무소속 김정강	계		
계	8,527	6,460	1,279	1,217	1,406	1,144	1,082	6,128	332	2,067
부재자	451	376	64	85	126	43	50	368	8	75
무장면	2,832	2,148	293	769	128	72	789	2,051	97	684
상하면	2,357	1,776	248	168	343	829	84	1,672	104	581
해리면	2,887	2,157	674	193	809	199	159	2,034	123	730
잘못투입된투표지	0	3	0	2	0	1	0	3	0	−3

2. 의원 당선자 현황

제6대 고창군의회 의원 당선자를 직업별, 학력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직업별 현황

구분 / 계	농·축산업	자영업	정치인	기타	비 고
11	6	1	3	1	

※ 2011년 4월 27일 재보궐선거 1명(자영업)

□ 학력별 현황

구분 / 계	초 졸	중 졸	고 퇴	고 졸	대 퇴	대졸 이상	비고 (대재)
11	1	-	-	3	2	3	2

※ 2011년 4월 27일 재보궐선거 1명(고졸)

□ 연령별 현황

구분 / 계	36～40	41～45	46～50	51～55	56～60	60이상	비 고
11	-	1	1	7	1	1	

※ 2011년 4월 27일 재보궐선거 1명(58세)

제2절 개원 준비



1. 제1대 개원

가. 의회 사무기구 신설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91.4.4 조례 제1205호) 되어 고창군의회 사무기구가 신설되었다.

의회사무과에 사무과장(행정사무관)을 두며 정수는 13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고창군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하며 다음과 같다.

□ 의회사무과 직원현황

구분	계				5급			6급			7급		기능직			비고
	계	5~9급	별정직	기능직	소계	행정	행정·별정	소계	행정	행정·별정	소계	행정	소계	9급	10급	
정원	13	7		6	3	1	2	2	1	1	2	2	6	3	3	
현원	13	6	1	6	3	3		2	1	1	2	2	6	2	4	

나. 지방자치관련 조례 · 규칙 정비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한 관련 자치법규가 일제히 정비 완료되어 의회관련 자치법규 10종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제정공포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조례(6종)

1)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1992. 5. 7 조례 제1236호)
2) 고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1991. 4. 4 조례 제1205호)
3) 고창군의회공인조례(1991. 3. 30 조례 제1200호)
4) 고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1991. 4. 12 조례 제1169호)

5)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1991. 4. 13 조례 제1201호)
6) 고창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1991.5.21조례제1172호)

□ 규칙(4종)
1) 고창군의회의규칙(1991. 4. 13 조례 제629호)
2) 고창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1991. 4. 4 조례 제628호)
3) 고창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1991. 4. 4 조례 제627호)
4) 고창군의회청원심사규칙(1991. 4. 13 조례 제630호)

2. 제2대 개원

가. 집회공고

총선 후 처음 개원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이 소집하도록 되어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의회의 집회공고를 1995년 7월 10일 고창군수가 공고하였으며 집회일시는 1995년 7월 18일 10시로 공고되었다.

나. 의장단 선거

1) 전반기 의장단 선거

'95년 7월 18일 11시에 개의한 제3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재적의원 15명중 소수정당 소속의원 및 무소속의원 6명이 선거에 불참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인 이돈우 의원의 사회로 진행하였으며 9명이 투표에 참석 만장일치로 무장면 선거구 출신인 이돈우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하였으며, 이어서 실시한 부의장 선거에도 6명이 불참한 가운데 9명이 투표에 참석 만장일치로 대산면 선거구 출신인 김기채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하여 제2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2) 후반기 의장단 선거

'97년 1월 18일 14시에 개의한 제5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재적의원 15명중 14명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인 이돈우 의원의 사회로 진행하여 투표한 결과 최석기 의원 12표, 이돈우 의원 2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공음면 선거구 출신인 최석기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으며, 이어서 실시한 부의장 선거에도 총 투표자 14명중 고병윤 의원 8표, 성호익 의원 6표로 성내면 선거구 출신 고병윤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하여 제2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하여 민주 지방자치를 향한 힘찬 항해가 시작되었다.

3. 제3대 개원

가.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대 고창군의회의 집회 일시를 1998년 7월 9일 10시로 하여 1998년 7월 3일에 고창군수가 공고하였다.

나. 의장단 선거

1) 전반기 의장단 선거

1998년 7월 9일 10시에 개의한 제6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재적의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연장의원인 류길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총투표 14표중 진남표 의원이 8표, 김기채 의원이 6표를 획득하여 진남표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하였으며, 이어서 실시한 부의장 선거에서는 총투표 14표중 성호익 의원이 10표, 이맹근 의원이 4표를 획득하여 성호익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어 제3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갖추어졌다. 또한 운영위원장에는 유길승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는 이만우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전재준의원이 선출되었다.

2) 후반기 의장단 선거

2000년 7월 1일 11시에 개의한 제8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재적의원 13명중 12명이 참석하여 투표한 결과 진남표 의원 6표, 성호익 의원 6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어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였다. 2차 투표 결과도 진남표 의원 6표, 성호익 의원 6표가 되어 결국 2000년 7월 10일 12시에 개의한 제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3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진남표 의원 8표, 성호익 의원 4표로 진남표 의원이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의장에 당선되었으며, 부의장 선거는 2000년 7월 18일 12시에 개의한 제8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총 투표 12표중 이만우 의원 11표, 류길규 의원이 1표를 획득하여 이만우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어 제3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

단이 출범하였으며, 운영위원장은 최인규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맹근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유길승 의원이 선출되었다.

4. 제4대 개원

가.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대 고창군의회의 집회일시를 2002년 7월 9일 10시로 하여 고창군수가 2002년 7월 4일에 공고하였다.

나. 의장단 선거

1) 전반기 의장단 선거

2002년 7월 9일 10시에 개의한 제10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재적의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연장의원인 김상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총투표 14표 중 성호익 의원이 13표, 기권 1표로 성호익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하였으며, 이어서 실시한 부의장 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의원이 없어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였다. 2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투표 14표 중 김상필 의원이 14표를 획득하여 김상필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어 제4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었다. 또한 운영위원장에는 심재규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는 최인규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전춘식 의원이 선출되었다.

2) 후반기 의장단 선거

2004년 6월 17일 14시에 개의한 제12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재적의원 14명중 14명이 참석하여 투표한 결과 최석기 의원 8표, 정원환 의원 1표로 최석기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으며, 바로 이어서 실시한 부의장 선거는 총 투표 14표 중 최인규 의원 8표, 정원환 의원이 1표를 획득하여 최인규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어 제4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하였으며, 운영위원장은 김남규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은 전춘식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박병옥 의원이 선출되었다.

5. 제5대 개원

가.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대 고창군의회의 집회일시를 2006년 7월 13일 11시로 하여 고창군수가 2006년 7월 5일에 공고하였다.

나. 의장단 선거

1) 전반기 의장단 선거

2006년 7월 5일 10시에 개의한 제14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재적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연장의원인 김갑성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총투표 10표 중 장세영 의원이 10표 만장일치로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으며, 이어서 실시한 부의장 선거에서는 1 ·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의원이 없어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3차 투표를 실시하였다. 3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투표 10표 중 이재정 의원이 5표를 획득하여 이재정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어 제5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었다. 또한 운영위원장에는 박래환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는 박현규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김갑성 의원이 선출되었다.

2) 후반기 의장단 선거

2008년 6월 26일 10시에 개의한 제16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재적의원 10명중 9명이 참석하여 투표한 결과 박현규 의원 5표, 이재정 의원 3표, 장세영 의원 1표로 박현규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으며, 바로 이어서 실시한 부의장 선거는 총 투표 9표 중 김갑성 의원 5표, 김종호 의원이 4표를 획득하여 김갑성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어 제5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하였으며, 운영위원장은 이재정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은 박래환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이옥순 의원이 선출되었다.

6. 제6대 개원

가.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대 고창군의회의 집회일시를 2010년 7월 8일 10시로 하여 의회사무과장이 2010년 7월 1일에 공고하였다.

나. 의장단 선거

1) 전반기 의장단 선거

2010년 7월 8일 10시에 개의한 제18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재적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연장의원인 조금자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총투표 10표 중 이만우의원이 10표 만장일치로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으며, 이어서 실시한 부의장 선거에서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투표 10표 중 박래환 의원이 10표를 획득하여 부의장에 당선되어 제6대 고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었다. 또한 운영위원장에는 오덕상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는 김종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임정호의원이 선출되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호 의원의 사망으로(2011.3.12.) 제1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영식 의원이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 됨.

2) 후반기 의장단 선거

2012년 7월 3일 10시에 개의한 제20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재적의원 10명 중 10명이 참석하여 투표한 결과 박래환 의원 6표, 박현규 의원 4표로 박래환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으며, 바로 이어서 실시한 부의장 선거는 총 투표 10표 중 조병익 의원 9표, 조금자 의원이 1표를 획득하여 조병익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어 제6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하였으며, 이튿날 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은 오덕상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은 이상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조금자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3장 제6대 고창군의회 운영

제1절 집회와 회기
1. 집회 일람

제2절 본회의 주요의안 처리현황
1. 주요의안 처리현황

제3절 의안제출 및 처리
1. 종류별 의안처리 현황
2. 예산안
3. 조례안
4. 승인안
5. 결의안
6. 기타안

제4절 군정질문과 답변
1. 제186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2. 제188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3. 제194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4. 제197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5. 제204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6. 제207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7. 제213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8. 제216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제5절 자유발언(5분 발언)

제6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1. 제183회 임시회
2. 제189회 임시회
3. 제192회 임시회
4. 제195회 임시회
5. 제201회 임시회
6. 제205회 임시회
7. 제212회 임시회
8. 제214회 임시회
9. 제218회 임시회

제7절 민원처리
1. 민원처리 현황

제1절 집회와 회기



1. 집회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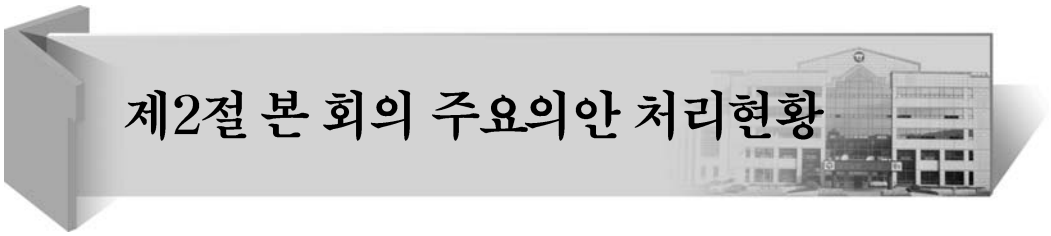
고창군의회는 2010년 7월 15일 제6대 의회 출범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임시회 29회, 정례회 8회로 339일간의 회의를 갖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연도별 집회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집회 현황

년 도 별	구 분	개 회 수	회의일수	비 고
계	**총 계**	**37**	**339**	
	임 시 회	**29**	**168**	
	정 례 회	**8**	**171**	
2010년	소 계	7	60	
	임 시 회	5	18	
	정 례 회	2	42	
2011년	소 계	9	83	
	임 시 회	7	41	
	정 례 회	2	42	
2012년	소 계	11	92	
	임 시 회	9	50	
	정 례 회	2	42	
2013년	소 계	9	89	
	임 시 회	7	44	
	정 례 회	2	45	
2014년	소 계	1	15	
	임 시 회	1	15	
	정 례 회	0	0	

□ 회의운영 현황

회 수	구 분	기 간	일 수	처리된 안건
제182회	임시회	2010. 07. 08 ~ 2010. 07. 08	1	-
제183회	임시회	2010. 08. 02 ~ 2010. 08. 06	5	2
제184회	임시회	2010. 08. 23 ~ 2010. 08. 31	9	10
제185회	임시회	2010. 09. 08 ~ 2010. 09. 08	1	2
제186회	정례회	2010. 10. 04 ~ 2010. 10. 15	12	11
제187회	임시회	2010. 11. 03 ~ 2011. 11. 04.	2	17
제188회	정례회	2010. 11. 22 ~ 2011. 12. 21	30	19
제189회	임시회	2011. 01. 17. ~ 2011. 01. 18	2	8
제190회	임시회	2011. 02. 24 ~ 2011. 02. 25	2	4
제191회	임시회	2011. 03. 28 ~ 2011. 04. 06	10	1
제192회	임시회	2011. 05. 23 ~ 2011. 05. 31	9	6
제193회	임시회	2011. 06. 17 ~ 2011. 06. 21	5	2
제194회	정례회	2011. 07. 11 ~ 2011. 07. 22	12	8
제195회	임시회	2011. 09. 19 ~ 2011. 09. 28	10	14
제196회	임시회	2011. 10 .24 ~ 2011. 10. 26	3	9
제197회	정례회	2011. 11. 21 ~ 2011. 12. 21	31	26
제198회	임시회	2012. 01. 17 ~ 2012. 01. 18	2	9
제199회	임시회	2012. 01. 26 ~ 2012. 01. 27	2	1
제200회	임시회	2012. 02. 27 ~ 2012. 03. 09	12	6
제201회	임시회	2012. 04. 30 ~ 2012. 05. 09	10	9
제202회	임시회	2012. 06. 18 ~ 2012. 06. 21	4	7
제203회	임시회	2012. 07. 03 ~ 2012. 07. 04	2	-
제204회	정례회	2012. 07. 10 ~ 2012. 07. 20	11	6
제205회	임시회	2012. 10. 05 ~ 2012. 10. 16	12	2
제206회	임시회	2012. 11. 01 ~ 2012. 11. 05	5	31
제207회	정례회	2012. 11. 20 ~ 2012. 12. 20	31	18
제208회	임시회	2012. 12. 31 ~ 2012. 12. 31	1	1
제209회	임시회	2013. 01. 16 ~ 2013. 01. 17	2	6
제210회	임시회	2013. 03. 13 ~ 2013. 03. 20	8	6
제211회	임시회	2013. 04. 24 ~ 2013. 05. 02	9	10
제212회	임시회	2013. 05. 20 ~ 2013. 05. 29	10	-
제213회	정례회	2013. 07. 10 ~ 2013. 07. 23	14	18
제214회	임시회	2013. 09. 30 ~ 2013. 10. 10	11	12
제215회	임시회	2013. 10. 16 ~ 2013. 10. 18	3	2
제216회	정례회	2013. 11. 20 ~ 2013 .12. 20	31	-
제217회	임시회	2013. 12. 29 ~ 2013. 12. 29	1	14
제218회	임시회	2014. 03. 26 ~ 2014. 04. 09	15	8



제2절 본 회의 주요의안 처리현황

1. 주요의안 처리현황

□ 주요의안 처리현황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82회 임시회 (1일간)	제1차	○ 의장 선거의 건 ○ 회기결정의 건 ○ 부의장 선거의 건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의장 : 이만우 ○ 회기 : 2010. 7. 8 ~ 7. 8 ○ 부의장 : 박래환 ○ 운영 (오덕상,조금자,박현규, 임정호,조규철) , 자치 (김종호,윤영식, 박현규,오덕상,이상호) , 산건 (임정호,조규철, 박래환,조금자) ○ 운영 (오덕상) , 자치 (김종호) , 산건 (임정호)
제183회 임시회 (5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회기 : 2010. 8.2 ~ 8.6 ○ 원안의결
	제2차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 채택
제184회 임시회 (9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2010년도 실과팀 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회기 : 2010. 8.23 ~ 8.31 ○ 문화관광과, 농업진흥과, 건설도시과
	제2차	○ 2010년도 실과팀 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지역경제과, 산림축산과, 민원봉사과, 해양수산과
	제3차	○ 2010년도 실과팀 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고창마케팅팀
	제4차	○ 2010년도 실과팀 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체육청소년, 환경위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제5차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창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변경의 건) ○ 고창군 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영광원자력발전소실태파악조사특별위원회구성발의안 ○ 결의문 채택의 건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원안채택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85회 임시회 (1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쌀 대북지원 재개 등 촉구 결의문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회기 : 2010. 9. 8 ~ 9. 8 ○ 원안채택 ○ 원안의결
제186회 정례회 (12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 제안설명의 건	○ 회기 : 2010. 10. 4 ~ 10. 15 ○ 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 설명자 : 재무과장 ○ 설명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2차	○ 군정질문의 건	○ 질문자 : 조규철, 이상호, 윤영식, 오덕상, 임정호
	제3차	○ 2010년도 실과 주요업무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제4차	○ 2010년도 실과 주요업무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제5차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군정질문 답변의 건	○ 원안의결 ○ 답변자 : 고창군수
	제6차	○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 고창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조례안 ○ 고창군기업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조례안 ○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2009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승인안 ○ 고창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채택의 건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채택
제187회 임시회 (2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 회기 : 2010. 11. 3 ~ 11. 4 ○ 원안의결 (전원 위원) ○ 원안의결 (전원 위원)
	제2차	○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 고창군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생활폐기물등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 ○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복분자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선운산복분자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의결
제188회 정례회 (30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2010. 11. 22 ~ 12. 21
	제2차	○ 2011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제3차	○ 2011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민생경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제4차	○ 2011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농업진흥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제5차	○ 2011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재난안전과, 지역전략과, 보건소, 살기좋은 고창만들기과
	제6차	○ 2011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제7차	○ '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설명자 : 고창군수
		○ '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설명자 : 고창군수
		○ '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설명자 : 고창군수
		○ 군정질문의 건	○ 질문자 : 임정호, 오덕상, 조금자, 윤영식, 이상호, 조규철
	제8차	○ 군정질문·답변의 건	○ 답변자 : 고창군수
	제9차	○ 고창군 군세기본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수정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의결
		○ 고창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 고창군고창월곡 꿈에그린관리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의결
		○ '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의결
		○ '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의결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89회 임시회 (2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 회기 : 2011. 1. 17 ~ 1. 18 ○ 보고자 : 고창군수
	제2차	○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채택
제190회 임시회 (2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2011. 2. 24 ~ 2. 25
	제2차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국폴리텍 · 대학 고창캠퍼스 취득및 처분의 건) ○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제191회 임시회 (10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 회기 : 2011. 3. 28 ~ 4. 6 ○ 위원장 : 윤영식
	제2차	○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제3차	○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민원봉사과, 민생경제과, 문화관광과
	제4차	○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재무과, 농업진흥과, 건설도시과
	제5차	○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과
	제6차	○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지역전략과,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보건소
	제7차	○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제8차	○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관리 운영조례안	○ 원안의결
제192회 임시회 (9일간)	제1차	○ 당선의원 선서 ○ 회기결정의 건 ○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선서자 : 조병익 ○ 회기 : 2011. 5. 23 ~ 5. 31 ○ 원안의결 ○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선임(조병익) ○ 윤영식, 김용식, 정병갑, 고양규, 김창수
	제2차	○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유지와 국유지교환 【고창군↔기상청】 ○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유지와 사유지교환 【고창군↔서울시 니어스타워(주)】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채택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93회 임시회 (5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회기 : 2011. 6. 17 ~ 6. 21 ○ 설명자 : 고창군수 ○ 위원 선임(조병익)
	제2차	○ 고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원안의결 ○ 원안의결
제194회 정례회 (12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 제안설명의 건	○ 회기 : 2011. 7. 11 ~ 7. 22 ○ 설명자 : 부군수 ○ 설명자 : 부군수 ○ 설명자 : 부군수
	제2차	○ '11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민생경제과, 민원봉사과, 건설도시과
	제3차	○ 군정질문의 건 ○ '11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질문자 : 임정호, 윤영식, 오덕상, 이상호, 박래환 ○ 문화관광과, 재무과, 농업진흥과, 산림축산과
	제4차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육군기계화학교 전차포 사격장 고창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결의문 채택의 건 ○ '11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채택 ○ 보건소, 지역전략과, 해양수산과,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제5차	○ '11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제6차	○ 군정질문 답변의 건	○ 답변자 : 고창군수
	제7차	○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지와 선운사 교환 ○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2010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제195회 임시회 (10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11년도 실과소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회기 : 2011. 9. 19 ~ 9. 28 ○ 기획예산실, 재난안전과
	제2차	○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흥덕소 재지 주차장 부지 매입	○ 원안의결
		○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의결
		○ 고창군 기념비·동상·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	○ 수정의결
		○ 고창군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의결
		○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 원안의결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창문화원 신축	○ 원안의결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창배수지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 원안의결
		○ 고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의결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의결
제196회 임시회 (3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2011. 10. 24 ~ 10. 2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 원안의결
		○ '1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 원안의결
	제2차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 원안의결
		○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수정의결
		○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 원안의결
		○ 201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의결
제197회 임시회 (3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2011. 11. 21 ~ 12. 21
	제2차	○ 2012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제3차	○ 2012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건설도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지역전략과
	제4차	○ 2012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농업진흥과, 재무과,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제5차	○ 2012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재난안전과, 민생경제과, 보건소,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제6차	○ 2012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기획예산실(보충)
	제7차	○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본예산, 추경) ○ 군정질문의 건	○ 설명자 : 군수 ○ 질문자 : 조규철 의원, 조병익 의원, 이상호 의원, 오덕상 의원, 윤영식 의원, 임정호 의원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8차	○ 군정질문 답변의 건	○ 답변자 : 군수
		○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 원안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야외 전통문화 공간 조성	○ 원안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국민체육센터 건립	○ 원안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황토웰빙체험 센터 건립	○ 원안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전 고창전력 시험센터 토지 (제척지) 매입	○ 원안의결
		○ 고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조례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 수정의결
		○ 고창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 수정의결
		○ 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원안의결
		○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아동복지타운(시설) 신축	○ 원안의결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무장파출소 이전부지 매입	○ 원안의결
	제9차	○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고창월곡 꿈에 그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수정)예산안	○ 원안의결
		○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 원안의결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수정)예산안	○ 원안의결
		○ 2011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의결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198회 임시회 (2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 회기 : 2012. 1. 17 ~ 1. 18 ○ 보고자 : 군수
	제2차	○ 고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보건소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상하 장사정 이전 부지매입의 건 ○ 고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제199회 임시회 (2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회기 : 2012. 1. 26 ~ 1. 27
	제2차	○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의결
제200회 임시회 (12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2012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의 건 ○ 2012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 회기 : 2012. 2. 27 ~ 3. 9 ○ 설명자 : 군수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제2차	○ 2012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 행정지원과, 민생경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제3차	○ 2012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 재무과, 농업진흥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제4차	○ 2012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 지역전략과,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과
	제5차	○ 2012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제6차	○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 ○ 고창군 보건소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수정)예산안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201회 임시회 (10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회기 : 2012. 4. 30 ~ 5. 9 ○ 조규철 의원, 박채주, 고양규, 김창수, 김은재
	제2차	○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국민여가 캠핑장관리 · 운영조례안 ○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 고창 명사십리 해당화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원안채택
제202회 임시회 (4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회기 : 2012. 6. 18 ~ 6. 21 ○ 제안설명자 : 고창군수
	제2차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운곡습지 복원사업 습지체험장 부지매입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창갯벌 방문객센터 건립 ○ 고창군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 고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고창군 황토전시 체험관 관리 · 운영 조례안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영광원자력 발전소 실태파악 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의견제시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채택
제203회 임시회 (2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선거의 건 ○ 부의장 선거의 건	○ 회기 : 2012. 7. 3. ~ 7. 4 ○ 의장당선 : 박래환 의원 ○ 부의장당선 : 조병익 의원
	제2차	○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 자치행정위원장 선거의 건 ○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	○ 운영위원장 당선 : 오덕상 의원 ○ 자치행정위원장 당선 : 이상호 의원 ○ 산업건설위원장 당선 : 조금자 의원
제204회 정례회 (11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 2011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 201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 회기 : 2012. 7. 10 ~ 7. 20 ○ 보고자 : 기획예산실장 ○ 보고자 : 재무과장 ○ 보고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2차	○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민생경제과, 민원봉사과
	제3차	○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문화관광과, 재무과, 농업진흥과,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산림축산과
	제4차	○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과, 지역전략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제5차	○ 의사일정변경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 군정질문의 건 ○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안건추가 ○ 이만우 의원 보임 ○ 질문의원 : 오덕상, 이상호 ○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제6차	○ 군정질문 답변의 건	○ 답변자 : 고창군수
	제7차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해리면 복지회관 기부채납 ○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군유지와 국유지 교환 ○ 2011사업연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제205회 임시회 (12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회기 : 2012. 10. 5 ~ 10. 16
	제2차	○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 원안의결 ○ 원안의결
제206회 임시회 (5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 회기 : 2012. 11. 1 ~ 11. 5 ○ 원안의결 ○ 원안의결
	제2차	○ 고창군 동리국악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고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아동·여성보호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추모의집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원안의결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 고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청소년상담지원 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소규모 재산 매각)	○ 원안의결
		○ 고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읍면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연안습지보호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의결
		○ 201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의결
제207회 정례회 (31 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2012. 11. 20 ~ 12. 20
	제2차	○ 201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민생경제과
	제3차	○ 201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농업진흥과, 건설도시과
	제4차	○ 201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과, 지역전략과,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제5차	○ 201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보건소, 산림축산과, 환경위생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제6차	○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군정질문의 건	○ 설명자 : 군수 ○ 질문자 : 이상호 의원
	제7차	○ 군정질문 답변의 건	○ 질문·답변:이상호 의원, 군수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8차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부지 매입의 건	○ 부결
		○ 고창군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지원에 관한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고창읍성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출산장려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청소년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의결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 원안의결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죽림 선사마을 조성사업 추진	○ 원안의결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토지매입	○ 원안의결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곡택지내 공영주차장조성부지 토지매입	○ 원안의결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변경의 건	○ 원안의결
		○ 2013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부결
		○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원안의결
		○ 2012 제3회 추가경정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 원안의결
		○ 201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의결
제208회 임시회 (1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2012. 12. 31
		○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설명자 : 군수
		○ 2013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의결
제209회 임시회 (2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회기 : 2013. 1. 16 ~ 1. 17
		○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 보고자 : 군수
	제2차	○ 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 징수를 위한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 수정의결
		○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 원안의결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복분자 체험시설 건립의 건	○ 부결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210회 임시회 (8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회기 : 2013. 3. 13 ~ 3. 20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제2차	○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행정지원과, 민생경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제3차	○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재무과, 농업진흥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제4차	○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재난안전과, 지역전략과, 보건소,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환경위생사업소
	제5차	○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 농업기술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제6차	○ 2012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음 예전 게이트볼장 부지 기부채납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장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거점문화 센터 건립 ○ 고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결손 및 감면 대상자 승인안	○ 오덕상 의원, 박채주, 김창수, 김은재, 현영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승인
제211회 임시회 (9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회기 : 2013. 4. 24 ~ 5. 2 ○ 설명자 : 군수
	제2차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수정)예산안 ○ 고창군지역아동센터 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 고창군 영유아보육 조례안 ○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하 장사정 이전 부지매입 변경의 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야구 경기장 조성의 건 ○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 복분자 체험시설 조성의 건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제212회 임시회 (10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회기 : 2013. 5. 20 ~ 5. 29
	제2차		○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회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213회 정례회 (14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 2012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 회기 : 2013. 7. 10 ~ 7. 23 ○ 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 설명자 : 재무과장 ○ 설명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2차	○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민생경제과, 민원봉사과
	제3차	○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문화관광과, 재무과, 농업진흥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제4차	○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의원 5명 (오덕상, 윤영식, 조병익, 이상호, 조금자) ○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과, 지역전략과,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보건소
	제5차	○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환경위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제6차	○ 군정질문	○ 질문의원 (임정호, 조규철, 이상호, 윤영식, 오덕상)
	제7차	○ 군정질문 답변	○ 답변자 : 군수
	제8차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 ○ 고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아산 게이트볼장 신축 ○ 고창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손화중 도소 및 거소 부지매입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아동복지타운 신축 변경 심의	○ 부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 고창군 문화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의제)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	○ 원안의결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원안의결
		○ 2012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원안의결
		○ 고창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관리계획(군 계획시설:하수도)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	○ 원안의결
		○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의결
		○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 채택	○ 원안의결
제214회 임시회 (11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회기 : 2013 9.30 ~ 10.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 원안의결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 원안의결
	제2차	○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 채택	○ 원안의결
		○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 원안의결
		○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의결
		○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의결
제215회 임시회 (3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회기 : 2013. 10. 16 ~ 10. 18
		○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 설명자 : 군수
	제2차	○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원안의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의결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제216회 정례회 (31일간)	제1차	○ 회기 결정의 건	○ 회기 : 2013. 11. 20 ~ 12. 20
	제2차	○ 2014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민생경제과, 민원봉사과
	제3차	○ 2014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	○ 문화관광과, 재무과, 농업진흥과, 건설도시과, 산림축산과
	제4차	○ 2014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	○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과, 지역전략과,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보건소
	제5차	○ 2014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	○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제6차	○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군정질문	○ 설명자 : 군수 ○ 설명자 : 군수 ○ 설명자 : 군수 ○ 질문의원 : 윤영식, 이상호, 오덕상
	제7차	○ 군정질문 답변	○ 답변자 : 군수
	제8차		○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회
제217회 임시회 (1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 ○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양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장 토지매입 ○ 고창군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 개정조례안 ○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	○ 회기:2013. 12. 29~12.29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회기수	차수	부의된 안건	심의 결과
		정조례안 ○ 고창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 수정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원안의결
제218회 임시회 (15일간)	제1차	○ 회기결정의 건	○ 2014. 3. 26
	제2차	○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부지내 게이트볼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운영사무위 민간위탁동의안 ○ 고창군 작은영화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부지취득(기부채납)] ○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구마 종순 생산기반 구축사업의 건) ○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고창군-선운사)] ○ 고창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고창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 건 ○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청사 부지 취득(무상양여)]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원안의결 ○ 기타 ○ 원안의결

제3절 의안 제출 및 처리



1. 종류별 의안처리 현황

구분 / 종류	접수	처리	처리내용					비고
			가결		부결	계류	철회	
			원안	수정				
계	320	320	272	35	8	0	2	3
조례안	192	192	159	29	2	0	2	
예산안	28	28	21	6	1	0	0	
승인안	9	9	9	0	0	0	0	
청 원	0	0	0	0	0	0	0	
결의안	31	31	30	0	0	0	0	1
기타안	60	60	53	0	5	0	0	2

2. 예산안

가. 회기별 처리현황

회 기 별	제출수	가결		부결	비 고
		원안	수정		
계	28	21	6	1	
제186회 임시회	3	3	0	0	-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188회 정례회	2	1	1	0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193회 임시회	1	1	0	0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194회 정례회	3	3	0	0	- 201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제197회 정례회	3	3	0	0	-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200회 임시회	1	0	1	0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02회 임시회	1	1	0	0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04회 정례회	3	3	0	0	-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207회 정례회	3	2	0	1	-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08회 임시회	1	0	1	0	-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11회 임시회	1	0	1	0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213회 정례회	3	3	0	0	-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215회 임시회	1	0	1	0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17회 임시회	2	1	1	0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나. 예산안 처리 현황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의 결 일	의결내용
2009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안	군수	2010.07.07	제186회	2010.10.15	원안가결
2009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군수	2010.07.08	제186회	2010.10.15	원안가결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군수	2010.09.24	제186회	2010.10.15	원안가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수정)	군수	2010.12.20	제188회	2010.12.21	수정가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수정예산안	군수	2010.12.20	제188회	2010.12.21	원안가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수정예산안	군수	2011.06.21	제193회	2011.06.21	원안가결
2010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군수	2011.06.24	제194회	2011.07.22	원안가결
2010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군수	2011.06.30	제194회	2011.07.22	원안가결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군수	2011.07.04	제194회	2011.07.22	원안가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수정예산(안)	군수	2011.12.20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군수	2011.11.18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군수	2011.12.20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군수	2012.03.08	제200회	2012.03.09	수정가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수정예산(안)	군수	2012.06.20	제202회	2012.06.21	원안가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의 결 일	의결내용
2011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군수	2012.06.27	제204회	2012.07.20	원안가결
2011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군수	2012.06.27	제204회	2012.07.20	원안가결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군수	2012.07.04	제204회	2012.07.20	원안가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수정예산(안)	군수	2012.12.18	제207회	2012.12.20	부결
201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군수	2012.11.21	제207회	2012.12.20	원안가결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수정예산(안)	군수	2012.12.18	제207회	2012.12.20	원안가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군수	2012.12.28	제208회	2012.12.31	수정가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수정예산안	군수	2013.04.30	제211회	2013.05.02	수정가결
2012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안	군수	2013.06.27	제213회	2013.07.23	원안가결
2012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군수	2013.06.27	제213회	2013.07.23	원안가결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군수	2013.07.03	제213회	2013.07.23	원안가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군수	2013.10.08	제215회	2013.10.18	수정가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수정예산(안)	군수	2013.12.29	제217회	2013.12.29	수정가결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수정예산(안)	군수	2013.12.29	제217회	2013.12.29	원안가결

3. 조 례 안

가. 회기별 처리 현황

회 기 별	제 출 수	가 결		부 결	비 고
		원 안	수 정		
계	197	164	28	4	1
제184회 임시회	6	6	0	0	
제186회 임시회	6	4	2	0	
제187회 임시회	11	9	2	0	
제188회 임시회	14	11	3	0	
제189회 임시회	2	2	0	0	
제190회 임시회	5	4	0	0	1
제191회 임시회	1	1	0	0	
제192회 임시회	2	1	1	0	
제193회 임시회	1	1	0	0	
제194회 임시회	2	1	0	1	
제195회 임시회	8	6	2	0	
제196회 임시회	5	4	1	0	
제197회 임시회	15	12	3	0	
제198회 임시회	8	7	1	0	
제199회 임시회	1	0	1	0	
제200회 임시회	6	5	0	1	
제201회 임시회	7	5	2	0	
제202회 임시회	2	2	0	0	
제204회 임시회	1	1	0	0	
제205회 임시회	1	1	0	0	
제206회 임시회	29	24	3	2	
제207회 임시회	8	8	0	0	
제209회 임시회	5	4	1	0	
제210회 임시회	4	3	1	0	
제211회 임시회	6	6	0	0	
제213회 임시회	8	7	1	0	
제214회 임시회	8	8	0	0	
제217회 임시회	9	8	1	0	
제218회 임시회	16	13	3	0	

나. 조례안 처리 현황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수	2010.07.30	제184회	2010.08.31	원안가결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08.17	제184회	2010.08.31	원안가결
고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0.08.17	제184회	2010.08.31	원안가결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수	2010.08.17	제184회	2010.08.31	원안가결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08.23	제184회	2010.08.31	원안가결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08.23	제184회	2010.08.31	원안가결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덕상 외 4인	2010.09.29	제186회	2010.10.15	원안가결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09.02	제186회	2010.10.15	원안가결
고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군수	2010.09.17	제186회	2010.10.15	수정가결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조례안	군수	2010.09.17	제186회	2010.10.15	원안가결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09.17	제186회	2010.10.15	원안가결
고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0.09.17	제186회	2010.10.15	수정가결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군수	2010.09.02	제187회	2010.11.04	수정가결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군수	2010.09.17	제187회	2010.11.04	원안가결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09.17	제187회	2010.11.04	수정가결
고창군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수	2010.10.06	제187회	2010.11.04	원안가결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10.29	제187회	2010.11.04	원안가결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10.29	제187회	2010.11.04	원안가결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10.29	제187회	2010.11.04	원안가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10.29	제187회	2010.11.04	원안가결
고창군 선운산복분자 상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10.29	제187회	2010.11.04	원안가결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10.29	제187회	2010.11.04	원안가결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덕상 외3인	2010.11.01	제187회	2010.11.04	원안가결
고창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11.10	제188회	2010.12.21	원안가결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11.10	제188회	2010.12.21	원안가결
고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11.10	제188회	2010.12.21	수정가결
고창군 군세 기본 조례안	군수	2010.11.10	제188회	2010.12.21	원안가결
고창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11.10	제188회	2010.12.21	원안가결
고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수	2010.11.10	제188회	2010.12.21	원안가결
고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11.10	제188회	2010.12.21	원안가결
고창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11.10	제188회	2010.12.21	원안가결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0.11.11	제188회	2010.12.21	원안가결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11.11	제188회	2010.12.21	수정가결
고창군 고창월곡 꿈에그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0.11.11	제188회	2010.12.21	원안가결
고창군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0.11.11	제188회	2010.12.21	원안가결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군수	2010.11.11	제188회	2010.12.21	수정가결
고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수	2010.11.11	제188회	2010.12.21	원안가결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01.10	제189회	2011.01.18	원안가결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12.08	제189회	2011.01.18	원안가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0.12.08	제190회	2011.01.18	원안가결
고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01.10	제190회	2011.01.18	원안가결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02.16	제190회	2011.02.25	원안가결
고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02.16	제190회	2011.02.25	원안가결
고창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1.02.16			철회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조례안	군수	2011.03.21	제191회	2011.04.06	원안가결
고창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수	2011.04.25	제192회	2011.05.31	원안가결
고창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군수	2011.04.25	제192회	2011.05.31	수정가결
고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조례안	군수	2011.05.25	제193회	2011.06.21	원안가결
고창군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수	2011.06.20			부결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수	2011.06.20	제194회	2011.07.22	원안가결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1.07.14 08.03	제195회	2011.09.28	원안가결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수	201108.03.	제195회	2011.09.28	수정가결
고창군 기념비 · 동상 · 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1.08.16	제195회	2011.09.28	수정가결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08.16	제195회	2011.09.28	원안가결
고창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1.08.16	제195회	2011.09.28	원안가결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철 외 4인	2011.09.05	제195회	2011.09.28	원안가결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철 외 4인	2011.09.05	제195회	2011.09.28	원안가결
고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1.09.09	제195회	2011.09.28	원안가결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10.07	제196회	2011.10.26	원안가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10.07	제196회	2011.10.26	원안가결
고창군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1.10.07	제196회	2011.10.26	원안가결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군수	2011.10.18	제196회	2011.10.26	수정가결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10.18	제196회	2011.10.26	원안가결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02.16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고창군상수도 원인자부담금산정, 징수 등에관한 조례안	군수	2011.02.16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08.16	제197회	2011.12.21	수정가결
고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11.01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고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11.11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고창군 조례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1.11.11	제197회	2011.12.21	수정가결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11.11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11.11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고창군 고창월곡 꿈에그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11.11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11.11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11.11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고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군수	2011.11.11	제197회	2011.12.21	수정가결
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군수	2011.11.11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재단법인 고창군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2011.11.11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11.14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고창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1.12.09	제198회	2012.01.18	원안가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12.09	제198회	2012.01.18	수정가결
고창군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군수	2011.12.09	제198회	2012.01.18	원안가결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12.09	제198회	2012.01.18	원안가결
고창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군수	2011.12.28	제198회	2012.01.18	원안가결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12.28	제198회	2012.01.18	원안가결
고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2011.12.28	제198회	2012.01.18	원안가결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1.12.28	제198회	2012.01.18	원안가결
고창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1.11	제199회	2012.01.27	수정가결
고창군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2.20	제200회	2012.03.09	원안가결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2.20	제200회	2012.03.09	원안가결
고창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	군수	2012.02.20	제200회	2012.03.09	원안가결
고창군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2.20	제200회	2012.03.09	원안가결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2.20	제200회	2012.03.09	원안가결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2.27			부결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3.19	제201회	2012.05.09	원안가결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3.19	제201회	2012.05.09	원안가결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4.10	제201회	2012.05.09	원안가결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수	2012.04.10	제201회	2012.05.09	원안가결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수	2012.04.10	제201회	2012.05.09	원안가결
고창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	군수	2012.04.23	제201회	2012.05.09	수정가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군수	2012.04.23	제201회	2012.05.09	수정가결
고창군 일괄개정 조례 폐지 조례안	군수	2012.06.08	제202회	2012.06.21	원안가결
고창군 황토전시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	군수	2012.06.08	제202회	2012.06.21	원안가결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7.02	제204회	2012.07.20	원안가결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덕상 외 4인	2012.09.19	제205회	2012.10.16	원안가결
고창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7.02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동리국악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8.03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8.27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수	2012.08.27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조례안	군수	2012.08.27	제206회	2012.11.05	수정가결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수	2012.09.14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군수	2012.09.14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9.20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9.20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9.20		2012.11.01	위원회 부결
고창군 아동·여성보호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9.20	제206회	2012.11.05	수정가결
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9.20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9.20	제206회	2012.11.05	수정가결
고창군 추모의 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9.20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9.20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9.20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복분자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9.20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복분자선연 웰빙플라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9.20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9.20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9.20		2012.11.01	위원회 부결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9.20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9.20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9.20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9.20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09.20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읍면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2012.10.16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연안습지보호 관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수	2012.10.16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군수	2012.10.23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10.26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고창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10.16	제207회	2012.12.20	원안가결
고창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규철 외 3인	2012.11.07	제207회	2012.12.20	원안가결
고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규철 외 3인	2012.11.07	제207회	2012.12.20	원안가결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11.09	제207회	2012.12.20	원안가결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군수	2012.11.09	제207회	2012.12.20	원안가결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11.09	제207회	2012.12.20	원안가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의결일	의결내용
고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11.09	제207회	2012.12.20	원안가결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2.11.09	제207회	2012.12.20	원안가결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2.12.26	제209회	2013.01.17	원안가결
고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2.12.26	제209회	2013.01.17	원안가결
고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조례안	군수	2012.12.26	제209회	2013.01.17	원안가결
고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2.12.31	제209회	2013.01.17	원안가결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01.08	제209회	2013.01.17	수정가결
고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	2013.01.31	제210회	2013.03.20	원안가결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02.19	제210회	2013.03.20	원안가결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02.19	제210회	2013.03.20	원안가결
고창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3.02.19	제210회	2013.03.20	수정가결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3.03.07	제211회	2013.05.02	원안가결
고창군 영유아보육 조례안	군수	2013.03.07	제211회	2013.05.02	원안가결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수	2013.03.07	제211회	2013.05.02	원안가결
고창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3.03.07	제211회	2013.05.02	원안가결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군수	2013.04.16	제211회	2013.05.02	원안가결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04.16	제211회	2013.05.02	원안가결
고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04.21	제213회	2013.07.23	원안가결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04.30	제213회	2013.07.23	원안가결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04.30	제213회	2013.07.23	원안가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군수	2013.05.10	제213회	2013.07.23	수정가결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05.10	제213회	2013.07.23	원안가결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05.10	제213회	2013.07.23	원안가결
고창군 문화의 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06.10	제213회	2013.07.23	원안가결
고창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수	2013.07.03	제213회	2013.07.23	원안가결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07.18	제214회	2013.10.10	원안가결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07.29	제214회	2013.10.10	원안가결
고창군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3.09.17	제214회	2013.10.10	원안가결
고창군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안	군수	2013.09.17	제214회	2013.10.10	원안가결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09.17	제214회	2013.10.10	원안가결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09.17	제214회	2013.10.10	원안가결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군수	2013.09.17	제214회	2013.10.10	원안가결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오덕상 외 3인	2013.09.25	제214회	2013.10.10	원안가결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11.11	제217회	2013.12.29	원안가결
고창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3.11.11	제217회	2013.12.29	원안가결
고창군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3.11.11	제217회	2013.12.29	원안가결
고창군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군수	2013.11.13	제217회	2013.12.29	원안가결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11.13	제217회	2013.12.29	원안가결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3.11.13	제217회	2013.12.29	원안가결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11.13	제217회	2013.12.29	원안가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11.13	제217회	2013.12.29	원안가결
고창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수	2013.12.02	제217회	2013.12.29	수정가결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군수	2013.11.13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11.29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수	2013.12.02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12.02	제218회	2014.04.09	수정가결
고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3.12.02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11.29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고창군 황토배기유통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3.12.02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4.01.08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4.01.08	제218회	2014.04.09	수정가결
고창군보건소,보건지소 및보건진료소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4.01.08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안	군수	2014.01.08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4.01.08	제218회	2014.04.09	수정가결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2014.01.08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수	2014.01.08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군수	2014.02.24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고창 소금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수	2014.02.24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4. 승 인 안

가. 회기별 처리 현황

회 기 별	제 출 수	가 결		부 결	비 고
		원 안	수 정		
계	9	9	0	0	
제184회 임시회	1	1	0	0	
제195회 임시회	1	1	0	0	
제196회 임시회	1	1	0	0	
제210회 임시회	1	1	0	0	
제214회 임시회	1	1	0	0	
제215회 임시회	1	1	0	0	
제218회 임시회	3	3	0	0	

나. 계류 및 철회 현황

계	계 류	철 회	비 고
1	0	1	

다. 승인안 처리 현황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의 결 일	의결내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변경건	군수	2010.07.26	제184회	2010.08.31	원안가결
2011년도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군수	2011.08.25	제195회	2011.09.28	원안가결
201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기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1.10.25	제196회	2011.10.26	원안가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결손 및 감면대상자 승인안	군수	2013.03.05	제210회	2013.03.20	원안가결
2013년도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군수	2013.07.31	제214회	2013.10.10	원안가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기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3.10.17	제215회	2013.10.18	원안가결
고창군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	2013.11.25			철회
고창군 작은영화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군수	2014.02.25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군수	2014.03.03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고창군 사회복지시설부지내 게이트볼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군수	2014.03.11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5. 결의안

가. 회기별 처리 현황

회 기 별	제 출 수	가 결		부 결	비 고
		원 안	수 정		
계	31	30			1
제184회 임시회	2	2			
제185회 임시회	2	2			
제186회 임시회	1	1			
제187회 임시회	3	3			
제188회 정례회	1	1			
제189회 임시회	1	1			
제192회 임시회	1	1			
제194회 정례회	2	2			
제195회 임시회	1	1			
제196회 임시회	2	2			
제197회 정례회	1	1			
제201회 임시회	1	1			
제202회 임시회	1	1			
제205회 임시회	1	1			
제206회 임시회	3	3			
제207회 정례회	2	1			1
제210회 임시회	1	1			
제213회 임시회	2	2			
제214회 정례회	2	2			
제217회 임시회	1	1			

나. 건의(결의)안 처리 현황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의 결 일	의결내용
영광원자력발전소 실태파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	조규철	2010.08.30	제184회	2010.08.31	원안가결
결의문	조규철	2010.08.30	제184회	2010.08.31	원안가결
쌀 대북지원 재개 촉구 결의문	임정호	2010.09.06	제185회	2010.09.08	원안가결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오덕상	2010.09.08	제185회	2010.09.08	원안가결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채택의 건	고창군의회 윤리특별 위원회	2010.10.15	제186회	2010.10.15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오덕상 외 3인	2010.11.02	제187회	2010.11.03	원안가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2010.11.03	제187회	2010.11.03	원안가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0.11.03	제187회	2010.11.04	원안가결
201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0.12.21	제188회	2010.12.21	원안가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운영 위원회	2011.01.18	제189회	2011.01.18	원안가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운영 위원회	2011.05.30	제192회	2011.05.31	원안가결
육군기계화학교 전차포사격장 고창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영식 외 4인	2011.07.14	제194회	2011.07.14	원안가결
육군기계화학교 전차포사격장 고창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조병익 외 4인	2011.07.14	제194회	2011.07.14	원안가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운영 위원회	2011.09.28	제195회	2011.09.28	원안가결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규철 외 4인	2011.10.20	제196회	2011.10.24	원안가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규철 외 4인	2011.10.20	제196회	2011.10.24	원안가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1.12.20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운영 위원회	2012.05.09	제201회	2012.05.09	원안가결
영광원자력발전소 실태파악 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조규철 외 3인	2012.06.13	제202회	2012.06.21	원안가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운영 위원회	2012.10.16	제205회	2012.10.16	원안가결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오덕상 외 3인	2012.10.25	제206회	2012.11.01	원안가결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오덕상 외 3인	2012.10.25	제206회	2012.11.01	원안가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2.11.05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영광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결의문	조규철 외 3인	2012.11.22			기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2.12.20	제207회	2012.12.20	원안가결
2012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	조규철 외 3인	2013.03.20	제210회	2013.03.20	원안가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2013.05.29	제213회	2013.07.23	원안가결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오덕상 외 2인	2013.07.12	제213회	2013.07.15	원안가결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오덕상 외 3인	2013.09.25	제214회	2013.09.30	원안가결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오덕상 외 3인	2013.09.25	제214회	2013.09.30	원안가결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3.12.29	제217회	2013.12.29	원안가결

6. 기 타 안

가. 회기별 처리 현황

회 기 별	제 출 수	가 결		부 결	비 고
		원 안	수 정		
계	60	52		5	3
제187회 임시회	3	3			
제188회 정례회	2	2			
제190회 임시회	1	1			
제192회 임시회	2	2			
제194회 정례회	1	1			
제195회 임시회	4	4			
제196회 임시회	1	1			
제197회 정례회	7	7			
제198회 임시회	1	1			
제201회 임시회	1	1			
제202회 임시회	3	3			
제204회 정례회	3	2			1
제206회 임시회	1	1			
제207회 정례회	8	5		3	
제210회 임시회	2	2			
제211회 임시회	5	3			2
제213회 정례회	7	5		1	1
재217회 임시회	2	2			
제218회 정례회	6	6			

가. 기 타 안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의 결 일	의결내용
고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안-의견제시	군수	2010.10.01	제187회	2010.11.04	원안가결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승인안	군수	2010.10.20	제187회	2010.11.04	원안가결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오덕상 외 3인	2010.11.01	제187회	2010.11.04	원안가결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군수	2010.11.19	제188회	2010.12.21	원안가결
공유재산관리계획안-흥덕소재지 기반확충 사업(주차장)부지매입	군수	2010.11.25	제188회	2010.12.21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국폴리텍대학 고창캠퍼스취득 및 처분의 건	군수	2011.02.11	제190회	2011.02.25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유지와 국유지교환(고창군-기상청)	군수	2011.04.26	제192회	2011.05.31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유지와 사유지 교환(고창군-서울시니어스타워)	군수	2011.05.20	제192회	2011.05.31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유지와 사유지 교환(고창군-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군수	2011.07.04	제194회	2011.07.22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흥덕소재지 주차장 부지매입	군수	2011.07.06	제195회	2011.09.28	원안가결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조규철 외 4인	2011.09.05	제195회	2011.09.28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창문화원 신축	군수	2011.09.06	제195회	2011.09.28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창 배수지 확장공사 편입부지 매입	군수	2011.09.06	제195회	2011.09.28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군수	2011.09.20	제196회	2011.10.26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하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편입부지매입	군수	2011.10.20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야외 전통문화공간 조성	군수	2011.10.20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국민체육센터 건립	군수	2011.10.20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토웰빙체험센터 건립	군수	2011.10.20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전 전력시험센터 토지(제척지) 매입	군수	2011.10.20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의결일	의결내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동복지타운 시설 신축	군수	2011.11.14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장 파출소 이전 부지 매입	군수	2011.11.16	제197회	2011.12.21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하 장사정 이전부지 매입	군수	2012.01.03	제198회	2012.01.18	원안가결
고창명사십리 해당화 신규마을조성을 위한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군수	2012.04.25	제201회	2012.05.09	원안가결
고창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군수	2012.05.29	제202회	2012.06.21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곡습지 복원사업 습지체험장 부지매입	군수	2012.05.30	제202회	2012.06.21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갯벌 방문객센터 건립	군수	2012.05.30	제202회	2012.06.21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리면 복지회관 기부채납	군수	2012.06.29	제204회	2012.07.20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유지와 국유지 교환	군수	2012.07.04	제204회	2012.07.20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실내체육관 증개축 사업	군수	2012.07.04			철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의 건	군수	2012.09.28	제206회	2012.11.05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의 건	군수	2012.09.28	제207회	2012.12.21	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군수	2012.11.12	제207회	2012.12.20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죽림 선사마을 조성사업 추진	군수	2012.11.12	제207회	2012.12.20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복분자 체험시설 건립	군수	2012.11.12			위원회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생활야구 경기장 조성	군수	2012.11.12			위원회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부지 토지매입	군수	2012.11.12	제207회	2012.12.20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월곡택지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토지매입	군수	2012.11.12	제207회	2012.12.20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변경의 건	군수	2012.11.12	제207회	2012.12.20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음 예전 게이트볼장 부지 기부채납의 건	군수	2013.03.06	제210회	2013.03.20	원안가결

의 안 명	제출자 발의자	제출발의 년 월 일	처 리 내 용		
			회 기	의 결 일	의결내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장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 거점 문화센터 건립의 건	군수	2013.03.06	제210회	2013.03.20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하 장사정 이전 부지매입(변경)의 건	군수	2013.03.07	제211회	2013.05.02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야구 경기장 조성의 건	군수	2013.04.01	제211회	2013.05.02	원안가결
청원(곰소만 생태환경 영향 및 생태조사에 관한 청원)	김병옥 전용미	2013.04.10			철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천장어웰빙 식품센터·복분자 체험시설 조성의 건	군수	2013.04.17	제211회	2013.05.02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분자 테마체험장 조성의 건	군수	2013.04.17			반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의 건	군수	2013.03.06	제213회	2013.07.23	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산 게이트볼장 신축의 건	군수	2013.05.10	제213회	2013.07.23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손화중 도소 및 거소 부지매입의 건	군수	2013.05.28	제213회	2013.07.23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동복지타운 신축 변경 심의의 건	군수	2013.05.28	제213회	2013.07.23	원안가결
구시포항이용고도화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의제)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군수	2013.06.17	제213회	2013.07.23	원안가결
고창군 관리계획(군 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군수	2013.07.03	제213회	2013.07.23	원안가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	군수	2013.10.08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장 토지매입)	군수	2013.11.11	제217회	2013.12.29	원안가결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군수	2013.11.21	제217회	2013.12.29	원안가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청사 부지취득(무상양여)]	군수	2013.12.26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고창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고창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군수	2014.01.22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고창군- 선운사)]	군수	2014.02.05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구마 종순 생산기반 구축사업의 건)	군수	2014.02.25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부지 취득(기부채납)]	군수	2014.03.17	제218회	2014.04.09	원안가결
2013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군수	2014.03.26	제218회	2014.03.26	원안가결

제4절 군정질문과 답변



1. 제186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조규철 의 원	○ 농어촌육성기금 채권관리에 있어 특수채권에 대해 분할회수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육성기금 회수에 따른 이자감면과 분할회수 등의 채권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채권 회수방안을 마련하겠음.
	○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이 효율적인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주차장 활성화 방안은?		○ 2008년도 주차장법 개정 이후 관내 8개소 주차장 중 3개소를 철거하였으며, 5개소에 대해서 일반주차장으로 전환하도록 협의하고 있음.
	○ 지역상가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중앙로변 주정차 허용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 중앙로 주정차난 해소를 위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왔고, 4개소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행하는 등 중앙로 주변 주차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차 허용시간을 연장 한다면 또다시 이중주차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주정차 질서가 확실히 정착이 되면 검토하겠음.
	○ 서해안 고속도로를 경유 광주행 직행버스 운행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 고창-광주간 직통버스 노선 필요성에 동감하며, 직행버스 운행을 위해 전라남도 및 광신고속과 3차례 협의결과 직통노선 운행이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조규철 의 원		이강수 군 수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고창-광주간 직통노선 개설에 최선을 다하겠음.
	○ 공음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일일처리용량이 적정한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 계획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수처리 및 액비화 시스템으로 처리하여 향후 축산분뇨 발생량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 것임.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으며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위생 등 근무직원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분리가 안 된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에 대한 일시적 운행정지에 따른 읍내권 주민들의 불만 야기 등에 대한 대안은? 또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용기한 도래에 대한 계획은?		○ 폐기물 처리시설 내 냄새와 얼룩은 관련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음. 음식물쓰레기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만이 군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체험, 지도·단속으로 분리배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음.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인한 불편을 참고 협조하여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사용기간이 2012년 만료되지만 용량 대비 45%의 여유용량이 남아있어, 지역주민과 고창군민이 공생하는 다각적 방안을 수립하여 아산면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조규철 의 원	○ 원전발촉진법에 의해 지원금 배분을 결정하는 심의위원 구성이 영광 사람들에게 편중되어 있어 고창군의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며, 영광원전 온배수의 영향으로 어업피해 및 환경파괴에 대한 복원사업 필요성과 방사능 방호물품 보유현황 및 대응방안은?	이강수 군 수	○ 지역위원회는 관련법상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구성 ·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영광 지역인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법령 개정요구와 함께 원전 및 영광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영광원전 5,6호기 온배수 저감방안과 1,2호기 파워 업레이트에 대해서는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협의 후 추진하도록 한수원과 적극 협의 하겠음. 온배수 영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개인보상을 마무리한 후, 관련법이 제정 된 후 전반적인 해양환경 오염 피해대책 및 관련 용역을 추진하도록 검토 하겠음. 비상사태 발생시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대응 물품은 갑상선 보호약품 78,000정, 방독면 3,500개, 방호장비 8종 136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보량을 늘려 나가겠음. 방사능재난 발생할 시 중앙행정기관, 고창군, 유관기관 등과 방사능재난관리 협조 지원체계에 따라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 고창골프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때라 사료되며, 사업 미추진 시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직·간접 보상대책 강구 방안은?	이강수 군 수	○ 고창군과 (주)고창골프클러스터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악화로 인한 추가 투자자 기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개발사업자의 자금사정이 호전되고, 투자자의 참여 및 금융기관이 안정되어 진다면, 다시 한번 추진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임. 사업 추진 시 특별한 행정규제는 하지 않았으나,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검토하여 해당주민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동리 신재효 선생 묘소 진입로가 협소하고 차량통행이 어려운데 대책은?		○ 동리 신재효 선생 묘소 진입로는 2006년 일부구간 시행하였고, 종점부 90m 미개설구간은 토지주와 협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명창 진채선 명창 생가를 복원하여 관광자원화 계획이 있는지?		○ 생가복원을 위한 고증 자료가 전무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생가터의 관리와 안내판 정비로 소금 전시관, 갯벌체험장 등과 연계하여 진채선 선생 생가터 관광자원화에 노력하겠음.
	○ 국창 김소희 선생 추모비 및 박도경 선생 추모비를 판소리박물관 주변 등 적절한 장소에 이전하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 김소희 선생 추모비 이전은 이전 대상지의 주변여건, 상징성을 고려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음. 박도경 선생의 업적과 군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해서 2011년 추모비 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유족 및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새마을 공원 등 적정한 장소에 이전 보존토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적인 기념행사를 무장에서 개최함으로써 세대간의 소통이 어우러진 새로운 전국축제로 승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내년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고창에서 4월 24일 출정식을 하고 4월 25일 서울에서 각계각층 인사를 초청하여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유족회, 기념사업회, 기념재단과 협조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행사를 개최하여 무장기포일이 기념일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사전 분위기 조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조산제 둑높임공사와 관련하여 IC개통 및 산업단지조성과 더불어 상류의 문수사, 천연기념물 단풍숲 등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 생태공원 조성은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사항을 기본조사에 반영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으며, 사전설명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천혜의 청정지역인 은사지구의 기본개발계획은?		○ 단풍 과 편백 등 생태 테마파크 사업을 기초생활권 연계사업에 반영하였으며, 2011년도에 은사지구 식생조사를 실시하고,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윤영식 의 원	○ 선운산도립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해 전선지중화 사업과 가로등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도립공원 전선지중화 사업은 한전주 70개와 통신주 44개 등 114개의 전신주를 지중화하게 되며, 13억원 정도 소요됨. 한전은 국공유지에만 지원하고 있어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군비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군의 사정상 추진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임. 가로등 정비사업은, 현재 공원내 60개의 가로등 외에, 올해 33개의 가로등을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설치하겠음.
	○ 관광용수 사용을 위해 도솔제 수질개선이 필요한데 군수의 견해는?		○ 도솔제 수질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수질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오염원을 찾아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대형버스 주차장 미포장 부분을 정비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 대형 주차장 미포장 구역은 101대의 대형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곳으로, 2009년 17%에 대하여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포장예산이 약 6억 5천만원으로 예상되어,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 추진해 나가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윤영식 의 원	○ 아산~선운사간 4차선 확포장사업 추진상황과 결과는?	이강수 군 수	○ 아산 – 선운사간 4차선 군도 확포장 사업은 – 2001년 삼인터널로 노선이 결정되어 9.1km 구간 중 – 2002년 1단계 4.5km 구간 공사가 시작 되었음. – 이후 예산변경으로 노선결정 및 변경에 대한 설문 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안대로 추진하자는 결과에 따라 현재 3단계 구간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환경영향 평가가 완료되는 11월 중 공사가 발주될 예정임.
	○ 주요관광지 입장료를 묶어 패키지화하는 방안?		○ 관광지 입장료 패키지화를 시행할 경우 입장료 수입증대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입장료 통합발매의 경우 관광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발과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의 증가가 예상되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선운산도립공원내 노점상 관리방안?		○ 도립공원 계획변경 심의회에서 별도의 노점상 허용구역을 설치하되, 고정건축물의 설치는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점상 관리계획이 의결되었음. 2011년도에 비가림 노점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며 철저한 위생관리와 호객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윤영식 의 원	○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는?	이강수 군 수	○ 일부 법인에서 잡음과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함. 보조금 사업은 선정부터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관계공무원을 관리하여,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 갯벌과 황금어장을 살리기 위해 바다로 유입되는 오폐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장 근처 마을인 하전,만돌 하수종말처리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 하수처리장은 주진천에 4개소 , 갈곡천에 3개소가 설치 완료되어 원활히 가동 중에 있으며, ○ 만돌 하수처리장은 2010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이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하전마을이 반영되어 국가예산을 확보 후 추진할 예정임.
	○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을 조속히 설치,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부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음. 해리농협의 유통망을 활용하고, 브랜드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통해 판로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어촌종합센터가 이미 완공되었으나 회타운은 입주자조차 찾지못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 어촌종합센터 위탁 단체로 광승어촌계가 선정된 후 포기하여 귀촌영어조합법인과 협약 체결하여 어촌종합센터가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윤영식 의 원	○ 명사십리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불편 해소 대책은?	이강수 군 수	○ 명사십리 관광객 편의시설은 부지 및 상수도, 하수도, 전기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광지의 경관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음.
	○ 진행중인 구시포 국가어항건설사업의 그동안 성과와 향후계획은?		○ 구시포 국가어항건설사업의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 1단계는 2002부터 연육도로, 임시물량장 등을 완료하고 – 현 2단계 사업으로는 방파제 공사중이며 공정율은 약 50%로, 부대시설 등은 2016년까지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선운산을 중심으로 심원, 해리,상하에 셀프장어 판매장이 산재하고 있어 고품질의 장어를 한 곳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집단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로 장어타운조성이 절실한데 군수의 견해는?		○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부지에 150억원을 투자 “풍천장어 웰빙 식품센터”를 건립하여 생산 및 2차 가공, 저장, 공동 출하장, 홍보관 등을 설치 풍천장어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만, 도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질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오덕상의원	○ 도민체전시 손님맞이는 철저한 수혜자중심에 무게를 두어야한다고 생각됨. 관광지 무료입장, 등. 새롭게 조성된 모양성 광장을 판소리, 오거리 당산제 성공적인 제47회 전북도민체전을 위한 군수의 구상은?	이강수군수	○ 전북도민체전을 통해 고창군민이 하나가 되는 대화합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화합·참여·경제·상생체전을 목표로 분야별 종사자 친절교육과 숙박, 교통, 의료 등 손님맞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음. 제안하신 지역특산물 할인 판매는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관광지 무료입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하겠음. 문화의 전당에서는 도민체전 기념 전시회 및 공연을 개최할 예정임.
	○ 농가부채 등 어려움에 처한 농가가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 축산업이 일반 농업에 비해 소득이 높아 가축사육에 필요한 초기 시설투자 비용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농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축산농가에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 최대한 지원되도록 검토하겠음.
	○ 호남·서해안 고속도로 교통요충지로 외부차량 통행이 많아 전염병 노출위험이 높은데, 가축방역 및 예방에 대한 대처는?		○ 가축방역편제는 행정조직의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추후 조직개편 시 진단을 통하여 인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고급육을 생산할 때 우리지역 한우가 명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암소와 정액을 확보하고 혈통관리 및 사양관리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야 함. 이를 위해 군에서는 '98년도부터 정액과 수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량정액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오덕상의 원	○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은 고창 IC나 선운산IC 부근에 고창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홍보·판매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군에서도 축산물홍보판매장 개설 등 한우 명품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10월중 한우 전문가를 초빙, 자문회의를 개최 할 계획임.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 관내 낙농가 중 유기우유 미참여 농가가 많은데 이유와 개선책은? 매일유업으로부터 유기우유 생산을 위해 참여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 유기우유 생산에 따른 조건과 인증기준으로 참여율이 낮으나 향후 소비량을 감안 많은 낙농가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 참여농가 보호는 고창청정유기낙농조합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농가별 우유 쿼터량을 사단법인 낙농진흥회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음.
	○ 사찰 관계자와 신도회, 산불감시요원, 문화재 관리요원, 관광해설사, 지역산악인회원 등과 협의하여 자원봉사요원을 선정해서 우리지역을 선운산, 방장산, 문수사, 고인돌 4대권역으로 구분해서 가칭 녹색감시원증을 발급,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가구어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 현재 문화재 감시원 제도를 운영하여 문화재 보호 및 관광안내를 시행하고 있음.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녹색감시원을 임명하는 방안은 검토하겠음.
	○ 북부권 주민화합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질마재 권역 국화특화단지 조성과 북부권의 특성인 효를 기본으로 축제를 개발하여 관광고창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리라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 신규축제 개발 등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인 여건이 성숙되면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북부권 축제 개발 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임정호 의 원	○ 밭농업 직불제는 시행취지와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우리군 형편에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밭농업 직불제는 농산물의 수입 여파로 어려운 밭작물 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필요에 동감하며 ○ 우리군은 전라북도 시행규칙을 검토하고,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고창군 실정에 맞는 밭농업 직불제를 검토 추진하겠음.
	○ 농업보조금사업 추진시 설명회를 2회이상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 개별지원사업은 사업 수요조사, 사업신청, 현장조사 등의 절차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사업의 경우는 공청회,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업설명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음.
	○ 현행의 보조 자부담을 조정하여 보조금을 늘리고 자부담을 줄여 비닐하우스를 신축하려는 농가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 군민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 비가림하우스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비율 상향과 사업량 확대에도 공감하고 있음. 2011년도 지원사업 추진시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면적도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질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임정호 의 원	○ 고창천과 주진천, 인천강을 흘러 서해바다로 있는 하천 양쪽제방을 보강하여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면 관광객 유치도 활성화되고 자전거 메카로 부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행안부 기본계획에 포함된 41km에 고창천과 주진천 주변의 고인돌유적지, 선운산 등 주요 관광지와 생태하천 등이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다양한 기획공연 등 문화의전당 운영 활성화 방안은?		○ 고창문화의전당은 개관 후 20개월 동안 총 210회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영화상영을 실시하였으며, ○ 내년에도 군비와 각종 기금 등을 적극 확보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과 영화, 전시회를 마련하여 수요자인 군민의 욕구를 충족 할 수 있는 문화의 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 제188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임정호 의 원	○ 복분자 산업 신품종 육성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복분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고당도의 복분자를 생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동절기 고사 예방대책으로 친환경 공동방제 지원과 교육 강화로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노동 생산성 향상과 고당도 복분자, 신품종 육종 체계 확립 및 우수 인력 등 투자가 요구 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복분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신품종 육성] ○ 복분자의 기상재해와 연작피해를 경감하고,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영농교육을 통하여 병해충 사전예방과 후기 생육관리 등을 강화하여 재해를 감소시켜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경쟁력 있는 신품종육종은 2005년부터 진행하여 27개의 변이체를 보유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연구비와 우수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신품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새로운 소득작물로 양파 재배와 관련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양파는 단단하여 저장성도 타 지역보다 월등히 강하고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지역농협과 황토배기유통을 통해 유통과 저온저장으로 출하 조절을 병행한다면 새로운 소득 작물로 각광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양파재배] ○ 우리 군에는 현재 293농가에서 60ha의 양파를 재배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친환경 자재 등을 양파농가에 지원할 계획임. ○ 양파가 군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망한 작물로 판단되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오덕상의 원	○ 고창군 토목설계전담반 운영과 관련하여 고창군의 관계 공무원들이 고창군 전반에 걸친 정확한 현장파악으로 현실성 있게 설계를 할 수 있어, 고창관내 지형 숙지와 문제점 파악으로 갑자기 찾아 올 수 있는 천재지변의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은 물론이요, 피해가 있을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많은 피해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을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질의하신 외부설계 용역비 76억원은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과 사업별 기본설계, 실시설계와 재해영향평가, 환경성검토, 문화재조사 등 각 전문분야 기술사가 다수 참여하여 설계도서가 완성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우리군에서는 2007년부터 11개반 합동설계팀을 편성 운영하여 3년 동안 967건 122억원의 단순공종 소규모 공사를 자체 설계하여 시행하고 있음.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능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단가와 지원일수를 상향 조정하고 출산 도우미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때만이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으며 어려운 농촌의 현실속에 출산을 앞둔 여성 농업인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에 따른 농업인의 농사일을 지원하고자 1일 4만원씩 60일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원 단가를 높여가고 있으며, 향후 농가도우미 전문인력 양성은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조금자 의 원	○ 고창군 장기발전계획과 역점사업에 관련하여 고창군 종합발전계획과 역점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도와 투자 쇙황 등을 조사를 해보았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고창군장기종합발전계획은 2003년도에 향후 20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여 왔으나, ○ 2009년도에 자체분석 결과 발전계획의 85%가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으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 고창군 10년의 비전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였음. ○ 우리군을 도심권(고창, 고수, 아산, 신림), 서부권(상하, 해리, 심원), 남부권(무장, 공음, 성송, 대산), 북부권(흥덕, 성내, 부안)의 4개 권역으로 균형발전 구상을 하였으며, ○ 5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풍력 클러스터 조성사업, 세계문화유산 지구 사업, 선운산 체험관광지구 개발사업, 세계 프리미엄 갯벌 생태관광 체험벨트 조성사업, 7대저수지 연계관광 자원개발사업을 수립하여 권역별, 읍면별 중점특화사업을 개발하였음. ○ 앞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조금자의 원	○ 고창군 노인요양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노인요양원에 입소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해택을 주어 고통을 덜어 주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요양등급 1~2등급과 시설입소 요양3등급자만 가능토록 되어있어 입소비율이 60%로 저조한 실정임. ○ 앞으로 기초수급자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은 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고창군 분뇨처리와 관련하여 오폐수 분리시설이 완료 될 때까지 정화조 청소비용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조례를 제정, 군에서 부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 정화조 청소비용을 부담하는 조례 제정은상위법 관련규정이 없으며, 현재 하수처리시설 지역의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주민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음. ○ 또한, 2011년부터는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며 하수관거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조금자의 원	○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공무원의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 소속된 위원회나 자문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위한 목표는 수립되어 있는지? 목표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목표를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성참여 확대가 이루어 져야 하며, 여성의 공지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앞으로 인사 운영에 있어 여성 공무원도 능력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그동안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자격을 갖추고 민간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여성 인적자원 발굴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여성의 사회참여와 저변확대를 위해 새로 신설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의 위촉 시에는 다양한 계층의 많은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우리군 전체 공무원중 여성공무원은 248명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5급 이상 관리직 1명과 6급 담당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요 부서에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5개 담당 직위공모에도 여성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음. ○ 인사 운영에 있어 남(男), 여(女)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이 가도록 인사를 시행한 적이 없으며, 시대적으로 여성의 공직진출이 늦어진 점을 감안하면 향후 여성공무원도 자격과 능력에 따라 중요부서와 관리직에도 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앞으로 여성공무원 우대방안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고 강구하도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윤영식 의 원	○ 부안면, 흥덕면 해안개발에 관련하여 상포에서 내죽도를 연결하는 연육도로 개설사업이 환경영향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연육도로 개설의 가능성 여부는 어떠하며 만약 연육도로 개설이 어렵다면 기 계획된 내죽도 개발의 전망과 향후 추진 계획은?	이강수 군 수	○ 내죽도 연육도로 개설은 주민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관광객 유치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2년 기본설계를 마치고 그간 여러 차례 사업비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자부 연육 연도교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음. ○ 앞으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 또한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17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개발방향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우리군이 보유한 풍부한 연안자원과 해양관광 자원을 연안산업으로 연계하여 권역별 특화개발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 상하 구시포, 해리 동호, 심원 만돌 지역과 관련하여 구시포, 동호, 만돌, 하전 지역을 연계한 이 지역에 어떠한 개발 복안을 갖고 계신지?		○ 구시포항을 해양관광의 축으로 하는 복합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을 구시포항 완공시기에 맞추어 2014년까지 마련하여 복합해양관광지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고창갯벌생태계복원사업을 통해 보전과 생태관광자원화로 지역소득창출과 생태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음. ○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와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 바지락 갯벌 수출단지조성, 천일염 육성산업 등을 통한 특화된 수산물로 대외경쟁력을 향상시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윤영식 의 원	○ CCTV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지역 농어촌 마을에서는 농어민들이 애써 경작한 농수산물 절도사고 등 크고 작은 도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3년간에 걸쳐 농촌지역 취약지에 방범용 CCTV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군수의 향후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범죄예방과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하여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 마을권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수요 조사한 결과 5개소에서 신청이 있었으나, 설치비뿐만 아니라 설치 후 유지관리, 전기요금 등 마을부담이 불가피하여, 마을부담과 군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 슬레이트 지붕 교체 및 폐기에 관련하여 슬레이트는 환경오염물질임에도 슬레이트 지붕교체에 대한 군 예산이 낮게 책정됐다. 이럴 경우 기존의 슬레이트 위에 덧씌우는 방식이 될 수 있고 사업추진이 늦어지면 슬레이트를 제거하기 위해 오히려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높게 책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으로 동당 100만원씩 지원되었으나, 석면 등 폐기물처리비용이 부족하여 2011년도부터는 동당 224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 환경오염원으로 지목하신 슬레이트 지붕의 교체 및 폐기에 대하여는 우리군내 슬레이트 지붕 현황과 강판으로 교체한 지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도 및 중앙과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 슬레이트 지붕이 조속히 제거되어 환경피해로부터 군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 귀농귀촌 활성화대책과 관련하여 – 첫째 담보능력이 부족한 귀농인들에게 후취담보, 신용보증 등 특단의 방안을 마련 – 둘째 농지구입 자금 등의 행정지원 등 농업진흥과에서 담당하고 농업에 관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을 단일화 하고 귀농 전문 전담인원을 배치하여 귀농업무 효율을 극대화 방안 강구 – 셋째 귀농인들의 쾌적한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빈집수리 지원사업의 확대 등을 통하여 귀농귀촌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귀농인들에게 지원하는 농지구입 자금은 농어촌육성기금에서 농협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대출하는 사업으로, 담보부족 등에 따른 문제를 대출기관과 협의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대출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귀농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과 교육부서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부서간 업무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전담인력 배치는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하겠음.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금 부족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 빈집수리 지원사업도 수요에 비해 사업물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귀농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 첫째 이주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실시 – 둘째 한국문화를 형식적이 아닌 체험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 – 셋째 이주여성 산후관리에 방문지도 교육사 활용방안 – 넷째 국적별 이주여성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상호간에 수시로 대화의 장 마련 – 다섯째 농공단지 및 관내 기업체 등에 취업 알선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수준별 교육과 주2회 가정방문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초기 이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이 중요한 만큼 누락자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이주여성과 2세들의 교육을 위해 초기 입국자를 대상으로 문화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녀교육에 고교생이상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관리 등 이주여성 자녀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이강수 군 수	○ 이주여성 산후관리에는 이주여성이 산모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산후도우미 양성교육 등을 지원하여 이주여성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으며 ○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관 단체의 행사에 이주여성이 동원되는 사례는 긍정적 의미도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효과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토록 하겠음. ○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은 단순 직종 취업부터 이주여성의 학력 및 여건에 맞는 맞춤형 취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주여성의 조기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음.
	○ 원예작물 고추브랜드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고추브랜드 육성사업 토지매입시 농로 및 용배수로를 매입하지 않아 본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농로와 용배수로 부지를 포함해 3필지의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 당초 고추종합처리장 부지를 양어장과 인접한 지역에 계획하고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토와 파일작업, 농업용수 정비 등으로 5억여원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하여 현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 고추종합처리장은 향후 고구마, 건조야채, 쌀 등 식품가공공장 클러스터로 확대 개발할 계획으로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 시 매입을 검토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조규철 의 원	○ 황토배기유통의 운영문제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해외부자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시 정관상 사업결정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결정 후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관을 개정하였다. 이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해외투자사업으로 인도네시아 투자사업은 법률검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투자내역, 현지 업체신뢰도 등 해외자원개발투자 검증 절차를 거쳐 투자가가능하다는 필증을 받아 투자가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 해외투자에 대한 결정은 황토배기 유통회사의 설립목적에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 양파계약에 대해서는, 회사의 거래실적을 높이고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하는 회사의 고민에서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 군민의 정서를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행정에서도 7월중 유통회사 지도 점검을 통해 주요사업의 변경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조규철 의 원	○ 황토배기 유통회사의 제도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황토배기 유통화사 정관대로라면 황토배기 유통회사는 회사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도 있을 만큼 정관이 미비하게 만들어져 있어 대표이사의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군수의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유통회사 대표이사의 권한 등 유통회사 정관상 미비점에 대하여는, 당초, 시군유통회사 설립 및 운영지침과 중앙정부의 평가방향에 따라 유통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독립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으나, ○ 앞으로 주주 및 고창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관 수정의 필요성이 판단되면 수정하도록 권고하겠음.
	○ 황토배기 유통회사의 본질과 관련하여 황토배기유통회사는 고창지역의 농산물이 아닌 타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유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산물이 아닌 인도네시아에 있는 농산물까지 생산, 유통, 판매하려 하고 있으며 고창군의 농어민을 위해서 설립한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이렇게 고창군의 농산물을 외면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향후 황토배기유통에서는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고창군민의 농산물 판로개척과 소득창출에 노력하도록 군에서도 지도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음.

3. 제194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임정호 의 원	○ 면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방과 후 체계적인 교육의 연장을 위해 현재 몇 개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면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고 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고창읍 3개소, 성내면 1개소 등 4개의 시설이 있음. ○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및 설비기준과 종사자 배치기준 등” 신고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군민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신고기준을 충족하여 신고할 경우 적극적으로 심사, 수리하여 면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하겠음.
	○ 면 지역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고 미래 핵심인력으로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 면 지역의 학생들도 글로벌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와 시 · 군이 동일한일정과 방침으로 연수생을 선발하여 영어권 등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 그동안 시 · 군별 자율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선발방침의 변화를 요구하였지만, 관철되지 않아 우리군 독자적으로 면지역 학생에게 혜택을 주어 선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또한 별도 사업으로 군 자체로 시행하는 문제는 우리군 재정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임정호 의 원	○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비가림하우스 지원과 관련하여 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가림하우스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수요에 비해 지원량이 부족한 실정임. 군비증액을 통해서라도 확대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비가림하우스는 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1,500여 농가에게 900ha를 지원하였으며, 최근 3년간 60ha를 지원하는 등 매년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연작으로 인한 농산물의 품질저하와 이상기온으로 노지작물 재배에 한계가 있어, 상대적으로 시설재배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급량에 비해 농가의 수요가 많은 실정임.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가림하우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 내년에는 금년대비 250% 증가한 50ha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 국·도비 50억원을 신청하였으며, ○ 해당사업비가 확보되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윤영식 의 원	○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행정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자했지만 매년 4.4%씩 증가하는 차량에 대비하여 주차시설이 부족한 현실임. 주차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향후 몇 년 안에 주차난이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이강수 군 수	○ 군에서는 그동안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하여 주차시설 확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 K마트에서 월곡 삼거리까지 중앙로 노상주차장과, 고창천변, 문화의 전당 주변, 군산아구찜 앞, 읍사무소 옆 친환경주차장, 고창시장 옆 주차장 등 많은 주차시설을 조성 하였음에도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 고창읍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 개설시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며, ○ 교통이 혼잡한 터미널주변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윤영식 의 원	○ 농어촌버스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불만사항을 해소하고 회사 측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선 변경과 버스환경 개선 등 대중교통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자가용의 증가와 버스승객의 급속한 감소로 버스업체의 적자운행이 지속되고 있어, 열악한 군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며 ○ 군에서는 버스업체의 만성적인 재정난 타개를 위해 공휴일 감축운행을 부분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버스노선 전면 재조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차량감축 및 노선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고 ○ 정부정책으로 주요도로를 버스로 운행하고, 지선도로를 콜택시가 대체하는 “버스환승제도”를 검토하고 있음. 검토 결과가 우리군 대중교통 발전에 적정한 방향이라 판단되면 적극 활용할 계획임. ○ 버스업체와 수시로 협의하여 승객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오덕상의 원	○ 복분자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여건조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복분자 재배면적, 재배농가, 농협수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인접시군에 비해 싼 수매가격은 생산비 회수조차 어려워 농가는 복분자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임. 또한 기상재해와 연작피해, 인건비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된다면 자칫 복분자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복분자 농사가 미래 복분자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기반 여건조성과 생산농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법 및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수매가격 하락 시 복분자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농협을 통해 수매하는 농가에는 복분자 생산이력제 이행을 사유로 그 차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우리군의 복분자 육성사업은 2004년도 복분자특구지정과 함께 수많은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을 통해 꾸준하게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 복분자식품 광역화산업 육성사업 추진 및 생산, 가공, 유통, 해외마케팅 등을 통해 우리군 역점 소득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자 함. ○ 복분자산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는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생산량을 늘리고 제품가공에 필요한 충분한 원물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복분자 재배농가에 신규식재 인건비, 유기질비료와 영양제 등을 공급하여 왔으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생산이력제 지원을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 복분자 주류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행정과 주류업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복분자 주류업체들의 매출은 40%~50%정도로 떨어지고 있음. 이는 대기업의 시장진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주류업체의 개별적인 마케팅 전략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의 품질이 원인이라		○ 인접 시군의 수매가격 상승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원물 부족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라 판단되며, 수매가격 상승은 제품 원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 복분자생산이력제 참여 농가에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며, 농협에서도 복분자 판매이득금이 발생하면 유기질비료나 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오덕상의 원	고 판단됨. 따라서 복분자 주류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복분자 주류업체의 통합 생산 · 관리 및 통합 마케팅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금으로 환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Kg당 6,500원에 수매해도 실질적으로 8,000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우리군은 복분자주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가 있고, 복분자주 제조업체에서는 고창복분자 공동브랜드 “선연”을 사용하여 홍보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어 통합 생산 · 관리를 위한 여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함. ○ 복분자주 명품화를 목표로 통합생산 및 관리와 마케팅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주류업체의 개별적 제조공법과 경영 방식을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동참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통합 생산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류업체와 적극 협의하겠음.
	○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관내 83개소의 공동묘지가 유지 ·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이 투기한 쓰레기, 폐기물로 인하여 주변경관과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가고 있고, 행정에서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주변경관과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공동묘지 중에 적정한 곳을 선정하여 1개 면에 1개소 정도로 집중 관리하는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공동묘지의 공원화사업은 투자비용 대비 사업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됨. ○ 향후 사업효과를 판단하여 소규모 공동묘지를 시범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10월 개원 예정인 “고창군 자연장”을 통해 군민의 장사문화 인식개선과 다양한 장사문화 욕구가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 장애인 체육회 설립과 관련하여 관내 장애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군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원이나 활성화가 아주 미약하여 일반체육에 비해 장애인 체육은 거의 관심 밖의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임. 체육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 체육회 설립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견 해는?	이강수 군 수	○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인들과 소통과 화합의 방안으로 장애인체육단체를 설립하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며 ○ 먼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애인체육회 설립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 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설립하기보다는 운영관리의 효과를 고려하여 금년에 출범한 고창군 통합체육회에 생활체육의 종목별 연합회를 두어 운영하듯이 가칭 “고창군장애인체육연합회??를 두어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음.
	○ 장애인 단체의 체육활동에 대한 유기적인 통합 및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우리군 지체장애인협회 등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통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시키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각 단체 간의 자율경쟁도 유도하고 또한,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장애인의 낮은 소득활동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물론 상대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소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 현재 군에서는 장애인 체육활동 및 문화생활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 앞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음.

질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 소규모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영농기반의 확충과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규며 경지정리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나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대부분의 소작농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따라서 투자의 효율성과 개발여건이 우수한 소규모 경지정리 지구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소규모 경작지의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방침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편익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군비만 투입하여 경지정리를 추진하기에는 군재정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 영농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영농기반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하도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박래환 의 원	○ 세출예산 편성시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관련하여 군 예산은 시급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우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며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예산 편성과 장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의회에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는 등 의회와 군민에게 공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신뢰성이 없는 단지 사업계획에 불과하고 있음. 행정의 계획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5개년 단위로 연동하여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지적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예산편성액은 사업성격 구분상 추계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 금년도 예산은 국도비지원 감소와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 상승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고창군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국도비 매칭사업과 군민소득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재정수요를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현안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였고, ○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부터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이 안배되도록 노력하겠음.
	○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각종 재정 긴축정책으로 인한 지자체의 보조금 및 교부세 감액, 그리고 지시부담 증액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재, 우리 모두는 재원확충을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 대내외적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가점, 선진지 견학, 국외연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중앙부처 공무원과 출향인사와는 수시 간담회를 통하여 국가시책 추진 방향과 국가예산 확보에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 또한, 재원확충을 위해 방치된 군유재산이 없도록 발굴에 더욱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노력하겠으며, 군유재산이 보존부적합재산으로 판단되면 임대 또는 매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음. ○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철저한 세원관리와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여 세수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 세수증대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석정온천 개발사업 등을 조기 완공하여 우량기업 유치와 일자리창출 등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비율 하향조정으로 인한 군비부담금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신규사업은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완급성을 전면적으로 검토, 우선순위 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 또한, 민간보조사업의 경우는 재정의 건전성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사전 수혜자 검증과 사후관리 책임을 통해 사업중단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민자사업으로 석정온천을 개발하고 있고 산악자전거 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일상적인 예산, 매년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예산, 소비·낭비적 성격의 비생산적인 예산 등이 과감히 정리되는 혁신적인 계기 조성과 신규사업 책정 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완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군수의 견해는?		○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 고창읍 버스터미널 부근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고창읍 버스터미널 부근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고창을 찾은 방문객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주변 상가의 주차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 고창 공용터미널은 지역간 교통이 연계되는 곳으로 차량이 집중되고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변에 공용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20억원에 이르는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 고창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용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향후 용역 시행 시 종합적인 공영 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이 2012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제197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조규철 의 원	○ 고창황토배기 유통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황토배기 유통회사는 농어업경영 컨설팅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농수산물 판매사업에 주력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물을 확보해야 할 경우에는 위탁재배를 하는 것이 농민들과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황토배기 유통회사는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각도로 연구하고 노력해 왔으며 ○ 집단재배 단지화 사업을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와 교섭력을 강화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등 고창군 홍보와 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향후 황토배기 유통에서는 농산물 직접생산을 지양하고 생산자 단체 등에 위탁재배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아울러 유통회사는 지역농산물 마케팅에 전념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회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조규철 의 원	○ 운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및 여수토 확장공사로 인해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댐에서 내려오는 유수량 증가로 아산면 원평마을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또한 앞으로 운곡저수지에 대한 어떠한 시설이나 물리적 행위를 할 때에는 고창군과 협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운곡저수지는 한수원에서 83년 준공하여 관리하는 저수지로 원평마을 주민들이 댐 여수토 확장 등을 요구하여, 댐마루 월류 방지를 위한 여유고 보강공사와 담수량 조절을 위한 여수토 확장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 이 사업으로 인해 운곡저수지 담수량에는 변화가 없으나, 집중호우시 댐으로 유입되는 속도 및 수량에 따라 방출량이 달라져 하천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됨. ○ 영광원자력본부와 협의하여 운곡저수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하천 단면결정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 또한 영광원자력본부에서는 향후 운곡저수지 시설 등의 변경시 사전에 우리군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음. ○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영광원자력본부와 협의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운곡저수지 관련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조병익의 원	○ 고창천의 계획홍수량 기준인 초당 520톤에 맞는 사어과 하천유수를 방해하는 각종 수리시설 및 기타 원인 제거 등의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항구적인 피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지난 8월 9일 집중호우로 고창천 수위가 상승하여 고창천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농경지 침수와 일부 제방이 유실되는 피해도 있었으며 ○ 고창천 생태환경조성사업은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농경지와 마을여건을 고려한 치수를 우선하여 시행하고 있음. ○ 단면이 부족한 제방은 확장 · 축조하고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콘크리트 고정보를 자동보와 여울보로 대체 시공하고 있으며, 저지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제방 배수구 유출부에 역류방지용 자동문비를 설치하여 하천수 역류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은 정비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겠으며,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필요시 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기상현황과 하천유역 환경 등을 고려해 고창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조병익 의 원	○ 문화예술적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관련하여 아산면 봉덕리 고분 1차 발굴결과 금동신발 등 우리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귀중한 유물들이 출토된 바 본 고분에 대한 중장기 발굴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고창군민의 역사성과 지역 차별성을 갖고 기존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창군 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아산면 봉덕리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금동신발과, 각종 부장품 등이 출토되어 마한, 백제시대의 최대 규모 고분군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봉덕리 고분에 대하여 국가지정 사적지 지정을 추진 중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가 발굴조사 등 체계적인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출토유물을 전시 및 보관하는 국립박물관을 건립하여 고창역사관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개인소장 역사자료는 지속적으로 기증받아 관리하고 있음. ○ 세계문화유산인 판소리의 활성화 방안으로 동리정사를 재현하여 판소리 체험장, 영화세트장으로 활용하고, 오거리 당산과 야외전통문화 체험공간을 한옥체험마을 등과 연계하여 고창의 문화를 보고, 배우고, 느끼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서 판소리사에서 고창의 위치를 재정립 해 나가도록 하겠음. ○ 전국 국악경연대회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대회라는 점을 높이 평가 할수 있으며, 군에서는 민간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경연대회를 행정이 직접 개입하여 확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함.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농업정책이 고품질 · 친환경 및 경쟁 가능한 대체작물 개발로 획기적인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FTA시장개방에 따른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체작물 개발과 육성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첫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전문단지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 둘째, 대규모 · 전문화된 생산자 조직을 집중 육성하겠음. ○ 셋째, 고품질 과수 및 원예브랜드를 육성, 수출기반을 확보하여 수출에도 노력을 다하겠으며 ○ 넷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조절과 시장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음. ○ 다섯째, 자연재해와 농기계사고 등에 대비한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회의소 설치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도 최선을 다 하겠으며 ○ 아울러, 농촌개발대학 등 농업전문 교육과정을 수료한 우수농업인을 선정하여 소규모 가공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의 다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음. ○ FTA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도와 연계, 고창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품목별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 농촌 농기계 관리와 관련하여 고수면 오산마을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의 경우 농기계 마을공동 보관창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동 이용해야 할 농기계를 마땅히 보관할 장소가 없어 대다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업인들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마을 공동농기계 창고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이강수 군 수	○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그동안 22개 마을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2006년부터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농기계 보관창고를 보조사업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중앙 및 도에 적극 건의하겠음.
	○ 농작업 안전모델사업의 확대 추진에 대하여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은 농작업 재해로 인한 농가의 부정적 지출을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하여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와 같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더욱더 확대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은 농작업 재해요인을 제거하고, 편이장비 보급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우리군에는 고수면에 처음으로 추진하였으며, 시군 단위로 순차적으로 보급하다 보니, 다음 사업추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농작업 안전모델사업과 유사한 국고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오덕상의 원	○ 고창군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특성이 없는 모방 · 전시 축제를 지양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축제 수를 줄이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군이나 람사르 습지 등을 활용하여 문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우리군의 축제는 고창의 특산물과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창군의 문화와 경관자원, 특산물 등을 소재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 우리군 축제의 통폐합과 또 다른 축제를 개발하는 문제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음.
	○ 동계훈련 및 전국단위 축구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우수한 축구 경기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화된 경기장과 다양한 여건이 전지 훈련지로 최적지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동계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군수의 생각은?		○ 우리군은 족구, 궁도, 배드민턴, 유도, 마라톤 등 많은 종목의 전국 스포츠대회를 유치, 개최하여 우리지역을 알리고 주민의 소득창출에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 금년 준공한 생활축구경기장과 공설운동장 등을 활용하여 고창군 통합체육회를 중심으로 전국규모 축구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애용되는 남해, 강진, 해남 등은 기온이 따뜻하고 눈이 없는 남쪽 지역이라는 이점이 있으며, 고창의 여건을 감안하여 겨울 뿐 아니라 여름 등을 활용하여 프로팀이나, 실업 · 학교팀들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오덕상의 원	○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전담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FTA가 발효되면 축산농가는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구제역, AI, 돈콜레라, 부루셀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병된다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니 가축 예방접종 및 방역을 체계적으로 …리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축산농가가 구제역과 AI, 소 값 하락, 사료 값 상승, 한미 FTA 비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 유기우유 생산과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 축사시설 현대화와 가축분뇨 처리지원으로 사육 여건을 마련하며, – 한우사업단육성 등의 사업 추진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 가축질병 방역체계구축, 친환경 축산 인증농가 확대 사업 등을 통하여 FTA 비준에 따른 축산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며 ○ 구제역과 AI 발생시 축산농가와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여 왔습니다. 가축위생 담당부서 인원 보충은 군 전체적인 조직과 인력을 고려하여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공익수의사 배치 방안도 검토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윤영식 의 원	○ 고창 해안선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심원, 부안, 흥덕 등 고창해안의 북부지역은 120ha에 이르는 갯벌이 펼쳐진 습지보호 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미진한 상태이며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상의 습지복원, 생태관광자원개발,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환경연구소 및 전시관 건립 등의 사업도 계획 중에 있으나 아직 미진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의지가 있는지?	이강수 군 수	○ 부창대교 연결지점인 해리면 왕촌에서 남부권역은 구시포를 중심으로 수산, 쇼핑, 레져, 체험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구시포국가어항 기능활성화사업과 연안친수공간 해역복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서남권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하여 흥미로운 관광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북부권 해안은 갯벌이 발달하여 세계적으로 보호가치를 인정받은 곳으로 효율적 보전과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람사르 습지등록을 마쳤음. ○ 갯벌을 활용한 갯벌체험, 갯벌생태계 복원지 탐방, 갯벌의 중요성 교육 및 홍보, 갯벌생태도로,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여 고창의 아름다운 해안경치를 느낄수 있는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관광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윤영식 의 원	○ 어촌자원개발과 어민소득연계 방안과 관련하여 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촌생태체험 및 관광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어민소득원 발굴을 위해 고부가가치 양식품목 개발 및 해상양식단지 조성, 장어, 바지락 등 대표적인 수산물의 마케팅 사업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어촌의 지역자원과 전통조업, 갯벌생태계를 활용한 하전과 만돌어촌 체험마을은 전국적인 웰빙 갯벌생태체험 관광지로 부상하여 어촌소득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도 개장을 계획하고 있는 장호어촌체험마을은 명사십리와 어촌체험,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성과가 좋은 어촌체험마을은 어촌자원의 활용 가능성과 주민들의 사업수행 의지 등을 감안하여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 국내 최대 바지락 생산지인 고창은 일본으로 수출 하는 등 어업인 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단순 가공상태로 판매되어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으며 내년도 바지락 산지가공시설을 건립하고 다양한 형태의 고급포장 가공품 판매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를 2013년까지 건립하여 가공, 유통, 체험, 교육과 판매 등으로 풍천장어 소비를 늘려 양식어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윤영식 의 원	○ 부창대교 건설에 따른 후속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 부창대교가 건설되면 새만금에서 변산반도를 경유 곰소만을 지나 선운산으로 연결되는 서해안 관광벨트가 활성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개발 준비가 필요하며 고창군 중장기 계획도 수정 보완해야 한가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부창대교 연결지점인 해리면 왕촌에서 남부권역은 구시포를 중심으로 수산, 쇼핑, 레저, 체험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구시포국가어항 기능활성화사업과 연안 친수공간 해역복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서남권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하여 흥미로은 관광거리를 제공할 계획임.
	○ 검단염전지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검단염전지 전시관이 관광객들에게 공개되지도 못하고 문이 잠긴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소중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군수의 견해는?		○ 소금전시관은 사등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자염생산 부진과 공동운영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마을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공동협력 하도록 지도하고 선운사와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여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명창 진채선 생가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동리정사 복원과 함께 진채선 명창 생가도 함께 복원하여 전국에서 판소리를 사랑하고 공부하는 예능인들이 꼭 한번쯤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진채선 명창의 생가복원은 건물의 형태나 도면 등 확실한 고증 절차를 거쳐 재현해야지만, 구전 이외에 집의 형태 등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과 자료 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생가터는 세심히 관리하는 한편 소금전시관, 갯벌체험장 등 선운사 보은길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광안내 체계를 개선하고 신재효와 진채선, 대원군간 스토리텔링 작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임정호 의 원	○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영광원전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에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창군에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이전에도 원전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전파할수 있도록 영광원자력본부와 협의를 통해 비상경보방송망 설치 등 상황전파 시스템의 확대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복분자 고사대책 및 농가 소득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되는 냉해, 습해 등 여러 요인으로 복분자가 고사하여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낮은 수매가격이 재배의욕 저하와 관리 소홀로 이어져 더욱 고사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바, 복분자의 생산 장려 측면에서 수매가격을 kg 당 9,000원 이상으로 산정하여 추진한다면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을 높여 가공업체 원료의 원활한 확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복분자 고사원인은 재배농가 유형별로 심층조사 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새해 실용화 교육시 전 읍 · 면을 대상으로 미생물 사용 등 다각적인 고사대책 중점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신규 식재 농가에게는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초기부터 재배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복분자가 고창의 효자작목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 2007년부터 시행한 복분자 생산이력제는 복분자 산업발전과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에 기여해 왔음.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012년도 복분자 수매가격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농협, 가공업체, 행정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복분자 생산자관련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결과에 따라 수매와 공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5. 제204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오덕상 의 원	○ 고창군 해안 생태계 변화와 관련하여 생산성의 급격한 저하와 각종 어패류 및 어종들이 멸종 · 감소되는 등 고창의 연안과 갯벌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이는 영광원전 온배수와 새마금방조제 축조로 인한 결과로 추측되므로 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고창군 해안의 생태계 변화에 대해 학술조사가 절실하고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영광원전 5 · 6호기가 가동으로 인한 피해조사 용역결과에 따르면 고창지역 피해범위가 18.6km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영광원전에서는 지속적으로 해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영광원전에서 『영광원전 관련 해양생태계 복원 활성화방안』용역을 목포 초당대학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양생태계조사 및 복원과 관련하여 영광원전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 또한 우리군에서는 전라북도 연안해역 전반에 대한 학술용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새만금개발사업, 군장국가공단, 영광원전 온배수,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산자원조사 및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하여 전라북도 차원에서 용역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고창군, 군산시, 부안군의 담당과장회의를 개최하였고, 수시로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연안의 수산자원, 생태계 및 환경 회복방안 등 전반에 대하여 용역조사가 이루어져 해양생태계가 복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 밭논업직불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밭농업직불제 신청결과, 고창군 총 대상면적 9,379ha 중 32%인 3,093ha만이 신청되어 무려 6,286ha가 미신청 되었음. 이러한 수치는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에, 저조한 신청결과에 대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지난 2011년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불법전용산지 지목현실화를 알지 못해 실제로 밭농사를 짓고 있는 임야에 대해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여 밭농업직불제 또한 신청하지 못한 농가가 많음. 이를 구제하여 밭농업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강수 군 수	○ 밭농업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고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정부지원 19개 품목과 그 외 품목에 대하여는 도지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 당초 신청기간은 5. 31까지였으나, 7. 6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신청대상 농가를 미리 파악하여 해당 농가를 읍면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으며, ○ 또한, TV. 라디오. 신문 등의 매체와 각종회의, 현수막을 게첨하여 홍보하였고 전화 및 문자메세지도 활용하였음. ○ 우리군 신청 대상농지 9,379ha 중 지원제외대상으로 분류된 6,286ha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농가가 신청등록 하였으며, ○ 전산입력 기간이 7. 30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 기간에도 미 신청된 농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 또한, 지목이 임야이지만 현재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하겠음.

질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 고창군 한해대책과 관련하여 한발대비 저수량 확보를 위한 소류지 준설과 이를 처리할 사토장을 확보하고, 물을 끌어들일 수도 없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도 없는 지역에 중·대형관정을 설치하는 등 장기적은 안목을 가지고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고창군의 약 500개소의 중·대형관정 중 일부는 고장·파손, 그밖의 사유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보수체계를 구축하여 관정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관정·양수장비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의 30%는 사용자인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농민들의 수리비용 부담비율을 낮춰주거나 수리비용 전액을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이강수 군 수	○ 우리군은 총 345개의 저수지와 중·대형관정 492공이 개발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 금년에는 가뭄지역의 항구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5억원과 재해대책비 19억원 등 총 24억원을 확보하여 소류지 준설 16개소와 중형관정 39개소를 개발중에 있음. ○ 앞으로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저수지 준설과 용수개발을 추진하겠으며, ○ 또한 기 개발된 관정을 고장 없이 관리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현재 우리군에는 매년 양수시설 및 관정을 일제 점검하여 고장이나 파손된 시설물을 영농기 이전에 수리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이후라도 수시로 신고 접수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 수리시에는 수리비의 70%를 지원하고, 30%는 농민이 부담해서 사용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추후 농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민부담율을 낮추거나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하도록 하겠음.

6. 제207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 고창 황토배기 유통의 불신풍조와 관련하여 지난 2009년 2월 성대히 출범한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은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였지만 주주에 대한 배당은 단 한번 뿐이었고, 본래의 목적인 유통을 도외시하고 옥수수와 배추의 대규모 집단재배 단지화 사업을 추진하여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 더구나 최근 황토배기 유통의 대표가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황토배기 유통은 대내외적으로 도덕성과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있으며 군민들의 불신감이 팽배해 있음. 황토배기 유통의 최대주주로서 고창군 행정은 군민들의 피해를 막고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의 지도 감독 계획은 어떠한지?	이강수 군 수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은 농산물 유통구조 변화에 따라 규모화, 전문화된 농산물 전문 유통회사로 육성하여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 우리고장의 우수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군민과 농수축협, 고창군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유통회사이며, ○ 회사를 운영한지 4년이 지났지만 회사와 생산농가간 소통부족, 적자발생, 마케팅전략 부족 등의 문제는 ○ 사업초기 회사의 경험부족과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황토배기 유통에서는 이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 농가와 주주들의 신뢰가 부족한 점은 향후 주주 및 생산자단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사의 마케팅 역량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초기 단계부터 회사와 생산자단체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서로 신뢰가 회복되고 상호 소통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음. ○ 회사의 운영은 정관에 따라 회사의 경제성과 지역농업활성화, 생산자 단체의 생산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질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이강수 군 수	이사회의 결정에 의거 경영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면서, ○ 경영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고, 정관에 따라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 생각함.
	○ 고창 황토배기유통의 재정상황에 관련하여 황토배기 유통은 매년 매출액이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경우 오히려 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면 고추농가에게 지급하는 선도금을 적기에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고추종합처리장을 담보로 36억원을 대출 받은 후에야 선도금을 지급하였음. 지역사회에서 황토배기 유통이 심한 자본잠식 상태일 것이라는 우려가 만연해 가고 있는데 황토배기 유통의 현재 재정이 어떤 상태이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황토배기유통의 재정상황은 초기 자본금 15억원으로 시작하여 유·무상증자를 통해 78억원으로 증가되었으며, ○ 자본금은 예금과 적금, 기계장비 및 물류시설 고추종합처리장 토지매입 및 건설비, 상품 및 원물 매입비, 임차보증금과 대여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2011년도 적자액 6억8천만원은 인건비 및 집단재배단지 손실 5억5천만원과 고추종합처리장 및 유통센터의 감가상각비 1억3천만원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되며, ○ 황토배기유통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일반회사가 아님. ○ 그렇다고 행정에서 공익적 특성을 강조하여 지나치게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도 대표이사의 책임경영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어 회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권고하고 지도해 나가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 고창 황토배기유통의 유통능력 부재에 대하여 고추종합처리장 냉동창고 안의 옥수수 재고물량 70여만개는 아직도 판매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고추수매 또한 올해 계획량 2,000톤 대비 50% 정도인 1,024통을 수매하는 데에 그쳤음. 다수의 농민들이 황토배기유통과의 거래에 불만이 많으며 황토배기 유통에서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에는 유통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여서 고창군민은 황토배기 유통의 유통능력을 의심하고 있음. 황토배기유통은 본래 목적에 걸맞게 충분한 유통능력을 가진 전문회사로 거듭나야 하며 주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운영방안을 정립 및 재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집단재배단지 사업은 시장여건의 불안정과 사업전략의 부족 등으로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손실이 있었지만 황토배기유통을 운영하는데 자기반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 회사에서는 고춧가루를 전략품목으로 정하고 경험있는 직원을 영입하여 영업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음. ○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적으나 실무경험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유통회사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 산지유통시장 변화에 따른 유통회사의 필요성은 모든 농업인이 공감하고 있으나 회사운영에서 기존 유통조직과의 경쟁과 운영체계 등 사업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등은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됨. ○ 향후에는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마케팅 역량강화, 판매전략 등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대주주로서 회사에 요구하도록 할 것이며, ○ 이러한 문제들이 보완될 경우 회사는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생각하며, ○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으로 미래에 대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음.

7. 제213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임정호 의 원	○ 시설풋고추와 관련하여 시설풋고추 재배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는 재배기술 정립과 재배기간 연장을 위한 시설지원, 출하규격 통일을 위한 박스지원 및 고창군 풋고추 공동상표 도입 등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안정적인 고추생산을 위해 최근 2년간 57억원을 투입하여 고추 비가림 하우스와 친환경 생산자재 등을 지원하여 고추생산 기반시설 구축에 노력해 왔으며, ○ 또한 영농실용화 순회교육과 집합교육, 영농현장 컨설팅을 통하여 고품질 고추생산 교육도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생산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재배기술 교육, 고추종합처리시설을 기반으로 풋고추 시설작목반에 “고창황토배기” 공동포장재를 지원하고 공동선별 출하회를 통합하여 고창의 새로운 소득작목이 되도록 육성해 가겠으며, ○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군에는 총 532개소의 모정이 있어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소, 소중한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마을모정 노후에 따른 보수와 관련하여 고창군 전체 모정 532개소 중 114개소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상태임. 보수가 필요한 모정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보수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소규모 파손으로 자체 보수가 가능한 30개소 외 보수가 필요한 곳은 84개소로 이 중 5개소는 금년도 본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중에 있으며, ○ 잔여 79개소 중 긴급복구가 필요한 8개소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복구토록 하겠으며, 71개소에 대해서도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수하여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조규철 의 원	○ 복분자 재배 및 활성화에 대하여 복분자 재배면적의 감소, 인건비 상승, 연작피해 및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배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복분자 관련 생산 및 가공사업은 갈수록 힘들어 질 수 있음.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복분자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답변바람.	이강수 군 수	○ 복분자 산업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농민들의 안정적인 복분자 생산과 가공사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신규식재 지원을 계속하고, 복분자시험장에서 육성한 수확량이 많고 당도가 높은 신품종을 내년에는 시범농가에서 적응시험을 거친 후 농가에 보급 할 예정임. ○ 또한 고사원인과 연작장애 개선 연구도 완료됨에 따라 농가에 기술보급을 적극 추진하여 내년에는 고사율이 현저히 경감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아울러 지속적인 생산기반시설과 자재 지원, 생산이력제 추진으로 가공업체 원물을 확보하여 경영부담 완화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 군과 재배농가, 가공업체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복분자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리라 생각함.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조규철 의 원	○ 아산~선운사간 군도4차선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아산~선운사간 군도4차선 확·포장 사업을 3단계까지 추진하였으나, 잔여구간(1.9km)을 착공하지 않은 채, 미 포장상태로 개통함. 지역주민들의 불편 및 교통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선운사 교통난 해소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잔여구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구체적인 계획은?	이강수 군 수	○ 아산~선운사간 군도 19호선 확포장사업은 고창의 대표관광지인 선운산도립공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 전체 사업구간 9.1㎞중 7.2㎞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1.9㎞는 2011년 이후 지방양여금과 보통교부세 예산 지원이 중지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임. ○ 향후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 아울러 삼인터널 보조기층 시공구간 680m에 대하여는 비산먼지 발생과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 석정온천 개발회사와의 MOU체결에 대해 2008년 1월 31일 서울시 니어스타워와 고창군의 석정온천 개발에 대한 MOU가 체결되었는데 MOU체결당시에 회사와 군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조율하며, 또 MOU에서 협약한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의 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강수 군 수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992년 석정온천 관광지 지정이후 약 20여 년간 세월을 거슬러 보면 많은 군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도 주었는가 하면 고통과 안타까움도 안겨주었던 곳으로 ○ MOU체결시 회사는 2,934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고창군은 행정사항 지원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한 것이며, 이후 관광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회사와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석정온천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창군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두고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MOU 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 특별한 법적인 책임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림.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 산악자전거 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고창군은 2010년 12월 2일 첨바레이싱사와 고창 산악자전거 공원 조성 투자 협약서를 체결 하였는데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11년 3월 11일에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니어스타워 주식회사와 또 투자 협약서를 체결 하였으며, 투자 협약서를 중복해서 체결하게 된 경위와 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각 업체와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이강수 군 수	○ 산악자전거공원 조성사업은 고창군과 첨바레이싱사 그리고 서울시니어스타워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협의하에 공동으로 개발하는사업으로, ○ 그동안 첨바사에서는 사업부지 선정과 코스개발 참여, 공원조성 계획에 수차례 기술자문을 하였고, 서울시니어스타워에서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조사를 실시하면서 민자투자 부분을 검토하였으며 ○ 그 후 세 기관은 세부적인 투자부분 등 전반에 대해 협의해 오던 중 관련법이 개정되어 민간투자가 어렵게 되자, 고창군에서는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1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산악자전거 전용 숲길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선, 민자주도형의 관광지 개발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규모 투자자의 사업구상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사업비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질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 석정온천 관광지에 위치한 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하여 당초 사업비는 민자사업비로 4,395억원이고 사업내용은 온천스파 콤플렉스, 휴양병원, 골프장, 시니어스 타운, 콘도, 커뮤니티센터, 문화센터, 승마장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그러나 2011년 제2차 정례회시 보고자료를 보면 사업내용 중에서 펜션 건축부분이 오히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설명없이 사업비가 갑자기 3,039억원으로 무려 1,356억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작년 제204회 제1차 정례회 때 문화센터가 문화체육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그 이후에 고창군이 시행하는 석정문예회관 다목적시설로 또 한 번 더 바뀌게 됩니다. 최초에 회사 측에서 시행하기로 한 시설이, 우리 군이 시행하는 기반 시설로 바뀌어서 추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 간의 사정이 어떻게, 왜 바뀌어서 그리 된 것인지 매우 궁금함.	이강수 군 수	○ 또한, 고창문화센터에서 문화체육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고창군 소유의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문화시설 뿐 아니라 체육시설도 가능하도록 용도가 변경되면서 명칭도 바뀌었으며, 이후 토지교환시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문화체육센터로 승인받은 사항이며 ○ 그리고 석정문예회관(다목적시설) 건립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말부터 충분히 논의되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지난 5월 임시회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마친 상황으로, 또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림. ○ 운곡저수지 주변 개발사업과 중복문제는 운곡지역은 아직 기본적인 구상안에 대해서 논의 단계지만 리조트 안에 호텔과 함께 한 컨벤션, 콘도, 승마 테라파크, 농촌 체험장 등으로 석정문예회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며 ○ 석정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039억원중 1,500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펜션, 온천스파, 상가 일부 등의 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음.

질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이 고창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관련하여 군수께서는 읍면순회 군정설명회시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로 인한 최소한의 세수 증대 효과가 연간 54억원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에 따른 관광객 유입 효과라든지 세입 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석정온천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그 산출근거가 어찌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이강수 군 수	○ 고용효과로는 고창군민 100명과 외지인 100명 등 총 2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인구 증가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 지방세 또한 지난달까지 77억4천5백만원이 징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을 살펴보면 2012년 33만명, 2013년 상반기까지 24만명 등 총 57만명으로 고창군민 20%정도를 제외하면 45만 6천명의 외부 관광객이 유입되어 주변 음식점, 상가 등 약 137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향후 노인복지주택, 휴양병원 등 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나면 고용인원과 세수증대는 더욱더 큰 폭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우선 관광지 개발사업비 부분은 민자 주도형인 만큼 전자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림.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 석정온천과 관련하여 석정온천 개발사업비 총액규모는 2011년 4,395억에서 1,300여억원이 줄어든 3,039억원으로 바뀌었으며, 그리고 투자내역에 문화회관 건립비용 5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사업비 또한 자료에 따라서는 45억으로 표기된 자료도 있음. 그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온천 휴양병원이라던지, 노인복지주택, 펜션, 승마장 등의 시설을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단지 내에 휴양병원이나 노인 복지주택이 건축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축되는 시설물이 무엇이 있는지?	이강수 군 수	○ 2009년 12월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한 기공식을 시점으로 2012년까지 골프장, 온천스파, 숙박시설, 음식점, 금융기관, 마트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 금년부터는 휴양병원과 노인복지주택 등을 신축하고자 실시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니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함.
	○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살펴 보면 개발회사와 고창군간에 기반시설 부지를 포함한 토지소유권의 정리 과정 중에서 관광진흥법 제61조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고창군에 45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해당 사업지구 토지의 소유권이나 토지사용 승낙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함에도 개발회사 측에서 사후에 토지소유권 및 사용권을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만을 제출받고 관광지 조성사업을 허가한 사항, 관광지 조성계획과 의제 처리는 제2종		○ 먼저 기반시설 부지매입에 있어 고창군 토지는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높은가격에 매각하고 회사 토지는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낮은가격에 매입했다면 44억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 감사원에서는 행정 편익 즉 이익의 측면에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인 것 같으며 ○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 행정지원이 있었기에 기업유치가 가능 했으며, 20여년 동안 방치된 관광지에서 현재까지 약 78억원의 세수가 증대되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림. ○ 다음은 조성사업 허가시 토지소유권이나 토지사용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확약서만 제출받아 관광지 조성사업을 허가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군 관리계획에 따라 펜션부지에 건축 허가시에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맞게 숙박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건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실상의 주거시설로 무단 전용되어 관광지 조성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투자를 결정하여 준 업체에 대하여 우리 군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행정적 편의가 특혜인가 아닌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법을 일탈하면서까지 특혜를 제공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또한 전라북도에서 2009년 12월 9일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하면서 숙박시설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계획을 제척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실상의 주거시설로 무단 전용되어 사용 중인 건물의 입주민에 대해 향후 전라북도에서 조치결과가 전달될 때 어찌 대처하실 것인지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ㅇ 1994년 사업시행허가를 받았던 석정온천개발주식회사가 1997년 도산하여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었고, 그 결과 예산낭비는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 등 부작용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사업을 재개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우량한 업체를 조속히 유치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었던 점과 ㅇ 2004년경 법정관리로 인한 채권이 정리 될 때 대부분의 토지가 1필지에 20~40여명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일시에 토지를 확보 할 수 없었다는 점, ㅇ 위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번 만큼은 관광지가 개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허가 시 토지확보가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 한 후 사업을 하도록 확약서 공증을 받아 조건부 허가하였으며, 사업 착수도 실제 토지가 전부 매입된 후에 진행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ㅇ 다음은 주거시설 사용에 대한 전라북도 조치에 대한 대처는 현재까지 결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며 향후 어떠한 사항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윤영식 의 원	○ 농어업 소득향상에 기여가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긍지를 갖고 고창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제도를 제안함.	이강수 군 수	○ 남다른 창의력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함께 우리군 농어업의 위상을 높인 농어민을 발굴하여 “농어민 대상”을 시상한다면 ○ 우리군 농어업 발전과 농어민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타의 귀감이 되는 우수한 농어민에게 농어민대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농업인 회관과 관련하여 농업경영인을 비롯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작목반 등 영농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고창농업을 걱정하고 연구하고, 대화하는 장소를 마련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 농업인 회관 건립은 그동안 많은 농업인 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음. ○ 다만 농업인회관은 건립비용과 운영경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 방안과 농업인 단체와 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 검토해 보겠음.
	○ 해양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2012년도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이미 50톤이 넘고 지금도 계속해서 해양 쓰레기는 연안으로 밀려오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수거를 해왔지만 지속적인 수거 없이는 갯벌을 절대 깨끗하게 보전할 수 없음. 앞으로 고창 갯벌 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갯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기계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더 이상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해안쓰레기 수거를 위해 인력 및 바닷가 청소장비를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 ○ 2012년부터 해안쓰레기 수거장비를 구입하여 상하, 해리, 심원면에 공급하였으며 ○ 또한 어촌계별 해안쓰레기 수거 및 공동어장 주변 정화사업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해안환경조성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 ○ 앞으로도 깨끗한 해안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부안면과 흥덕면에도 연차적으로 해안쓰레기 수거장비를 공급하여 증가하는 해안쓰레기 수거에 노력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윤영식 의 원	○ 람사르습지 주변지역 오폐수처리장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오폐수처리장이 다수 건립되고 있으나 정작 갯벌생태 보호구역인 하전, 용기, 수다마을을 비롯한 부안면 일원은 지금까지도 오폐수 처리장이 건립되어 있지 않아 1일 수백톤의 생활오폐수가 그대로 바다로 유입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각종 어패류가 폐사 하는 등 커다란 손실을 보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오폐수처리장을 건립하여 오염원이 더 이상 갯벌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갯벌습지 보호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 좋은 갯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오폐수처리장 건립을 제안하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등록에 따른 우리군 실정에 맞는 관리계획 수립으로 수산물의 브랜드가치향상 및 세계적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처리장 건립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람사르습지 주변지역인 심원면 만돌리에 2012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심원면 하전리와 해리면 동호리도 2014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 람사르습지 주변 심원면 용기, 수다마을과 부안면 선운, 송현, 봉암리 등 해안가 마을은 순차적으로 추진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등재된 천혜의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등록은 우리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함. ○ 그동안 국내외 사례를 조사한 결과 생물권보전지역을 이용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고용창출 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기는 6~10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바탕에는 관리계획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세계적인 생태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임. ○ 이에 우리군은 3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전계획과 –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발전계획, –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을 만들기 위한 지원계획 입니다. ○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설정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민인식 제고를 위한 주민교육 실시와 전담부서 조직, 관리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오덕상의 원	○ 무보직 6급 배치와 관련하여 6급 승진자의 보직부여에 있어, 근속승진과 일반심사 승진자간의 각각의 배치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런 점은 관련 부서에서 일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한 배치가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인사를 직원 각자가 바라고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며 ○ 그러나 현실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각 부서별 책정된 정원과 정해진 직위 및 직급, 직렬 등이 있어 모두가 원하는 자리를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고충을 듣고 있고 의견을 수렴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사항을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음.
	○ 각 부서별로 근무여건을 분석하여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힘들게 근무하는 직원을 배려하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2005년부터 3년 정도 격무 · 기피 부서와 선호부서로 몇몇 부서를 지정해서 직위공모제를 운영한 바 있으나, ○ 격무부서와 그렇지 않은 부서간에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는 직원들의 또 다른 불만과 여론이 있었고, 실제 기피부서의 공모에 응하지 않는 등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행을 중단한 바 있었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오덕상의 원	○ 장기근무자의 순환보직 인사와 관련하여 특수직렬을 제외하고 한 부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장기근무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 자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게 되면 근무자의 근무의욕이나 참신성, 창의성 등이 떨어지는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업무 비중이 있는 직위공모제까지도 장기 근무가 진행되면서 근무자 사기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도나 방침을 개선한 순환보직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견 해는?	이강수 군 수	○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공직자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던지, 열심히 일하고 업무성적 등이 우수한 직원은 근무성적 평정 시에 결과가 반영되며, 또한 국가예산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 중앙기관 표창시에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제적으로 적절한 인사상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전보인사는 한 곳에서 최소한 3년 내지 4년 이상 근무한 경우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순환전보 시 업무의 연속성과 능률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와 특수직렬,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 앞으로 인사운영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장기근무자가 순환 전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직위공모 장기근무자도 희망 시에는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오덕상의 원	○ 6급 근속승진제 시행으로 늘어나는 무보직 6급의 배치와 관련하여 6급 근속승진제가 시행되면서 최근 무보직 6급이 늘어나고 있으며, 6급이라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의 중간 간부로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직급인데 6급 승진자의 보직부여에 있어 근속 승진과 일반 심사 승진자간에 각각의 배치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런 점을 관련 부서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공정한 배치가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6급 승진자에 대해서는 6급 결원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승진자의 경우 당해 직위에 맞도록 보직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근속승진자는 승진서열 순위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고 있으며, ○ 6급 직위는 2011년 근속승진제 도입 이후 제도상 무보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본청과 읍면의 순환에 따라 업무능력과 성과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해 나갈 방침임. ○ 이러한 6급 무보직자의 인사운영방향에 대하여는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상황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오덕상의 원	○ 인사는 어떤 업무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고창군도 승진과 인사에 관련한 지침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승진과 인사에 불만을 갖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모든 제도는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인사지침은 700여 공직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므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군수께서는 공정한 인사지침의 준수를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아시다시피 인사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으며, ○ 지금까지 우리군은 의원님께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런 원칙하에 인사를 운영할 계획이며, ○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인사라 할지라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혀 불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인사는 자기 스스로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것이므로, ○ 직근상급자가 객관적으로 실시한 근무성적평정결과를 토대로 최근 몇 년 동안의 실적을 종합하여 전체 직렬별, 직급별로 결정한 승진서열순위 및 배수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 것임. ○ 따라서 인사는 정해진 법규와 규정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난 인사는 할 수도 없는 것임. ○ 그리고 인사는 극히 예민한 사항이므로, 자칫 근거 없는 말과 루머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함.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오덕상 의 원	○ 고창군은 국가청렴위원회 주관으로 조사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군부 1위 등 8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그런데 금년 들어 농어촌뉴타운 조성공사나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부분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서의 명성에 먹칠을 함은 물론 전 군민의 명예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군민 앞에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이강수 군 수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에서 우리군이 2005년부터 8년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과 군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생각 하며 그동안의 성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 지난 10여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청렴만이 우리가 살길이며 경쟁력이라고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여 왔으며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불행히도 소속공무원이 불미스러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 지켜봐야겠지만 군정의 책임자로서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 이번 일을 계기로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추경에 확보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주민 편익증진과 재해예방, 영농편의 도모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 군민의 60% 정도가 농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고창군의 특성상 주민숙원 해결을 통한 편익증진을 위해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금년의 경우 사업비의 상당액이 추경에 확보되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지역개발사업은 205개소 사업에 32억 3천만원이며 ○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이 농로포장이나 배수로정비 사업으로 현지를 조사해 본 결과 공사구간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현 추진상황은 꼭 필요한 곳은 현지측량과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농작물 수확 후 사업을 추진하겠음.

8. 제216회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질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운영식의 원	○ 무인헬기 농약살포 지원과 관련하여 농협에서 무인헬기를 이용하여 농약을 살포해 주지만 조금만 더 농약살포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어려운 농업농촌에 활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우리군은 고령화에 따른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그동안 7대의 무인헬기를 공급하였으며, 금년도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면적은 2,075ha로 전체면적의 17%정도임. ○ 무인헬기로 방제하는 면적을 확대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어려운 농업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가로등 설치문제에 관련하여. 현재우리 군에는 8천 1백여개의 가로등이 있고 연간 전기요금이 9억여원 유지관리비용이 1억5천만여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있어 할 곳은 없고 없어야 할 곳은 있는 등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에 대한 군민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전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 우리군에서는 취약지역 및 어두운 골목길의 가로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각종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 노후된 가로등에 대해서도 보수, 교체, 이설로 주민들의 야간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으며, ○ 현재 고창읍에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기 위해 가로등 실태파악 및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 그 외 읍면 지역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현지 실정에 맞게 가로등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운영식 의 원	○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휠체어 지원확대와 관련하여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규모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와 유모차 등의 편의시설을 비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과 군에서 구입비용의 80%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 군청사와 관광지의 휠체어 보유 현황은 37대로, 청사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 25대는 방문 민원인과 거동 불편자 대여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에는 휠체어 12대와 유모차 15대를 구비하여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앞으로 관광지와 청사에 휠체어와 유모차 등 편의시설 수요량을 조사하여 적정한 수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 농어촌뉴타운 분양가 산정과 관련하여 당초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한 기반시설 조성비는 분양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조성비의 일부가 분양가에 포함되어 산정되었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는 기반시설 보조금을 분양가격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 농어촌뉴타운 총사업비 332억원중 분양대금은 157억원으로 이와는 별도로 국비보조 39억원, 군비 136억원 등 175억원이 더 투입되었으므로, 이를 단순하게 살펴봐도 기반시설 보조금이 분양가에 산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분양가는 낮다고 생각함.
	○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의 주요 지원 사안으로는 생활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과 함께 연계사업으로 소득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귀농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 발굴과 농업경험을 위한 소득창출사업지원 등이 있음. 현재까지 뉴타운입주자를 위한 소득창출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 우리군에서는 사업계획 확정 후 분양공고 및 홍보물 등을 통해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에 대한 농어촌주택자금, 농어촌육성기금 등의 지원 사항은 명시하였으나, 여기에는 복분자단지나 친환경 유기농 시설채소 단지 조성과 같은 내용이 없으며, 이에 따라 취소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림.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 뉴타운의 경우 입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분양가 절감을 이유로 모델하우스도 짓지 않고 오로지 조감도와 설계도만으로 주택설명을 대체하였으며, 주택의 견본을 확인할 기회마저 상실한 일반 계약자입장으로서는 입주 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하자 등에 대해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임. 대표적인 논란 중에 하나로 창호가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설계된 부분, 시공된 건축자재도 상대적을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등 신뢰가 무너지고 준공검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일부내부시설을 변경함으로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는 점 수많은 논란거리를 양산하였으며, 물론 고창군에서도 농어촌뉴타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모델하우스를 짓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며 결국 그 사업비는 총공사비에 포함되어 조성원가에 산정되므로, 대신 샘플하우스 2동을 먼저 건축하여 입주자에게 공개하였으며, ○ 설계는 농어촌주택에 맞는 규모, 자재 등을 고려하였고, 시공 중 젖은 목재는 한국구조 안전연구원에서 진단을 의뢰하여 구조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강 시공되었음. ○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중에는 시공감리를 두어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검측을 통하여 좋은 주택을 짓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고, ○ 하자보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동안 시행할 예정이며, 택지분양이 아닌 주택분양을 한 이유는 농식품부 지침에 따른 것임. ○ 뉴타운 조성사업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5년간의 환매특약기간 중 입주자 사후관리와 하자보수업무 및 기타사업 추진 등 잔여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임.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 뉴타운조성담당 등 조직관리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당장 입주자들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시급히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는 상황으로 추후 조직관리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 하겠음.
	○ 주택분양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신청하도록 규정한 환매특약에 대해 답서는?		○ 의무화 되어있는 환매특약기간을 분양계약서에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농어촌뉴타운 입주 및 주택관리 가이드라인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이라고 되어 있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물으셨는데,
	○ 뉴타운 입주자와 주변 주민들과 융화를 위하여 입주자 대부분이 지역 사회에 녹아들기 위한 도전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지역민과 같이 호흡하고 동감하는 기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 농어촌뉴타운 주택분양 계약서와 가이드라인에는 똑같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이라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 농어촌뉴타운 마을구심체를 중심으로 단지내 현지 농업인과 귀농인들의 화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를 11월에 개최하는 등 자체적으로 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 앞으로도 농어촌뉴타운 입주자들이 지역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 제6대 의회기간 중 군정 질문에 대한 추진 사항은?		◆ 다음은, 제6대 의회 기간중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림. ○ 그동안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이강수 군 수	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총 131건 중 123건에 대해 이미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음. ○ 한빛원전의 온배수 문제에 대한 군의 입장 및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 한빛원전의 온배수 저감 대체시설의 일부인 돌제 점·사용승인 신청건에 대해 반려처분 하여 한빛원전에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음. ○ 1심과 2심에서 원고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 심리 중에 있으며, 한빛원전에서는 별도의 온배수 저감 대체시설 연구용역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임. ◆ 다음은, 낙농가의 유기우유 생산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으며 ○ 우리군은 79호에 7,800여두의 젖소를 사육하여 1일 우유생산량은 100톤으로 그중 30톤의 유기우유를 생산하고 있음. ○ 2008년에 유기우유 인증을 받아 18톤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5농가에서 1일 30톤을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63%를 점유하여 업계 1위를 차지하는 성장을 하였으며 ○ 앞으로도 유기인증 조건을 갖추고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를 적극 영입하여 점진적으로 유기우유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며, 매일유업과도 협의하여 다양한 유기우유 제품 개발 출시로 낙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 변	답 변 요 지
이상호 의 원		이강수 군 수	◆ 다음은 고창군 지역축제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지역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8개 정도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고창군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로 고창군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 결과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축제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 앞으로 고창군 축제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축제 평가 용역과 고창군 축제추진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우리군 축제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여 축제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음. ◆ 다음은 복분자 주류업체 통합마케팅에 대해 답변 드리겠음. ○ 고창복분자 주류업체에서는 고창복분자 공동브랜드 “선연”을 사용하여 홍보마케팅을 하고있으며 ○ 주류업체의 통합 생산, 관리 및 통합마케팅 전략은 개별 주류업체의 자유경쟁원칙에 의한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 주류업체와 협의하여 고창복분자 공동브랜드 “선연”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로고 등의 활용방법을 연계하여 공동 홍보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오덕상의 원	○ 먼저 연안관리 지역계획 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에 의한 정당한 연안해역의 관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중앙부처 그 어느 곳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관습법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군 실정임. 칠산 어장의 풍부한 어족자원과 앞으로 전개될 연안해역의 개발 시 우리 군의 주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안의 관리지역 범위 재설정을 강력히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이강수 군 수	○ 고창군 연안관리지역계획은 국가에서 제시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는 것으로서 제2차 용역을 완료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 또한 전라북도와 해양수산부에 7개항을 질의 중에 있으며, 답변이 오면 이를 검토하고, 부안군과 군산시의 용역결과에 따라 대응하여 동 용역을 수정 · 보완 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14년 5월까지 도에 우리군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제출할 계획임. 한빛원전 온배수 및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 하여 고창군 및 어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해양 경계선 설정에 대비한 고창군의 대책에 대하여 현행법상 자치단체 간 해상경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범위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연안관리 지역계획은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해양개발 사업들에 대한 공간적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때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도 있음. 향후 자치단체 간 해상경계선 획정에 대비한 고창군의 대책이나 대응방안은?		○ 해상경계선 설정은 안전행정부 소관이라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의견이며, 만약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해상경계선 설정이 이루어진다면, 해양학계와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군에 불이익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질 문	질 문 요 지	답변	답 변 요 지
오덕상 의 원	○ 제213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소규모지역개발을 추진해야 된다고 촉구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해 군수께서는 공사구간에 농작물이 식재되어있어 당장사업 추진은 곤란하며 농작물수확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으나 농작물 수확이 모두 마무리 된 현시점에 와서도 여전히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무슨 이유때문인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이강수 군 수	○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지역개발사업은 205개소에 32억 3천만원이며 ○ 현지조사를 완료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하여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도 실시설계 중에 있음. ○ 주민편익 및 생활개선을 위하여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제5절 자유발언(5분 발언)



제207회 정례회, 조병익 의원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 · 아산 · 신림 지역구 조병익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래환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만여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6대 후반기의회의 부의장으로써 의회에 모범이 되고,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맡은 바 책임을 열심히 수행할 것이며, 또한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감시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발언이 비록 작은 메아리가 될지언정 군민들께서 선출해 주신 의원의 신분으로써 군민들의 입장에 서서 군민의 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석정온천 골프장에서 생명수 같은 물을 도수해 간 월산 저수지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산 저수지는 주로 고창읍 월산 외 4개 마을 상면에 생명수나 다름없는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용수가 어느 날부터 아무 이유도 없이 고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물 관리인을 만나 본 사안을 들어보니 참으로 한심한 작금의 사태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월산제의 물을 공급받기 위해 석정온천 관계자와 공무원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러 다녔으며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수 같은 농업용수를 도수해 갔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시니어스 관계자와 공무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경찰수사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시니어스 골프장 직원들에게 다 떠넘긴 사실도 있습니다. 실무자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군수께 보고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원제의 물을 고창군에서는 골프장에 3년 계약으로 1년에 5만톤을 쓰기로 하여 톤당 111원이라는 아주 헐값에 주는 일도

있습니다.

군수 및 집행부 실무자 여러분! 군민을 그렇게 만만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본 의원의 발언은 비록 어느 한 지방의원의 작은 파장과 가냘픈 소리라 여길지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집행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군민을 우롱한다면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민심은 행정을 향해 무서운 비판과 지탄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우려해,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의회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도 받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례로 의회와 상의도 없이 고추종합처리장 같은 사업을 막가파 식으로 추진하고 의회에 추경예산을 신청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까?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한다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 고장을 위해 어렵게, 어렵게 군민의 선택을 받고 입성한 의원들은 허수아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창 지방자치의 주역이고 군민의 희망이 되어야 할 행정에서 이러한 식으로 의원들을 기만하고 군민을 우롱한다는 생각까지 들어 본 의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건에 대해 한 담당급 공무원은 “일하기 싫은 데 잘됐다.”며 의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한 고위 공무원은 “얼마나 빽이 좋은지는 몰라도 이러면 안 된다. 똑바로들 해라! 똑바로!”라고 소리치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집행부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한 의원 뿐만 아니라 6만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관계자들의 엄중한 문책 및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관리감독과 책임있는 지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민을 위한 의원들의 적법한 요구사항은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회도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 의회의 위상을 찾는데 다 같이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기회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고창군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집행부에 상기시키어 고창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의회가 의결한 사항은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07회 정례회, 박현규 의원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수 군수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을 대하게되어 한 없이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지금 고창군 의회는 다수당의 횡포로 인하여 내홍과 진통을 거듭하면서 반쪽 의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고창군 의회가 민주당 고창, 부안 지구당 하위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고창군 의회는 6만 고창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6만 고창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내홍과 진통으로 반목을 거듭 한다면 우리 군민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고창군 의회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군민의 한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6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하면서 다른 기초 자치 단체들이 수없이 겪고 있는 의장 선출 및 원구성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의회의 본분인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군민을 위한 의회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을 떠나 초선의원님들과 재선 의원들이 수차례 만남과 고민,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조율 끝에 협의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 한 결과, 의장후보의 적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도덕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로 의장을 내정하고 지역구별, 연령층을 고려하여 각 위원장들을 내정하여 전반기 의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 선출 및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한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전반기와 달리 파행으로 치달았고, 전반기에 약속했던 사항까지 뒤집어지는 사태에 이른 점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초 자치 단체의 원 구성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합의내용 마저도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민주당 일색의 일당 독재"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고사 시키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을 비롯한 몇 명 의원들은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무소속 의원까지 영입하여"기초 자치 단체의 원 구성까지 민주당에서 깊이 개입하는 한심한 작태에 대한 작은 항거로 뜻을 함께한 의원들은 후반기 파행으로 구성된 원

구성 이후 등원을 거부하며 우리의 의지를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등원을 거부한 우리 의원들은 군민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한 권한을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아니오! 라고 말할 의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절실하다고 여겼기에 "이제 등원하고자"한 것입니다. 의회가 행정의 감시와 견제 의무를 포기 한다면 행정도 의회도 군민도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구성이 비록다수의 민주당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의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그리고 진정 "아니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무소속 의원들에게 배려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까지 민주당 일색 독식으로 간다면 진정한 의회의 기능을 다할 자신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반기 원구성에서 보여주었던 민주당의 거대한 힘은 우리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절대 보호하려할 것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구성된 의회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은 적어도 우리 고창군에서만은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창군 의회는 민주당의 하위 기관이 아니라 6만 고창군민의 대표기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13회 정례회, 조병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병익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리고 6만여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는 이강수 군수와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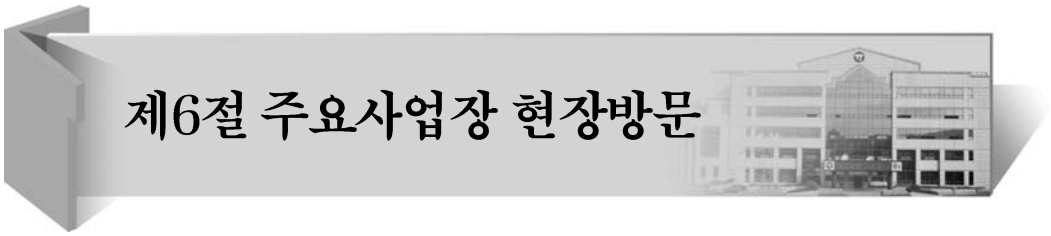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본 의원은 남은 1년, 군민들의 마음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군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후반기 부의장으로써, 의회에서 논의하는 모든

일들은 공익에 우선을 두고 의원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의원 상호간에 의견이 존중되고, 민주적인 의회운영에 주력함으로써 고창군의회가 군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대토론의 장으로써 기능과 제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의회를 일컬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민의 68%가 지방의회의 무용론에 동의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지방자치의 심각한 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창군의회는, 의회의 본원적 기능인 견제와 적절한 대안제시를 통해 군민들이 요구하는 소중한 가치를 가꾸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군민 중심의 의회, 현장중심의 의회, 정책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무엇이든 현장 속에 문제가 있고 또 그안에 답이 있습니다. 군민들 품에 들어가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의사를 확인하며, 모든 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합니다. 의회의 역할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군정발전을 위해 적절한 대안제시를 로써, 700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진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행복한 복지 고창을 위해 고창군 상공에 희망의 무지개를 띄울 것을 제안 합니다. 무지개는 일곱 빛깔의 조화입니다. 한가지 색으로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고창군 발전에 있어서 군민과, 의회, 행정이 따로 있을 수가 없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경쟁력있고 살기 좋은 고창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색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어 오색찬란한 희망의 빛이 고창군 상공에 찬란하게 떠오르게 합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모두가 조화와 화합으로 다 같이 잘 사는 아름다운 희망의 고창을 이뤄내야 합니다. 채 1년도 남지않은 제6대 고창군의회와 이강수 군수 그리고 7백여 공직자가 하나로 뭉치고 화합하고 단결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6만의 고창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생 화합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로 온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이제 갈등은 잊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 오로지 고창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며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1. 제183회 임시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고창군 노인요양원 운영·관리	○ 노인요양시설에 보다 많은 수혜자가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강구	○ 고창군 노인요양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 홍보방법 : 군정소식지, 이장회의 홍보 – 홍보내용 : 시설현황, 입소절차, 입소내용 등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 군비로 부지 매입을 해야 하므로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 ○ 업무단일화를 위한 T/F팀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장터 및 주막거리 편입부지를 3,500백만원으로 우선 매입하여 기반조성 후 분양하고 시간을 두고 분양대금을 재투자하여 한옥민박 및 도예공법, 판소리 전수마을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 기반조성, 전신주지중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조성에 3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 필요하다면 개별사업으로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임
석정온천 관광지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 석정온천 관광지 (고창웰파크시티) 조성사업	○ 반드시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할 것 ○ 지중화 공사 시 통신과 전기가 같이 설치하여 경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 ○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된 후 국·공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할 것 ○ 지역업체 참여 미진하므로 개선요망	○ 적법한 행정 절차를 사전에 이행토록 하겠음 ○ 전문가 검토결과 통신과 전기 지중화간 이격거리(전자파 등)가 필요함에 따라 통합 설치 지난 ○ 사업시행 진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 ○ 지역업체 참여토록 독려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원예작물 (고추) 브랜드 육성사업	○ 단지의 집적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후 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시행할 것	○ 고추종합처리장 인근 부지 식품가공 클러스터 조성 계획 내역 제출 ○ 종합처리장 시설별 세부시공 내역 및 10~11년 고추수매·판매 로드맵 별도 보고[(주)고창황토배기유통 대표 박상복]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대책 마련 ○ 작목반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 운영자금등 제반사항 검토 후 보조금 사업집행 방안 강구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시설물 관리카드 작성 비치 및 연 2회 운용현황 점검 관리를 통한 사후관리 추진 (시설물 – 10년, 설비, 기계류 – 5년) ○ 매년 1월 추진되는 원예전문단지 운영 평가와 연계하여 작목반 및 재배면적 증대 독려 및 작목반 총회 행정 참석
성화식품주식회사 사업추진 현황	○ 인근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갈등요인 해소 후 사업을 시행할 것 ○ 지역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 강구 후 사업시행	○ 성화식품의 공장입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문제 등으로 입주에 대한 주민의 반대가 있었으나, 환경문제는 전주지방환경청에서 2차 보완요구사항이 해결되어 최종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처리 되었으며, 수질, 대기오염 외에 조류독감 등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어촌종합 개발사업	○ 사업목적에 부합한 시설활용 방안 조속히 강구	○ 사업자 모집공고 시 경영능력이 있는 영농·영어조합법인 또는 수협으로 확대 모집하여 어촌종합센터 1층(수산물판매점)을 지역주민에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고창갯벌 습지보호 관리사업	○ 특산물의 판매 및 먹거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소득창출 방안 모색 ○ 향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편익시설 부지의 여유 공간 확보 필요 ○ 갯벌복원사업 추진 시 한국농어촌공사 본부의 전문가(기술진)를 영입 시행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복원완료 후 2단계 사업추진 시 연계하여 검토할 계획임 ○ 주차장 및 방문객 센터 등 2단계 사업 추진 시 검토 계획임 ○ 본부 복원기술 전문가를 영입하여 사업추진토록 고창지사에 요구, 본부에서 검토하여 기술진 투입계획임
조산제 (고수제) 둑 높임사업	○ 조산제 주변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관광 상품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필요 ○ 관광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므로 농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조산제 주변의 수변공간과 인근 문수사 등을 연계하여 관광상품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처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문화관광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활용방안 검토, 실시설계(안) 수립되면 의원간담회 시 사업계획 설명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아산~선운사 간 군도 4차선 확포장사업	○ 구암마을 앞 교차로 설치 주민건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 바람	○ 구암마을 앞 교차로 설치 주민건의 사항 검토결과에 대해 8월말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임
	○ 노선확정과정에서 의회와 기약정된 사항이 불이행 되었으며,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8월중 의원 간담회시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 계획임
	○ 노선 확정시 주민여론 수렴이 일정지역에 국한되므로 거국적 의견 수렴 과정이 절대 필요함	○ '05년 이후 5회(자체3, 외부2)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노선이 확정되었으며, 최종 의견수렴은 '10.3.30~4.15 아산면 및 고창읍 주민 253명을 대상으로 마을별 상주인구비례를 통한 표본 조사방식으로 실시하였고 실시결과 83%(210명)가 당초노선(터널)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복분자 클러스터 (타운)조성	○ 복분자 테마파크사업에 지역의 농특산품(축·수산물) 공장도 입주할 수 있는방안 강구	○ 2010년 6월에 지구지정 고시 완료된 복분자 특화농공단지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중분류) 식료품(10), 음료(11) 제조업에 분류된 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 육류가공업(101), 수산물가공업(102)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농공단지 예비지정시(농림수산식품부) 복분자 특화 단지로 선정되어, 복분자 관련업체 50%이상 입주해야하므로 ○ 충분하게 검토 후 농공단지 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복분자연구소 육성사업	○ 고창 복분자가 전국적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 요망 ○ 타지역 복분자와 성분을 비교분석하여 명품브랜드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전국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소 건물이 완공된 후 적절한 연구의 범위, 조직, 인원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 타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 생산이력제 및 품질인증 도입으로 품목별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복분자 비교분석 등 브랜드 가치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건강기능성 식품의 개발 및 상품화 연구개발로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에 노력하겠음
농어촌 뉴타운조성 사업	○ 단지 내 도로와 노동저수지간 연결도로의 개설 검토 ○ 월곡천 도로횡단 암거의 폭이 좁아 집중 호우 시 유수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의 해결방안 강구 ○ 생태녹지조성사업 저류지를 위험시설이 아닌 주변경관을 고려한 친환경 시설로 마무리하는 방안 검토 ○ 토지보상 등 민원해소 방안강구	○ 행정절차 재 이행에 따른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지연 • 개발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마을 정비구역 지구 지정 고시 변경, 교통 영향분석 · 개선대책심의, 도 건설기술심의 등 그간 추진해온 행정절차를 재 이행해야 함으로써 사업기간이 최소 6~8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판단됨.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의 시범사업 기간은 2011년 완료로 시범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어 국비, 군비 지원 사업비 부족이 우려 – 도로의 연계 필요성 • 주변 300m 이내에 2개의 교량(온천로)이 있어 차량 교통의 이용에는 불편이 없으며, 월곡지구에서 노동 저수지(모양성) 방향의 남북축 보행은 고창천 자연형 하천 조성이나 생태습지 조성 시 보행을 위한 보행 통로 개설을 적극 검토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질마재권역 농촌마을종합 개발	○ 관련부서(문화관광과, 농업진흥과)와 협의하여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 후 시행하기 바람 ○ 투자된 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의 신규 아이템 확보	○ 국화식재로 인한 경관직불금, 질마재 문화축제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그 결과내용을 마을 추진 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본 사업은 상향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모 선정부터 세부설계 단계까지 마을 추진위원회 의견을 반영 아이템을 선정 추진하고 있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 악취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야기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완벽한 시설로 설치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인접 주민들을 설득한 후 사업시행 ○ 덕암마을 주민들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인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상호 신뢰도 확보하는 방안 검토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첨단장비를 설치, 운영하겠음 ○ 주민의견에 대하여 적극 협의 추진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생활쓰레기 매립장 운영 관리	○ 계약기한 도래에 따른 아산면 주민협의체측과 재계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계약기간 도래에 따른 쓰레기 처리 방법 및 매립장 운영 등에 대한 군의 방침을 결정 추진토록 하겠음
	○ 매립장 내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험을 통한 가정에서의 분리 배출의 필요성을 체득하게 하는 등 관련 홍보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 관내 초·중·고등학생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현장체험은, 환경기초시설을 견학 후 반입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직접 선별·분리함으로써 분리 배출의 중요성을 체험도록 하고 있음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현장체험 및 재활용 홍보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음
	○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해결방안 강구	○ 매립장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고 있으나, 음폐수는 수질기준 유지가 어려워 해양배출을 하고 있음
고창체육관 건립공사	○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중앙부처 등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 현장감독 공무원 배치에 적정 기술 인력 투입 요구(현 현장감독 시설 8급)	○ 고창체육관 건립공사 현장감독 공무원을 적정 기술 인력이 투입되도록 조직혁신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음

2. 제189회 임시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고창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	○ 조경사업은 전체적인 컨셉을 고려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단지 내 조경계획은 복분자테마파크, 국민여가캠핑장, 웰빙식품센터, 복분자연구소 등 각 개별사업을 전체적으로 기본컨셉을 설정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복분자농공단지는 테마유원지와 컨셉에 맞게 가로수 식재 계획임
	○ 복분자테마파크 광장 컨셉은 농공단지 입주사업체 구상 후 검토	○ 복분자농공단지는 복분자특화단지로 복분자관련업체 50%이상 유치 등 음료, 식품제조업체 등을 유치하여 테마유원지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성계획임
	○ 복분자축제 개최 계획이 있다면 일부는 황토광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인근의 위락시설 등 복합적인 검토 필요	○ 중앙광장 조성 시 향후 발전 방향과 연계하여 일부를 황토광장, 잔디광장 등 여러 가지 열린 광장으로 조성예정임 ○ 추후 복분자유원지 내에서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발전에 따라 웰빙식품센터, 황토체험센터 등 복분자테마파크와 어우러지는 각종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복합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임
	○ 복분자 와이너리사업과 복분자전시장 사업의 중복성 등 차별화 전략 필요	○ 복분자 와이너리 조성사업과 복분자전시장 사업의 중복 등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조성예정
	○ 2013년 이후 복분자연구소 자립화 운영계획 및 방법 (지경부예산지원 등) 모색	○ 사업기간 완료 후 지경부예산 추가확보를 위한 지자체 연구소간 공동 대응 방안 및 자체자립화 방안 수립을 위하여 19개 전국 지자체 연구소협의회와 공동 대응방안 제안수립 중 – 1차협의 : 2011. 1. 24 ~ 26 ※ 2011년 2월중 운영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 캠핑장 운영방법 및 부대시설을 족구, 농구 배구 등 다양한 활용 검토	○ 운영방법(위탁, 직영)및 부대시설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검토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조성사업	○ 생산동시설 재검토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고창복분자 클러스터조성 사업	○ 용산천 수변 공원화 병행추진 검토	○ 재해위험지구 하천으로 공원화 사업추진 지난 ○ 국비지원 예산 미반영 ⇒ 생태하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추진

3. 제192회 임시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석정온천 관광지 (고창 웰파크시티) 조성 사업	○ 온천스파 건립 시 수익성이외에 공공성을 도입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바람	○ 자유롭게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공간과 컴퓨터나 팩스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조성하겠음 ○ 또한, 어떠한 시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파악하여 조성토록 노력하겠음
	○ 기존 진입로에 있던 인도가 없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므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도를 설치하기 바람	○ 2011년도 공공기반시설사업으로 인도를 설치하고자 사업발주하여 현재 계약중에 있음
	○ 집중호우 시 잔류성 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대책 수립 강구	○ 집중호우 시에도 하천에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경계지점에 침사지를 여러 곳 설치하였으며, 환경적으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영향평가 업체(동우환경)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는 실정임
	○ 웰파크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지도 감독 철저	○ 웰파크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보급	○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미생물을 배양 공급해야하나 건물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시기가 늦어졌으므로 예산 집행 철저 바람 ○ 단일균 중심으로만 생산하지 말고 농업인이 원하면 축산·원예 EM균도 확대생산바람 ○ 추후 미생물 적기공급으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강구	○ 미생물 배양장 리모델링 공사 완료 : 3~5월 ○ 미생물 농가 교육 및 공급 : 6~7월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원예작물 (고추) 브랜드 육성사업	○ 당초 사업계획을 확대 변경하고, 당초 예산대비 사업비 32억 증대에 대한 대비책과 행정절차(채무부담행위) 미이행에 따른 문제점 발생 ○ 공장주변 석축 및 배수로설치를 하는데 지구단위 변경계획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초래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강구	○ 사업비확보 – 각종 인센티브및 별도사업비 확보 : 507백만원 – 부족사업비(2,168.8백만원) 채무부담행위 승인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 – 주변 배수로는 용도 외 사용 승인으로 추진하고, 금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음. (인접지구 개발행위 불가로 주변석축 설치는 불가피함)
땅콩 가공시설 현대화설비 지원사업	○ 가공시설의 현대화 설비가 구축되면 땅콩을 전량 수매하고, 가공제품의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강구 ○ 땅콩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택배비 지원 등 지원책 강구바람	○ 가공제품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대성농협은 고창군 생산농가로 부터 수매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택배비 지원은 불가함
홍수 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대성농협)	○ 조기집행 관련하여 빠른 시일내 공사마무리 시설물 사후관리 철저	○ 사업장 지도감독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준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퇴비)	○ 2011년도 군비 미확보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추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방안 강구 바람	○ 1회 추경에 군비 601,200천원 확보토록 추진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목장형 유가공 생산 시설 (한울영농법인)	○ 대기업 우유 가공업체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요구르트, 치즈 등 생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필요 ○ 유제품에 대한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고정 소비자확보 및 황토배기 유통회사를 통한 판매로 시장 개척 ○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에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위생적인 유제품생산을 위한 HACCP 시설 중에 있음
2011년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태성식품)	○ 외지 소금과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사용하기 바람	○ 심원 사등마을에서 생산되는 소금 사용량을 늘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지도하겠음
	○ HACCP시설과 연계시킨 장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업체의 장기투자 계획 및 투자여력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 전통 있는 검단선사의 천일염이 유명하므로 고창의 자죽염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업체의 자죽염 제조관련 특허보유를 적극 활용하여 최상의 자죽염 대량생산 및 품질향상으로 고창자죽염이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고창수박 향토 산업 육성사업 (뉴트라 라이코고창)	○ 본 사업의 설립취지에 맞게 비품수박 수매를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	○ 비품수박 수매를 원칙으로 안정적인 원물 수급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창수박 생산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수박 농가들이 사업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바람	○ 고창 황토배기 명품수박 출시전, 고창수박축제 등 고창수박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실시 및 관내 수박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 사업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겠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2010년 농식품기업 육 성 사 업 (황토복분자)	○ 2006년도에 보조금 사업으로 시설된 건물을 관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HACCP시설을 위해 전면 개축한 것은 예산낭비 초래	○ 기존 수동식 설비로는 현재 수출시장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HACCP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라북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기존 설비는 내수용 제품생산과 조합원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하겠음
	○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최고상품 생산에 주력바람	○ 향후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도하고 적극 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최고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법인 내부운영상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내실 있는 법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음
고창읍~ 고창IC간 도로개설공사	○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소나무는 고창산으로 하기 바람	○ 공사시방서에 고창산 소나무 사용토록 명기하였으며, 소나무 굴취 및 식재 시 감독관 입회하여 시공
	○ 당초 예정된 준공기간이 지났으며, 예산 미확보와 시공업체 부도로 인해 사업추진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지역업체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	○ 예산은 모두 확보되었으며, 지역업체 입금 체불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 직불신청 하였음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 원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으로 독곡마을 등 주변지역의 개발제한이 없도록 추진바람 ○ 생태습지 복원과 관련하여 고창군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연계된 사업 강구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록은 기존의 지역을 법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아님, 독곡마을 등의 개발제한 관련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음 ○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으면 국내 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창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고창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 생태 습지형 천변조경에 유의하여 정화식물을 식재하고 자전거도로와 연계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 습지조성구간 정화식물 식재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반영 되었으며, 자전거도로 개설은 건설도시과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중임
	○ 장마철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방치로 인한 주민 피해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 우기 전 하폭확장 및 호안정비를 완료하고, 현재 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처리중이며 반출 대기 중인 폐기물은 방진덮개 등을 설치하여 피해발생을 방지하고 있음
선운산농협 블루베리 냉동시설	○ 블루베리 수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대책과 비수기시 예냉 및 저온시설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현재 블루베리 냉동시설은 180일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연중 농산물 시설을 다용도로 활용하겠음
어촌종합센터 (광승리회센터)	○ 회센터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와 입점자 추가분양 등 적극적인 홍보대책 강구 ○ 소공원에 잡초가 무성한데 공원 운영 및 관리에 철저하기 바람	○ 1층 임대자 모집 등 정상운영 완료시 관내 및 관외 홍보할 계획임 ○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관리하겠음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 부지매입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사업부지 확정 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바람	○ 부지환매 및 토지사용협약 (환매자ㅡ농협) : '11.5.30 6월 기본실시설계 후 착공예정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용산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실시설계 용역과 실제 공사구간 과의 차이가 있는데 당초 사업 구간을 확정 않고 과대용역을 실시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함	○ 영모정~용산마을까지 4.4km가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전 구간 실시설계 완료 후 소방방재청의 설계 심의결과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우선 공사 시행토록 결정됨 ○ 잔여 구간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토록 검토하고 아울러 기 설계구간 자료를 사용토록 검토
	○ 영농 · 우기철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추진 바람	○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겠음
	○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바람	○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 반영 추진하고 있음
갈곡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 축산분야의 악취문제 해결에 활용 될 수 있도록 미생물 배양시설 강구 ○ 공동육묘장 등 조속히 사업시행 촉구	○ 여러 종류의 미생물을 생산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월사업 등 조기발주를 통 하여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음
내죽도 전기공급사업	○ 해저케이블 수중매설시 문제가 될 어업권보상에 관해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 ○ 향후 상수도 공급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향후 전력사용량을 감안하여 전선규격은 120스케어를 반영하기 바람	○ 어업권보상과 관련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임 ○ 상수도 공급방안 검토요구 (상하수도사업소)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60스케어 규모의 전력이면 고창읍에 공급 되는 전력량을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라 함(전선용량에 대해 의원 설명요구)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사업	○ 고급유전자를 가진 암소를 구입 · 사육하여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고 농가에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사업추진 시 지역 주민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협의 요망 ○ 양질의 한우공급을 위해 미생물 배양시설과 악취제거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였음 ○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고창군자연장 조성사업	○ 7,000여기의 자연장이 조성되면 이용객 수가 증가되어 현재 파고라 1개 시설로는 부족하므로 이용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바람	○ 자연장 조성 완료 후 자연장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편익증진을 위해 파고라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겠음
	○ 법면의 급경사로 인한 폭우 시 토사유출에 대한 방지 대책 강구	○ 법면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면에 잔디씨앗, 거적씌우기,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여 법면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음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 화재발생시 소방대책이 미흡하므로 대처방안 강구 ○ 전통시장은 생계유지와 관련된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조기 완료토록 추진바람	○ 금회공사 시 기존 소방시설을 보완하고, 통로에 소화전을 설치할 예정임 ○ 상인회와 협의하여 최대한 공사기간을 단축 추진할 계획임
용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 토지주와의 분쟁해결이 급선무이니 최대한 시일 내 처리바람 ○ 공정율이 70%라고 하나 작년과 비교해서 추진된 부분이 미흡하니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 강구	○ 분쟁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4. 제195회 임시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사곡천 수해복구사업	○ 하천개수공사 기본계획 수립 시 배수펌프장을 설치요망 ○ 하류부분은 농경지가 하상보다 낮은 것을 감안하여 하천준설 작업과 병행하여 항구적인 대책강구	○ '12년 기본계획수립 대상지 신청(전북도) 및 예산요구 ○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 배수펌프장 및 하류부 준설 등을 검토
원예작물고추 브랜드 육성사업	○ 고추가격 폭등과 병해충에 따른 수매부진을 지적 ○ 향후 원물수매 및 판매계획 등 사업계획서 작성요구 ○ 수매부진에 대한 계약체계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하여 원물확보 이상이 없도록 조치바람 ○ 증산마을 입구 정비계획 수립	○ 선도농가에 비닐하우스 지원하여 병해충발생 사전 차단 ○ 고추종합처리장 장기 발전계획 수립 중 ○ 선도농가 육성 및 종자보급, 선제적인 수매가격 제시, 선도금 지급, 비닐하우스지원, 친환경 자재지원 등 다양한 방안마련 ○ 약식 설계 후 '12년 예산 요구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	○ 경치 좋은 곳에 좋은 시설을 갖추었는바 기반시설 등의 마무리 사업을 조속히 추진바람 ○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주차장 정비 등 주변 환경 조성 ○ 임도개설을 통한 등산객 유치 및 홈페이지 등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수익 창출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신축사업	○ 반입물량이 확대될 것을 감안, 미래를 예측하여 시설용량을 갖출 수 있도록 모색 ○ 공음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업체의 물품을 사용하는 등 공음지역의 소득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국비 확보 사업추진. ○ 지역상품 및 지역업체 활용 추진
남산천 수해복구사업	○ 설계 시 주민여론을 참고하고, 피해복구 예산 부족 시에는 연속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	○ 수해복구사업(설계) 추진 중 (설계시 주민의견 수렴)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월산산림욕장	○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차로, 급커브 등 구간보완이 필요 ○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및 안내표지판 추가설치 요구	○ 관련과인 건설도시과에 추진토록 협의하였음 ○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 2011. 10. 5 완료 ○ 안내표지판 추가설치: 검토 중
고창천 수해복구사업	○ 통수단면이 작으므로 설계 시에 유수소통에 방해가 되는 교각은 지양 ○ 주민의견을 참조하되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여 미래지향적인 공사병행실시	○ 수해복구사업(설계) 추진 중(하천시설기준 부적합 교량 철거) ○ 설계 시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고창체육관 건립공사	○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재개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람 ○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주차장 확보대책 강구바람	○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감리단으로부터 시공, 품질관리 등을 철저히 지시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대규모 행사시 생활축구경기장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고 고창체육관 현장사무실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음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 자전거도로 개설 시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시공하기 바람 ○ 산책로는 우레탄으로 시공하여 주민들의 피로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바람 ○ 호우 시 유실된 호안 머리공 등을 파악하여 추가피해 없도록 조치바람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시공 시 위험요소를 사전제거하고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 ○ 유실된 호안 머리공 등은 신속히 복구하여 추가피해가 없도록 조치
주진천 수해복구사업	○ 하천 내 퇴적토 준설 검토 ○ 주민의견을 참조하여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해결요망 ○ 조속히 시공하여 내년 우기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바람	○ 하천 내 퇴적토로 인한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 검토 ○ 수해복구사업(설계) 추진 중으로 '12년 6월까지 복구사업 완료 ○ 설계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근본적인 원인분석 및 해결책 강구
야외전통문화 공간 조성사업	○ 문화의전당 앞 주차장 편입으로 주차장 확보대책 강구 ○ 업체선정 시 검증된 업체선정	○ 도시계획관리 및 주차장관련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음 ○ 건실한 업체 선정되도록 관련부서 협의하겠음

사 업 명	개 선 요 구 사 항	처 리 결 과 (계 획)
신월전원마을 조성사업	○ 공사지연으로 입주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발생됨. ○ 빠른 시일 내 사업 마무리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은 조속히 해결요망	○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조치완료 하였음
고창하수 처리장 고도 처리시설사업	○ 방류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 3차 처리시설이 요구 되는 바 환경부 예산확보에 노력바람	○ 2011.7.12 중앙부처방문 예산확보 주력 ○ 2011. 10. 26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으로 예산확보 주력 예정
웰빙 잡곡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 농공단지 성공모델이며 소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설보강지원 강구 ○ 벼 재배 대체작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토록 내년도 용역비에 산정되도록 요구	○ 계속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역농업특성화 최수우 시군으로 선정, 지원받은 국비5억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임 ○ 기획예산실 총괄 용역비로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와 연계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정비사업	○ 대체도로 개설지연으로 읍성 복원사업 지연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책 강구바람	○ 관련부서 건설도시과와 협의, 도시계획도로 등 우회도로 조속히 개설하도록 하겠음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 패키지 상품 개발하고, 시설 이용자 불편함이 없도록 반드시 샤워장 설치바람 ○ 사업기간내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 다목적 시설내에 다양한 운동시설 설치요망	○ 샤워장과 탈의실이 남·여화장실에 반영됨 ○ 금년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설계검토시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황토를 이용한 테마관광 육성사업	○ 계약 후 설계변경하는 등 사업 추진이 미진함 ○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설계 마무리와 사업추진 바람 ○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바람 ○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등을 통한 마케팅 검토	○ 2010.12.9 계약후 동절기 공사중지 2011.3.12 재착수 후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 ○ 2011. 2월 의회간담회시 복분자 클러스터 종합운영 방안에 대하여 검토 요구 ○ 2011.4.~6. 복분자클러스터 종합 운영관리방안 컨설팅 용역 실시 ○ 2011.5.12 복분자클러스터 컨설팅 용역결과 반영 설계변경 계획으로 공사 중지 ○ 도시계획 경미한 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 추진(체험시설→일반목욕장) ○ 설계변경이 10.26 완료예정이나 기간이전에 마무리하여 공사추진 ○ 운영방안은 복분자클러스터 종합 운영관리방안을 반영하여 완공(2012. 4월 예정)이전에 운영관리 조례제정과 운영자 선정 추진
2011년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부안농협)	○ 태양초 건고추 물량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농협과 농민과의 계약조건을 현실적으로 개선요망 ○ 경안교회 어린이집 안전망 설치 및 연결도로 개설시 인도설치 검토	○ 작물(고추)의 특성상 친환경 농법 실현에 어려움이 있으나, 꾸준한 농가교육 및 지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음 ○ 고추시세 및 사업결과를 반영한 계약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적 물량확보를 위해 지속적 관리, 지도하겠음
고창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고창읍성 연결도로)	○ 상인의 불친절한 의식개혁과 구역별, 품목별 점포정리 필요함	○ 설계서에 메쉬휀스 20M반영되어 있으며, 인도는 반영되지 않아 추후 도로의 활용 상태에 따라 검토 반영하겠음 ○ 하반기에 집중적인 의식개혁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품목별 점포 배치는 지도 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음

사 업 명	개선 요구사항	처리 결과(계획)
자연장 조성사업	○ 장묘객이 쉴 수 있는 파고라, 벤치 등 편익시설 확충요망	○ 2012년 고창군 자연장 편익시설설치 예산확보 후 사업추진
수침교 수해복구사업	○ 동절기 공사중지 등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 공사완료 바람. ○ 영농기 지장없도록 조치바람. ○ 교량설계 시 교각개수 최소화 요망 ○ 교량 출입 안전표시판 설치요망	○ 공법선정 시 공기가 빠른 신공법 적용계획임 ○ 영농기 지장 없도록 조치계획임 ○ 교량 설계 시 교각 개수를 최소화 하겠음 ○ 안전표시판 설치하겠음
혜화취입보 수해복구사업	○ 동절기 공사중지 등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 공사완료 바람. ○ 영농기 지장 없도록 조치바람 ○ 하류제방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문 일제조사 실시 요망	○ 공사중지 등을 감안 2012년 영농 지장 없도록 조속히 추진계획임 ○ 배수문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 필요부분은 2012년 보수 계획임
장자취입보 수해복구사업	○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 공사완료 바람 ○ 영농기 지장 없도록 조치바람	○ 공사 중지 등을 감안 2012년 영농 지장 없도록 조속히 추진계획임
아산-선운사간 군도 확포장사업	○ 터널 종점부 선운사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므로 도로성토시 배수처리 지장 없도록 당부 ○ 터널 입출구부에 고창군 및 선운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요망 ○ 터널공사로 인한 야생동물 보호대책 강구 ○ 터널 내 통풍 및 방재대책 강구	○ 종점부 배수관경을 확대하고 도로를 횡단하여 하천으로 배출시킬 계획임 ○ 터널 조형물 설치 계획임 ○ 터널 입출구부에 야생동물 유도휀스를 설치계획임 ○ 단거리터널로 통풍은 자연 통풍을 실시하고 터널 내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 비치 계획임

5. 제201회 임시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구시포 국가어항 건설사업	○ 어업인의 불편 초래하니 조속히 공사완료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 바람 ○ 갯벌퇴적물로 인한 환경피해와 방조제 세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바람	○ 2013년 방파제 외곽시설 완료할 수 있도록 국비 30억원 확보토록 노력하겠음 ○ 시공사와 농림수산식품부에 군의견 전달하여 업무추진 하겠음
해당화지구(명사십리) 신규마을 조성사업	○ 초기 계획을 신중히 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추진위원회와 인근 지역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원활한 소통 바람 ○ 조성사업 단지형태가 비효율적이고 경관상으로도 좋지 않으니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 바람	○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음 ○ 입주자와 인근 주민의 마찰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음 ○ 주변경관과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 람사르습지 보전사업, 갯벌생태계복원사업, 유네스코생물권 보존지역 등록사업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관련 실과소간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바람 ○ 진입도로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진입도로 동선 확보방안 강구바람	○ 타부서와 적극적으로 업무협력하도록 하겠음 ○ 습지보호지역관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진입 도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등록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 시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사전홍보 철저 바람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록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바람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록 신청서 제출 시까지 주민에게 지속적 홍보 (이장회의, 주민간담회 등)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기반조성을 위한 순성토를 조기에 확보하여 2013년 12월 말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바람 ○ 취성마을 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바람 ○ 산업단지 진입로 조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미확보 되었으므로 국비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바람	○ 순성토는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취성마을 주민의견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진입도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조산저수지 둑높이기사업	○ 저수지 준설토를 인근 공공시설 사업장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바람 ○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시 주민의견 최대한 수렴 바람	○ 저수지 준설계획은 현재 없으며 추후 준설계획이 확정되면, 공공시설 사업장에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음 ○ 주민들과 선진지 견학을 6월중 계획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도로 확포장 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모든 주택 및 사업장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하수처리 구역 내에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계획임
선동제 지표수 보수보강사업	○ 사업추진 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다하기 바람	○ 사업추진 시 영농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고창 배수지 확장공사	○ 배수지 관리 철저 및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배수지 보수공사 시행 – 사업량 : 구조물 누수부분 방수 등 노후시설보수(5개소) – 사업비 : 384백만원 – 사업기간 : 4.26~9.26 ○ 배수지 순찰시 점검 강화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고창문화원 건립사업	○ 안전관리 철저 ○ 부식철근 부식 제거 후 시공 ○ 시방서 준수 시공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내 건축자재 정비및 가설울타리 설치 후 공사 진행 ○ 녹 부식이 심한 곳은 녹 제거처리 후 시공 6%이하(철근녹이 떨어질 정도)나 3월 이상 노출된 철근이 아닌 경우 콘크리트 부착력 강도, 부식에 이상이 없으며, 적정량의 녹은 부착력을 강화시켜준다는 건설협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임 ○ 시방서 준수하여 시공
석정온천 관광지 공공기반사업	○ 온천입구 인도는 자전거도로와 공용으로 사용하기엔 노폭이 너무 좁고, 사고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안전사고 방지대책 강구 바람 ○ 공원조성용 나무 식재 시에는 느티나무 등 소나무외 수종을 식재하여 휴식공간 제공하고 밀식한 조경수는 미래를 대비해서 간격 조정바람 ○ 골프장 운영 시 고창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환경오염에 주의 바람	○ 자전거도로는 공설운동장-석정온천간 도로에 개설된 전용 도로를 활용하고, 당초대로 온천입구 도로는 안전사고 방지위해 인도전용으로 이용토록 하겠음 ○ 중앙광장, 외정공원 등은 느티나무, 단풍 등 다양한 수종으로 적정한 간격 식재 ○ 고창천에 오염원이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음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 펜션 내부의 계단 난간 및 뒤편 절개지 보강 ○ 사업장 위탁경영 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업체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펜션 계단난간 및 절개지 보강완료(자연석 쌓기) ○ 건실한 운영업체를 선정 운영토록 하겠음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	○ 토취장 미확보로 공사지연이 우려되니 빠른 시일 내에 토취장 확보하여 계획된 공정 내에 기반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현재 2만㎥ 반입되었으며, 잔여 성토물량 확보 시 지역주민과 원만히 협의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계획된 공정내에 기반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용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우기철을 대비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동림저수지와 중앙저수지 담수로 인해 우기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 공사와 수위조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바람 ○ 교량 설치 시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을 우선적으로 시공 바람	○ 현장관리 철저히 하여 치수방재에 노력하겠음 ○ 농어촌공사와 협의 처리하겠음 ○ 현지여건 고려하여 공정관리 토록 하겠음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	○ 쌈지공원에 생나무 울타리 설치하여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 소나무 식재보다는 아름드리 그늘을 이룰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하고 쌈지공원 조성은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바람 ○ 야간, 우천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가로등 설치방안 강구 바람	○ 기존 식생된 조팝나무로 생울타리 하도록 시공하겠음 ○ 쌈지공원내 소나무는 기존수목을 이식하였으며 그늘수로 이팝, 목련, 감 등을 식재하거나 이식하였고 완충녹지에는 기존 스트로브잣과 홍단풍, 배롱나무, 느티 등을 식재 그늘을 조성하여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산책로 포장은 흙포장으로 흙과 쇄석을 혼합하여 우천 시 보행의 불편은 없으며 에지로 마감 처리하여 흙의 흘러내림을 방지할 것임 ○ 기존 가로등을 우선 이용해 보겠음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 입주자 불편이나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고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람	○ 입주자 개별면담, 유선 설명, 입주자 카페를 적극 활용하여 입주자 불편이나 민원사항을 최소화 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고창군립 체육관 건립공사	○ 체육관 내부 울림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경기장에 배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배치 검토 ○ 태양광시설 주차장은 기둥이 많아 주차 시 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빠른 시일 내로 조치 검토 ○ 진출입로 노폭의 불일치로 차량 진입 시 사고위험이 있으니 진출입도로를 개선토록 요구	○ 체육관내부 울림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대와 기둥부분에 흡음재를 설치하여 울림현상을 최소화하였고 경기장내에 배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재배치하겠음 ○ 태양광시설 주차장은 외관상 협소하게 보이나 일반 주차규격에 맞으며 경차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차전용 표시 도색을 하였음 ○ 진출입로 노폭의 불일치로 차량 진입 시 사고위험이 있어 진출입로 표시를 하였음
공설운동장~석정온천간 도로개설공사	○ 조경석 설치구간 내 상단부까지 조경석을 설치하여 안정감을 주기바람 ○ 도로변 주택의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요망 ○ 자전거도로의 원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안전시설 강구바람	○ 조경석 추가로 설치함 ⇒공사발주 ○ 도로변 인근주택 경계에 담장 설치 ○ 현재 자전거도로는 공설운동장의 주차장 대체시설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나, 추후 주차시설이 확보된 후에는 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계획임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 집중호우 시 고창천 유수가 석탄마을 등에 역류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안 강구 바람 ○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산보와 반룡교사이의 징검다리를 기존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강구바람	○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고창천으로 유입되는 배수구에 역류방지용 수문 설치계획임. ○ 기존 조산보는 낙차가 심하고 기존 어도기능이 저하되어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자연석을 이용한 여울형낙차보로 조성하였으나 기존 조산보 자리는 낙차로 인하여 유속이 급격히 빨라지는 (위험)구간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량, 유속의 변화가 없는 구간에 설치토록 계획하였으나 추후 현장 확인을 통해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겠음

6. 제205회 임시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농산물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신축	○ 적기에 완공하여 금년 생산 농산물을 저장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준공 예정 일자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중이며 준공검사이후 고구마, 김장용배추, 단호박 등 농산물을 저장 하여 저온저장고를 활용할 계획임
	○ 농산물 판매장 위치를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로 재검토 바람	○ 추후 농산물판매장을 신축할 경우 시야가 확보되고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위치가 선정되도록 하겠음
	○ 기 공급된 농협, 법인 등의 저온저장고 활용방안 적극 강구	○ 농산물저온저장고는 홍수출하 방지 및 신선도 유지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원된 사업으로 지원사업장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 사후관리를 함은 물론 기 지원된 농협, 법인 등에 대하여 지역특화품목인 복분자, 고추, 고구마, 양파, 토마토, 배추를 포함한 기타 농산물의 연간 저온저장 출하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고창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외	○ 취성마을을 포함한 각종 민원 발생 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강구	○ 의회현장 방문이 끝난 후 '12년 10월 23일 오후4시에 취성마을회관에서 마을이장 외 주민4명과 담당공무원 4인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등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음. 산업단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등 벌써 16차례 이상 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설득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을 조기 확보·시행하여 단지 조성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관련하여 국토해양부 '13년 신규사업타당성 검증을 '12. 9. 17로 통과함.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국비) 10,370백만원 예산 배정계획중이며, '13년 사업비로 2,000백만원이 국회 상임위 심사중임
	○ 순성토를 조기 확보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바람	○ 산업단지 필요 순성토량은 790,792㎥이며 현재 고수면 예지리로부터 171,837㎥ 반입중이고 '12년 10월 18일자로 주곡리 토취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92,020㎥를 현재 반입준비중인 한편 '12년 12월까지 성송면 판정리 토취장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 300,000㎥를 반입예정임. 잔여 필요 순성토량226,935㎥은 '13년 4월까지 반입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고구마 브랜드 육성사업	○ 수확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소규모 경작자에게 고구마 종순을 적기 공급바람	○ 2013년도 무병종순 생산 시 소농가 위주 적기 고구마 종순 공급 추진
	○ 고품질 고구마 종순을 위한 자체 육종기술 연구 요망	○ 시설 및 인력부족으로 자체 육종이 불가함. 이에, 고품질 원종 구입 및 생산을 통한 우량 종순 공급 추진
고추브랜드 육성사업	○ 위생적으로 처리되는 고추처리장의 고춧가루에 대한 소비·판매 적극 홍보	○ 홍고추 1,010톤 수매, 고춧가루 등 167톤을 가공하여 농수산홈쇼핑, 유통업체,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 계획임. 관내 학교급식 등 소비자단체 등 현장견학을 통한 홍보 추진
	○ 옥수수 재고물량은 빠른 시일 내에 판매하여 경제적 가치 제고	○ 129만개로 2011년산 66만개 중 40만개 계약 출고 중에 있으며, 2012년산 옥수수 등 잔여물량을 업체와 계약하여 판매 계획임
	○ 고추 선도자금은 적기에 지급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바람	○ 2013년도 고추 선도자금은 정식시기에 지급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음
조산제 뚝높임 사업	○ 관리도로의 개설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두평선과 연결 추진바람	○ 인근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두평선과 연결토록 하겠음
	○ 사업취지에 맞게 저수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준설요망	○ 최대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저수지 준설토록 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지역농업 특성화 웰빙잡곡사업	○ 일반대중의 식생활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 및 홍보방안 강구	○ 업체별 컨설팅을 통한 제품개발 추진및 온라인(홈페이지, 블러그), 오프라인(부산 롯데백화점 홍보 및 판매행사) 계획
	○ 관내 동종 업체와 생산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구	○ 3개 업체별 스낵, 보리커피, 참기름 등 각각 다른 제품 개발중이며, 업체별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모임 계획임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관리	○ 누수로 인한 단전 등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전기공급시설 등 시설물 보수 및 점검완료. 추후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 예정
	○ 유용미생물 전담 전문 인력이 배양한 미생물을 농가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바람	○ 유용미생물 전문 관리인력 추가확보 및 시설 확대 설치 검토계획
대산면 보건지소 신축사업	○ 인근 경로당 시설과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바람	○ 대산면소재지 정비사업 설계시 통행로를 설치할 계획
	○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붕 및 옥상 방수공사 관리감독 철저	○ 이중방수로 완벽하게 시공 (비노출우레탄방수+액체방수)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사업	○ 녹슨 철근은 녹 제거 후 시공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녹슨 철근관리 방안 강구 지시(2012.10.25 공문발송) – 시공사 : 장기간 노출된 철근에 천막 등을 덮어 철근이 녹슬지 않도록 방안강구와 녹이 발생한 철근에 대하여 사용 전 녹 및 이물질 등을 브러시로 제거 후 시공조치 – 감리단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시방서에 의거 토목·건축이 시공될 수 있도록 검측 관리
	○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20억원은 지역주민이 고루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방안강구	○ 한우명품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선운산농협과 고창청보리 한우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사업계획 목적에 차질 없도록 추진
석정온천 관광지 공공기반시설	○ 석정온천 진입도로에 식재된 가로수의 지주끈으로 인해 발생이 우려되는 보행자 통행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관련부서(건설도시과)와 협의하여 보행 안전 대책을 강구하였음.(지주끈을 야광끈으로 보강)
	○ 현재 공정률 60%로 공사기한 내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공사기간 내 완공토록 노력하겠음
	○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골프장 안전망 설치요망	○ 안전망 설치에 대한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토록 회사측과 협의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야외 전통 문화공간 조성사업	○ 중거리 당산의 지면이 낮으므로 야외전통문화 공간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등)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주차 공간 확보요망	○ 오거리당산 숭상은 불가하니, 당산주변과 야외 전통문화공간을 연계하여 조성하겠음 ○ 고창 군관리계획 재정비시 주차장 부지를 검토하겠으며, 우선 먹거리 장터주변에 임시주차 부지를 조성하겠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 하수도 정비구역안에 수혜 받지 못한 가구가 없도록 적극적인 공사요망 ○ 사업추진 중 타부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기적인 협조바람	○ 하수도 정비구역안의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추진 중 타 부서와 도로굴착, 아스팔트포장 공사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음
갈곡천 합류지점 자동문비 배수갑문	○ 갈곡천 역류현상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배수 펌프장 조기설치 요망	○ 농촌공사와 협의하여 '13년 시행계획인 법지지구 배수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데크 등 모든 시설에 대해 재검토 바람 ○ 초화류 대신 자생력이 강한 창포, 갈대 등 수생식물 식재 검토 ○ 응천보의 고정보 설치로 인해 주변지역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강구	○ 목교 교각수를 최소화하고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데크시설물에 대하여 조정 시행토록 하겠음 ○ 설계변경을 통해 초화류 식재구간에 창포, 갈대 등 자생력이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생식물을 식재토록 검토하겠음 ○ 응천보 주변지역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도의 높이를 조정하여 수위를 저하시키고 통수단면을 확보하겠음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	○ 2011년도에 2012년 예산요구시 100억 2천만원 사업비 부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행정절차 미 이행한 상태에서 설계용역 및 공사 발주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150억원으로 50억이상 사업비를 임의로 증액시켜 사업을 추진하였음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군비 75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 요망	○ 당초 전북도 투융자 심사 및 농식품부 사업계획 승인 시 총사업비 150억원으로 승인되었으나, 농식품부 착오로 사업시행지침 상 총사업비가 100.2억원으로 되어 있어, 총 사업비가 사업계획과 지침 상 서로 상이함. 이와 관련하여 설계완료 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15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본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토록 하겠음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	○ 풍천장어 웰빙센터와 통합설계 부분에 대한 검토요망	○ 고창의 명산품인 풍천장어와 복분자를 결합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 및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과와 수시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고창복분자 특화농공단지 조성	○ 창내 저수지를 이용하는 용산지역주민의 용수확보에 민원발생 최소화 하도록 강구	○ 창내 저수지 배수관이 유원지를 관통하고 있어 유원지사업에 반영되어 공사가 되었으며, 추후 용수로 확보에 대한 민원발생 최소화하도록 강구하겠음
	○ 시간당 150mm 이상 폭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바람	○ 하천 홍수율 및 설계규정에 의거 영향예측에 따라 시간당 강수량을 계산·설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성토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강구	○ 성토량 16만㎥로 현재 11만㎥ 확보 현장 성토 중에 있으며, 잔여 물량도 차질 없도록 확보하겠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미당시문학관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 검토	○ 권역 특산물 등을 판매하고,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용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며, 권역 추진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음
	○ 주민 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강구	○ 권역특성에 맞는 소득증대 아이템 발굴을 위해 우수권역 등 선진지 견학 및 컨설팅사의 마케팅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권역의 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천일염 산지종합 처리장 설치	○ 천일염 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소금이 관내 가공업체에 판매·소비될 수 있도록 홍보	○ 천일염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된 소금은 연간 3천톤 정도이고 현재 관내농협 납품 및 택배 판매하고 있음 관내 가공업체는 동곡자기, 고수자기, 선운죽염, 삼보죽염 등이 고창 천일염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고창천일염을 더욱 홍보하여 더 많이 소비되도록 노력하겠음
	○ 고창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현재 천일염 광역연계권사업으로 '천혜보금' 브랜드가 개발되어 포장재 및 용기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고창 자체만의 브랜드도 개발하여 활용하겠음
청보리 녹색산업 클러스터지원	○ 빠른 시일 내에 가공공장을 완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바람	○ 현재 식품공장 건립은 50%정도 진행되었으며 2012.11월말 준공예정임. 식품공장 준공 후 보리핫도그, 보리빵 등 보리소재 제품생산을 통해 보리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계획임
	○ SRC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와도 판매망 구축요망	○ SRC 이외에도 다양한 식품관련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망을 확대시켜 매출을 증대시킬 계획임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심원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 진입도로 확장개설과 주차장 확보 대책 강구 ○ 노출콘크리트 외벽마감 처리 방법 개선	○ 총 주차대수는 32대이며 주차대수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심원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주차난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심원면 체육관 추진위원회에서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임, 국민체육센터 사업과는 별개로 향후 체육관 뒤편으로 신설도로 검토 계획 ○ 외벽마감은 노출콘크리트와 합성목재 설치되는 부분으로 나누며 노출콘크리트 부분은 품질관리가 중요함으로 품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물의 미적 가치가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합성목재로 설치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면 정리 후 합성목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미관상 보기도 좋고 깔끔한 마감임

7. 제212회 임시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영유아 보육시설 건립	○ 철저한 공사감리 업무수행으로 부실시공 방지	○ 철저한 공사 지도감독 및 관리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음
	○ 적기 사업추진 및 적정 시공으로 9월 개원에 지장 없도록 하기 바람	○ 철저한 공정관리로 9월중 완공 개원토록 하겠음
	○ 영유아 보육시설인 만큼 시공시 영유아 안전을 최대한 배려하기 바람	○ 건물구조 및 보육실, 화장실, 시설물 등이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하여 시공하겠음
농어촌 뉴타운조성 사업	○ 단지를 관통하는 월곡천 지방하천 정비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로 쾌적한 단지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추진 바람	○ 월곡천지방하천 정비 공사 중 농어촌뉴타운과 인접한 동서대로 구간 공사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10월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임
	○ 주택에 대한 하자 발생 등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원해결에 최대한 노력하고 민원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주택에 대한 하자 부분은 입주자들에게 하자접수를 받아 시공사에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전반)	○ 최근 경영상태 부실 등으로 농민과 운영진 간 무너진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유통거래처 다양화 등 경영수익의 창출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 유통회사 설립취지에 맞게 고창 농산물 판매와 이익을 우선하고 유통구조를 전환하여 고창군 농업발전에 기여하며, 사업설명회와 현장방문으로 농가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순회간담회를 통해 회사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등 다양한 소통과 협력으로 이해갈등 조정해 나가겠음
	○ 수박, 고구마, 고추, 옥수수 등 지역 특산품의 홍보와 함께 저장중인 고추나 옥수수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유통 판매하여 생작물사업의 영업 손실을 극소화 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 구체적 자금 계획을 수립하여 고추, 수박, 고구마, 무배추 등 주력품목 육성하고 대형유통업체 판로개척, 쇼핑몰 활성화, 타켓 마케팅을 통해 매출증대와 수익을 창출하여 회사경영을 정상화하겠음
	○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판장 개설을 검토 바람	○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농산물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해 유통센터 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유통센터 내 적정 부지에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직판장을 개설하도록 추진할 계획임
토석채취장 복구공사	○ 토석채취장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람	○ 공사 지연에 의한 미완료 시 복구 대행 추진 ○ 신규허가 신청 건 주민의견 수렴 반영 불허 처분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복분자 클러스터 (타운) 조성사업	○ 조경공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 이미지에 맞는 수종이 선택 되도록 신중을 기하고 농공단지 조성이 아닌 유원지 조성 차원의 접근으로 조경 등에 각별히 유의할 것	○ 농공단지는 당초 교목위주로 설계반영 되었으나 환경청 협의내용 및 유원지 조성사업을 고려하여 교목, 관목, 초화류를 섞어 다층구조형으로 조화롭게 식재하였음
	○ 특화된 농공단지의 분양신청에 유의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 바람	○ 현재 복분자와 관련된 2개 회사와 분양계약을 맺었으며, 농공단지 분양을 위하여 서울국제식품대전에 참석 분양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록과 복분자 클러스터(유원지), 연구소등의 장점 강조하여 유치할 예정임
	○ 전체 주차면수(460대) 대비 대형차 주차면(13대)이 부족하므로 조정요망	○ 대형버스주차장은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및 주차장법에 의거 13면을 계획, 관련법 검토 후 조정하겠음
	○ 농공단지 내 쉼터 조성요망	○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부지에 쉼터 공간 조성완료
청보리 녹색산업 클러스터	○ 보리 원물 수매 시 저가라는 이유로 타지 생산 원물을 수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지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바람	○ 100% 고창산 보리수매를 통해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음
	○ 우리 지역의 보리에 대한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상품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상품으로 육성 바람	○ 제품광고, 포장재 등 각종 홍보자료에 고창산 보리의 유래, 우수성 등을 홍보하여 고창산 보리제품이 상품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	○ 조류 관찰대를 축소 검토하기 바람	○ 설치개소는 조류전문가와 협의하여 조류석식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치하겠음
	○ 붕어마름 등 식물은 저수지 식생에 맞지 않는 듯하며, 세모고랭이 등은 조류가 많이 찾는 유인책임. 고랭이류의 식재를 늘려 조류 서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람	○ 서식환경을 고려하여 관찰대 및 탐방로를 은폐하기 위한 갈대만 식재할 계획임
	○ 농어촌공사와 만수위의 60% 정도로 수위 조정하기로 협의되었는데, 수위가 낮아질 경우에 대비한 사업추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음
	○ 관찰대와 전망대 주변에 주차대책이 없음. 탐방객이 많이 몰릴 경우 마구잡이식 주차로 인한 주변 경작민과 마찰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충분한 주차대책 및 주변 주민의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할 것	○ 농로포장 및 영상감시 장치설치 등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갈곡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웰컴 센터)	○ 웰컴센터가 이미 준공 되었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감경시키기 위하여 웰컴센터의 운영을 조기에 개시하기 바람	○ 2013. 6월 27일 준공식을 가지고 정식 운영을 시작하였음
	○ 친환경사업의 추진과 관련, 재정적 지원이 단절된 이후 농가에서 관련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각서징구 등에 그치지 말고 농가설득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농가지도에 전념해 주기 바람	○ 지속적인 친환경 관련 영농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 이후에도 농가 스스로 친환경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음
	○ 본 사업의 결과로 사업 주체인 흥덕농협의 자산 증가가 90여억원에 이르고 있는 바, 순환자원화 및 조사료 생산, 미생물 배양시설 등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지역민에 이익이 환원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기타 사업(육묘장등) 에서 농가 환원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흥덕농협과 상의하여 추진하겠음
조산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 수변도로 개설 시 두평 지구와 연결하기로 하였음. 추후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여 반영 ○ 신설도로 개설 시 급커브를 지양하고 완만한 곡선주로로 건설되도록 하기 바람 ○ 전동보 등의 설치요망 ○ 신설되는 수변도로는 차량보다는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을 위한 도로로 개설	○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 공사에 건의하여 추진검토 할 수 있도록 하겠음
고창~성송간 4차선 확포장 사업	○ 농공단지앞 도로 상단부는 절토하고 하단부는 성토하여 고도차를 줄이고, 사고위험도 줄이는방안 강구	○ 당초 종단구배 −4.9%를 −4.2%로 0.7% 완화되며, 노면결빙 발생에 대비하여 미끄럼방지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였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대산면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 노인을 배려하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으로 노인회와 협의하여 파트타임 식으로 목욕탕을 관리, 운영 하는 방안 검토바람	○ 면 목욕탕 운영위원회와 협의,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자활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향후 추진 검토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취성마을 앞 농토에 대한 농업용수부족문제와 농기계 출입시 불편사항 등을 신속히 해결하여 당면한 영농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임시 펌핑 장비 가동 및 인력지원으로 용수공급을 우선 해소하였고, 향후 구레취입보에서 농수로관을 연결하는 잠관을 계획
		○ 산단과 농로를 연결하는 계획이 설계 반영되어 있어 향후 완공 시 농기계의 원활한 출입이 가능
	○ 성송~고창 4차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농공단지 앞 경사로에 대한 절토 및 성토 시 토사잔량 발생으로 순성토 반입량의 조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관련부서와 긍정적 검토 바람	○ 성송-고창간 4차선 확포장 공사구간의 토사부족으로 인해 토사잔량은 없으며, 산단 내 반입 순성토량은 완료되어 토공은 단지 내에서 조정할 계획
죽림 선사마을 조성사업	○ 체험 위주의 사업이라 시설하자 발생 빈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됨. 하자보수에 대한 대책 강구바람	○ 공사현장 및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리와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는 공정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U-맞춤형 수박생장관리 시스템 운영	○ 시스템의 오작동시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 시스템에 대한 꾸준한 재교육과 시스템의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는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개발·보완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화에 노력해 주기 바람	○ 개발업체와 협력하여 시스템 보완을 추진하며,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재교육을 2014년도 작물 입식 전 추진하겠음
선운산 해넘이 명소화 사업	○ 일주문 주변 조경 시 사찰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동백 등의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 일주문주변 왕벚나무 식재는 수목선정 시 사찰측과 협의 하여 식재하였으나, 일주문 앞부분은 의회현장 방문 시 지적사항을 사찰측과 협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식하였으며, 동백나무 136주를 일주문 주변에 식재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하였음
선운산사체험관 건립	○ 위치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 되고 있는 바, 부실시공을 막고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선운산사체험관은 6월 27일 사업을 완료하였음
고창갯벌 방문객센터 건립	○ 협소한 진출입로로 인해 불편이 많으므로 확포장 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 주차면수도 20면(소형)으로는 부족하므로 확충하기 바람	○ 심원면 하전리~해리면 금평리 일원에 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33억원(국116.5, 군116.5)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실시설계완료 후 주차장, 진입도로, 갯벌탐방로, 쉼터 등을 추진할 계획임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 (구시포항 진입도로)	○ 가로수 식재에 따른 근원경 및 수고 확인 등 검수에 만전을 기하고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	○ 사업에 식재된 이팝나무는 전수 사전검수 하였으며, 향후 가로수 식재 시 에도 규격에 어긋남이 없도록 검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식조치를 하도록 하겠음
용수지구 재해위험지구	○ 사업 시행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중장비 사용 시에는 지역 장비를 사용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바람	○ 현장 발생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수렴 설계에 반영하겠음 ○ 중장비 사용 시에 지역 장비를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음
	○ 관내 하천 내 잡초나 관목 등이 우거져 유수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잡초 등을 제거하여 유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현재 잡목 및 잡초 제거 완료
덕암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	○ 공사낙찰 후 설계변경이 잦은데,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줄이고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람 ○ 경작로 내에 경작지 진출입로를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 영농기이전 6월초에 사업완료하였으며, 경작지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하였음

8. 제214회 임시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 원활한 체험시설 운영을 위해 예비계약제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 법률자문을 받아 가능하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체험단지를 조성하기 바람	○ 타 지자체한옥체험 마을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만의 체험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음
동리국악당 리모델링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 영화상영 시 기존 문화의 전당과의 중복을 피하기 바람	○ 문화의전당 영화는 개봉 후 상당기간이 지난 영화이고 작은영화관은 개봉영화 위주로 상영할 계획임
	○ 지역민이 충분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바람	○ 개봉영화관 조성을 통한 군민들의 최신영화 접근비용을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확대
고창천 고수부지 산책로 태양광 조명등	○ 바닥 등의 고장률을 줄이고 산책로 중앙부분에 LED 발광 점자블럭을 대체 시설 검토	○ 작동불량인 바닥등은 현재 제작 및 교체 중이며, 중앙부분 점자 블럭에 대하여는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음
	○ 천변도로와 산책로를 연결하는 계단정비 및 신설과 가로등 보완설치	○ 천변도로에서 산책로로 진입하는 계단 중 폭이 좁고, 정비가 미흡한 계단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할 계획이며, 신규계단 신설은 필요한 구간 검토 및 예산확보 후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산악자전거 전용숲길 조성사업	○ 타 지역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기 바람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당시 타 지역의 운영사례 문제점 보완 반영하였음
	○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검토와 세밀한 시공 요망	○ 지속적인 이용자 방문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시공당시부터 물길 유도목, 뱅크,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MTB전문가와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음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 지역특산물과 관광을 연계하고 유통 전 단계를 아우르는 다차산업으로 확대하여 지역민의 고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하기 바람	○ 매일유업의 유통망을 활용한 지역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체험활동 등으로 고창의 다양한 특산품의 홍보, 판매에 기여하며 향후 지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민의 고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음
구시포 해안 방조제 유실	○ 상습 재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원 대책 시행	○ 구시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대상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음
	○ 해수욕장 주변의 생태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고리포 주변 산책로 개설시 옛 자료를 고증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바람	○ 구시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지자체사업)추진 시 옛 자료를 고증하여 관광자원화 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고창한우 명품화사업	○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방향 설정 바람 ○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기 바람	○ 가축분뇨처리장 주변지역사업으로 추진되는 한우명품관 신축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청보리 한우영농조합작목반의 의견을 수렴 설계서에 의해 신축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강화
고창군 귀농귀촌학교 리모델링 공사	○ 동학농민혁명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 동학농민혁명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설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향후 동학농민혁명관련 부서에서 리모델링 후 활용할 계획임
	○ 지역홍보 및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 현재 현장 내에 귀농귀촌학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귀농귀촌학교 리모델링 등 귀농귀촌관련 홍보를 위하여 사업장 입구에도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임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	○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으로써 습지 식생을 위주로 한 복원작업을 진행하기 바람	○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전문가 협의를 통한 자연 식생 식재 등 자연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개발 정책으로 모범적인 습지개발이 되기 바람	○ 친환경적인 습지 복원을 통한 자연생태계 회복 사업 추진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	○ 사업추진 시 실과소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바람	○ 실과소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복분자 클러스터 타운 조성사업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 복분자주 및 관련 상품의 소비 확대 방안과 농공단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강구	○ 복분자연구소의 우리 술 만들기 교육 등을 통한 복분자주의 관심제고 및 국내·외적으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소비 확대에 노력하겠음. 또한 농공단지 분양을 위하여 복분자 테마파크, 복분자연구소 등의 지역의 장점을 부각시켜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 조기분양 될 수 있도록 하겠음
고창일반산업 단지 조성사업	○ 대기업유치 등 산업단지 분양에 적극적인 노력 바람	○ 3개 기업 MOU체결되었고, 산단조성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입주예정 기업체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계획된 공기 내에 완료하기 바람	○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조성완료 후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금년 동절기 공사 중지 여부에 따라 기간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예정공정표에 의거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임
선동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바람	○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해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재해피해를 본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사업설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교감을 갖고 공사를 진행하기 바람	○ 하천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시행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사업 설명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음
무장현 관아와 읍성복원 정비사업	○ 고창읍성과 청보리밭, 동학농민혁명과 천주교성지 등 연계 관광지를 자원화하여 역사교육과 주민소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노력 바람	○ 무장읍성복원과 더불어 주변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판 설치 등 노력토록 하겠으며, 복원에 따른 관광객 유입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도로개설 및 토지매입 등과 관련된 민원은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바람	○ 지속적인 협의실시로 민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 실시계획임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 고창갯벌의 다양성을 홍보하고 세계적인 갯벌생태관광지, 생태교육의 명소로 개발하기 바람	○ 고창 갯벌의 다양성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 갯벌생태계복원사업과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세계적인 갯벌생태지 및 생태교육의 명소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음

9. 제218회 임시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산업단지 분양과 지방채 상환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산업단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여 군 재정의 채산성 개선에 힘써주길 바람	○ 현재 분양 및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2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준공 후 3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산업단지조성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기업을 유치하여 군 재정의 채산성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임
	○ 진입도로 공정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주변 주민이나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주길 바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고, 진입도로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 노력하여 지역주민 및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시공을 할 것임
흥덕 하수처리장 증설(연계) 사업	○ 하수처리장 시설이 마을과 근접해 있는 만큼 악취저감 등 주민생활 불편 요소의 제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람 ○ 당초 주민과 협약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마을주민 숙원사업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행정과 주민 간에 신뢰 형성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을 전개하여 줄 것을 요구함	○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주민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본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복분자 클러스터 (타운) 조성사업	○ 단지 내에 설치된 가로등 조도를 조정하여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감시책에 협조바람	○ 전기인입 후 운영 시 가로등을 2개소 당 1개소 소등, 소등시간 설정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조경수 고사목은 하자보수 요청 등 신속한 조치를 강구할 것	○ 국민여가캠핑장 및 황토전시체험관 조경수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및 지역전략과에서 도급자에게 하자보수 처리계획을 4월 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처리계획에 맞춰 하자보수 추진할 예정이며, 복분자 농공단지 내 조경수는 사업 위탁 시행한 농어촌공사에서 4월 하자검사 완료하였으며, 4월 말까지 하자보수 및 처리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음
	○ 타 지역과 차별화된 명품 단지 육성을 위한 상징물 구상, 복분자 체험시설 조성 등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 명품복분자 단지로 가꾸어 줄 것을 요청함	○ 복분자 클러스터(유원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 명품복분자 단지로 조성토록 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동리국악당 리모델링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 지역민에게 훌륭한 문화와 멋을 제공하고 품격 있는 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으로 가꿔 줄 것을 요청함	○ 국악전용극장 및 영화상영 전용공간으로써 지역민에게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 여유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음
고창읍성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 사업완료 후 운영을 위탁할 민간단체 등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길 바람 ○ 특색 있는 관광단지로 육성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바람	○ 고창군에 소재한 법인, 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한옥 및 옛거리체험마을 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임 ○ 관광객이 머물러 갈 수 있는 숙박시설 및 먹거리촌을 운영, 실질적인 군민소득 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죽림선사마을 조성사업	○ 고대와 현재의 묘제를 비교하고, 고대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조성하되, ○ 탐방로주변 조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바람.	○ 국내 유일 고인돌박물관 야외전시장의 묘제모형과 연계, 고대와 현재의 묘제를 비교할 수 있는 묘제학습공간으로 조성 ○ 조경수 전지 등 수형관리를 면밀히 하여 관광객에게 그늘 제공 및 미적 감각이 있는 탐방로로 조성하겠음

사 업 명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계획)
해당화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 자연스럽고 전형적인 마을형태를 갖추도록 하되, 성토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재난 예방과 거주민의 안전 및 복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	○ 인근 상부마을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마을형태로 조성하도록 하겠음 ○ 성토구간은 재난예방 및 복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공하도록 하겠음
대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사업의 추진과 본래 취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민원을 해결하여 주길 바람 ○ 지역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길 바람	○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음 ○ 사업추진 시 관내회사가 적극 참여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음

제7절 민원 처리



1. 민원 처리 상황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원사항	처리내용
건의	2011.6.27	안성회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 재검토 건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재검토하여 철회되어야 함.	사업추진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집행기관과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민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건의	2012.1.17	주민대표 김태경 등 아산면민	아산면 돈사신축에 따른 진정서	가축사육의 과도한 팽창으로 악취, 해충, 소음, 수질오염 등으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오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민과 축산농가의 대립,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개정을 속히 처리하길 바람.	고창군의회는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제198회 임시회에서 미료안건 처리하였고, 곧바로 제199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의 일부 과도한 제한규정을 변경, 수정 의결하여 주민들의 불편 민원 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음.
건의	2012.6.	강요원	성송면 암치재 석산운영에 따른 피해확인 요청건	성송면 암치재 석산 좌우 공사의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 주기 바람.	성송면 암치리 산81-1에 위치한 토석채취장을 관련부서인 환경위생사업소와 방문하여 골재 파쇄 및 선별작업 중에 비산먼지, 분진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사업자에게 분진 등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골재 파쇄기의 살수시설과 간이 세륜시설 등 시설을 보완하고 사업장 진입로는 빠른 시일 내에 포장하도록 조치하였음.

종류	접수일	민원인	건 명	민원사항	처리내용
건의	2013.1.4	김한성	귀농관련 예산편성 촉구	2013년도 귀농·귀촌 관련 예산삭감에 유감을 표하며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함.	2013년도 귀농·귀촌 관련 예산은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 구)신왕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구)신왕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등은 지난 제15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시 동학농민혁명 성지화를 위한 기념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관련 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될 경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림.

第6代 高敞郡議會 議政白書

印刷日 : 2014年 12月 日
發行日 : 2014年 12月 日
發 行 : 高 敞 郡 議 會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Tel. 063-560-2742
印 刷 : 고 창 보 성 인 쇄 소

<비 매 품>